

제 1 권

공사감독 실무편람

국 방 시 설 본 부
Defense Installations Agency



주의사항

1. 본 국방시설 공사감독 실무편람은 군사목적 외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을 금합니다.
2. 본 책자는 무단으로 복제, 복사할 수 없습니다.
3. 본 책자는 비밀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적에게 노출시 유해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감독 실무편람 내용 중 수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900-4261 ~ 9)

제 1 권

공사감독 실무편람

국 방 시 설 본 부
Defense Installations Agency



발간사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완벽한 시설임무 완수를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작전지원 및 장병 복지시설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공사감독실무편람』을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편람은 공사감독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추려 대관협의부터 공사행정, 착공·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 및 공종별 감독관 착안사항 등 주요 실무사례를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규 및 지방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부 및 각 시설단의 공사행정과 감독업무 수행 시 체계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방시설본부가 최고 수준의 군 시설 전문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후방 각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사감독관들에게 본 책자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편적인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현장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객(사용부대)만족의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사감독관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편람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준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2017년 12월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which appears to read '한철기' (Han Cheol-gi).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style.

국방시설본부장 육군소장 한철기

순서

□ 대관협의

□ 공사행정

□ 토목분야

□ 건축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대 관 협 의

목 차

제1장 대관협의 이해	
1. 대관협의 목적	1
2. 대관협의 용어해설	1
제2장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1. 개요	10
2. 사업계획승인	11
3. 실시계획승인	12
4. 건축승인	16
5. 착공신고	19
6. 준공검사(사용승인)	20
제3장 단계별 협의 내용 및 절차	
1. 사업계획 승인단계	21
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21
나. 문화재 지표조사	23
2. 실시계획 승인단계	29
가. 환경영향평가	29
나.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31
다.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33
라. 개발행위허가	35
마.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39
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2
사. 농지전용 허가 · 협의	48
아. 도로 시행허가 및 점용허가	52
자.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56
차.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 신고	60
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62
타.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67
파. 산지전용 허가	70
하. 산지일시사용 허가 · 신고	74
거. 소하천 점용의 허가	77

나.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79
더.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1
러. 분묘의 개장허가	83
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5
버. 초지의 전용허가	87
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89
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허가	92
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95
처. 하천점용 허가	97
커. 항만공사 계획의 허가	99
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101
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03
3. 건축승인단계	105
가. 건축인허가등의 소방동의 요청	105
나.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확인	107
다. 배수설비 설치신고	108
4. 착공신고단계	109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109
나.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신고 및 설치	111
5. 준공(사용승인)단계	113

제4장 국방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1. 국방세움터	116
가. 개요	116
나. 구성	116
2. 승인단계별 안내사항	117
가. 실시계획승인	117
나. 건축승인	118
다. 착공신고	119
라. 준공검사(사용승인)	120

제1장 대관협의의 이해

1. 대관협의 목적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계획에서 준공단계까지 관련행정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관협의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대관협의 용어해설

가. 지 목

지목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지(번지)별로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지목은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만을 부여하며, 지목의 종류는 전, 답, 임 등 총 28가지의 종류가 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대	장	학	차	주	창	도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공	체	원	종	사	묘	잡

〈지목의 종류〉

나. 대 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지적법에서 말하는 지목 대(垓)와 약간 의미가 다르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목이 학교용지나 공장용지는 지목이 대(垓)가 아니지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기에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한다.

또한 산지나 농지의 경우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나 전용협의를 통한 형질변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기에 건축법에 따른 대지가 될 수 있다.



- 1) 하나의 대지 :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허가한다.
하나의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1필지를 원칙으로 하나, 건축법(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법령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2) 도로 :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 전용협의

지목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고, 없는 대지가 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는 지목 상 대(垸),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이 있으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목은 전(田), 답(畓), 임(林) 등이 있다. 이런 지목의 땅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법적 절차를 걸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용협의라 한다. 이런 전용협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과 같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으로 정의되며 이는 허가대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형질변경 사항이다.

- 1) 토지를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2)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3)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위의 정의와 같이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외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도로포장, 절·성토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적법한 대지로 만드는 것 또한 통상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말한다.

마. 건축물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구조물을 말하며 건축물은 다음 2가지 사항을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 1) 토지에 정착하여야 한다.
- 2) 지붕+기둥, 지붕+벽체, 지붕+기둥+벽체로 구성된 구조물
 ※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및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도 건축물에 해당됨

바. 공 작 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다음의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며 축조 시 신고하여야 한다

-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건축이란 말 그대로 구조물을 축조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모든 행위를 건축으로 보지 않으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만을 건축이라 말한다.

- 1) 신축 : 기존 건축물이 없는 공(空) 대지에 건축하는 행위
 ※ 공대지가 아닌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 건축물의 축조 시에도 신축에 해당
- 2)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하는 행위
 바닥면적의 증가 없이 층수 또는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포함한다.
- 3)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건축하는 행위
- 4) 재축 : 건축하는 방법은 개축과 동일하나, 개축이 건축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이루어진다면, 재축은 천재지변, 기타재해에 의해 멸실되어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이전 : 건축물을 들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로 일반 건축물은 쉽지 않고 흔하지도 않다.

6)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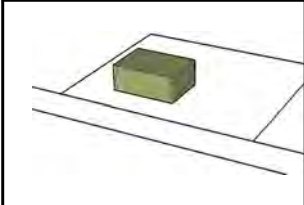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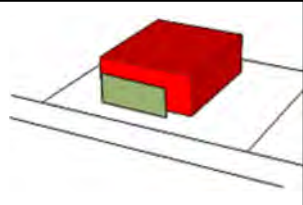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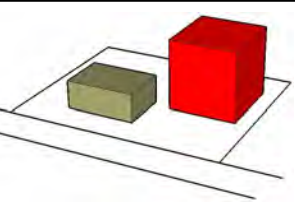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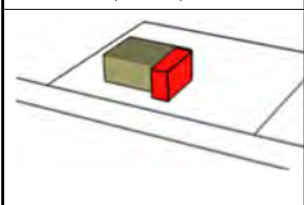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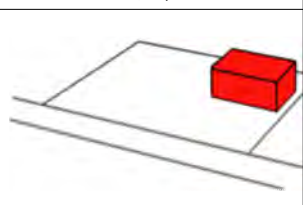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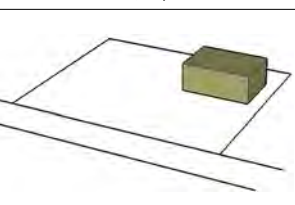
나)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주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존건축물	증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아. 건 폐 율

건폐율은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을 얻게 하고 화재시의 인접한 건축물과의 연소방지와 소방, 재해시의 피난 등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여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고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건폐율은 용도지역·지구 에 따라 다르며, 국토법에서는 건폐율의 범위를 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계획조례에서 확정한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폐율의 산정 : 건폐율은 지상층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이다. 이때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은 추녀의 길이, 발코니 등 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잡으면 된다.

자. 용 적 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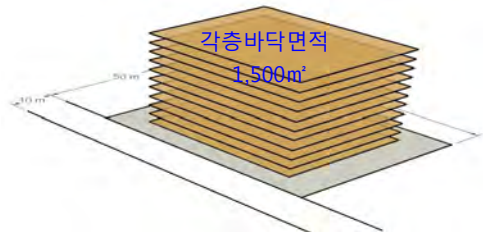
건폐율이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확보를 위한 제한, 즉 2차원적인 제한이라면, 용적률은 3차원적인 제어수단이다. 대지 대비 건축물의 부피를 제한하는 수단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 1) 용적률의 산정 :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이 건축되면 각각의 지상층(지하층 부분의 바닥면적은 제외함) 연면적의 합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으로 산정하면 된다.

예시: 건폐율, 용적률 예시(대지면적 3,000㎡ 일 경우)

건폐율/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일반상업지역 (국토계획법)	80% 이하	300%이상 1,300%이하
00시 도시계획조례	50% 이하	500% 이하



대지면적 : 50m × 60m =3,000㎡

건축면적 : 3,000㎡(대지면적) × 50%(건폐율) =1,500㎡

연면적 : 3,000㎡ × 500%(용적율) =15,000㎡

차. 경계 및 분할측량 등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측량의 종류에는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등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측량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측량이다.

- 1) 지적측량 : 지적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써 지적측량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측량은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이다.

- 가)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에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이다.
- 나) 지적현황측량 : 설계용역시 사용하는 측량으로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기존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이다.
- 다) 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조건

- 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분할제한 최소면적 준수

구 분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지역
최소면적	60㎡	150㎡	150㎡	200㎡	건축조례에 따름

- 나) 건폐율 및 용적률 충족
- 다)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충족
- 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충족

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법에 의거 용도지역·지구·구역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4등분하는 용도지역제와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그 용도지역 위에 입지별 특성에 따라 미관지구, 경과지구, 보존지구, 고도지구 등으로 덮어씌우는 용도지구제 그리고 그 외에 도시 주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정기간 통제를 하면서 도시를 계획적으로 가꾸기 위한 시가화조정구역,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 해변지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용도구역제도 있다.

이런 용도지역·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지구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기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등이 달라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 1) 용도지역 : 우리나라는 크게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모든 국토가 4개의 용도지역 중 무조건 하나에 속하게 되며,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불가능하다. 이 용도지역은 다음표와 같이 다시 세분되어진다.

구 분	용도지역	세분 용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
			제2종 전용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근린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 용도지구 : 용도지구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용도 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되어진다.

종 류	세 분	종 류	세 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수변경관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공향시설보호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일반미관지구		집단취락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최저고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방재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생태계보존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기타지구		-	

- 3) 용도구역 :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함이며 개발제한구역, 시가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다. 공부서류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토지에 대한 법적규제를 알려주는 서류로 대관업무 진행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접속하여 주소만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정 보	확 인 사 항
①	주 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②	지 목	토지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③	면 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④	공시지가	토지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⑤	지역·지구·구역	설계기본요구조건과 일치여부 확인
⑥	지자체 조례	개발행위 제한범위 확인

2) 건축물 대장 :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이다. 해당건물이 언제 준공되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 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이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은 다시 일반과 총괄표제부로 나뉘는데 대관업무 검토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건축물 대장의 총괄표제부이다. 총괄표제부에는 대상토지 내 건물이 몇동이 있고 동마다 면적은 얼마이고, 이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이 표현되어 있다

구분	정보	확인사항
①	주소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②	대지면적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③	연면적, 건축면적	해당대지 내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면적 확인
④	건축물 수	해당대지 내 건축물의 수량 확인
⑤	건폐율, 용적률	해당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확인

3)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대관업무 검토 시 토지대장의 용도는 기 확보된 정보와 토지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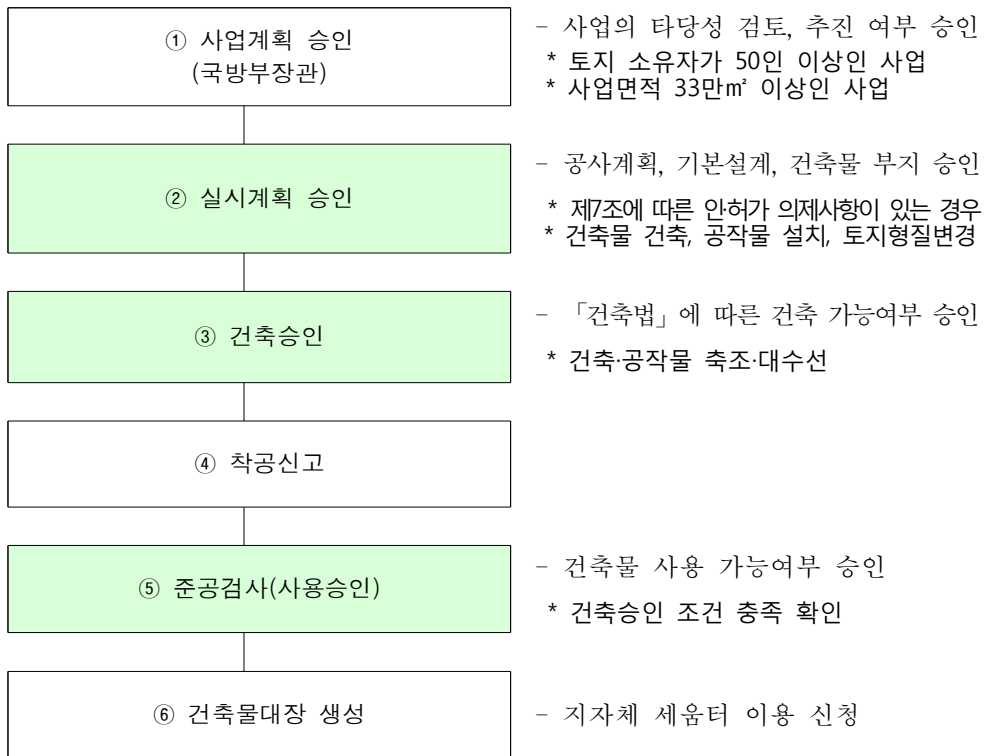
구분	정보	확인사항
①	주소	토지이용계획원, 건축물 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②	대지면적, 지목	토지이용계획원과 건축물 대장과 일치여부 확인
③	소유자	소유자가 국방부인지 확인

제2장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1. 개요

군주둔지까지 도시화가 확산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군사시설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2012. 1.26 부로 제·개정되었으며, 기존 실시계획 승인(승인권자 : 국방부장관)단계가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건축승인으로 세분화되었다.

가. 업무절차



- 1) 사업계획 승인 : 사업의 공익성, 입지, 규모, 시행방법 등 계획의 타당성 검토 승인
- 2) 실시계획 승인 :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축조되는 부지에 대한 검토 승인
- 3) 건축승인 :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축조에 대한 승인
- 4) 준공검사 : 건축승인 대상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사용승인)으로 이루어지며 국방 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필요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이 당연사업시행자와 지정사업시행자로 구분된다.
 - 가) 당연사업시행자
 - (1) 국방부소속기관장(국방부 직할부대장 포함)

- (2)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 하는 자(예:국방과학연구소)
- 나) 지정사업시행자(국방부장관 승인 필요)
 - (1)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
 - (4) 공익사업을 시행하는자
 - (5)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2. 사업계획 승인

가. 사업계획 승인 목적

- 1) 사업의 공익성, 입지·규모·사업비용·시행 방법·시행기간의 적절성등 계획의 타당성 검토
- 2) 새로운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대상지의 수용 및 대상지내에서의 행위제한

나. 사업계획 승인 대상사업

-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3)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다. 사업계획 승인 내용

-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3)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4) 사업시행자
- 5)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8) 주요기반의 설치계획
-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① 사업계획승인 신청

↓ <사업시행자>

②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 검토

↓ <국방부장관>

③ 사업계획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대관협의

↓ <국방부장관>

④ 사업계획공고(30일이상) 의견수렴제출(30일이내)

↓ <지자체장>

⑤ 사업계획 승인

↓ <국방부장관>

⑥ 관보 고시 및 승인 통보

↓ <국방부장관>

⑦ 실시계획을 주민에게 열람 (14일 이상)

↓ <지자체장>

<사업계획승인절차도>

-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필요치 않은 사항(경미한 변경)

- 1)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계획명칭 변경의 경우
-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단축하는 경우
- 3) 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4) 사업 시행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 5) 사업시행자의 조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6) 물가변동 또는 정산에 의한 사업비의 증감
- 7) 착오 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시설부지면적 등의 변경

3. 실시계획 승인

가. 실시계획 승인 목적

개략적인 설계와 공사세부시행계획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

나. 실시계획 승인 대상사업

- 1) 건축물의 건축
 - 2) 공작물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사업은 제외

다. 실시계획 승인 내용

- 1) 사업의 개요, 위치, 규모, 범위, 면적
- 2)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시기 및 기간
- 3)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5) 공사세부시행계획
- 6)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 7) 인·허가의제 사항 관련서류

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필요치 않은 사항(경미한 변경)

- 1)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계획명칭 변경의 경우
-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단축하는 경우
- 3) 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4) 사업 시행면적을 10%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 6) 물가변동 또는 정산에 의한 사업비의 증감
- 7) 착오 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시설부지면적 등의 변경

마.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사항

- | | |
|-------------------------------------------------------------------------------------------------------------------------------------------------------|-----------------------------------------------------------------------------------------------------------------------------------------------------------------------------------------------------------|
| <p>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① 실시계획승인 신청</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시행자></p> |
|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② 실시계획승인 신청 서류 검토</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시설본부장></p> |
| <p>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③ 인허가 의제사항 협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시설본부장></p> |
| <p>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④ 실시계획 승인</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시설본부장></p> |
| <p>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⑤ 관보 고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시설본부장></p> |
| <p>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⑥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통보</div>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국방시설본부장></p> |
| <p>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⑦ 실시계획을 주민에게 열람 (14일 이상)</div> <p style="text-align: center;"><지자체장></p> |
| <p>8) 「산림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p> | <p style="text-align: center;"><실시계획승인절차도></p> |
| <p>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임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p> | |
| <p>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p> | |
| <p>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p> | |
| <p>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p> | |
| <p>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p> | |
| <p>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p> | |
| <p>15) 「자연공원법」 제23종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 |

-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신고
-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이 점용허가
-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23)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바. 실시계획 의제사항 이외의 인·허가 사항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신고 및 설치
- 4) 「매장문화재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5)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0조, 제56조에 따른 문화재 형상변경
- 6)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6조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 7) 「주차장법」 제19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 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주요 검토사항

- 1)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 확인
 - 사유지는 ‘사용동의서’, 타부처 부지는 ‘사용승인’ 등 필요
- 2) 사업부지 용도지역 확인(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국방·군사시설 건축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예) 일반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 지자체 건축조례 확인
 -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여부
 - 예) 국방부 영내, 계룡대 지역 등 ⇨ 지자체 승인 대상임
 - 기타 지역·지구 특이사항 검토
 - 예) 문화재 현상변경 지역, 국립공원지역 등
- 3) 사업부지의 지목 확인
 - 구거, 도로 등 용도폐지 및 지목변경 추진
 - * 국방부 소유 토지일 경우
 - 용도폐지 심의(시설단 재산과) ⇨ 토지이동신청(재산과⇨지자체)

* 타부처 소유 토지일 경우

사용승인 및 용도폐지 신청(시설단 재산과↔지자체)

- 임 : 산지전용협의, - 전, 답 : 농지전용협의

4) 사업부지 내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 신축, 증축 판단

5) 사업부지 분할 여부

6) 도로(지목상) 접합 여부

- 건축법에 따라 대지는 도로에 면해야 함.

* 영내 현황도로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판단

(단, 부대이전사업, 부대창설 등 대규모 사업은 사업부지가 지목상 도로에 건축법 기준에 맞춰 면하는지 검토, 사업부지와 지목상 도로 사이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됨)

용도지역			건 폐 율	용 적 른	층 수	국방군사시설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 지역	제1종	50%이하	50~100%이하	2층이하	×
			제2종	50%이하	100~150%이하	조례	×
		일반 주거지역	제1종	60%이하	100~200%이하	4층이하	△(조례)
			제2종	60%이하	150~250%이하	조례	△(조례)
			제3종	50%이하	200~300%이하	조례	△(조례)
	준주거지역		70%이하	200~500%이하	조례	△(조례)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400~1,500%이하	조례	○
		일반상업지역		80%이하	300~1,300%이하	조례	○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900%이하	조례	△(조례)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1,100%이하	조례	△(조례)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150~300%이하	조례	△(조례)
		일반공업지역		70%이하	200~350%이하	조례	△(조례)
		준공업지역		70%이하	200~400%이하	조례	△(조례)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50~100%이하	4층이하	○
		생산녹지지역		20%이하	50~100%이하	4층이하	○
자연녹지지역		20%이하	50~100%이하	4층이하	○		
관 리 지 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50~80%이하	4층이하	○	
	생산관리지역		20%이하	50~80%이하	4층이하	○	
	계획관리지역		40%이하	50~100%이하	4층이하	○	
농림지역			20%이하	50~80%이하	조례	△(조례)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50~80%이하	조례	△(조례)	

4. 건축 승인

가. 건축승인 목적

건축승인은 실시계획에 의거 조성된 적법한 대지에 건축, 축조,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그 권한이 국방부장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있다.

나. 건축승인 대상사업

국방·군사시설을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시행되는 사업

다. 건축승인 특례의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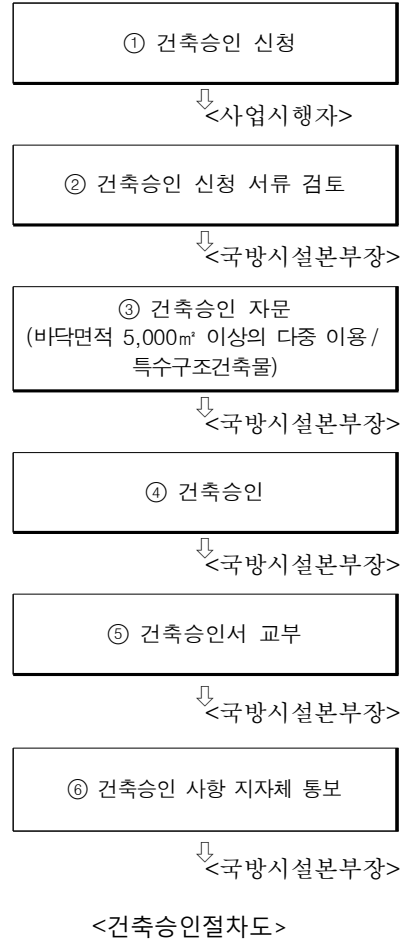
-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군무원·가족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라. 건축승인 자문

- 1) 건축승인 자문심의 대상

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4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국방·군사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방법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 구조(PEB),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등 설계시공방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전이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먼진·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 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합성 특수전단벽, 철골 특수 강관전단벽, 철골 특수모멘트조,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
- 나)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군사시설
- 2) 건축승인 자문심의 제출서류
 - 가) 건축계획서(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 나)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마. 건축승인 의제사항

-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설계 기술기준 적합성 협의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소방동의
-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협의
- 5)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바. 건축승인 신청시 주요 검토사항

구분	주요 협의 대상 / 검토 내용
하수	하수 관련시설(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이 있을 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지자체 관로 연결시)
통신	연면적 150㎡(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면적 기준) 이상 시, 정보통신설계 적합성 검토
소방	연면적 400㎡ 이상 시, 소방시설 적합성 검토
비행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시 관할 부대와 건축가능여부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에너지절약 계획서	연면적의 합 500㎡(냉난방 면적 기준)이상 건축물 - 적용기준 : 설계기준 의무사항 적용,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탄약	탄약고 건축시, 탄약안전심의 결과 제출

※ 보육시설 : 「영유아보호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확인

1)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여부

- 관련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검토내용 : 열관류율(별표1) 또는 단열재 두께(별표3) 기준 준수
제6조 건축부분 의무사항 준수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준수해야함
- 예외대상
 -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구조안전 확인

-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확인대상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 간격 10m 이상인 건축물
 -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지진구역 1에서 중요도 특 또는 1의 건축물)
- 제출서류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작성한 구조계산서

3)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인증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 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구 분	적용대상	인증 등급 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연면적 3,000㎡ 이상이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냉·난방면적 500㎡ 이상) 사업 (단, 냉난방을 하지 않는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10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주거용 (공동주택, 기혼간부숙소)	주거용 건축물 2등급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연면적 3,000㎡ 이상이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냉·난방면적 500㎡ 이상) 사업	그린4등급 주둔지 내 시설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16.9.1. 건축승인 신청 사업부터 적용	

- 건축승인 신청시 예비인증 결과 제출
 - 설계도서에 의한 본인증 가능여부 사전확인 필요
- 준공검사(사용승인) 신청시 본 인증 결과 제출

5. 착공신고

가. 착공신고 절차

- 1) 국방시설본부 사업
 - 건축승인 신청(설계과) ⇨ 승인 ⇨ 해당사업과 배정 ⇨ 착공신고(사업과)
- 2) 기타사업자 사업
 - 건축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승인 ⇨ 착공신고(사업시행자)

나. 개별법에 의한 감리대상

- 1)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건축법 제25조)
 - 대상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공사(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연면적 200㎡이상, 3층 이상 건축물
 - 도시지역 : 연면적 100㎡초과 건축물

※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와 공사감독관의 차이점

구 분	관련법	자격	수행업무
공사 감독관	국가계약법 제13조 (감독)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소속 공무원 ※ 건설사업관리자는 대행 가능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
공사 감리자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사 건설사업관리자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과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와 시공사를 지도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포함) ※ 공사대금 지급에는 권한 및 책임 없음

- 2) 소방공사 감리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연면적 1,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
- 3) 정보통신공사 감리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8조)
 - 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등
- 4) 석면철거공사 감리 (석면해체작업감리기준 제5조)
 - 석면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인 사업장
- 5) 산지복구공사 감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 : 10,000㎡ 이상의 산지복구

6. 준공검사(사용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9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2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계약법』 등 타 법령의 준공검사와는 다른 의미이며,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에 의한 준공검사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하는 검사

※ 관련자 역할

구 분	검 사 자	피 검 사 자
준공검사 (사용승인)	승 인 권 자	사업시행자
준공검사 (국가계약법)	계약담당공무원	시 공 자

가. 준공검사(사용승인)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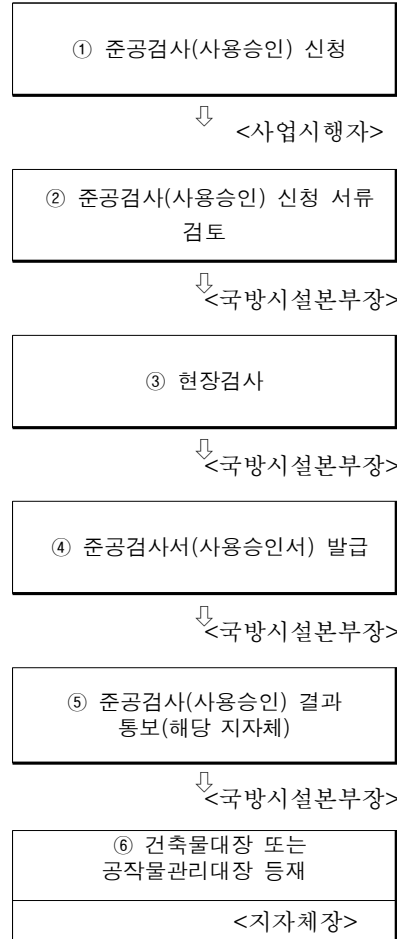
- 1) 준공검사서(사용승인서) 교부 후, 건축물대장 등재, 등기부등본 생성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준공검사(사용승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군사시설의 소유권권리 행사 불가함
- 2) 건축법 제22조③항.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나. 준공검사 대상사업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마친 사업

다. 준공검사 시 동시 처리사항

국방·군사시설의 준공검사시 결과를 통보하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준공검사절차도>

제3장 단계별 협의 내용 및 절차

1. 사업계획 승인단계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대관업무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으며,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문화재지표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가. 전략환경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행위(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항)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제외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내 용
	<p>를 미실시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협의대상 기관	<p>○ 환경부 장관</p>
인허가 절차	<pre> graph TD A[용역계약(사업시행자)] --> B[평가준비서 작성(사업시행자)] B --> C[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국방부)] C --> D[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사업시행자)] D --> E[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사업시행자)] E --> F[주민의견접수 및 취합(사업시행자)] F --> G[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환경부/지자체)] G --> H[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사업시행자)] H --> I[평가서(본안) 협의(사업시행자/국방부)] I --> J[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통보(국방부)] J --> K[용역종결(사업시행자)] L[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 건의(사업시행자)] --> M[평가 심의위원 선정(준공승인과)] M --> N[심의(준공승인과)] N --> O[심의 결과 통보(준공승인과)] C --> L O --> D </pre>

나. 문화재 지표조사(매장문화재법 제6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건설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행위</p> <p>* 용어정의(매장문화재법 제2조)</p> <p>1. "매장문화재"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p> <p>나.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p> <p>다.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p> <p>*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땅속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참조)</p> <p>가.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작성한 지도에 문화재가 존재하는 곳으로 표시된 지역</p> <p>나. 지표조사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에 문화재가 존재 하는곳으로 표시된 지역</p> <p>다. 발견된 문화재의 가치가 높아 인근이 보존 조치된 지역</p> <p>라. 문화재가 발견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p> <p>마. 국가, 시도, 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지역</p> <p>바. 고정된 유형문화재가 있는 점유 면적을 제외한 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 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p>
적용대상	<p>○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건설공사(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p> <p>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아래 제외대상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p> <p>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p> <p>※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p> <p>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나. 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라.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마.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p> <p>○ 문화재 지표조사 제외 건설공사(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p> <p>1. 절토(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유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구 분	내 용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복토(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입목)·죽(죽)의 식재(식재), 벌채(벌채) 또는 숨아베기
협의대상 기관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과 문화재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 지표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5조)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
지표조사 실시시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의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3조)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3조)
지표조사 절차	○ 건설공사 시행자 문화재 조사기관에 지표조사 요청(매장문화재법 제7조) * 문화재 조사기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건설공사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마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 제출(매장문화재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매장문화재법 제7조)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 ※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p>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매장문화재법 제8조) ○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매장문화재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매장문화재법 제8조)
<p>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매장문화재법 제9조) ○ 위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매장문화재법 제9조)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위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매장문화재법 제10조)

◎ 문화재 현상변경(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0조, 제56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위해서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행위</p> <p>↳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고 사항</p> <p>↳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고 사항</p> <p>* 용어정의(문화재보호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2.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3.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문화재 4.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적용대상	<p>○ 국가지정문화재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제3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포획)·채취(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p>○ 국가지정문화재 신고 대상(문화재보호법 제4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p>○ 등록문화재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제5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p>○ 등록문화재 신고 대상(문화재보호법 제5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 분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협의대상 기관	○ 시장·구청장·군수 및 관할시장/도지사, 문화재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3.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국가지정문화재 신고 대상(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등록문화재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제56조, 시행규칙 제3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등록문화재 신고 대상(문화재보호법 제56조, 시행규칙 제3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72호서식
발주처 협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전 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신고 대상(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등록문화재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문화재 형상변경 전 허가 ○ 등록문화재 신고 대상(문화재보호법 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문화재 형상변경 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고
현상변경 행위허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별지 제19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서(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 작성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함 * 다만, 적용대상 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적용대상 2호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p>※ 허가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p>○ 국가지정문화재 신고 대상(문화재보호법 별지 제19호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p>○ 등록문화재 허가 대상(문화재보호법 별지 제19호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서(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림 <p>※ 허가기준</p> <p>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서(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문화재청장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서 통보 -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알림 <p>○ 등록문화재 신고 대상(문화재보호법 별지 제72호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림

2. 실시계획 승인단계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의 대관업무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제사항과 개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등이 있다.

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행위(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항)
적용대상	○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중 사업 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제2조제1소사목에 따른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시설(골프장포함)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 제외)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장 신설 -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건설 - 그밖의 사업으로 사업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구 분	내 용
	<p>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해군기지 군사시설제외)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장 신설 -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건설 - 그밖의 사업으로 사업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p>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것</p> <p>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p> <p>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p> <p>○ 환경영향평가 실시 제외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p> <p>*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p>협의대상 기관</p>	<p>○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p>
<p>인허가 절차</p>	<pre> graph TD A[용역계약(사업시행자)] --> B[평가준비서 작성(사업시행자)] B --> C[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준공승인과)] C --> D[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사업시행자)] D --> E[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사업시행자)] E --> F[주민의견접수 및 취합(사업시행자)] F --> G[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지방환경청/지자체)] G --> H[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사업시행자)] H --> I[평가서(본안) 협의(사업시행자/준공승인과)] I --> J[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통보(준공승인과)] J --> K[용역종결(사업시행자)] C --> C1[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 건의(사업시행자)] C1 --> C2[평가 심의위원 선정(준공승인과)] C2 --> C3[심의(준공승인과)] C3 --> C4[심의 결과 통보(준공승인과)] C1 -.-> D C4 -.-> D </p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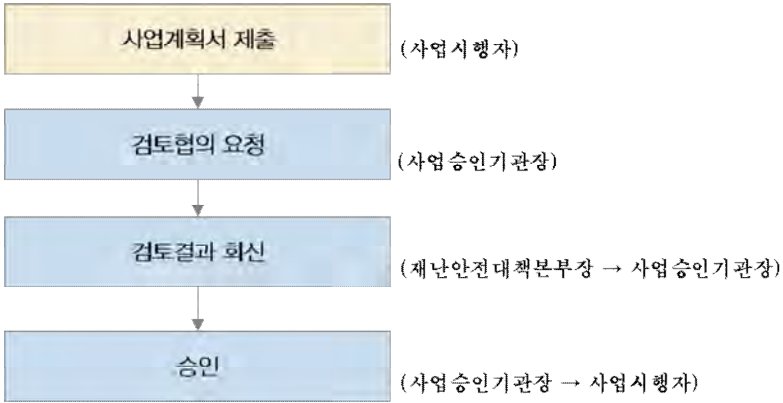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행위(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항)</p>
적용대상	<p>○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p> <p>*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개발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p>* 주요 대상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 농림지역 : 7,500㎡이상 - 자연환경보존지역 : 7,500㎡이상 - 개발제한구역 : 5,000㎡이상 <p>○ 환경영향평가 실시 제외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p> <p>*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미 실시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협의대상 기관	<p>○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p>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p>용역계약(사업시행자)</p> <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평가서 작성(사업시행자)</p> <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평가서 협의(사업시행자/준공승인과)</p> <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통보(준공승인과)</p> <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용역종결(사업시행자)</p> </div>

다.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자연대책법 제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 여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의 수행하는 행위(자연재해대책법 제2장)</p>										
적용대상	<p>○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대상 행정계획</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협의 시기</th> </tr> </thead> <tbody> <tr> <td>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발행위 허가 전</td> </tr> <tr> <td>1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실시계획승인 전</td> </tr> </tbody> </table>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대상 행정계획</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협의 시기</th> </tr> </thead> <tbody> <tr> <td>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td> </tr> </tbody> </table>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1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이상	실시계획승인 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1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km이상	실시계획승인 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의요청 관련 내용	<p>○ 협의기관의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재해영향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협의기관은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적정성 등 기본요건 검토 • 협의기관에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항목을 참조, 담당공무원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검토·심의 의뢰 • 검토의견서 작성요령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작성 										

구 분	내 용
	<p>* 협의요청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 및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등 재해영향 검토에 필요한 도면 • 행정계획수립 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대책중앙본부장이 재해경감을 위하여 증점검토 항목으로 고시한 사항
협의대상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인허가 절차	 <pre> graph TD A[사업계획서 제출] --> B[검토협의 요청] B --> C[검토결과 회신] C --> D[승인] </pre> <p>(사업시행자)</p> <p>(사업승인기관장)</p> <p>(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사업승인기관장)</p> <p>(사업승인기관장 → 사업시행자)</p>

라.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6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토지이용 행위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에 허가받는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p>
적용대상	<p>○ 개발행위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단,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는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 3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p>○ 개발행위허가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의 항목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5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구 분	내 용
	<p>4.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p> <p>○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다만,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구 분	내 용
	<p>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토석채취</p> <p>5. 토지분할</p> <p>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p> <p>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p> <p>다. 행정 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p> <p>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p> <p>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p> <p>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협의대상 기관</p>	<p>○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p>
<p>신청자 구비서류</p>	<p>○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5호서식)</p> <p>○ 첨부서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건축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 가능)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도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개발행위 허가담당	15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신청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접 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조 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관계부처 협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승인 및 결과 통보</div>	 (관련 법규 및 계획 등 검토) (타 기관 및 청내 관련 부서 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결과 접수</div>		

마.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공유수면에서 건축물의 건축, 준설, 토석채취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행위</p> <p>* "공유수면"의 정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200해리) 한계까지의 사이 2. 바닷가 :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3.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적용대상	<p>○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해양수산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위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p>○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적용배제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한 법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구 분	내 용
	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1. 국가관리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 지방해양항만청장 2. 지방관리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3. 연안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 첨부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별표1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는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같음)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한 것)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도	신청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50%;">처리기간</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유수면관리청</td> <td> 1. 적용대상 1호~4호 : 14일 2. 적용대상 5호~11호 : 7일 </td> </tr> </table>	처리기관	처리기간	공유수면관리청	1. 적용대상 1호~4호 : 14일 2. 적용대상 5호~11호 : 7일
	처리기관	처리기간				
공유수면관리청	1. 적용대상 1호~4호 : 14일 2. 적용대상 5호~11호 : 7일					
<pre> graph TD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첨부서류 검토] C --> D[협의] D --> E[허가/불허가] E --> F[고시/관계기관 통보] F --> G[결과 접수] </pre>						

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공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7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승인 받거나 또는 신고하는 행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7조)
적용대상	<p>○ 실시계획 승인 대상(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2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사업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사업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p>○ 실시계획 신고 대상(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사업 중 제5호 ~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신고
협의대상 기관	<p>○ 공유수면관리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관리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관리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안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p>○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 승인(신고)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p> <p>○ 첨부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공사감리계약서

구 분	내 용						
	<p>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p> <p>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p> <p>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p> <p>6. 예정 공정표</p> <p>7.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p>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th> <th style="width: 4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4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유수면관리청</td> <td> 1. 실시계획 승인 : 20일 2. 실시계획 신고 수리 : 10일 </td> </tr> </tbody> </table> <pre> graph TD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첨부서류 검토] C --- C1["(관련 법규 및 계획 등 검토)"] C --> D[협의] D --- D1["(타 기관 및 청내 관련 부서 간)"] D --> E[인가/신고수리] E --> F[관계기관 통보] F --> G[결과 접수] </pre>		처리기관	처리기간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1. 실시계획 승인 : 20일 2. 실시계획 신고 수리 : 10일
	처리기관	처리기간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1. 실시계획 승인 : 20일 2. 실시계획 신고 수리 : 10일					

◎ 공유수면 매립 면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28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가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를 받는 행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
적용대상	○ 무역항, 연안항(「항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적용배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포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대상 기관	○ 무역항, 연안항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 위의 1번, 2번 항목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매립 예정지가 위의 1번과 3번에 걸쳐있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 ○ 위의 3번 항목에 따른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 면허를 받아야 함)
신청자 구비서류	○ 매립면허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첨부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구 분	내 용					
	<p>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p> <p>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p> <p>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p> <p>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함).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 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p> <p>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p> <p>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p>					
인·허가 절차도	신청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50%;">처리기간</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립면허관리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68일</td> </tr> </table>	처리기관	처리기간	매립면허관리청	68일
	처리기관	처리기간				
매립면허관리청	68일					
<pre> graph TD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련 법규 및 계획 등 검토)] C --> D[협의 (타 기관 및 청내 관련 부서 간)] D --> E[면허/불면허] E --> F[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F --> G[결과 접수] </pre>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 공유수면 매립 면허취득자가 공유수면 매립 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는 행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
적용대상	○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매립면허취득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 : 1.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을 설치한 자
협의대상 기관	1. 무역항, 연안항 공유수면 매립 : 국토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 국토해양부장관 3. 위의 1번, 2번 항목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매립 예정지가 위의 1번과 3번에 걸쳐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5. 위의 3번 항목에 따른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함)
신청자 구비서류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첨부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함) 7. 예정 공정표

구 분	내 용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30%;">신청인</th> <th style="width: 35%;">처리기관</th> <th style="width: 35%;">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립면허관리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21일</td> </tr> </tbody> </table>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매립면허관리청	21일	<pre> graph TD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련 법규 및 계획 등 검토)] C --> D[협의 (타 기관 및 청내 관련 부서 간)] D --> E[승인/반려] E --> F[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F --> G[결과 접수] </pre>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매립면허관리청	21일						

사. 농지전용 허가·협의(농지법 제3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농지의 전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행위</p> <p>* “농지의 전용”의 정의</p> <p>-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다만,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1호 가목)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p>
적용대상	<p>○ 농지전용 허가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동법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p>○ 농지전용 협의 :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협의대상 기관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소요예산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1. 국방·군사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내일 경우50%, 농업진흥지역 외일 경우 100%의 감면 혜택이 있음																							
신청자 구비서류	○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14호서식) ○ 첨부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신청인</th> <th style="width: 25%;">시·군·자치구</th> <th style="width: 25%;">시·도</th> <th style="width: 25%;">농림수산식품부</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서 작성></td> <td><접 수></td> <td><접 수></td> <td><접 수></td> </tr> <tr> <td></td> <td><심 사></td> <td><심 사></td> <td><심 사></td> </tr> <tr> <td></td> <td><허가증 작성></td> <td><허가증 작성></td> <td><허가증 작성></td> </tr> <tr> <td><허가증 교부></td> <td><경 유></td> <td><경 유></td> <td><경 유></td> </tr> </tbody> </table> <p>※ 처리기간 ① 시·군·구 : 10일 ② 시·도 : 20일 ③ 농림수산식품부 : 30일</p>				신청인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심 사>	<심 사>	<심 사>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경 유>	<경 유>	<경 유>
신청인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심 사>	<심 사>	<심 사>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 교부>	<경 유>	<경 유>	<경 유>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농지법 제36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허가 받거나 협의하는 행위.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또는 자치구와 협의함.(농지법 제36조1항) ○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는 행위(농지법 제36조2항)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 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3.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4.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요청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구 분	내 용						
	<p>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p> <p>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p>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신청인</th> <th style="width: 6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2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td> <td>10일</td> </tr> </tbody> </table> <pre> graph TD A[신청서/신고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C --> D[심사] D --> E[허가증 작성] E --> F[허가증 교부] </pre>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0일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0일					

아. 도로공사 시행 허가(도로법 제3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 시행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행위													
적용대상	○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사업.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 필요)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의 경우													
협의대상 기관	○ 국토교통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신청자 구비서류	○ 도로공사 시행 허가(도로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1. 공사시행 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각 1부 ○ 도로공사 유지 허가 1. 도로유지 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별지 제19호서식) 2.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 및 평면도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신청인</th> <th style="width: 6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2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신고서 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첨부서류 확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결재 및 결과 통보</div>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결과접수</td> <td></td> <td></td> </tr> </tbody> </table>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15일	신청서/신고서 작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첨부서류 확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결재 및 결과 통보</div>		결과접수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15일												
신청서/신고서 작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첨부서류 확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결재 및 결과 통보</div>													
결과접수														

◎ 도로의 점용 허가(도로법 제38조)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행위(도로법 제38조)
적용대상	○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 단,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함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국·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협의대상 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지사(도로과) 2. 일반국도 : 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 3. 특별시도 · 지방도 · 시도 · 군도 : 도 · 시 · 군 · 구(건설과)
신청자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 신청(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2.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

구 분	내 용																																																																	
	<p>5.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p> <p>○ 도로점용 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신청(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1호의2서식) 2.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1호의3서식)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data-bbox="362 614 1219 1041"> <thead> <tr> <th rowspan="2">점용의 구분</th> <th colspan="3">특별시</th> <th colspan="3">광역시 및 도</th> <th colspan="3">국도해양부</th> </tr> <tr> <th>접수</th> <th>처리</th> <th>기간</th> <th>접수</th> <th>처리</th> <th>기간</th> <th>접수</th> <th>처리</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도로의 일반점용</td> <td>동</td> <td>구</td> <td>5일 (3일)</td> <td>구·읍· 면</td> <td>시·군</td> <td>5일 (3일)</td> <td rowspan="5">지방국토관리청</td> <td rowspan="5">지방국토관리청</td> <td>7일 (5일)</td> </tr> <tr> <td>도로의 일시점용</td> <td>동</td> <td>시</td> <td>2일</td> <td>구·시· 읍·면</td> <td>구·시· 읍·면</td> <td>2일</td> <td>7일 (5일)</td> </tr> <tr> <td>선견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 사용</td> <td>시</td> <td>시</td> <td>4일 (3일)</td> <td>시·군</td> <td>시·군</td> <td>4일 (3일)</td> <td>4일 (3일)</td> </tr> <tr> <td>공작물의 설치</td> <td>구</td> <td>구</td> <td>10일 (5일)</td> <td>구·시· 군</td> <td>시·도</td> <td>8일 (5일)</td> <td>국도관리사무소</td> <td>국도관리사무소</td> <td>7일 (5일)</td> </tr> <tr> <td>도로의 굴착</td> <td>구</td> <td>구</td> <td>10일 (5일)</td> <td>구·시· 군</td> <td>구·시· 군</td> <td>5일 (3일)</td> <td></td> <td></td> <td>7일 (5일)</td> </tr> </tbody> </table> <p>주: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 처리기간임.</p> <p>※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시 도로의 굴착이 필요할 시는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전에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도로법 시행령 제30조)</p>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도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읍· 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 읍·면	구·시· 읍·면	2일	7일 (5일)	선견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군	시·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시· 군	시·도	8일 (5일)	국도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시· 군	구·시· 군	5일 (3일)			7일 (5일)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도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읍· 면	시·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시· 읍·면	구·시· 읍·면	2일			7일 (5일)																																																									
선견탑의 설치 및 아취·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군	시·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시· 군	시·도	8일 (5일)			국도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시· 군	구·시· 군	5일 (3일)					7일 (5일)																																																							

◎ 사도(私道) 개설 허가(사도법 제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 ※ 사도의 정의 :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나(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도법 제4조)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허가 신청서(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사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도면 2.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서류 : 시장 또는 군수는 위 서류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사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획서 2. 경비예산명세서 3. 설계도(평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4.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신청인</th> <th style="width: 6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2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광역시·시장·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7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신청서/신고서 작성</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첨부서류 확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결재 및 결과 통보</div>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결과접수</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td> </tr> </tbody> </table>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시장·군수	7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신청서/신고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첨부서류 확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결재 및 결과 통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결과접수</div>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시장·군수	7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신청서/신고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첨부서류 확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결재 및 결과 통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결과접수</div>	←												

자.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를 받는 행위</p> <p>※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1호)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p>
적용대상	<p>○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p>○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p>○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대상”을 제외한 배출시설 <p>○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6.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협의대상 기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4. 방지시설의 일반도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6.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 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 7.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배출시설 설치의 변경허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3호 서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첨부서류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신청인</th> <th style="width: 6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2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광역시·도지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r> </tbody> </table> <pre> graph TD A[신청서/신고서 작성] --> B[접수] B --> C[확인] C --> D[검토] D --> E[결재 및 결과 통보] E --> F[결과접수] </pre>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도지사	10일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광역시·도지사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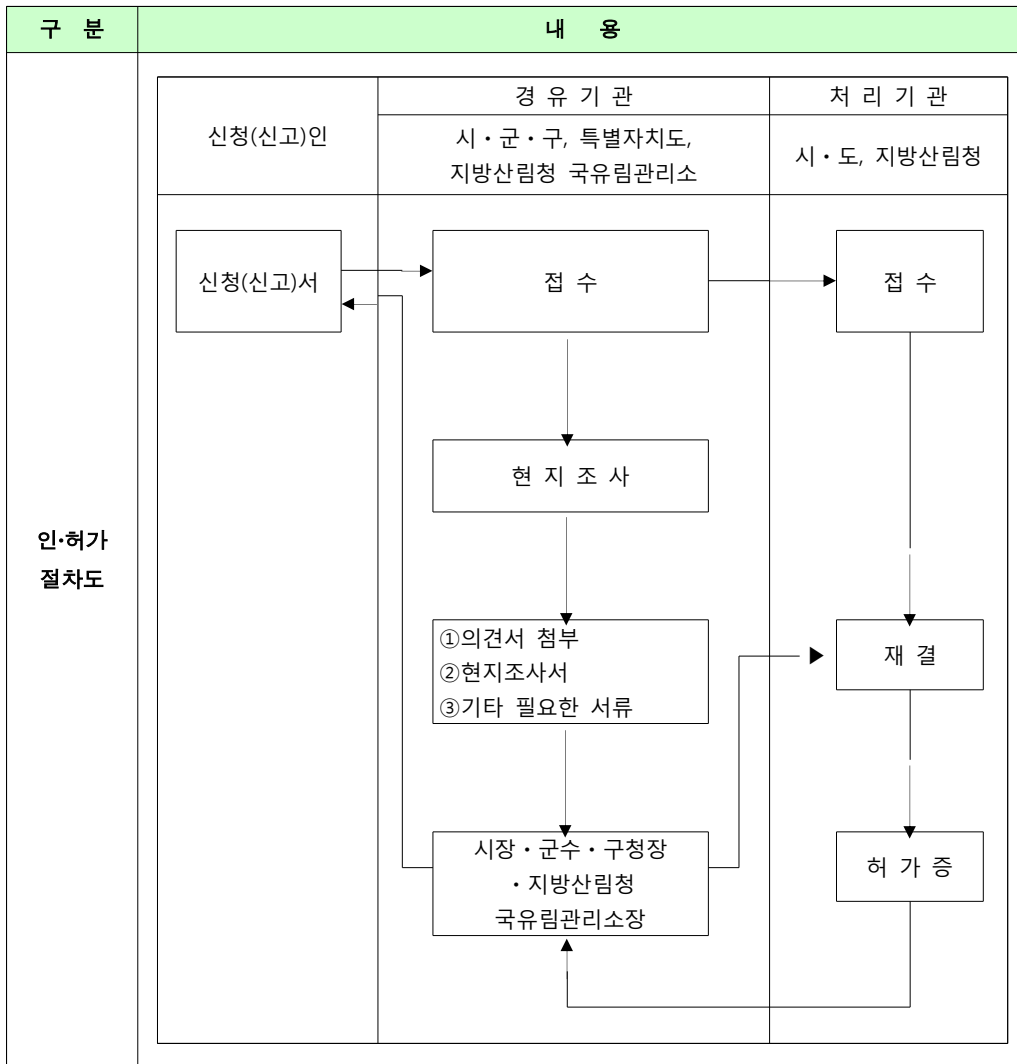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위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수질보전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2.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적용대상	<p>○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수질보전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하는 배출시설 7.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p>○ 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수질보전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위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허가대상 배출시설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p>○ 변경허가를 받는 배출시설(수질보전법 제33조제2항, 시행령 제31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p>○ 변경신고를 받는 배출시설(수질보전법 제33조제2항, 시행령 제31조제4항, 시행규칙 제3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구 분	내 용						
협의대상 기관	○ 특별시·광역시·도의 환경담당 부서						
신청자 구비서류	<p>○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변경허가 시(수질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시행규칙 제3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 설치신고서/허가서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변경허가의 경우)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p>○ 배출시설 변경신고 시(수질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시행규칙 제3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신청인</th> <th style="width: 6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2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r> </tbody> </table>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신청서/신고서 작성</div> <div style="width: 60%; 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접 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검 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확 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결 재</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허가증 신고증명서 발급</div> </div> <p style="margin-top: 10px;">*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수질보전법 제33조제9항, 시행령 제31조제7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10일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10일					

차.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죽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행위(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적용대상	<p>○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시설(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산불감시초소, 산림보호 관리사(관리사),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 2. 산림병해충의 방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제9항 각 호의 행위 <p>○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2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2.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p>○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3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함)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협의대상 기관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p>○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신고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p> <p>○ 첨부서류(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산림보호법 제11조)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위
적용대상	<p>○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로 사용하려는 경우 5.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6.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5항)로 사용하려는 경우 7.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6항)로 편입되는 경우 <p>○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항)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대상 기관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 군사시설(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

구 분	내 용					
	<p>※ 현지조사(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 예정지조사서(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함</p>					
<p>인·허가 절차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65 446 679 556" rowspan="2">신청(신고)인</th> <th data-bbox="679 446 1219 484">처 리 기 관</th> </tr> <tr> <th data-bbox="679 484 1219 556">시·군·구, 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5 556 679 130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요 청</div> </td> <td data-bbox="679 556 1219 1304">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접 수</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현 지 조 사</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0px; margin: 0 auto;"> ①산림보호구역 기본도 작성·관리 ②기타 필요한 서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및 이의신청 수렴 </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 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div> </div> </td> </tr> </tbody> </table>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요 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접 수</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현 지 조 사</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0px; margin: 0 auto;"> ①산림보호구역 기본도 작성·관리 ②기타 필요한 서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및 이의신청 수렴 </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 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div> </div>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특별자치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요 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접 수</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현 지 조 사</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0px; margin: 0 auto;"> ①산림보호구역 기본도 작성·관리 ②기타 필요한 서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및 이의신청 수렴 </div> <div style="margin: 10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 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div> </div>					

◎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 사방지안에서 입목·죽의 벌채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는 행위		
적용대상	○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가 필요한 사업		
협의대상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산림과, 녹지과) 또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사무소)		
신청자 구비서류	<p>○ 사방지안에서 사업 허가 신청서(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0호)</p> <p>○ 첨부서류(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영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함) 1부 		
인·허가 절차도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10일
	신청서/신고서 작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첨부서류 확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재 및 결과(허가증) 통보</div>	
	결과접수		

◎ 사방지 지정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 사방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국가 등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이를 요청하는 행위(사방사업법 제20조)
적용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아래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철도·항만·공항·도로·간척 등 공공사업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5. 사방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사방지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식의 우려가 없고 입목·죽, 풀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때 나. 보살펴 기르는 작업, 벌채 등 계속적인 산림사업을 하여도 다시 황폐될 우려가 없는 때 6.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사방지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나.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 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다.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협의대상 기관	○ 시장 · 군수 · 구청장(산림과, 녹지과) 또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사무소)
신청자 구비서류	○ 사방지 해제 신청서(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별지 제17호서식) ○ 첨부서류(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도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7일
	<div data-bbox="382 382 534 44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신청서/신고서 작성</div>	<div data-bbox="718 382 1058 44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접 수</div> <div data-bbox="718 498 1058 55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첨부서류 확인</div> <div data-bbox="718 614 1058 67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현지 확인</div> <div data-bbox="718 730 1058 78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결재 및 결과 통보</div>	
	<div data-bbox="382 730 534 78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결과접수</div>		

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산림(산림보호구역 등은 제외)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석재 및 토사는 제외)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행위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대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경우 2.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 입목벌채 등의 허가변경 대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0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역면적 2. 벌채·굴취·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입목벌채 등의 신고 대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제4항 및 시행령 제42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없는 대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제5항 및 시행령 제4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p>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p> <p>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p> <p>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p> <p>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p> <p>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p> <p>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p> <p>라.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p>
협의대상 기관	<p>○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p>
신청자 구비서류	<p>○ 입목벌채 등의 허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목벌채 등 허가 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2.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목벌채인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 채 면적을 표시한 것)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③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 입산물 굴취·채취인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③ 복구계획서 <p>○ 입목벌채 등의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목벌채 등 신고 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별지 제36호서식) 2.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구 분	내 용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리기간 허가 : 7일 신고 : 5일
	신청서 작성 허가 통보	접수 ↓ 첨부서류 확인 (관련 법규 및 계획 등 검토) ↓ 검토 및 현지확인 (현지 확인조사) ↓ 결 재 ↓ 결과(허가증) 통보	

파. 산지전용 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산지관리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임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적용대상	<p>○ 산지전용 허가대상 :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p> <p>*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음(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p> <p>* 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변경신고로 같음(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p>○ 산지전용 협의대상의 경우(산지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p> <p>-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p> <p>○ 산지전용 신고대상(산지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 · 산림생태원 ·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합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p>* 신고한 사항 중 변경신고대상(산지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3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구 분	내 용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 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협의대상 기관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구분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산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200백만㎡ 이상	산림청장		
	50만㎡ ~ 200백만㎡ 미만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국유림 소관에 따른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50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구분 (산지일시사용 면적 및 산지 소관)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산지	산림청장의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200백만㎡ 이상	산림청장		
	50만㎡ ~ 200백만㎡ 미만	국유림 소관에 따른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50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신청자 구비서류	○ 산지전용 허가대상 구비서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축척 1/25,000이상)			
	6.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축척 1/6,000~1/1,200)			
	7. 산림조사서			
	8. 복구계획서			
	9. 평균경사도조사서			
10. 농지원부 사본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 허가 변경신고대상 구비서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산지전용 협의 서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전용협의요청서 2. 산지전용 허가대상 구비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산지전용 신고 서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전용신고서 2. 산지전용 허가대상 구비서류 중 일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산지전용변경신고대상 구비서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대체산림 자원조성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상(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사항(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시행령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p style="margin-left: 20px;">*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비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5)</p>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도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산림청, 시·도지사 등 협의기관	처리기간 25일
	<pre> graph TD A[신청(신고)] --> B[접수] B --> C[현지조사확인] C --> D[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D --> E[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에치통지] E --> F[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에치] E --> G[결재] F --> G G --> H[통보] </pre>		
	<p>*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실시(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p> <p>*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의거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p>		

하.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산지관리법 15조의2)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광물의 채굴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산지관리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임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적용대상	<p>○ 산지일시사용 허가사항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시행령 제18조의2)</p> <p>○ 산지일시사용 신고사항(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시행령 제18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지하저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5. 가축의 방목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협의대상 기관	<p>○ 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p>

구 분	내 용			
구분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산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200백만㎡ 이상	산림청장			
50만㎡ ~ 200백만㎡ 미만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국유림 소관에 따른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50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구분 (산지일시사용 면적 및 산지 소관)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산지	산림청장의 소관 국유림이 아닌 경우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200백만㎡ 이상	산림청장			
50만㎡ ~ 200백만㎡ 미만	국유림 소관에 따른 국립수목원장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50만㎡ 미만				
신청자 구비서류	<p>○ 산지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시행규칙 제15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축척 1/25,000이상) 6.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축척 1/6,000~1/1,200) 7. 산림조사서 8. 복구계획서 9. 평균경사도조사서 10. 농지원부 사본 <p>○ 산지일시사용 신고(변경신고)(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시행규칙 제15조의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변경신고서) 2. 산지일시사용 허가 구비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p>○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상(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구 분	내 용																																	
	<p>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p> <p>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p> <p>○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사항(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시행령 제2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p>*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비율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5)</p> <p>○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p> <p>-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p>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신청인 (신고인)</th> <th style="width: 5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25%;">처리기간</th>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산림청, 시·도지사 등 협의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일</td>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지조사확인</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 지 및 복구비예치통지</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통 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재</td> <td></td> </tr> </tbody> </table>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산림청, 시·도지사 등 협의기관	25일	신청(신고)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 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통 보	결재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산림청, 시·도지사 등 협의기관	25일																																
신청(신고)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 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통 보	결재																																	

거. 소하천 점용의 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소하천구역에서 토지 및 부속물의 점용 신축 등을 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는 행위</p> <p>* “소하천”의 정의(소하천정비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2.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하천
적용대상	<p>○ 소하천 점용의 허가대상(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p>* 허가사항의 제외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p>○ 소하천 점용의 신고대상(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5항, 시행령 제12조)</p> <p>-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 신고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2.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
협의대상 기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하천 점용 허가 신청서(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2. 설계도서(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도	신청인	처리기관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	처리기간 20일
	<pre> graph TD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현지조사] C --> D[검토] D --> E[결재] E --> F[통보] F --> A </pre>		
<p>* 소하천 점용 허가 시 검토사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너.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수도법 제52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 행위</p> <p>* “전용상수도”의 정의(수도법 제2조)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숙소·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각각 일일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다음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p> <p>①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도관의 지름이 25mm 미만인 관을 사용하는 것 ② 취수원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 길이의 합이 1천500m 미만인 것</p>
적용대상	<p>○ 전용상수도 설치 행위(수도법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58조제1항)</p> <p>○ 전용상수도 관련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수도법 제52조제2항, 시행령 제5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이나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 <p>※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 한다.</p>
협의대상 기관	<p>○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p>
신청자 구비서류	<p>○ 설치 및 변경인가 신청서(수도법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26조)</p> <p>○ 설치/변경계획서(수도법 시행령 제5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27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서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도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4일(신고시 즉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청서/신고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접 수</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검 토</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확 인</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인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결 재</div>
		←
	<p>*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요건(수도법 시행령 제58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인가로 인하여 기존 수리권자가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수리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더.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 신축·개축, 광물 채굴 등의 행위를 하기위해서 공원 관리청에 허가를 받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자연공원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구역 :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연공원 :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3.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공원 4. 도립공원 :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특별·광역시 및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공원 5. 군립공원 :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지정·관리하는 공원 6. 공원관리청 :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를 공원관리청이라고 한다. 7. 공원사업 :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공원계획 :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 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적용대상	<p>○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자연공원법 제2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호수와 늪)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자연풍경훼손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 <p>○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p> <p>○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p>
협의대상 기관	<p>○ 국립공원(환경부 장관), 도립공원(특별·광역시·도지사), 군립공원(시장 및 군수 및 자치구청장)</p>
신청자 구비서류	<p>○ 행위허가신청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p> <p>○ 첨부서류(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자연공원법 제23조제3항의 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의 경우)

구 분	내 용						
	2. 위치도, 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의 토지 소유가 아닌 경우)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신청인</th> <th style="width: 4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4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환경부 · 도립공원: 시·도 · 군립공원: 시·군·구 </td> <td>10일(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3개월)</td> </tr> </tbody> </table> <pre> graph TD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C --> D[협의] D --> E[확인] E --> F[결재] F --> G[허가 통보] </pre>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환경부 · 도립공원: 시·도 · 군립공원: 시·군·구 	10일(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3개월)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환경부 · 도립공원: 시·도 · 군립공원: 시·군·구 	10일(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3개월)					
<p>* 행위허가 기준(자연공원법 제23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p>*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원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지면적이 5000㎡(공원자연보존지구는 2000㎡)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로·철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km 이상 신설하거나 1km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③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④ 5000㎡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만수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리. 분묘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기위해서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묘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고자 : 사망자와 다음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3.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	<p>○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p> <p>○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p> <p>* 참고사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협의대상 기관	<p>○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신청자 구비서류	<p>○ 개장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p> <p>○ 첨부서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5.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6. 통보문 또는 공고문

구 분	내 용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자치구	처 리 기 간 3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신청서 작성 통보문/공고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50%; text-align: center;">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허가(협의승인)/불허 ↓ 관리대장·묘적부 허가증명서 작성/발급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신고증명서 허가증 발급</div> </div>		
인·허가 절차도	<p>* 통보 및 공고 절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5항)</p> <p>-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아래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아래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p>* 허가 및 통보/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한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법 제40조 벌칙 8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통보/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한 경우(법 제42조 과태로 1항 10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 및 변경하기위해서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거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전기사업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 송전사업 · 배전사업 ·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구역전기사업"이란 3만5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용전기설비"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적용대상	<p>○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공사 시작 전 신고대상(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제3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공사의 종류</th> <th>공사계획 인가</th> <th>공사 시작 전 신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1. 발전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2. 전기 수용설비 (변전소/ 송전선로를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 설치공사 (중설공사 포함)</td> <td>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td> <td>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시설 설치. 다만 1000킬 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나. 변 경 공 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차단 기</td> <td>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 기 설치 또는 대체</td> <td>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 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압 기</td> <td>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 기 설치 또는 대체</td> <td>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 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선 로</td> <td>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 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td> <td>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td> </tr> </tbody> </table> <p>○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p>	공사의 종류		공사계획 인가	공사 시작 전 신고	1. 발전소		-	-	2. 전기 수용설비 (변전소/ 송전선로를 포함)	가. 설치공사 (중설공사 포함)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시설 설치. 다만 1000킬 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	나. 변 경 공 사	차단 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 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 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변압 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 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 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선 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 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공사의 종류		공사계획 인가	공사 시작 전 신고																				
1. 발전소		-	-																				
2. 전기 수용설비 (변전소/ 송전선로를 포함)	가. 설치공사 (중설공사 포함)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시설 설치. 다만 1000킬 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는 제외한다.																				
	나. 변 경 공 사	차단 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 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 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변압 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 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 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선 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 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협의대상 기관	<p>○ 공사계획 인가(지식경제부 장관), 공사 시작 전 신고(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29조)</p>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구비서류</p>	<p>○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고(변경신고) 대상의 경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2.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 3. 공사계획서 4.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른 기술자료 5. 공사공정표 6. 기술시방서 7.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로/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8.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감리원 배치확인서, 다만 자체감리의 경우 자체감리 확인서 9.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p>○ 용량이 10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2.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감리원 배치확인서, 다만 자체감리의 경우 자체감리 확인서 3.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인·허가 절차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신 청 인</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처 리 기 관</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처 리 기 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식경제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20 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신청서 작성</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결 정</div>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인 가</div> </td> <td></td> <td></td> </tr> </tbody>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지식경제부	20 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신청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결 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인 가</div>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지식경제부	20 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신청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접 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검 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결 정</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10px auto;">인 가</div>													

버. 초지의 전용허가(초지법 제23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초지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2.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	<p>○ 조성된 초지의 전용이 허가되는 경우(초지법 제23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p>○ 초지전용의 변경시 허가대상(초지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p>○ 초지전용 신고대상(초지법 제23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p>*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변경신고 실시</p>

구 분	내 용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전용의 협의사항(초지법 제23조제4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p>* 허가와 신고에 같음하여 협의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p>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전용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4.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초지전용 협의(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신 청 인</th> <th style="width: 50%;">처 리 기 관</th> <th style="width: 25%;">처 리 기 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군·자치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3 5 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 접 수</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검토 및 허가증 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계 기관 협의)</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결 재</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허가증 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 대 장 정 리</td> <td></td> </tr> </tbody> </table>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시·군·자치구	3 5 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허가증 작성	(관계 기관 협의)		↓ 결 재		허가증 교부	↓ 대 장 정 리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간																	
	시·군·자치구	3 5 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허가증 작성	(관계 기관 협의)																	
	↓ 결 재																		
허가증 교부	↓ 대 장 정 리																		

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29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폐기물처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위해서 시·도지사나 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업"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적용대상	<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대상(폐기물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최종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의 제외 대상(폐기물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연구기관 등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p>○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대상(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 시행규칙 제3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p>○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의 중요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제39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승인/신고 또는 변경승인/신고를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처리시설 등 주요설비의 변경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2.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7.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8.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10. 환경성조사서 1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 설치신고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5.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신고 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고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적용대상 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적용대상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변경승인 시에만 해당)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도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협의(확인)기관 시·도
	신고서 작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150px;">접수 (민원실)</div>	
	신고증명서 발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150px;">결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150px;">다른 법령 등 저촉사항 검토</div>
	<p>*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 * 처리기간 : 10일</p>		

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허가(하수도법 제16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시 허가를 받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하수도법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적용대상	<p>○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및 유지(하수도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4항)</p> <p>*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p>
협의대상 기관	<p>○ 공공하수도 관할 지방자치단체</p> <p>○ 지방환경관서의 장</p>
신청자 구비서류	<p>○ 허가신청서(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p>○ 첨부서류(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구 분	내 용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신청인</th> <th style="width: 25%;">경유기관</th> <th style="width: 25%;">처리기관</th> <th style="width: 25%;">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도, 사군구(하수도 담당부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r> </tbody> </table> <pre> graph TD A[신청] --> B[접수] B --> C[검토·조사·협의] C --> D[결재] D --> E[허가서 작성] E -- 통보 --> A </pre>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간		없음	사도, 사군구(하수도 담당부서)	10일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간								
	없음	사도, 사군구(하수도 담당부서)	10일									
<p>* 설치기준(하수도법 제12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한 기준 3.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 4. 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미리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하수도법 제2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을 하기위해서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하수도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적용대상	<p>○ 공공하수도 부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협의대상 기관	<p>○ 공공하수도 관할 지방자치단체</p>																				
신청자 구비서류	<p>○ 점용 허가신청서(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점용의 목적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공사기간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p>○ 설계도서</p>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40%;">신고인</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처리기관</th> </tr> <tr> <th style="width: 30%;">시·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th> <th style="width: 3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신청</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접수</div>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일</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검토·조사</div> </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기안·결재</div> </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허가서 작성</div>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통보</div> </td> <td></td> <td></td> </tr> </tbody> </table>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	처리기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접수</div>	10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검토·조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기안·결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허가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통보</div>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	처리기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접수</div>	10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검토·조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기안·결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허가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통보</div>																					

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34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변경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기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하수도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적용대상	<p>○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하수도법 제34조)</p> <p>○ 변경신고 사항(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p>○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2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p>○ 건물 등의 철거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하는 경우(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제4항)</p>
협의대상 기관	<p>○ 시장·군수·구청장</p>
신청자 구비서류	<p>○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의 경우(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설계도서 건물·시설 배수 계통도 건축물대장/건물·시설 등의 평면도

구 분	내 용						
	<p>5. 변경사항 증명서류</p> <p>○ 개인하수처리시설 면제 신고의 경우(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 면제 신청서 2. 건축물대장/건축물의 평면도 3.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p>○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의 경우(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서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3.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p>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착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p>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신고인</th> <th style="width: 4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3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2일</td> </tr> </tbody> </table> <pre> graph TD A[신고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C --> D[현지 확인] D --> E[결재] E --> F[통지] </pre> <p>*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제34조제3항,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처리구역 밖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사·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	2일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사·도, 시·군·구 하수도 담당	2일					

처. 하천점용 허가(하천법 제33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기위해서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는 행위</p> <p>* 용어의 정의(하천법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적용대상	<p>○ 하천 점용허가 행위(하천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p>○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하천법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34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용의 목적 및 면적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점용허가기간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p>○ 허가금지 대상행위(하천법제35조제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협의대상 기관	<p>○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은 그 관할구역의 시·도지사)(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29호 서식)</p>

구 분	내 용					
신청자 구비서류	○ 하천점용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368 392 675 498" rowspan="2">신청인</th> <th data-bbox="675 392 1115 426">처리기관</th> <th data-bbox="1115 392 1215 426">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75 426 1115 498">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td> <td data-bbox="1115 426 1215 498">5 ~ 60일</td> </tr> </tbody> </table> <pre> graph TD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C --> D[결재] D --> E[대장 정리] E --> F[허가증 작성] F --> G[허가증 발급] </pre> <p data-bbox="357 1045 1236 1257"> *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 시 고려사항(하천법 제33조제3항)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하천법 제 33조제7항, 시행규칙 제19조) </p>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 ~ 60일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 ~ 60일				

커. 항만공사 계획의 허가(항만법 제9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 계획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는 행위														
적용대상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항만법 제9조)														
협의대상 기관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준설의 허가(항만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2.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3.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서 4.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 5.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의 허가(항만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공사 유지·보수 허가 신청서 및 평면도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신청인</th> <th style="width: 5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20%;">처리일수</th> </tr> <tr> <th>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th> <th>20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 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접수</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재</td> <td></td> </tr> </tbody> </table> <p>* 허가의 기준 및 조건(항만법 제9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과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자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p>* 일정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미리 공고(항만법 제9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개축공사 2.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이외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시(항만법 제9조제6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시행자 설명 및 주소, 항만명, 공사의 명칭 및 장소 2. 공사의 개요, 공사기간, 총사업비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일수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	20일	신청서 제출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일수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	20일													
신청서 제출	접수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항만법 제10조)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받는 행위 * 항만공사 계획 허가 후 1년 이내 실시계획신고(항만법 제10조제5항)																							
적용대상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																							
협의대상 기관	○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신청자 구비서류	○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고(항만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7조) 1.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신청서 2.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신고 시 제출서류) 3. 공사실시설계도서(신고 시 제출서류) 4.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신고 시 제출서류)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대상(항만법 제10조제4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 -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신청인</th> <th style="width: 5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30%;">처리일수(신청/신고)</th> </tr> <tr> <th>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th> <th>20/10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서 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접수</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결재</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td> </tr> </tbody> </table> <p>* 허가의 기준 및 조건(항만법 제10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항만공사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일수(신청/신고)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	20/10일	신청서 제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일수(신청/신고)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	20/10일																						
신청서 제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공항시설법)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나, 그 이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는 얻는 행위 * 용어의 정의(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1. "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장관 이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 공항시설 개량사업 중 다음의 경미한 경우 허가 없이 시행 가능(시행규칙 제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냉난방·운송·승강·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3. 조경수의 식재 등 조경시설의 설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시설의 설치 나. 9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5. 건축물의 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칠 또는 도색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2.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공사비를 포함한다)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신청인</th> <th style="width: 40%;">처리기관 지방항공청</th> <th style="width: 30%;">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출 → 접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45일</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검토</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통지수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 결재 → 결과통지</td> <td></td> </tr> </tbody> </table> <p>* 허가의 기준 및 조건(항공법 제94조제3항, 제4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하려는 공항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들어맞을 것 2. 공항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공항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처리기간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45일		↓ 검토		통지수령	↓ 결재 →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처리기간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45일											
	↓ 검토												
통지수령	↓ 결재 → 결과통지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공항시설법)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행위(공항시설법 제7조)																													
적용대상	○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사업 ○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 ○ 다음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준공확인 신청할 때 신청 가능 1.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변경 2. 그 밖의 시설 :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토목시설의 경우 시설배치계획 또는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협의대상 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																													
신청자 구비서류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 신청서 ○ 첨부서류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설명서 3.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4. 공사에정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 변경 신청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적은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허가 절차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30%;">신청인</th> <th style="width: 30%;">처리기관</th> <th style="width: 40%;">협조기관</th> </tr> <tr> <th>지방항공청</th> <th>「공항시설법」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출 → 접수</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검토</td> <td style="text-align: center;">의견조회 → 검토</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의견회신</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재</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결과통지</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통지수령</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전 관련 소관부서와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 협의 필요 *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후 관련 자료 고시 및 시장·군수·구청장 통보 * 처리기간 : 45일</p>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의견조회 → 검토			← 의견회신		↓			결재			← 결과통지		통지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의견조회 → 검토																												
		← 의견회신																												
	↓																													
	결재																													
	← 결과통지																													
통지수령																														

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제2조제5항)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 및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실시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실시 제외 대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실시 대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미실시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그 사업을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관청에 제출하면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심의의 하고 있으나, 수립 대상 사업이 건축심의 대상이면서 교통영향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검토·심의 수행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	<pre> graph TD A[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제출] --> B[사전검토] B --> C[교통개선대책검토·심의] C --> D[사업승인] D --> E[사업승인 결과 통보] </pre>

3. 건축승인단계

건축승인단계에서의 대관업무는 개별법에 따른 소방동의,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수준 확인, 배수설비설치 등이 있다

가. 건축인허가등의 소방동의 요청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구 분	내 용
정의 (목적)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 시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의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적용대상	○ 건축허가등의 대상(시행령 제12조)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기술기준 내용	○ 관련서류 1.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2.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내장재료 명시) 3.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계산서포함) 4. 창호도 5. 소방시설설치계획표 1부 6.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록증 7.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기술자격증
협의대상 기관	○ 관할 소방서

구 분	내 용		
인허가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간
			14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top: 100px;">허가증 교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건축승인등의 요청(허가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접 수(해당소방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검 토 및 허가 동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건축승인</div>	

나.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확인(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36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 *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확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한 공사의 사용전검사로 확인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해당 대상(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중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3.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기술기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9.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0.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1.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허가 절차	<pre> graph TD A[건축공사착공신고 시 설계도서(정보통신부문) 제출] --> B[국방시설본부 설계도서(정보통신부문) 사전 검토] B --> C[국방시설본부 사용전검사 신청서 제출 (준공설계도서 첨부)] C --> D[검사권자 현장검사 실시] D --> E[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E --> F[사용전검사 결과 통보] </pre>

다. 배수설비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행위 ○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에 따라 시공되는 배수구역의 하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 설치가 이루어질 때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의 내용(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협의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허가 절차	 <pre> graph TD A[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작성·제출] --> B[민원접수] B --> C[검토·현장조사·협의] C --> D[결제] D --> E[승인] E --> F[결과 통보] </pre>

4. 착공신고단계

건축승인단계에서의 대관업무는 특정공사사전신고, 비산먼지발생신고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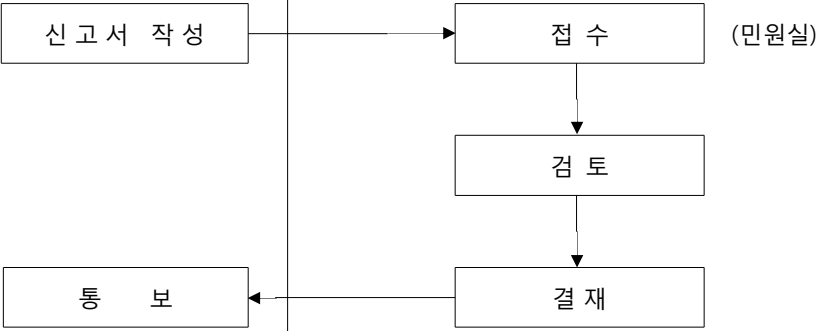
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3장)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수행 이전 사전신고하는 행위(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제2조제5항)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아래 표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의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3) 학교의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4) 공동주택의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5)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d2e9;">No.</th> <th style="background-color: #d9d2e9;">기계·장비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천공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브레이커(휴대용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굴삭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발전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로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압쇄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다짐기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콘크리트 절단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콘크리트 펌프</td> </tr> </tbody> </table>	No.	기계·장비명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	4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No.	기계·장비명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																								
4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제외 대상(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분	내 용
	<p>* 다만, 상기 표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의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p>○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대상(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장비 30% 이상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4. 소음·진동 저감대책 5. 공사규모의 10% 이상 확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p>협의대상 기관</p>	<p>○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p>
<p>인허가 절차</p>	<pre> graph TD A[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작성] --> B[민원접수] B --> C[검토·조사·협의] C --> D[결제] D --> E[민원통제] E --> F[사업승인] F --> G[사업승인 결과 통보] </pre>

나.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신고 및 설치(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구 분	내 용
정 의 (목 적)	<p>○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 비산먼지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p>
적용대상	<p>○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5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 <p>* 건설업 적용대상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p>※ 최초 신고 후, 아래사유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④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협의대상 기관	<p>○ 시·도지사</p>

구 분	내 용		
신청자 구비서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5. 그 밖의 저감대책		
인·허가 절차도	신고인	처리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리 기간 4일
	 <pre> graph TD A[신고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C --> D[결재] D --> E[통보] </pre>	(민원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5. 준공(사용승인)단계

준공단계(사용승인)에서는 구비서류로 건축승인시 인가조건에 대한 각종 필증 및 개별법에 따른 준공서류 등이 있다

구분	해당서류	관련규정/작성방법	협의기관
각종 신고 및 검사필증	배수설비준공필증	· 하수도법 제27조 -배수관 설치 시	지자체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필증	· 하수도법 제37조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지자체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 등	지자체 소방서
	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 - 예) 경유탱크 설치 시	지자체 소방서
	전기사용 전 검사필증	· 전기사업법 제63조 - 1만볼트 이상, 선로 길이 0.5km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 - 자가발전설비 설치 등	한국전기 안전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통신선로, 구내통신, 피뢰침 등 있을 시 * 예외 : 감리대상, 연면적 150㎡ 이하	지자체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냉난방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사업시행자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법 제37조 - 예) 폐수처리시설, 차량 정비공장	지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 시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예)쓰레기 소각시설	지자체
	승강기설치 완성검 사필증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 승강기 설치 시	국민안전처
	보일러 설치공사 확인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 예) 증기보일러 설치 시	에너지관리 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필증	·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제27조 - 예) LPG 저장탱크 설치 시	지자체
	도시가스 시설 완공검사 필증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도시가스 사용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공업화박판강구조 (PEB)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 국토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 - “PEB” 공법 사용 건축물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 제출(감독관 확인)	시공사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사업시행자 및 공사감리자에 제출	관련기술사
	도로굴착(점용) 완료 확인서	· 도로법 제38조 - 도로를 훼손하는 하수도, 상수도, 공작물 등 설치할 때 등	도로관리청
민원처리완료보고서	공사와 관련한 민원 사항 있을 시	사업시행자	

구분	해당서류	관련규정/작성방법	협약기관
각종 신고 및 검사필증	배수설비준공필증	· 하수도법 제27조 -배수관 설치 시	지자체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필증	· 하수도법 제37조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지자체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 등	지자체 소방서
	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 - 예) 경유탱크 설치 시	지자체 소방서
	전기사용 전 검사필증	· 전기사업법 제63조 - 1만볼트 이상, 선로 길이 0.5km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 - 자가발전설비 설치 등	한국전기 안전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통신선로, 구내통신, 피뢰침 등 있을 시 * 예외 : 감리대상, 연면적 150㎡ 이하	지자체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냉난방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사업시행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 시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법 제37조 - 예) 폐수처리시설, 차량 정비공장	지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 시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예)쓰레기 소각시설	지자체
	승강기설치 완성검 사필증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 승강기 설치 시	국민안전처
	보일러 설치공사 확인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 예) 증기보일러 설치 시	에너지관리 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필증	·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제27조 - 예) LPG 저장탱크 설치 시	지자체
	도시가스 시설 완공검사 필증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도시가스 사용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공업화박판강구조 (PEB)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 국토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 - “PEB” 공법 사용 건축물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 제출(감독관 확인)	시공사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사업시행자 및 공사감리자에 제출	관련기술사
	도로굴착(점용) 완료 확인서	· 도로법 제38조 - 도로를 훼손하는 하수도, 상수도, 공작물 등 설치할 때 등	도로관리청
민원처리완료보고서	공사와 관련한 민원 사항 있을 시	사업시행자	

구분	해당서류	관련규정/작성방법	협의기관
대지 관련 조건부 승인사항 인·허가 서류	측량성과도 및 토지(임야)대장 (변경 후)	- 지적분할 및 합병 시	지자체
	타부처 부지 사용승인 허가서	· 국유재산법 제8조 - 타부처 부지 사용시	지자체, 재산관리과
	산지 복구 준공검사 완료서 / 산지복구면제서	· 산지관리법 제42조 - 산지전용협의 사업	지자체
	건축물(말소)대장	·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 건축승인 조건 있을시 혹은철거건축물 있을 시	지자체

제4장 국방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1. 국방세움터

가. 개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건축승인/착공신고/준공검사(사용승인)업무를 온라인에서 수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국방부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 국방건축행정시스템 접속(<https://www.diais.mil.kr>)

나. 구성

국방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① 국방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로고 영역. (클릭 시 메인페이지로 이동)
- ② 업무별 승인을 확인하고, 작성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
- ③ 공지사항, 공개자료실, 이용약관 등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영역
- ④ 승인의 신청, 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로그인 영역
- ⑤ 나의 신청정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는 메뉴. (로그인 시 가능)
- ⑥ 업무별 승인 처리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화면으로 이동하는 메뉴 (로그인 시 가능)
- ⑦ 국방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기 전 환경설정을 안내하는 메뉴.

- ⑧ 1:1문의하기 화면으로 이동하는 메뉴. (비 로그인 시 로그인화면으로 이동)
- ⑨ 자주 찾는 서비스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바로가기 영역.
- ⑩ 국방건축행정시스템의 소개 화면으로 이동하는 메뉴.
- ⑪ 프로그램 수동설치 화면으로 이동하는 메뉴.
- ⑫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메뉴.

2. 승인단계별 안내사항

가. 실시계획승인

◎ 입력내용

제출서류	유의사항
설계담당자 입력 시작 ↓	사업명, 담당자 현황
협업자 등록 ↓	협업자 아이디 확인/협업 등록
설계사 추가자료 입력 / 인증 ↓	- 신청서 입력 - 의제 협의사항 및 기타 첨부서류는 건축승인신청 시 첨부
설계담당자 입력자료 확인 ↓	
상위결재자(과장) 결재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증축시 기존건축물현황 입력 대지분할시 공부면적/사업면적 구분 입력	
2	첨부 서류	건축승인시 첨부	
3			설계도면
4			토지관련 서류
5			기존건축물 서류
	개별법 협의사항		

※ 가능한 건축승인과 동시신청(단, 실시계획승인 의제사항 사전협의 필요시 실시계획 승인신청 우선 실시

나. 건축승인

◎ 입력내용

제출서류	유의사항
설계담당자 입력 시작 ↓	사업명, 담당자 현황 '실시계획 정보 가져오기' 클릭
협업자 등록 ↓	협업자 아이디 확인/협업 등록
설계사 추가자료 입력 /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해당시) - 설계간 협의완료 자료 (비행안전구역, 탄약안전심의 등) - 협의용 자료(소방, 하수, 통신 등) * 기완료시 협의 결과 첨부 - 실시계획승인 의제사항(개발행위허가 등)
설계담당자 입력자료 확인 ↓	
상위결재자(과장) 결재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건축승인신청서	증축시 기존건축물현황 입력 대지분할시 공부면적/사업면적 구분 입력	
2	첨부 서류	설계도면	- 전체 도면 (토지분할시 분할지적도 첨부)
3		토지관련 서류	- 토지조서(분할토지 전후 현황, 소유권 표기)
4		기존건축물 관련 서류	- 건축물대장 첨부(증축시)
5		개별법 협의사항	- 하수, 통신 협의완료 공문 - 소방, 에너지 등 협의 서류 또는 협의완료 공문
6		실시계획승인 의제사항	-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 등 협의 서류 - 사전재해영향성,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해당시) 협의 서류 또는 협의완료 공문
7		구조 서류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구조계산서

다. 착공신고

◎ 입력내용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업담당자 입력 시작 ↓	담당자 현황
건축승인번호 확인 ↓	본부 홈페이지 '열린마당/자유게시판' 주단위 게재
협업자 등록 ↓	협업자 아이디 확인/협업 등록
시공사/감리사 추가자료 입력 /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감리사 인증(불가시 신청서 날인본 첨부) (본부 감리 지정사업의 감리 인증은 제외) - 공사/감리 계약서 - 비산면지,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1,000㎡ 이상) - 기관석면조사결과서(해당시)
사업담당자 입력자료 확인 ↓	
상위결재자(과장) 결재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착공신고서	- 시공사, 감리사 인증 (불가시 날인된 신청서 첨부)
2	첨부 서류	- 공사/감리 계약서
3		- 비산면지발생신고 (연면적1,000㎡ 이상)
4		- 특정공사(소음진동) 신고서 (연면적1,000㎡ 이상)
5		- 기관석면조사결과서 (해당시)
6	참고사항	- 건축승인 취소대상: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신고 미실시 사업

라. 준공검사(사용승인)

◎ 입력내용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업담당자 입력 시작 ↓	담당자 현황
건축승인번호 확인 ↓	본부 홈페이지 '열린마당/자유게시판' 주단위 게재
협업자 등록 ↓	협업자 아이디 확인/협업 등록
시공사/감리사 추가자료 입력 /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감리사 인증(불가시 신청서 날인본 첨부) (본부 감리 지정사업의 감리 인증은 제외) - 감리보고서(중간,완료) (본부 감리 지정사업은 감독관이 작성) - 각종 신고/검사필증, 조건부 승인사항 - 변경토지대장/건축물대장(해당시) - 준공도면(기본도면), 준공사진 - 준공검사 조사 및 검사조서 * 본부(준공승인과) 준공사업 제외
사업담당자 입력자료 확인 ↓	
상위결재자(과장) 결재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용승인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 감리사 인증(불가시 날인된 신청서 첨부) - 대지분할시 변경후 토지대장 지번 및 면적기준 입력 	
2	첨부 서류	감리보고서	- 중간/완료보고서 구분 작성 및 감리사 인증
3		토지/건축물 관련서류	- 변경 토지대장·건축물대장
4		준공도면	- 배치도, 평면·입면·단면도(최종 변경도면)
5		준공사진	- 정면, 배면, 측면
6		개별법 협의사항 (해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통신, 소방 등 신고/검사필증 -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7		기 타	- 준공검사 조사 및 검사조서

◎ 개별협의사항 1

구분	해당서류	관련규정/작성방법	협의기관
대지 관련 조건부 승인사항 인·허가 서류	측량성과도 및 토지(임야)대장 (변경 후)	- 지적분할 및 합병 시	지자체
	타부처 부지 사용승인 허가서	· 국유재산법 제8조 - 타부처 부지 사용시	지자체, 재산관리과
	산지 복구 준공검사 완료서 / 산지복구면제서	· 산지관리법 제42조 - 산지전용협의 사업	지자체
	건축물(말소)대장	·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 건축승인 조건 있을 시 혹은 철거건축물 있을 시	지자체

◎ 개별협의사항 2

구분	해당서류	관련규정/작성방법	협의기관
각종 신고 및 검사필증	배수설비준공필증	· 하수도법 제27조 -배수관 설치 시	지자체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필증	· 하수도법 제37조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지자체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 등	지자체 소방서
	위험물저장소 완공검사 필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조 - 예) 경유탱크 설치 시	지자체 소방서
	전기사용 전 검사필증	· 전기사업법 제63조 - 1만볼트 이상, 선로 길이 0.5km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 - 자가발전설비 설치 등	한국전기 안전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통신선로, 구내통신, 피뢰침 등 있을 시 * 예외 : 감리대상, 연면적 150㎡ 이하	지자체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냉난방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사업시행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 시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법 제37조 - 예) 폐수처리시설, 차량 정비공장	지자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 시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예)쓰레기 소각시설	지자체
	승강기설치 완성검 사필증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 승강기 설치 시	국민안전처
	보일러 설치공사 확인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 예) 증기보일러 설치 시	에너지관리 공단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필증	·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제27조 - 예) LPG 저장탱크 설치 시	지자체
도시가스 시설 완공검사 필증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 도시가스 사용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공업화박판강구조 (PEB)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 국토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 - “PEB” 공법 사용 건축물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 제출(감독관 확인)	시공사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사업시행자 및 공사감리자에 제출	관련기술사
도로굴착(점용) 완료 확인서	· 도로법 제38조 - 도로를 훼손하는 하수도, 상수도, 공작물 등 설치할 때 등	도로관리청
민원처리완료보고서	공사와 관련한 민원 사항 있을 시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자(현장검사원)

구 분		현장검사원
20억 이상 공사		본부 준공승인과 준공검사관 ※ 준공검사(국계법) 시, 준공검사(사용승인) 현장검사 병행 실시
20억 미만 공사	직접감독 사업	시설단 준공검사관 (건축분야 또는 주검사관)
	건설사업관리 사업	용역 준공검사관 / 공사관리관

공사 행정

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일반사항

1. 개 요	1
2. 용어의 정의	2
3. 용어의 해석	5
4. 법령 적용순서	5
5. 공사계약 외 분쟁	6

제2절 공사감독관 운영

1. 개 요	7
2. 공사감독관 임명	7
3. 공사감독관의 권한 및 책임	7
4. 공사감독관의 성실의무	8
5. 명령 및 지시사항 관리	9
6. 공사감독관 근무요령	9
7. 공사감독관 인계·인수	9
8. 시공자의 책무	10
9. 현장대리인의 변경	11
10. 건설기술자 관리	11

제3절 공사행정서류

1. 개 요	12
2. 제출물	12
3. 작성 및 변경사항	15

제2장 공사착수단계

제1절 일반사항

1. 개 요	16
--------------	----

제2절 사전준비 점검 목록작성

1. 개 요	17
2. 공사현장 여건조사	17
3. 공사현장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수립	18
4. 지장물 철거확인	18
5. 설계서 등의 검토	19
6. 확인측량 실시	19
7. 공사표지판 등 설치	20
8. 사진촬영 및 보관	20
9. 공사감독관실 운용	21
10.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21
11. 시공사 비치서류	22
12. 시설물 신축·개축시 보완	23

제3절 착공전 현장협력회의

1. 개 요	25
2. 회의시기 및 참석대상	25
3. 착공 전 협력회의 준비 및 시행	25

제4절 착공신고서 제출

1. 개 요	26
2. 착공신고서	26
3.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26
4.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26
5. 품질관리계획서	27
6. 품질시험계획서	28
7. 안전관리계획서	28
8. 환경관리계획서	29
9.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0
10. 착공 전 현장사진	30
1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1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30

제5절 하도급관리	
1. 개 요	31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31
3. 하도급계약 통지	31
4. 불법하도급 식별요령	33
5. 부도시 조치요령	35
6.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37
제6절 선금지급	
1. 개 요	39
2. 선금 의무지급비율	39
3. 선금 지급 및 제출서류	39
제7절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공사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1. 개 요	41
제3장 공사시행단계	
제1절 일반사항	
1. 개 요	48
제2절 품질관리	
1. 개 요	50
2.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대상공사의 범위	50
3.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의 이행	51
4.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의 이행결과 조치	54
5.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55
6. 시공상세도 승인	55
7. 자재관리	56
제3절 공정관리	
1. 개 요	59
2.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59

3. 공사진도관리	60
4. 부진 공정관리	61
5. 수정 공정계획	61
6. 공사기간 조정	62
제4절 안전관리	
1. 개 요	63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63
3.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64
4. 안전점검	65
5.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	66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7
7. 안전사고 발생사례	69
제5절 환경관리	
1. 개 요	90
2. 환경관리계획서 검토	90
3. 현장 환경관리	91
4. 공사현장 폐기물관리	94
제6절 하도급관리	
1. 개 요	111
2. 하도급 제한	111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12
4. 하도급이행 실태점검	113
5. 하도급대가 지급관리	114
제7절 설계변경	
1. 개 요	116
2. 설계변경 종류 및 절차	116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17
4.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118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19
제4장 공사완공단계	
제1절 일반사항	
1. 개 요	120
제2절 기성검사	
1. 개 요	121
2. 기성검사원 제출	121
3. 기성검사요청 및 검사관 임명	122
4. 기성검사 시행	122
5. 기성검사 조서의 작성 및 보고	122
6. 개산급	123
제3절 준공검사	
1. 개 요	124
2. 예비준공검사	124
3. 준공검사원 제출	126
4. 준공검사의 요청 및 검사관 임명	126
5. 준공검사의 시행	126
6. 준공검사조서의 작성 및 보고	127
제4절 시설물 인수·인계업무	
1. 개 요	128
2. 시설물의 인수·인계	128
3. 현장문서 인수·인계	129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29
제5절 준공재산 자산화	
1. 개 요	130
2. 자산화 대상 및 절차	130
3. 자산화 방법	130

『부 록』

1. 총 론

- 1. 감독업무 인계·인수서 136
- 2. 현장대리인 변경 151

2. 공사착수단계

- 1.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158
- 2. 시공자 비치서류 188
- 3. 착공신고 관련 서류 199
- 4. 하도급 계약 결과 통보 214
- 5. 선금 지급 관련 서류 242

3. 공사시행단계

- 1. 시공계획서 253
- 2. 설계변경 관련 서류 266
- 3. 준공기한 연기 290

4. 공사완공단계

- 1. 기성/준공검사 신청 297
- 2. 시설물 인수·인계 311
- 3. 현장문서 인수·인계 360

5. 준공재산 자산화

- 1. 준공재산 자산화 인계서 368

제 1 장 총 론

제 1 절 일반사항

1. 개 요

가. 관련법령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2)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나. 본 공사행정 실무지침서는 공사착공, 시행, 완공단계에서 공사감독관 구비서류와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행정서류와 관련된 제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

다. 공사행정 세부사항

1) 총 론	2) 공사착수단계
3) 공사시행단계	4) 공사완공단계

라. 총 론

공사감독관 임명, 권한 및 책임, 근무요령, 인계·인수, 시공자의 책무, 현장대리인 교체 및 공사행정서류 제출물과 행정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 공사착수단계

공사착공전 공사감독관과 시공자 구비서류와 같은 사전준비사항, 착공 전 협력회의, 착공신고 작성시 구비서류, 하도급계약 체결시 통보서류에 대해 기술하였다.

바. 공사시행단계

공사시행단계에서 관리해야 하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하도급관리,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공사행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사. 공사완공단계

기성검사 신청 및 조서, 준공검사 신청 및 조서작성시 구비서류와 시설물 준공 후 인계·인수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용어의 정의

- 가.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 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사업관리 등을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라.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말한다.
- 마. “**설계자**”란 법 제26조 및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설계 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 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말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 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
- 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차. “**공사감독관**”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

- 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카. “**공사관리관**”이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
- 타. “**통합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공정의 건설공사로서 2개소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에 있는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함을 말한다,
- 파. “**설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정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 하. “**공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거. “**건설사업관리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 너. “**건설사업관리기간**”이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 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 더. “**검토**”란 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 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숙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 받아야 한다.
- 러. “**확인**”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머. “**확인.검토**”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 뿐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책임을 진다.

- 버. “**지시**”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한다.
- 서.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하며 이 경우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 어. “**승인**”이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단계의 업무를 할 수 없다.
- 저. “**조정**”이란 설계,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 차. “**실정보고**”란 공사시행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검토 의견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커.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를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한다.
- 터. “**확인측량**”이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사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 피.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주요자재를 말한다.

3. 용어의 해석

본 실무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르며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가. 계약문서(시방서를 포함한다)
-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다. 한국 산업규격(KS)
- 라. 기타 건설관련법규
- 마.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토목, 건축, 기계 등)

4. 법령 적용순서

- 가. 시공자는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법령 적용시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주택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하수도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다.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추진과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법령 및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및 부대입찰 심사서류 등
 - 2)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 3) 관련 자재 구입 계약서 및 시방서
 - 4) 국토교통부 관련 공사 표준시방서 등

5. 공사계약 외 분쟁

- 가. 당해 계약내용 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나. “가”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공사감독관 운영

1. 개 요

- 가. 공사감독관은 시설물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나. 공사감독관의 성실의무, 현장관리를 위한 근무요령, 감독관 교체시 인계인수사항, 시공자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2. 공사감독관 임명

- 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나. 공사감독관은 건설공사에 장교, 전문기술을 가진 하사 이상 부사관,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한다. 단, 기능직은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다.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대여건 및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발주청의 장이 감독관 배치 및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공사감독관은 행정권을 가진 시공부대장이 일일명령으로 임명하며 사용부대에서는 공사시행 및 질을 높이기 위해 입회관을 임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의 권한 및 책임

- 가. 공사감독관은 발주청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계약을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공회사에 대해 지시, 승낙, 협의 등의 직접적인 발언 및 통제권이 있으며, 발주청 대표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엄격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계약서류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현장여건과 모든 사항 등을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가 설계도서, 규격서, 계약서 등과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에 시공자재의 교체 또는 시공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라. 정상적인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별 시공 통제 및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의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
- 마. 공사감독관은 구두 또는 서면(감독지시서)으로 지시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현장대리인계를 현장에 별도 비치하고 현장대리인 상주 및 교체 여부 등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한다.)
- 바. 관련규정에 의거 공사진도를 보고한다.
- 사. 중간 및 준공검사에 대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 아.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자. 사급자재 검사 및 자재의 성능 시험표를 접수 확인한다.
- 차. 공정별, 단계별로 사진촬영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첩을 유지한다.
- 카. 작업현장의 안전 및 보안대책을 확인한다.
- 타. 시설물 인계·인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파. 기타 감독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4. 공사감독관의 성실의무

- 가. 공사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공사감독관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다. 공사감독관은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공사감독관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사 또는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명령 및 지시사항 관리

-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받은 지시사항은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공사감독관은 공사에 대한 지시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선 구두로 지시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 다. 공사감독관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최소화 노력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관 근무요령

- 가. 공사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순환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상주가 곤란한 경우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나. 당일 감독업무내용과 행선지 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 라.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마. 공사감독관은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공사감독관 인계·인수(부록 1-1 감독업무 인계·인수 참조)

공사감독관은 공사감독관 교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기구·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의 책무

가.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지표 조건, 수문 기상학적 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 1)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시공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나)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다.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시공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책임한계

- 1)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 자와 시공자와 납품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2)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해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3)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협의, 문제점이나 이의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법령의 준수

- 1)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시공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현장대리인의 변경(부록 1-2 현장대리인 변경 참조)

- 가.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이 해당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허락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자 관리

- 가. 공사감독관은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아래에 해당하여 그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발주청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2) 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 3) 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부실시공을 하였을 때
 - 4) 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5) 건설기술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 3 절 공사행정서류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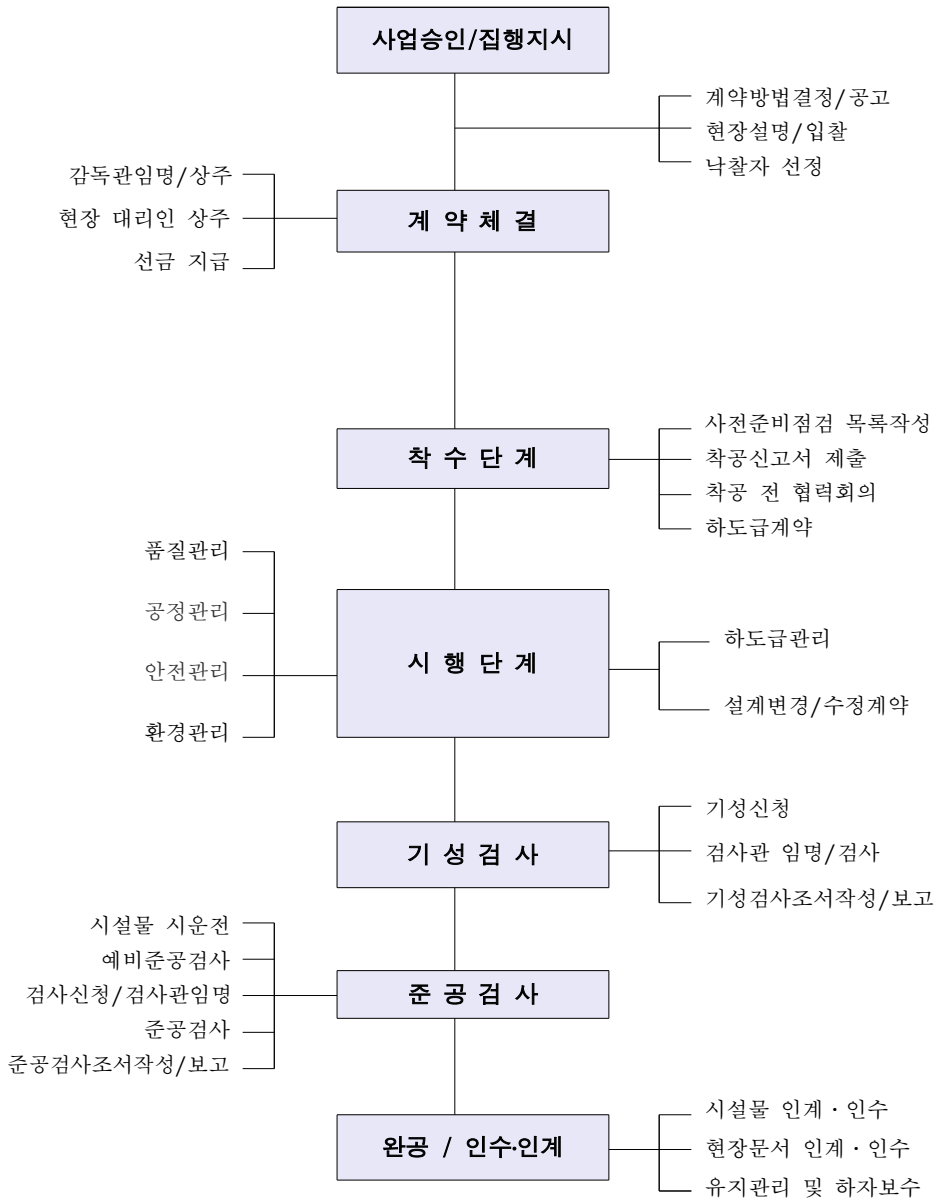
- 가. 본 실무지침서에 명시된 공사행정서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와 100억 원 이하 공사감독관 대상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에는 건설사업관리수행에 따른 관련 행정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 나. 공사감독관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임무와 기능은 동일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시공사관리관은 발주청을 대표하므로 공사행정에 관한 서류를 확인 및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제출물

- 가.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시공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할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부록#2~4)

서 류 명	부 수	보 관 부 서
착공신고서	4	· 건설사업과 1부, 예산회계실 1부, 공사감독관 1부, 현장사무실 1부
기성(준공)검사신청서	2	· 건설사업과 1부, 공사감독관 1부
기성(준공)검사조서	4	· 건설사업과 1부, 예산회계실 2부, 공사감독관 1부
하도급 통보	3	· 건설사업과 1부, 예산회계실 1부, 공사감독관 1부
설계변경	4	· 건설사업과 1부, 예산회계실 2부, 공사감독관 1부
준공연기원	4	· 건설사업과 1부, 예산회계실 2부, 공사감독관 1부
기성(준공)검사 결과보고(사진첩)	4	· 건설사업과 1부, 예산회계실 2부, 공사감독관 1부

라. 공사업무 흐름도



마. 공사단계별 행정서류 작성 책임

구 분	업무종류	주 요 사 항	시공사	건설 사업관리	공 사 감독관
착 수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신고서 · 하도급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공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관리계획서 · 하도급계약 통보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 공정관리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요구 시행 작성, 시행 작성, 시행 작성,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보고 검토 검토 검토, 지도 검토, 지도 승인,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보고 검토 이행확인 검토, 지도 검토, 지도 승인, 보고
시 행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공사 현장사진 촬영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주관 작성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보고 보관 승인 확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보고 보관 승인 확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검토, 작성 작성 요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지시 검토, 보고 검토, 보고 검토 작성, 보고
완 공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검사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 사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감독(건설사업)조서 작성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서작성 작성 보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 검토 작성 입회 검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 검토 작성 입회 검토, 확인

3. 작성 및 변경사항

가. 작성 및 확인

- 1)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 행정서류는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시공자,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공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행정서류 규격

-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 변경

시공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바.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 및 교육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 및 교육을 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착수단계

제 1 절 일반사항

1. 개 요

가. 관련법령

-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 2)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7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3) 건설사업예규 제4절 시설공사 집행 제31조(시설공사 집행절차) 착공 전 협력회의
- 4)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나. 공사착수단계 세부사항

- | | |
|-----------------|--------------|
| 1) 사전준비 점검 목록작성 | 2) 착공 전 협력회의 |
| 3) 착공신고서 제출 | 4) 하도급계약 |

다. 사전준비 점검 목록작성

공사추진을 위한 공사현장 여건조사,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수립, 공사감독관실 운용,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및 시설물 신·개축시 보안조치에 대해 기술하였다.

라. 착공 전 협력회의

공사착수단계에서 공사관련기관(자)이 회의를 통하여 공사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 협의하는 착공 전 협력회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착공 시 구비서류의 종류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내용을 기술하였다.

바.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와 하도급 계약 통지서류 검토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2 절 사전준비 점검 목록작성

1. 개 요

가. 공사감독관은 최상의 시설물을 준공하기 위해 사용부대, 시공회사, 시공부대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착수단계에서 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여 원활한 공사추진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사전준비 점검목록

주요 점검사항	관 련 법 률
1) 공사현장 여건조사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 공사현장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수립	
3) 지장물 철거확인	
4) 설계서 등의 검토	
5) 확인측량 실시	
6) 공사표지판 등 설치	건설산업기본법
7) 사진촬영 및 보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8) 공사감독관실 운용	
9)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10) 시공자 비치서류	
11) 시설보수 및 공사, 장비점검 설치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절 군사보호구역

2. 공사현장 여건조사

가. 공사감독관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와 합동으로 아래의 사항에 대해 현지 조사하고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1) 각종 재료원 확인
- 2) 지반 및 지질상태
- 3) 진입도로 현황
-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 5) 지장물 현황
- 6) 기후 및 기상상태
-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 8)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공사감독관은 현지조사 내용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 3) 통행지장대책
- 4) 소음, 진동대책
- 5) 낙진, 먼지대책
- 6) 지반침하대책
-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 8) 우기중 배수대책 등

다. 공사현장여건 조사 후 공사추진협의체를 통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되도록 시설 사용부대, 지원공병대대 및 정보통신대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한다.

3. 공사현장 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수립

가. 공사현장여건 조사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현장 내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및 사용부대 등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에게 아래와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1) 공사현장 인근지역 민가 및 가축 등에 대한 피해대책
- 2)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의 손괴에 대한 대책
- 3) 사용부대 장비 및 공사인원 등에 대한 통행보장대책
- 4) 소음, 진동, 분진, 비산먼지대책
- 5) 공사장 배수에 의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 6) 터파기, 발파 등에 의한 주변 지반침하대책
- 7) 집중호우 등 우기 중 배수대책
- 8) 사용부대 병력 활동시 안전대책 등

4. 지장물 철거확인

가.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 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5. 설계서 등의 검토

- 가. 공사감독관 등 공사관계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3)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다. 공사감독관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6. 확인측량 실시

- 가. 공사감독관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공사감독관은 확인측량을 검토한 후에는 시공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확인측량 결과 도면(중·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 2) 산출내역서
 - 3) 공사비 증감대비표
 - 4) 기타 참고사항
- 다. 기준점 설치
-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수준점 및 기타 도근점 등 시공시 또는 검측시 필요한 기준점과 표식을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좌표 포함)와 표고를 공사평면도 또는 부근 평면약도에 표시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라. 공사감독관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의 장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7. 공사표지판 등 설치

가.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주 출입도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자으로 하여금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형공사일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거리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 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중장비 사용 또는 수중공사 등 위험한 공사장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위험 표지판을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 및 접근을 금하는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안내판 설치 : 성실시공 안내판, 책임시공 안내판

8. 사진촬영 및 보관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 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 2)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가) 암반선 확인 사진
 - 나) 매몰, 수중 구조물
 - 다) 구조체 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 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수 있도록 촬영
 -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바)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 사)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 아) 보온, 결로방지 관련 시공 전경
 - 자)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나. 공사감독관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과정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사감독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Digital 파일, CD(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로 제출 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한다.

9. 공사감독관실 운용

가. 현장사무실 및 공사감독관실 설치시기

- 1) 공사계약 후 착공시기를 고려 감독부대와 사전 협의 하에 설치
* 사용부대의 부대 운용주기를 고려하여 정상적인 활동 보장
- 2) 현장사무실은 착공 전 전량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정에 의거 증감 가능

나. 공사감독관실 설치 유의사항

- 1) 현장사무실내 공사감독관실 별도 설치(군·일반전화기 가설)
- 2) 공사통제가 용이하고, 공사현장을 한눈에 관찰이 가능한 곳
- 3) 공사차량 진입 및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 4) 자재반입 및 하역시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다. 공사상황실 운용

- 1) 공사상황실에 빔 프로젝터 및 판넬 형태의 보고판을 설치하여 VIP 등 방문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공사용 중요 자재는 사전에 견본을 선정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상황실에 비치 후 사급자재 반입시 동일한 자재여부를 검수 후 반입한다.

라. 전기, 급수 사용협조

- 1) 공사용 임시전력은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월별 사용료를 확인하여 필히 납부하여야 한다.
- 2) 영내 기존 전력 사용시 계량기 설치 후 월별로 사용량을 검침하여 정해진 요율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가. 공사감독관은 비치서류 외에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며 필요시 보관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일지, 감독관 지시서, 사급·관급자재 수불부는 사업정보관리(PMIS)로 입력 및 대체가 가능함.

나. 공사감독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부록 #2-1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참조)

서 류 명	시공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
1. 공사감독일지	-	작성	작성
2. 감독관 지시서	-	작성	작성
3. 사급자재 검수부	작성	검토	검토
4. 관급자재 수불부	-	작성	작성
4. 품질관리 시험대장	작성	검토	검토
5. 천후표(부착 단, 감독관사무실 배치시)	작성	확인	확인
6. 시공측량대장	작성	검토	검토
7. 시공회사 시공조직도(부착)	작성	확인	확인
8. 시공회사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작성	검토	검토
9. 공정보고(주간, 월간)	작성	검토	검토
10. 건설공사 공정표(부착)	작성	확인	확인
11. 공정별 사진첩	보관	검토	검토
12.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작성	검토	검토
13. 현장지도·점검 방문일지	작성	검토	검토
14. 검측대장(매물부분 사진 첨부)	작성	검토	검토
15.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작성	검토	검토

11. 시공사 비치서류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부록 #2-2 시공사 비치서류 참조)

서 류 명	시공사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
1. 공사작업일지	작성	검토	검토
2.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검토	검토
3. 품질시험·검사대장	작성	검토	검토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작성	검토	검토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작성	검토	검토
6. 현장교육 실적부	작성	확인	확인
7.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작성	검토	검토
8. 주요자재 검사부	작성	검토	검토
9.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 관련서류 (교육계획, 안전일지 등)	작성	확인	확인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작성	확인	확인
11. 퇴직공제금비 사용실적 및 관계서류 (의무대상 공사일 경우)	작성	확인	확인
12. 공사측량 성과	작성	검토	검토
13. 공정별 사진첩 또는 비디오테이프	작성	확인	확인
14. 검측대장 및 사진첩	작성	검토	검토
15.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작성	검토	검토

12. 시설물 신축·개축시 보안(보안업무훈령 제5장 시설보안)

가. 각급부대의 장은 시설물의 신축시 부지선정 단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아래와 같이 보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핵심시설은 파괴, 투시, 도청으로 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2) 비밀과 관련된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침단장비(X-RAY 투시기, 전자식차단기, 지문·홍채 인식시스템, 경보기 등)를 설치하고 지원부서는 구분 배치한다.
- 3) 울타리 설치와 경계시설 및 위장대책 등을 반영한다.

나. 각급부대의 장은 시설물의 신축, 개축, 보수시 부지 선정단계부터 완료시까지 “가”항에 대한 사항을 보안심사회의에 회부하여 보안요건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군사 시설물 적용대상 및 보안 표준 요건

가) 보안표준 요건

(1) 시설배치

- (가) 군사보호구역(통제/제한구역)인 핵심시설, 지원시설, 일반시설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배치
- (나) 핵심시설인 군사통제구역은 건물 중앙이나 일정한 구역에 위치토록 통합하여 배치

(2) 보호대책

(가) 군사통제구역

- ① 단입 출입구로 무장 경계병 초고 및 CCTV 설치
- ② 출입문 : 철문 등 내화성 문짝으로 방음처리
- ③ 2중 잠금장치 및 침단 잠금장치 설치
- ④ 2중 창문 및 보호망, 경보기 설치

(나) 군사제한구역

- ① 파괴, 투시, 도청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외부 1층 창문에는 외부 침입방지를 위한 보호망 설치
- ② 출입문에는 2중 및 침단 잠금장치 설치

(다) 시설물 외곽 울타리

- ① 울타리의 높이는 월담방지를 위해 2.1m 이상
- ② 도심 및 도로변은 투시방지 블록담으로, 기타 전방 및 도심, 도로변 이격시설은 철조망 또는 쇠고리 판망 철책 설치
- ③ 경계초소(고가초소), CCTV, 경보기 설치 등 외부 침입방지책 강구

④ 경고 간판(접근금지, 사진촬영금지 등)은 외부인이 접근 및 경고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

다. 대대급 이상 부대의 핵심시설을 신·개축시는 각급 부대의 보안심사 회의를 거쳐 보안 표준 요건을 반영하도록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라. 비밀로 분류된 설계도는 공사 전에 지원기무부대의 보안요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절 착공 전 현장협력회의

1. 개 요

- 공사 착수 전 부지여건, 지장물 현황 / 철거 등 착공에 따른 제한사항 식별 및 해소를 위해 설계사, 시공사, 사용부대, 시공부대 등이 함께 실시하는 회의

※ Pre-Con : Pre - Construction Conference의 약자

2. 회의시기 및 참석대상

가. 회의시기 : 계약 후 30일 이내(현장가설사무소 설치 및 부지정리 완료)

나. 참석대상 : 사용부대장 및 관련부서 담당자,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업체, 설계과장(감독관), 건설사업과장 및 감독관(관리관)

다. 주 관 :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부장이 주관하고, 기타 공사는 각 지역시설단에서 실시한다. 단, 지휘부 관심 사업 현장은 필요시 건설계획과의 통제를 받는다.

라. 회의내용 : 시설물 배치 및 평면계획과 착공 전 사전조치사항, 설계도서검토결과,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민원예방대책, 하도급관리 방법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시공사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하고 사용부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받아 조치방안을 검토한다.

3. 착공 전 협력회의 준비 및 시행

가. 협력회의 사전 조치사항

- 1) 현장조사 / 도면 검토 : 회의내용 및 착수단계 문제점 도출, 우수현장 사례 등
- 2) 회의장소 / 일시 통보 : 협의 결정
- 3) 관련자 참석회의 / 통보 : 회의 안건 통보
- 4) 회의록 작성 : 토의 내용 및 관련도면

나. 주요 토의사항

- 1) 지장물(매설물) 철거 / 이설
- 2) 가설건물부지 / 작업장 확인
- 3) 건축승인
- 4) 작업시간, 인원, 차량출입 등 사용부대 부대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설계변경 사항
- 6) 관련부서 협조사항 등

제 4 절 착공신고서 제출

1. 개 요

가. 시공자는 계약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아래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부록 #2-3 착공신고서 참조)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
1. 착공신고서 발송공문	작성	검토	검토
2. 착공신고서	작성	검토	검토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작성	검토	검토
4.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작성	검토	검토
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검토	검토
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검토
7.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검토	검토
8.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작성	검토	검토
9. 착공 전 현장사진	작성	확인	확인
10.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작성	검토	검토
1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작성	확인	확인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2. 착공신고서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 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작성양식 : 부록 # 2-3 참고

3.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 별지 제24-2호 참조

4.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별지 제24-3호 참조

가. 시공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시공자 제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아래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3) 주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 4) 주간 공정율표
- 5) 기성검사원 제출 일정계획
- 6) 주요제출물 제출 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주요부분 단면상세도
-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 8)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 9) 기타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라. 공정계획을 변경시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계획서 : 별지 제24-4호 참조

가. 계획서의 수립기준

- 1)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거 품질관리계획을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품질관리계획서는 현장 및 업체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3) 품질관리계획의 생략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획서 포함내용

1) 건설공사 정보	10) 교육훈련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11) 의사소통	20)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3) 책임 및 권한	12) 기자재 구매관리	21) 불일치 공사의 관리
4) 문서관리	13) 지급자재의 관리	22) 데이터의 분석
5) 기록관리	14) 하도급 관리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6) 자원관리	15) 공사 관리	24) 자체 품질점검
7) 설계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17) 식별 및 추적	26) 공사준공 및 인계
9) 계약변경	18) 기자재 및 공사목적물의 보존관리	

6. 품질시험계획서 : 별지 제24-5호 참조

가. 계획서의 수립기준

- 1)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2(품질시험계획의 내용) 및 시행규칙 별표 9(품질시험계획)에 의거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계획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3호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른다.

나. 계획서 포함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사 개요 :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2) 시험계획 횟수 :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 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 횟수3) 시험시설 :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배치 평면도, 기타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 성명, 등급, 건설공사업무수행기간,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기타 |
|-------------------------------------------------------------------------------------------------------------------------------------------------------------------------------------------------------------------------------------------------|

7.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24-6호 참조

가. 대상사업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1종 시설물(21층 이상 공동주택) 및 2종 시설물(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족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 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향타 및 향발기
 - 다) 타워크레인
- 6) 다음 각호의 가설구조물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다) 터널의 지보공(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흠막이 지보공
 -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7) 1)부터 5)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심사

1) 제출시기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 공사감독관 확인 후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요청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감독관 확인 후 당해 공종공사의 실착공 15일 전까지 시공부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요청, 다만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통합하여 작성 가능

2) 심사결과 통지

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통보

가)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계획서 포함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3)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대책
-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6) 안전교육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8. 환경관리계획서 : 별지 제24-8호 참조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작성한 환경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접수하여 검토하며 시공자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획서 포함내용

- | |
|-----------------------------------------------------------------------------------------------------------------------|
| 1) 현장 여건조사
가) 현장주변 여건 현황도 나) 현장내부 여건 |
| 2) 환경영향 분석 |
| 3)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가) 환경관리 목표 및 방향 나) 환경관리 조직 및 임무 다) 환경요인별 시공관리계획
라) 환경시설물 설치·관리계획 마) 현장 환경관리 활동계획 |

9.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별지 제24-9호 참조

- 시공자는 공사에정공정표에 부합되는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착공 전 현장사진 : 별지 제24호-10호 참조

- 현장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1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별지 제24-11호 참조

1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별지 제24-12호 참조

제 5 절 하도급관리

1. 개 요

- 가. 시공자는 착공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하도급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한다.
-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의 일괄하도급 유무를 확인, 감독하고 하도급자 시공 부적정시 서면으로 업체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가. 발주자는 하도급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나.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라. 발주자는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나”항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하도급계약 통지

가. 통지기한

-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동일
- 2) 하도급자는 시공자가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 가능
- 3) 시공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
- 4) 공사감독관 등은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확인

나. 통지서류 검토 및 조치

- 1)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통지서류 접수 즉시 아래의 하도급 통보서류를 검토 및 확인한다.(부록 #2-4 하도급 계약 통보 참조)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
1. 하도급 계약결과 통보공문	작성	검토	검토
2. 하도급 계약통지서	작성	검토	검토
3.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작성	검토	검토
4. 공사내역서	작성	검토	검토
5. 공사에정공정표 / 착공계	작성	검토	검토
6.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작성	검토	검토
7. 하도급 대금지불 동의서	작성	검토	검토
8.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작성	검토	검토
9.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작성	검토	검토
10. 건설업 등록증 사본	작성	검토	검토
11.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작성	검토	검토
12. 등기부 등본 사본	작성	검토	검토
13. 인감증명서	작성	검토	검토
14. 사용인감계(회사)	작성	검토	검토
15.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작성	검토	검토
16.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작성	검토	검토
17. 하도급 계약본문	작성	검토	검토

- 2) 공사감독관은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에 확인 후 사본 보관
- 3)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통지서류를 반려시켜서는 아니되며 현장접수 후 서면으로 보완요구
- 4) 하도급 승인 및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위 1), 2)항의 절차에 의거 처리
- 5) 사업담당관은 통보사항에 대한 현황 관리

다. 하도급자의 변경요구

- 1)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하도급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급자의 변경 요구
-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계약 해지가 가능

라.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통보·관리

- 1)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시공자와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조정내용을 공사감독관과 하도급자에게 통보
- 2) 시공자는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자와 변경계약 체결

4. 불법하도급 식별요령

가. 하도급 계약

-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동일
- 2) 시공자는 착공 초기부터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하도급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방지
- 3) 공사감독관은 현장의 일괄하도급 유무를 확인·감독하고 하도급자의 시공 부적정 시 서면으로 업체변경 요구
- 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가) 발주자는 하도급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82%)에 따른 금액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 5) 하도급 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 가) 미통지시 조치 : 원도급사 사업등록 소재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요청

나. 불법하도급 식별요령

- 1) 하도급 계약서 확인
 - 가) 하도급 계약서에 대표자 기명 날인(누락시 이면계약 가능성 농후)
 - 나) 하도급 변경시 감독관 확인 후 발주청 접수
- 2) 현장대리인 인적사항 확인
 - 가) 착공신고서에 제출한 현장대리인과 동일인 여부
 - * 위병소 출입시 제출한 신분증과 비교
 - * 원천징수확인서 제출
 - ⇨ 미제출시 불법하도급임
 - (본사 소속이 아니면 원천징수확인서 발급불가, 그러나 타 서류는 본사 날인을 받아 발행 가능)
 - * 고용, 산재,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증권」 확인
- 3) 하도급지킴이 가입여부 확인
 - 가) 現 30억 원 이상 공사 시 해당
 - 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금지급 현황 모니터링
- 4)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인

다. 불법하도급 신고절차

- 1)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
 - 가)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 등
 - 나) 신고방법 : 우편, 방문, 해소센터 홈페이지로 접수

- * 4대공사(주택, 도로, 수자원, 철도) 발주 건설공사는 4대공사 해소 센터,
그 외 건설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 관련 협회 해소센터로 신고
- 다) 안내전화 : 대표전화 1577-8211(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 라) 국토교통부 해소센터 홈페이지(각 센터 전화번호 및 주소 확인, 인터넷 신청가능)
: <http://www.molit.go.kr>(국민마당→e클린센터→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라. 하도급 관리 부실 사례

- 00포병대대 포상 유개화 시설공사

☞ 원도급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사에게 부당손실을 초래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약자 업체는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로 원도급사는 배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00사단 방호벽 울타리 보강공사

☞ 감독관이 불법 하도급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작업시키고 그 일로 인하여 근로자 18명의 임금이 두달동안 체불됐는데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도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국민신문고-

- 00사단 00생활관 교육관 신축

☞ 민원 제기 후 감독부서에서 연락 와서 하는 말이 장비대금은 당신들이 알아서 장비대금을 받아야지 감독인 내가 장비대금까지 챙겨줘야 하나고 재하도급 장비 대금에 대해선 감독인 나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관이라는 분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도무지 저희들로선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신문고-

- 공사업체간 불법하도급

- * 업체에서 지정하여 보고한 현장대리인과 실제 공사현장에서 임무 수행한 인원이 서로 상이 (위병소 출입일지)

구 분	A 소초 현장대리인	B소초 현장대리인	C침터 현장대리인
계 약 서	김 초 소	이 현 장	윤 침 터
위병소 출입대장	최 초 소	박 현 장 / 김 현장	이 침 터

- * 업체별 자금집행 내역 확인 시 A소초와 C침터 자재대금 입금계좌가 동일 하고 상이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동일, 대금을 이체한 시간보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이 빠름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시스템 조회시 거래내역 확인 불가
- *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 명목으로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국세청 조회 결과 지출 금액 상이(서류상 220만원 ⇨ 실제지출 110만원)

5. 부도시 조치요령

가. 부도의 정의

-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과 수표 등에 대해 지급요청을 받은 은행이 지급자금의 부족, 지급요건의 불비, 사고신고의 접수 등과 같은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도의 징후

- 1) 계약업체 동향 파악
 - 가) 정치, 경제적인 여건의 건설업에 불리
 - 나) 주식 가치의 급락
 - 다) 현장에서 관리직과 기술직과의 대립이 자주 발생
 - 라) 직원들의 봉급이 지연, 동요하거나 이직
- 2) 하도급업체의 동향 파악
 - 가)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기간 장기화
 - 나) 하도급 대금 및 노임 지급 예정일의 지연
 - 다) 계약업체에서 발행한 어음이 유통시 고율로 할인

다. 부도가 우려되는 현장의 관리요령

- 1) 공정관리
 - 가) 기성지급시 기성율이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나)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성율 산정시 제외
 - 다) 현장에서 반입이 되었더라도 시공되지 않은 자재는 기성율 산정에서 제외
 - 라) 시공계획서에 의거 인원동원과 자재수급을 매일 확인
- 2) 자재관리
 - 가) 사급자재는 자재 수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여부 확인
 - 나) 시공되지 않은 자재는 장소를 지정하여 정리 보관
 - 다) 지급자재 보관장소 앞에는 자재명과 수량, 군소유 자재임을 명시하는 표지나 팻말 부착
 - 라) 도난, 훼손에 대비하여 야간경비 강화
- 3) 하도급 관리
 - 가) 각 공종별로 하수급업체 기능공 노임 등의 실제 수령 현황 파악
 - 나) 매월 노임의 지불 일, 지불금액, 체불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 다)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서를 월1회 이상 요구하여 확인
 - 라) 하도급업체 대표자를 면담하여 실제 공사비 수령액 중 어음이 있을 경우 만기 도래일자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대금의 직접 지급 등을 협의
 - 마) 기성대금 수령 후 15일 내에 하도급자에게 공사비가 지급되는지 확인
 - 바) 기성검사원 제출시 하수급업체 대표자의 공사비 수령 확인을 받은 하수급 대금 지급 내역서를 첨부토록 확인

라. 부도발생시 업무처리요령

- 가) 부도 상황 파악 및 발생 보고
- 나) 관계 기관 협조 요청(관할 지방 노동사무소 유선통보)
- 다) 공사 중단시 공사재개 촉구 공문 3~5일 간격으로 3회 발송
- 라) 보증시공 착수준비 공문 공사촉구와 동시에 동일한 횟수로 발송
- 마) 감독은 기성량과 체불노임액을 조기에 확정하여 체불노임의 직불 시기를 명확히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
- 바) 간접미불노임은 군에서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 순수미불노임 : 근로자가 공사 중단일까지 일하고 수령 하지 못한 노임
 - * 간접미불노임 : 근로자가 하수급자에게 노임을 지급받고, 하수급자는 원청자에게 지불받지 못하였거나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 사) 체불노임 직불준비(설계변경 확정, 기성검사원 작성)
- 아) 지급자재는 우리 군의 자재임을 근거 서류로 증명하여 압류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주요 사급자재에 대하여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압류처분이 되지 않도록 한다.

마. 부도발생시 업무처리 유권해석

- 가압류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자재비) 지급

질의) 채권자로부터 수급자의 시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되었을 경우 하수급자가 시공한 부분 중 노임을 제외한 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가압류에 우선하여 하도급업자에 직불 가능 여부

회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는 이상 귀 공사는 가압류된 공사대금 중 노임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 판단

- 부도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질의) A사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 후 B사가 보증 시공코자 하였으나 당초 A사와 계약 하였던 하수급자, 근로자 및 채권자들이 공사진행을 방해하여 상당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준공기한을 연장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 할 경우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계약자의 하수급자 등이 공사를 방해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동 기간에 대한 공기연장이 가능

6.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가. 개 요

- 1)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끊이지 않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관리 시스템(하도급지킴이) 활용
- 2)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나라장터 성과를 민간과 공유하여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에 기여
- 3) 여러 법령상의 하도급 규정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 *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나. 하도급 계약관리 및 대금지급

- 1) 발주청은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해야 함
- 2) 발주청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하도급 전자계약

- 1) 원/하도급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청이 온라인으로 확인·승인

가. 하도급 특약사항 및 계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이력 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기능 (요약)]

- ① 발주청, 원/하도급자의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 ② 나라장터 원사업 계약정보와 연계시켜 원/하도급자 계약체결
 - ③ 원도급자는 온라인으로 발주청에 계약승인 요청하고 발주청이 승인
 - ④ 원/하도급자가 관련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정보 등록
- ※ 공인인증서 활용 등 나라장터 수준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라. 하도급 대금관리

- 1)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
- 2) 원·하수급자의 대금지급 업무 등을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처리내역을 발주청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
 - 가) 발주청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수급자에게 대금 지급
 - 나) 원·하수급자는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노무비 지급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 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금융정보연계시스템~은행 시스템」과 연계되어 원/하도급자의 거래정보를 온라인으로 집계
 - 라) 발주청은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하도급 대금 등이 적정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 시정조치

마. 하도급 실적증명

- 1)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
- 2)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하도급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요청, 원도급자 승인, 실적 증명서 발급·제출을 온라인화
- 3) 하도급 전자계약서와 하도급 대금 적정 지급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원사업자(필요시 발주청)가 확인하고 하도급 실적증명서 확인

바. 시스템운영상 효과

- 1)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적으로 관리되어 계약분쟁 시 입증에 용이하고 권익보호에 유리
- 2) 하도급 전자계약 및 하도급 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으로 중소기업 거래비용이 절감
- 3) 계약 당시의 근로대가를 적기에 지급받게 됨
 - 가) 임금 체불,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기관(발주청)이 신속하게 확인하고 시정 조치가 가능
- 4) 하도급 관리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기관별로 시스템을 구축 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절감
 - 가) 정확한 하도급 실태 확인이 가능해져 하도급 관련 업무에 활용
- 5) 공정한 하도급 관리로 기업 이미지가 제고
 - 가) 하수급자의 노무비 체불 등으로 발생하는 원사업자 피해 예방

[참고. 조달청 시스템 정리]

구 분	내 용
구축범위	· 하도급계약, 하도급 대금 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통계관리
이용기관	·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공공기관
이용수수료	· (이용기관) 없음 · (원·하수급자) 수수료는 은행약관에 따름 *대부분 무료
유지보수 주체	· 조달청
중계시스템	· 중계사업자(VAN)
참여은행	·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은행 (현재 15개 은행 참가)
하도급 관리	· 조달청은 시스템의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유지보수 담당 · 공사·용역을 발주 또는 감독하는 기관이 하도급 관리업무를 책임

제 6 절 선금 지급

1. 개 요

가. 선금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계약의 이행 전에 또는 대가지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인 경우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나. 시공자는 선금사용 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사용 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 사유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 의무지급비율

공 사 금 액	1회	총 지급비율
100억 이상	30%	70%
20억 이상~100억 미만	40%	70%
20억 미만	50%	70%

3. 선금 지급 및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선금신청일 기준 잔여 이행 기간, 즉 남아있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남아있어야 한다.

나. 선금 지급시기는 시공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다.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이나,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자가 선금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선금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선금 신청을 위해서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록 #2-5 선금 지급 참조)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
1. 선금 신청서 및 사용계획 발송공문	작성	검토	검토
2. 선금 신청서	작성	검토	검토
3. 선금 사용 계획서	작성	검토	검토
4. 선금 월별 세부계획	작성	검토	검토
5. 선금 재료비 세부계획	작성	검토	검토
6. 선금 노무비 세부계획	작성	검토	검토
7. 선금 장비사용료 세부계획	작성	검토	검토
8. 선금 지급 각서	작성	검토	검토
9. 금융기관 거래구좌 신고서	작성	확인	확인
10.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이행 서약서	작성	검토	검토

제 7 절 PMIS

1. 개 요

가. PMIS :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공사관리 정보공유시스템)

나. Project 수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에 의한 공기 단축, 원가절감등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사업 및 시공관리의 새로운 수단

다.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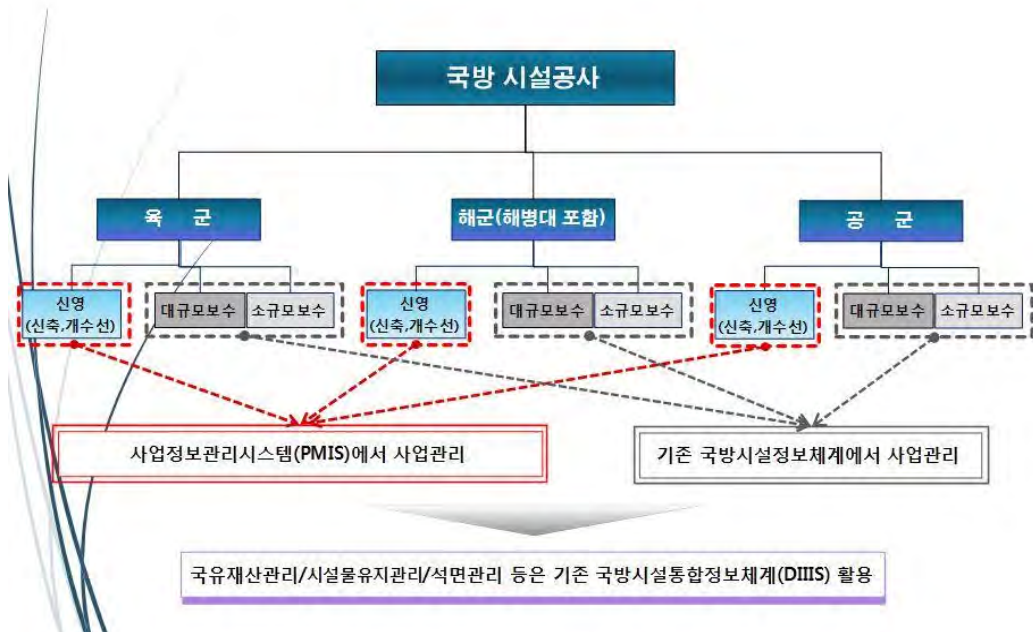
- 1) 시설사업 종합현황 관리 : 군별, 프로그램별, 지역시설단별 집행현황
- 2) 공정 및 사업비 관리 : 시스템을 통한 공정 및 사업비 관리
- 3) 업무프로세스 개선 : 모든 공사행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4) 정보의 재활용 : 자료의 추적관리 및 유사사업 수행시 자료 활용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3장 제15조(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 ①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계약의뢰’,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시설물인계인수’, ‘계약자관리’등 시설사업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PMI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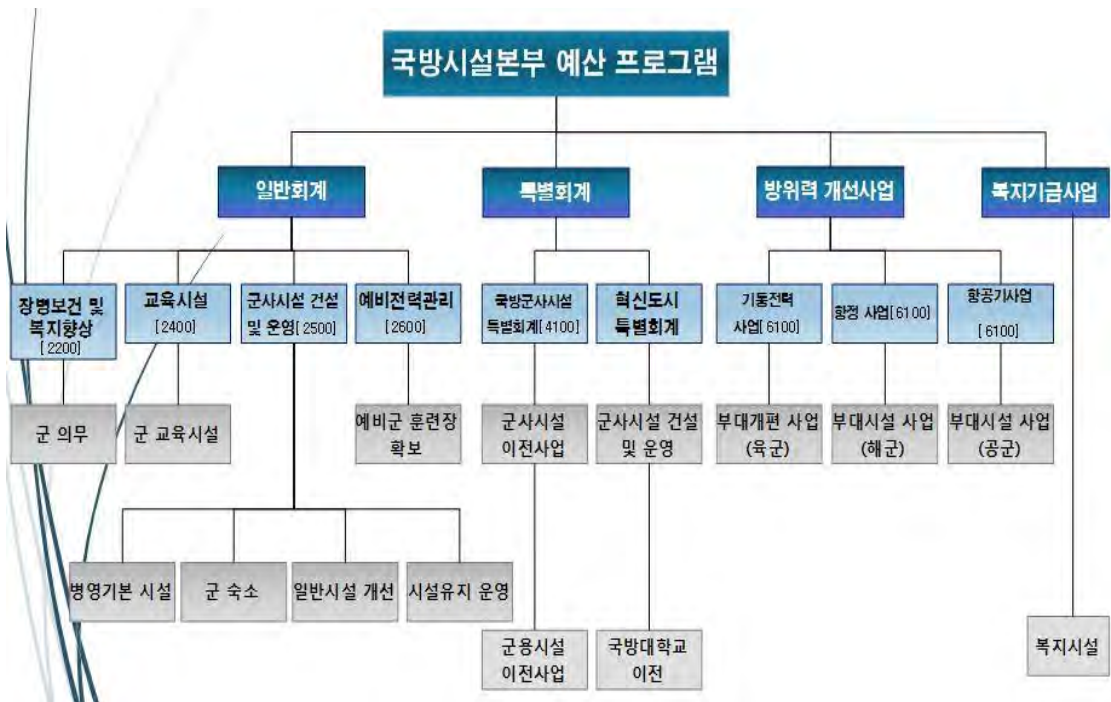
- 1) PMIS 적용대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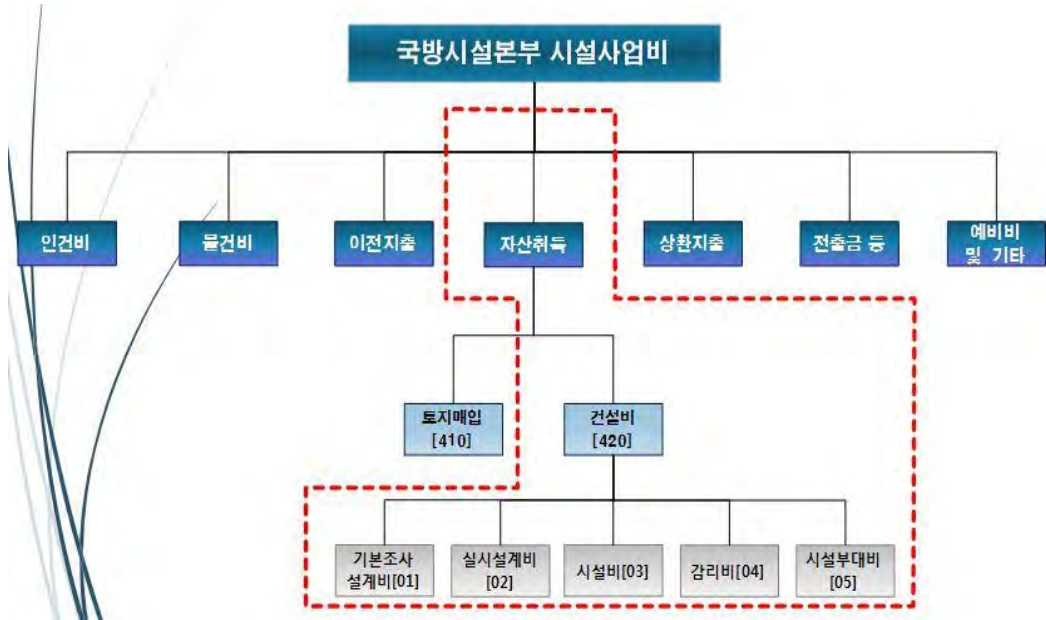
2) PMIS 표준분류 체계

구분	PBCOA (Project Budget COA)	COA (Code Of Account)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CBS (Cost Breakdown Structure)	RPCS (Real Property Classification System)
정의	국방예산 프로그램 코드	시설사업비 세목별 계정	예정공정표	계약내역서	시설물 분류
활용 범위	예산 프로그램별 사업예산 편성 및 배정 정보 집계	세목별 사업비 현황 집계	시설사업의 공정 확인 및 관리	공정진도와 연계, 공사비 현황 관리	집행 시설물 분류
입력 주체	건설계획과	건설계획과	계약자 입력 / 공사감독관 승인	계약자 입력 / 공사감독관 승인	공사감독관 입력

3) 예산 프로그램(PBC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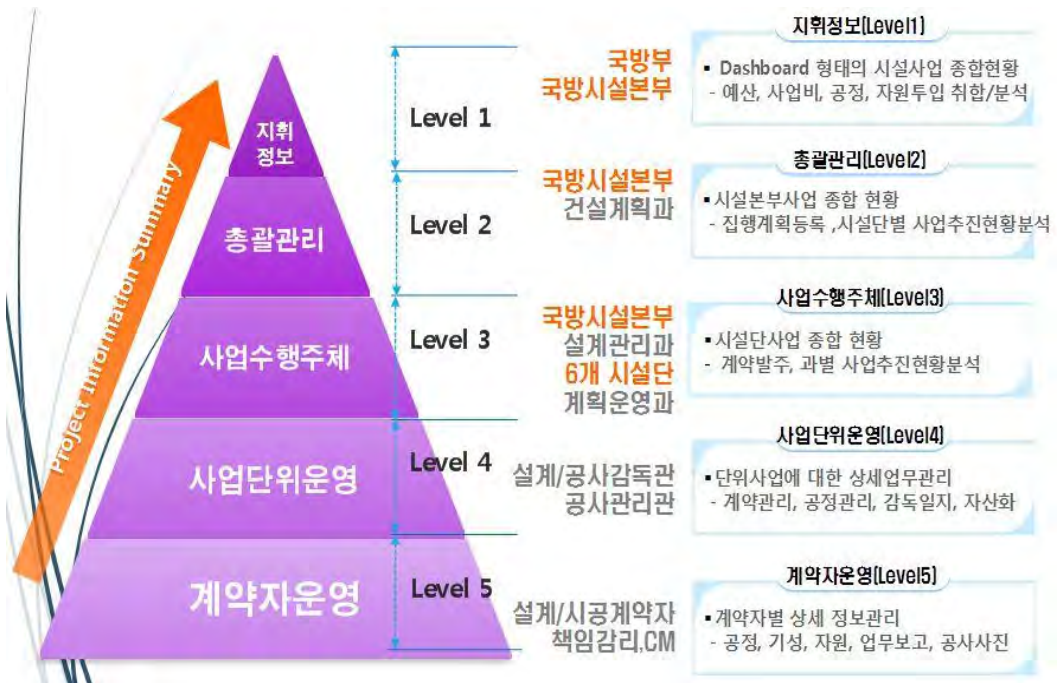


4) 시설사업비(C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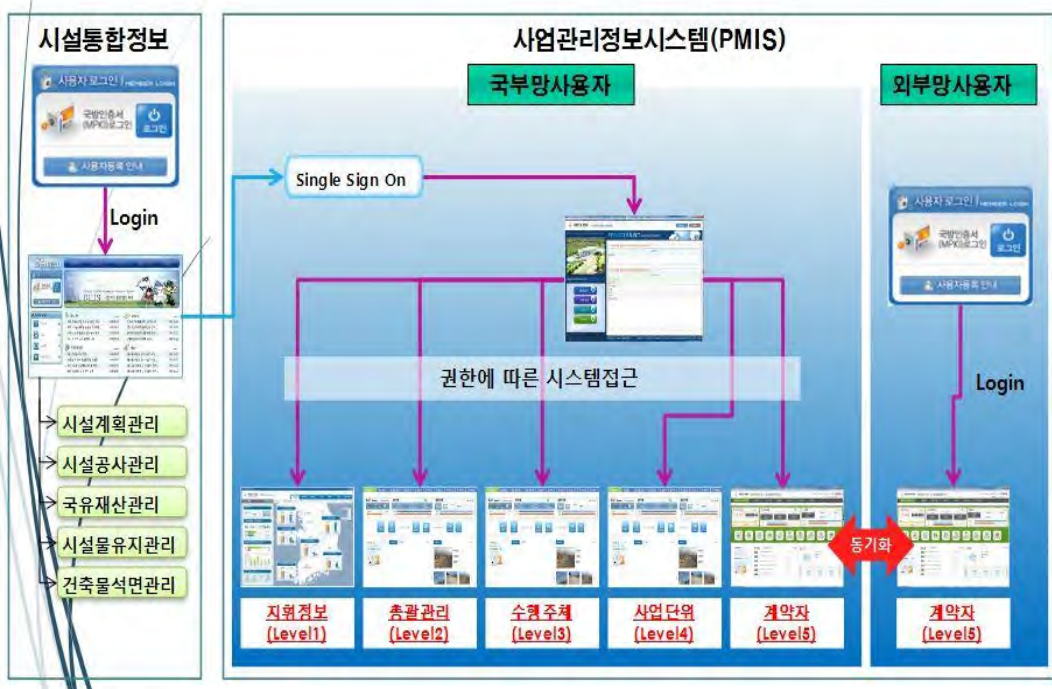


마. PMIS 구성

1) PMIS 권한 구조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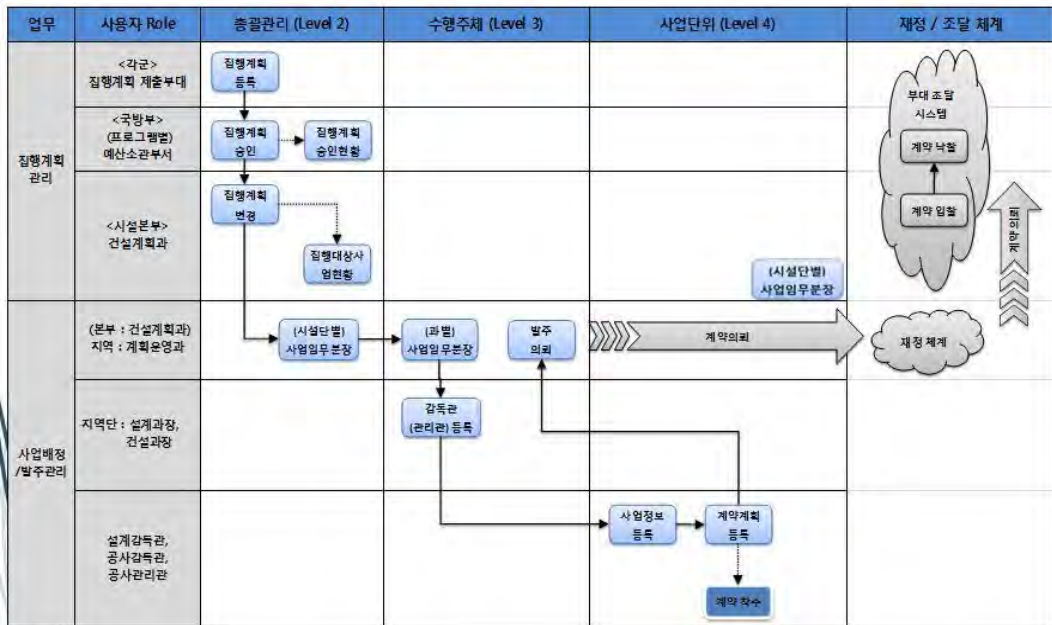


2) PMIS 권한별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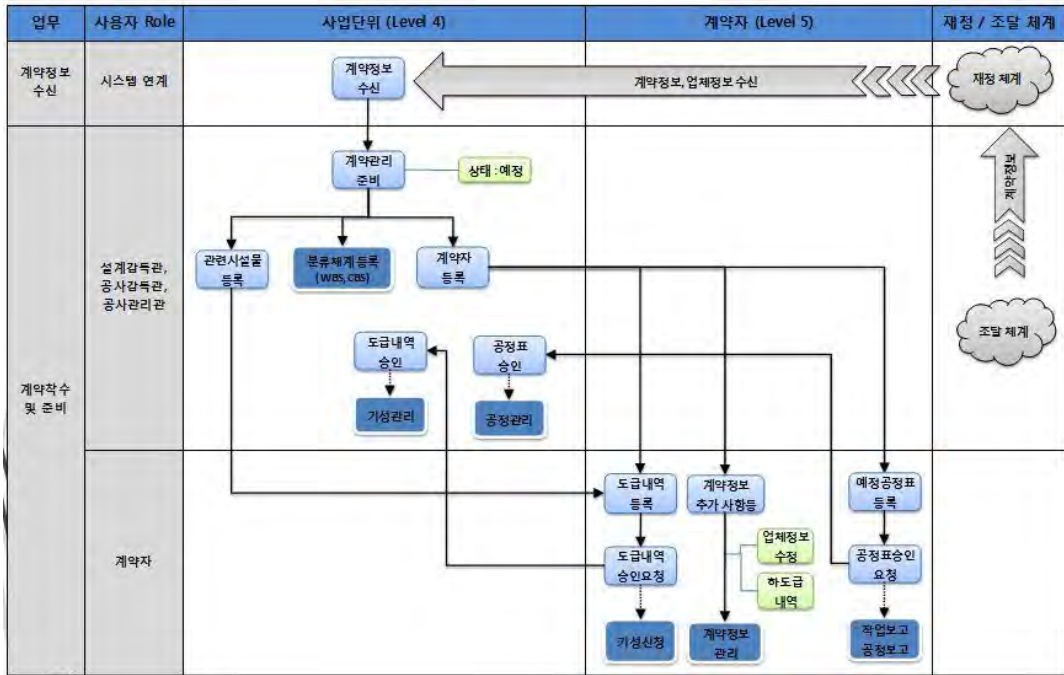


바. PMIS 주요 업무별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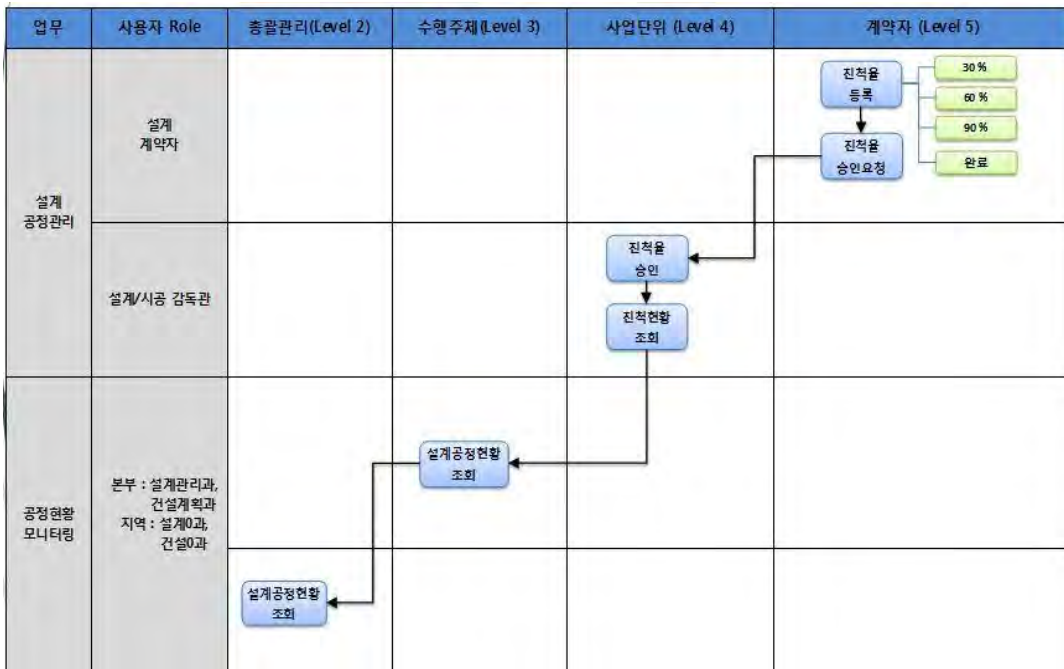
1) 집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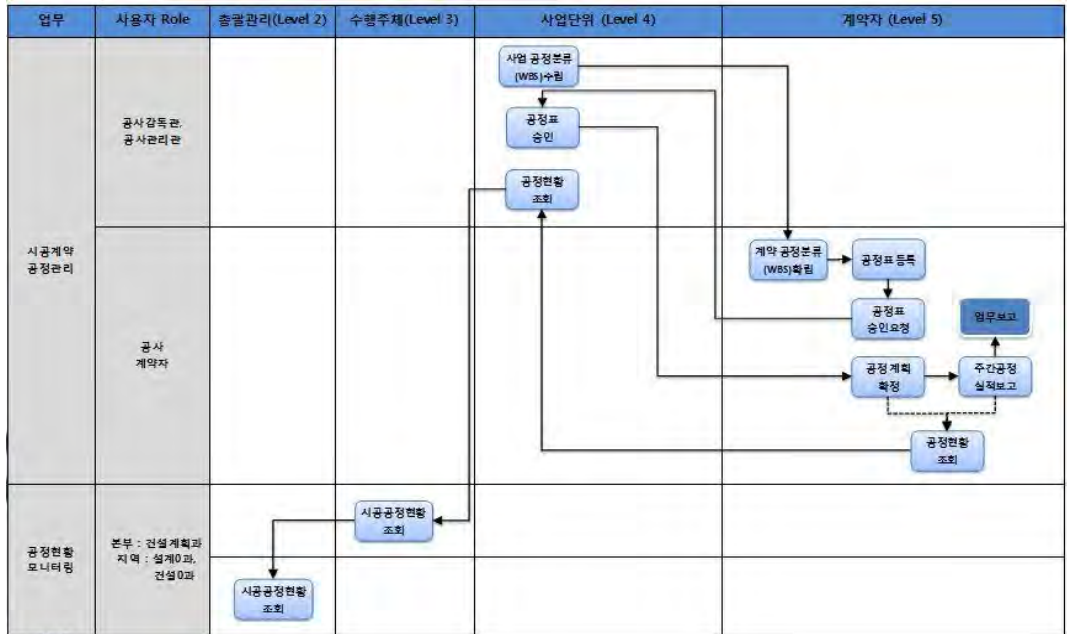
2) WBS 및 CBS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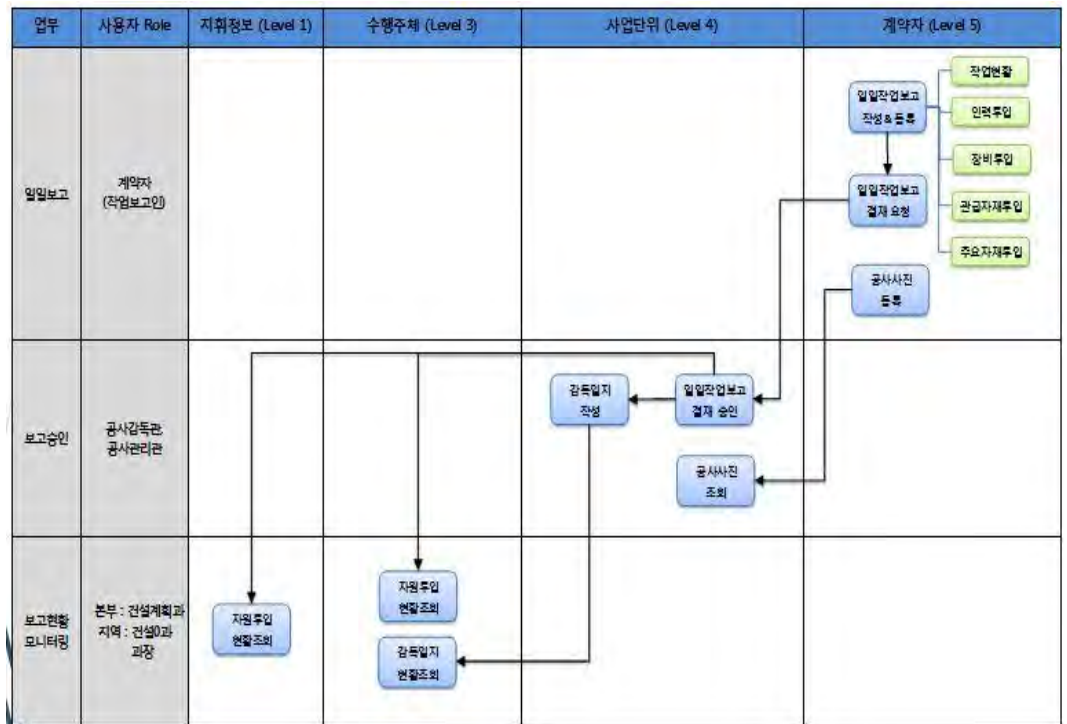
3) 설계공정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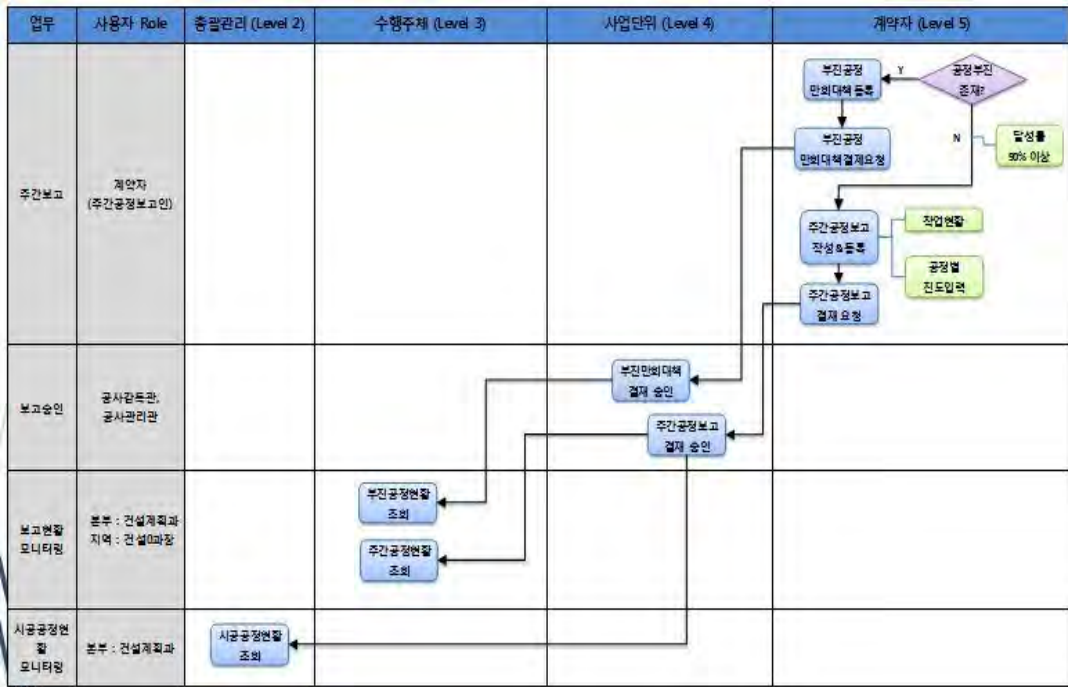
4) 공사공정 관리



5) 일일업무보고



6) 주간업무보고



제3장 공사시행단계

제 1 절 일반사항

1. 개 요

가. 관련법령

-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나. 공사시행단계 세부사항

1) 품질관리	2) 공정관리	3) 안전관리
4) 환경관리	5) 설계변경	6) 하도급관리

다. 품질관리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이행 및 이해결과 조치사항과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자재 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라.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공사착공 후 공사진도관리, 부진공정관리, 수정공정관리 및 공기조정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마.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점검, 유해·위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바. 환경관리

환경관리계획서 검토, 현장 환경관리, 공사현장 폐기물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사. 하도급관리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하도급이행 실태점검, 부실하도급자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아. 설계변경

설계변경 종류 및 절차,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제 2 절 품질관리

1. 개 요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란 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대상공사의 범위

가.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

- 1)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나.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

- 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3)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다.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 비교

구 분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 시설본부 예규 제15조 · 시설본부 예규 제17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 시설본부 예규 제16조
계획수립	대상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서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 · 해당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작성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내용	·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09001에 적합 (건설공사정보 등 26개 항목) · 시행령 제89조	· 시험계획 횟수 ·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 시행령 제89조
확인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개월전까지	· 연 1회 이상,
	확인자	· 시설본부장	· 시설본부장 및 위임받은 지역시설단장
	확인내용	·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확인	·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확인

3.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의 이행 : 별지 제24-4호 및 24-5호 참조

가. 공사감독관은 품질관리(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지체 없이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말 또는 기성부분 검사신청,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현장시험실 운영

- 1)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에서는 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2) 시험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3) 시험실은 적정한 면적과 환기시설, 화재방지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4) 현장시험장비는 연 1회 이상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5) 현장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구 분	공 사 규 모	시험 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자격
특급품질 관리대상 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품질 관리대상 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품질 관리대상 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품질 관리대상 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가. 초급기술자 1명 이상

6) 현장 품질시험·검사 자재목록(건축분야)

공종	대 상 자 재
건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장·조적용 잔골재 · 굳지않은 콘크리트 · 흙벽돌(C종2급) · 속빈 콘크리트 블록(C종블록) · 아스팔트 싱글 ·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비드법) · 판상단열재 · 말뚝 · 무늬유리 · 목재 창호 및 틀재 · 강재 창호 및 틀재 · 메탈라스(평평라스 1호2종) ·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목재) · 커텐박스(목재) · 온돌바닥 축열용 골재(#467) · 도기질타일, 자기질타일, 석기질타일 · 유리면 보온판 ·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벽판, 바닥판, 지붕판, 기둥, 보 계단 등) · 콘크리트용 골재(부순골재 포함) · 콘크리트 벽돌(C종2급) · 점토 벽돌(미장1종) · 목재 · 타일(외장용) ·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압출법) · 유동화제 · 판유리 · 합성수지 창호 및 틀재 ·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 황동제 논스립 · 테라조 및 인조석용 종석 · 걸레받이(목재) · 합판 · 배치플랜트 · 천연석타일 · 자기질 타일

6) 현장 품질시험·검사 자재목록(토목분야)

공종	대 상 자 재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용 흙 ·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 노상 · 혼합골재(입도조정기층) · 콘크리트용 골재(부순골재 포함) · 그라우팅재 ·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보도용 콘크리트판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점토벽돌 · 철근콘크리트 하수도 맨홀뚜껑 · 화강석 경계블록(가공석)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HC 말뚝 · 터파기 / 지반조사(연약지반 등) · 플랜트 혼합물 · 노체 · 혼합골재(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 미장·조적용 잔골재 · 굳지않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투수아스콘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경계블록 · 콘크리트 벽돌 ·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 수목보호대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 말뚝 · 강관말뚝

바. 시험 및 검사

-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승인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품질시험 성과는 면밀히 검토되고 기록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기성 및 준공 검사시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험 및 검사의 전문기관 의뢰

-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승인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거하여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전문기관 의뢰시 시료의 채취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봉인해야 한다.

아. 품질관리비 사용

- 1) 시공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별표 14를 적용한다.
-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관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의 이행결과 조치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품질관리·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험결과 성과표를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기록 유지하고, 기성·준공 검사시 검사관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품질관리·품질시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벌칙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라. 불합격 자재의 영외반출

- 1) 시공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시공자는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영외로 반출하고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마. 재시험

- 1) 시공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공자는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부록 #3-1 시공계획서 참조)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검토 후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4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1) 현장 조직도
- 2) 공사 세부공정표
-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4) 시공일정
- 5) 주요장비 동원계획
-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 8) 품질관리대책
-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대책

다. 공사감독관은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상세도 승인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구조부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설계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시공자,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시공상세도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관은 아래 사항에 대한 것과 발주청에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으로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Chair-Bar의 위치·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

바. 제출대상

- 1)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본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사. 제출시기 및 부수

- 1) 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감독관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7. 자재관리

가. 자재사용 승인요청 및 자재사용 신고서 제출

- 1) 자재 사용 승인 및 신고품목 : 사용승인 또는 신고자재는 자재사용 승인 및 신고자재 목록에 따른다.
- 2) 자재 사용승인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3) 자재 사용 승인서 또는 신고서에 포함 내용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 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 다)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 라)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급자재 청구 및 출고

- 1)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지급자재 청구가 있을 경우 성명, 규격, 수량, 사용처가 명시된 자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보관관리

- 1)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시공자 책임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2)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 연월일, 수량, 사용처, 재고량 등을 항상 기록토록 하고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사감독관은 반입된 기자재, 시공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경비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발생품관리

공사감독관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한 골재 등의 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유희시설 철거 시 발생한 고철에 대해 발생품 처리부를 작성 후 사용부대로 인계하고 군수지원부대에 처리 요청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지급자재의 입체 또는 대체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견본시공

- 1) 견본시공의 대상은 현장여건과 사용부대의 의사결정사항 및 설계도서의 이해가 난해한 부분이 발생 시에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시공자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품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공사관계자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공종 시공계획서에 첨부한다.
- 3) 결과조치 : 현장대리인은 견본시공 중 또는 완료시점에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본 공사를 시행하고, 견본시공 상태를 부위별 사진촬영 또는 해당공사 공종 종료시점까지 보존한다.
- 4) 견본시공의 활용 : 견본시공 부위는 기능공에게 시공수준에 대한 교육과 공사감독관의 시공 확인시 본 공사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사. 변상 또는 원상복구

- 1)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인계한 지급자재가 멸실 또는 손상된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공사감독관은 1)에 따라 시공자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추가로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 3) 공사감독관은 1)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시공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에 필요한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잉여자재의 관리

공사감독관은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준공 후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공정관리

1. 개 요

가. 착공 후 공사예정표에 의한 공정관리가 되어야 하나 주변 내·외적 상황 변화와 형식적인 공정표 작성으로 공정표를 적용한 공정관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관은 합리적인 공정관리로 양질의 공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
|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

2.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가. 공사감독관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지방서, 도면 등에 의거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 받고, 이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예정 공정표 검토 절차 : 별지 제24-3호 참조

- 1) 표준공정표(CPM) 모델 하달
 - 가) 계약과 동시에 시설물 신축과 관련하여 CPM으로 작성된 표준 공정표 모델을 시공업체에 제시
 - 나) 표준공정표 모델에 의거 시공업체 자체 공정표 작성
- 2) 착공신고서상 공정표의 적절성 검토
 - 가) 시공업체 대표이사 날인 유무
 - 나) CPM 공정표 작성 유무(막대그래프식 공정표 제출시 재작성)
 - 다) 여유공정(기상악화 일수, 휴무일 등)을 고려한 공정표 작성
- 3) 실시 공정표 검토내용
 - 가) 작성방법 : 시공순서 적합성, 일정·진도관리 용이

- 나) 공기산정 : 계약공기 준수, 주공정의 적합, 가용 인원·장비 투입
- 다) 자원배분 : 투입자원의 적절성, 적기 조달 가능성

3. 공사 진도관리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다. 공정률 상·하한선 관리

시공회사에서 공사예정 공정표 제출시 공정률 누계곡선(S-Curve)상에 공정률 상·하한선을 붉은색으로 표기되도록 유도하고 실행공정이 공정률 누계곡선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라. 시공속도 적정성 확인

1) 공정률 조건표의 작성활용

착공 후 도급/관급 내역서를 분석 검토하여 단위 공종별 개략시공 물량에 따른 개략공정률을 산출하여 공정률 조건표를 작성하고 시공자의 공정현황 보고서 공정 확인자료로 활용한다.

2) 공사추진협의회 회의

본공사 및 기타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공종 및 공사관련자(사용부대 포함) 합동으로 공사진도의 평가, 품질상태, 공사추진상의 문제점 등의 협의를 위한 공사진행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회의내용을 기록·관리토록 한다.

마. 공정 지연 시 등 조치

1) 실행공정이 공정률 상한선을 상회할 경우

줄속공사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품질관리하고, 가급적 시공속도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공정상태가 되도록 공정관리한다.

2) 실행공정이 공정률 하한선보다 부진할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공사말기에 공정속도를 높이면 품질 및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므로 부진공정을 만회하여 정상적인 공정상태가 되도록 관리한다.

3) 부진사유와 만회대책의 수립 및 검토

공사감독관 등은 실행공정이 부진하여 정해진 예정공정률 하한선 미달 시는 공정 달성을 위해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대책을 검토·확인하여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미조치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토록 조치한다.

4) 장기 공정부진 시 조치 : 특별공정 관리현장으로 선정 중점관리

4. 부진 공정관리

가. 부진공정 만회대책

- 1) 공사감독관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2)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기단축 시기

- 1) 계획공정상의 공기가 진행공기와 차이가 생겼을 경우
- 2) 공사비를 증가시켜 단축하되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단축하여 최적공기 확보
- 3) 진도관리에 의한 공기지연에 대한 단축

5. 수정 공정계획

가.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과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승인하고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고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한의 조정,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예정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수정계약 요청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검토 후 시공부대장에게 제출하며 시공부대장은 결재 후 수정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공사기간 조정

재무관은 시공자의 공사기한 연기요청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사유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사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가. 공사기한 연기 가능한 경우

-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사 집행이 불가능할 때
-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부대조변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3)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6)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공사 기간이 소요되었을 때
-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8) 공사지역의 특정사태(인부동원, 출입제한 등)로 공사 진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9) 군 지원 작업 또는 군 담당부분 공사가 시공부대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때

나. 공기연장 수정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 1) 시공자가 공정표에 의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인력, 장비 및 자재 등을 적기에 투입하지 아니하여 지연된 공사
- 2) 시공자의 태만으로 공사자재에 대한 재질 및 성능시험을 적기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정이행에 지연을 초래케 한 공사
- 3) 기타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

다. 공사기간 연기원 제출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의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자료를 검토 후 연기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시공부대장에게 제출한다.(부록 #3-3 준공기한 연기 서류 참조)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
1. 준공기한 연기신청 공문	작성	검토	검토
2.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작성	검토	검토
3. 준공연기 이유서	작성	검토	검토
4. 준공기한 연기동의서	-	작성	작성
5. 준공연기 공정표	작성	검토	검토
6. 기타 증빙서류	작성	검토	검토

제 4 절 안전관리

1. 개 요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내 작업인원의 통제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이행실태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별지 제24-6호 및 부록 #3-1 참조

가. 공사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시공자가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업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1종 시설물(21층 이상 공동주택) 및 2종 시설물(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6) 다음 각호의 가설구조물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다) 터널의 지보공(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7) 1)부터 5)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심사

1) 제출시기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 공사감독관 확인 후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요청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감독관 확인 후 당해 공종공사의 실착공 15일 전까지 시공부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요청, 다만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통합하여 작성 가능

2) 심사결과 통지

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통보

가)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사감독관은 매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검토

가. 공사감독관은 매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 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가.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
- 2)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
- 3)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4) 준공직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나. 정기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 1) 점검대상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공사
- 2) 자체점검대상 선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1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중 시설본부 자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대상 선정
- 3) 점검시기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정별로 정기안전점검 시행
- 4)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 가)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할 사항
 -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다. 정밀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

- 1)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의 필요성, 내용, 범위와 점검기관 선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전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에서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23조~26조)

가.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4) 굴착·채석·하역·벌목·운·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5)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6)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나.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3)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4) 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5)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 유지

다. 작업의 중지

- 1) 시공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2)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4)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재해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1)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 가)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금액 계상 비교확인
시공자는 제출한 도급내역서상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안전관리비율 산출금액 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1) 수급자는 발주처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계획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 보존한다.
- 2) 다만, 항목별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된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방지
시공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확인
 -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발주청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내역서 작성
 -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착공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실행예산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다.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시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유의사항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항목별 금액 변경 시, 설계변경 등으로 금액 증감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내역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토록 하고, 사용내용에 대한 불명확한 사항은 각 공종별 건적기준, 지방서, 품셈 등에 의거하여 법의 목적에 맞도록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각 항목별 초과 사용된 금액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사항을 안전일지에 매일 기록유지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출사항 미기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라. 공사감독관 확인사항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내역 작성 보존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세금계산서 및 관련서류(영수증(세금계산서), 사진, 거래명세표, 산출내역 등)를 첨부하여 매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사용내역 확인
공사감독관은 보고된 안전관리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지출, 이중 계산, 과다 계상된 사항을 확인 시정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 3) 시공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첨부 하여야 한다.
 -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 총괄현황
 - 나) 월별 사용항목별 지급현황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1) 항목별 사용내역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4) 기성 및 준공검사관의 확인
 - 가) 기성검사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타목적 사용, 이중계산, 과다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성금액에서 감액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준공검사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타목적 사용금액, 미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준공조서 작성시 계약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 정산처리(준공설계변경)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지급자재 정산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발생사례

■ 용접작업 중 화재발생

공 사 명	○○플라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11.26.(화)11:30분경
재해형태	화 재	재해정도	사망 2명, 부상 2명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공사규모	지하4층, 지상20층, 2개동, 부속상가 1개동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층 바닥 슬래브를 관통하여 설치된 슬래브와 업무 시설동 앞 옥외 소화전 연결배관 사이의 틈새를 막기 위한 지수판 용접 작업 중 ▪ 지하1층 천정의 경우 경질우레탄 보온판과 부직포에 용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하1층과 독립상가동으로 불이 옮겨 붙어 ▪ 독립상가동 지상 2층 안전교육장 내부에서 대기 중이던 피재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고, 대피중이던 근로자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 비계해체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떨어져 사망

공 사 명	마산 현동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 11. 23.(목)09:45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공사규모	아파트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 11. 23(토) 09:45분경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 내 00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마산현동 000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주)00소속 피재자(남, 비계공, 44세)가 107동 외벽비계 해체 작업중 해체한 작업 발판을 아래로 내리다가 발판과 함께 바닥(H=6.9m)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조치 준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및 작업발판 단부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 및 해당 작업 종료전까지 유지함. ○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및 작업발판 단부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벨트 및 안전모등으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철저히 감독
------	--------------------------------------------------------------------------------------------------------------------------------------------------------------------------------------------------------------------------------------------------------------------------------------------------------------------------------------------------------------------------------

■ 복공판 상부에서 작업 상황 확인 중 굴삭기 후미에 끼임

공 사 명	세종시 ○○프라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12.21.(토)09:20분경
재해형태	끼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세종시 도담동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8층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12.21(토) 09:20분경 세종시 도담동 소재 세종시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 1층에서 피재자는 복공판 단부에 서서 지하의 토공량을 확인중 덤프(25Ton)트럭에 상차하기 위하여 회전을 하던 굴삭기(1.0M)의 좌측 후미와 안전난간 지주 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사고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 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용 건설기계가 작업을 하여 근로자와 접촉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용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 경사지붕 바닥 기와잇기 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00 시설공사	발생일시	2013.10.12.(토)16:30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공사규모	지하1~2층 2개동보수공사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재자가 경사지붕 바닥에 기와잇기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기와 붙임용 몰탈(W=10Kg)을 플라스틱 용기에 운반하여 지붕바닥단부(처마) 부근에 내려 놓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 바닥으로 추락(H=6m)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작업간 안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기와잇기 작업시 근로자가 지붕 슬래브 단부(처마)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붕단부에 작업발판 겸용 안전난간을 설치 하는 등으로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바닥 합판 거꾸집 설치작업 중 형틀공 추락

공 사 명	○○ 학교 시설공사	발생일시	2013.10.05.(토)10:50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4~5층 2개동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재자(54세, 남, 형틀공)가 지상4층 체육관 무대구간 슬래브 바닥 합판 거꾸집 조립 작업중 호리빔(Hory-Beam) d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슬래브바닥 합판거꾸집 단부를 발로 밟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3층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추락(H=5.75m)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들이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수술 치료중 2013.10.10.(목) 09:00경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개구부등의 방호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슬래브 형틀조립 작업시 개구부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개구부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 설치하거나 개구부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 하여야 하며, 부득이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대형 벽체거푸집 전도

공 사 명	00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 11. 17.(일)08:35분경
재해형태	협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춘천시 효자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10,704㎡)
재해개요	<p>■ 2013. 11. 17(일) 08:35분경 강원도 효자동 소재 00대학교 건강스포츠포츠 교육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형틀 목공, 남, 53세)이 보조 거푸집을 조립하던중 기 설치된 4층 교수연구실동 대형거푸집이 강풍(돌풍)에 의해 넘어지면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p>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작성 철저</p> <p>- 벽체거푸집 등 대형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함.</p> <p>○ 거푸집 전도방지조치 철저</p> <p>- 대형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자체 하중 및 풍하중(강풍, 돌풍 등) 등 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와이어로프) 또는 버팀대를 충분히 설치후 작업해야함.</p>		

■ 옥상 수전실 바닥 도장작업 중 감전

공사명	○○공장 도장보수 및 보강공사	발생일시	2013. 10. 11.(금)13:10분경
재해형태	감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공사규모	지상2층 공장 도장보수등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10.11(금) 13:00경 (주)00이 시공하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소재 00공장 도장보수 및 보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000(도장공, 34세, 남)가 사무동 옥상에 설치된 수전실 울타리 내부에서 페인트 로라(Roller)에 알루미늄 로라봉(길이=2m)을 끼워 우레탄 방수코트 도포작업 중 22.9kV 충전부에 근접하여 감전 사망한 사고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정전작업 또는 충전전로 절연용 방호구 등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전실 내에서 바닥 방수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자 또는 도전성 작업도구 등이 충전전물에 접촉하거나 근접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당해 전로를 차단하는 등 정전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자가 충전부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절연용 방호, 방책(접근한계거리 유지)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 		

■ 피복석 설치작업을 위해 인양중 피복석에 맞아 사망

공 사 명	○○마을 선착장 연결 현장	발생일시	2013. 10. 02.(수)08:30분경
재해형태	맞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공사규모	사석식경사재 L=10m
재해개요	<p>▪ 2013.10.02(수) 08:30경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소재 (주)00개발이 시공하는 00마을 선착장 열장공사 현장에서 (주)00개발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남, 석공, 63세)가 사석식 경사제(호안공)의 피복석 설치를 위해 인양 작업중 피복석(약 1.5Ton)이 떨어져 하부에 이동중인 재해자가 맞아 사망한 사고임.</p>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중량물의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복석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피복석 설치 작업에 따른 맞음(낙하)등의 위험을 예방할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 <p>* 특히 중량물 인양구간 하부 및 장비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함.</p>		

■ 굴삭기 버킷이 떨어져 하부 이동근로자 강타

공 사 명	○○ 농촌용수개발사업	발생일시	2013. 10. 24. (목) 14:30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부상 1명
소 재 지	전남 00군 00면	공사규모	저수지 제방등 여수로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삭기(무한궤도형, 20.1Ton)로 운비(저수지 철재수문, 260Kg, 1.0m×1.0m)를 인양. 설치중 굴삭기 버킷이 떨어져 하부로 이동하던 피재자 2명을 강타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굴삭기 버킷 탈락방지를 위한 안전핀 설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삭기 버킷의 결합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유압으로 작동 되는 퀵커플러는 이중 잠금장치(유압 체크밸브, 안전핀)를 설치하여 유압이 해제될 경우에도 버킷이 이탈되지 않도록 연결상태를 확인 하고 안전핀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p>○ 차량계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삭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을 취급 할 경우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과 중량물 취급시 떨어짐 재해 등 예방계획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함.
------	----------------------------------------------------------------------------------------------------------------------------------------------------------------------------------------------------------------------------------------------------------------------------------------------------------------------------------------------------------------------------------------------------------------------------------------------------------------

■ 가설울타리 해체중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 11. 07. (목) 14:40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북 군산시 산북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18층 14개동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보통인부(남, 58세)가 철골기둥과 강관파이프로 울을 만들어 방음재와 분진망으로 설치된 가설울타리를 해체하기 위해 방음벽 위에 있는 강관파이프를 밟고 강관파이프를 걸속한 클램프 등을 풀고 강관파이프를 해체 또는 이동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5m하부 아스팔트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추락방지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울타리를 해체하는 공사로 해체하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작업발판과 안전대 걸이설비로 작업하는 것은 추락재해를 방지 할 수 없는바 적극적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별도의 안전대 걸이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하고 - 재해현장의 작업상 비계를 설치할수 없는 조건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작업시간이 짧고 이동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소작업대차를 작업발판 삼아 해체작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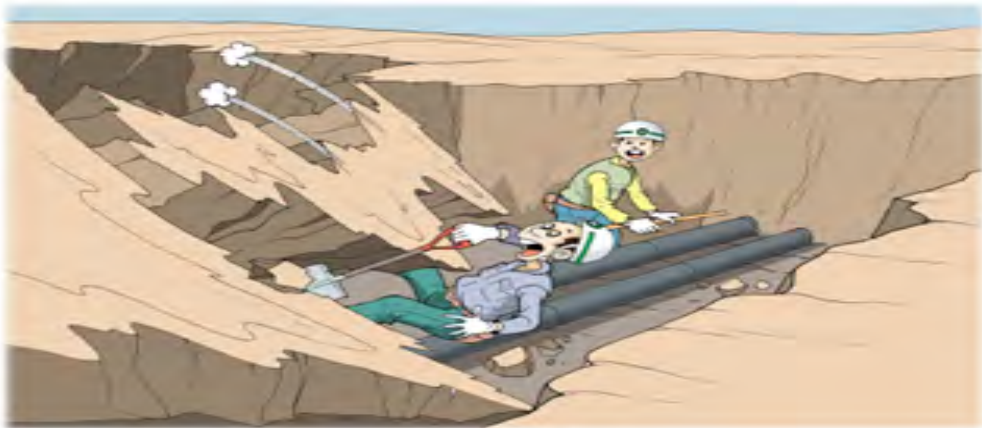
■ 테트라포트(TTP) 사이에 협착

공 사 명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공사(○공구)	발생일시	2013. 12. 09.(월)10:10분경
재해형태	협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공사규모	71억원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00건설(주) 00국가산업단지 00지구 조성공사 (0공구)에서 근로자 이**(남, 45세, TTP공)이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테트라포트 작업 중 TTP와 TTP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지휘자 업무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작업자의 위치, 신호수의 위치, 크레인 작업반경내 타 근로자 접근 유무등 재해발생예방을 위한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터파기 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

공 사 명	○○택지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발생일시	2013. 12. 17. (월) 10:00분경
재해형태	붕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수원시 영통구 00동	공사규모	관로굴착 : 20,478m 케이블설치 : 129,897m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00택지 배전간선 설치공사 현장에서 기)매설된 파형 전선관로(Φ175mm) 파손구간에 대한 보수를 위해 굴삭기(0.6m³)를 이용한 굴삭 작업후 근로자 2명이 터파기 저면*깊이 약2.2m)에서 삽을 이용하여 파형전선관로 사이의 잔토 제거작업을 하던 중 터파기 사면의 토사 일부가 붕괴되면서 피재자 000(31세, 남, 인부)의 하반신이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지반의 지질상태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붕괴위험 방지조치 철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반의 종류</th> <th>기울기</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보통흙</td> <td>습 지</td> <td>1:1 ~ 1:1.5</td> </tr> <tr> <td>건 지</td> <td>1:0.5 ~ 1:1</td> </tr> <tr> <td rowspan="3">암 반</td> <td>풍화암</td> <td>1:0.8</td> </tr> <tr> <td>연 암</td> <td>1:0.5</td> </tr> <tr> <td>경 암</td> <td>1:0.3</td> </tr> </tbody> </table>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제1항 별표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등을 설치하여 붕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 지	1:1 ~ 1:1.5	건 지	1:0.5 ~ 1:1	암 반	풍화암	1:0.8	연 암	1:0.5	경 암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 지	1:1 ~ 1:1.5													
	건 지	1:0.5 ~ 1:1													
암 반	풍화암	1:0.8													
	연 암	1:0.5													
	경 암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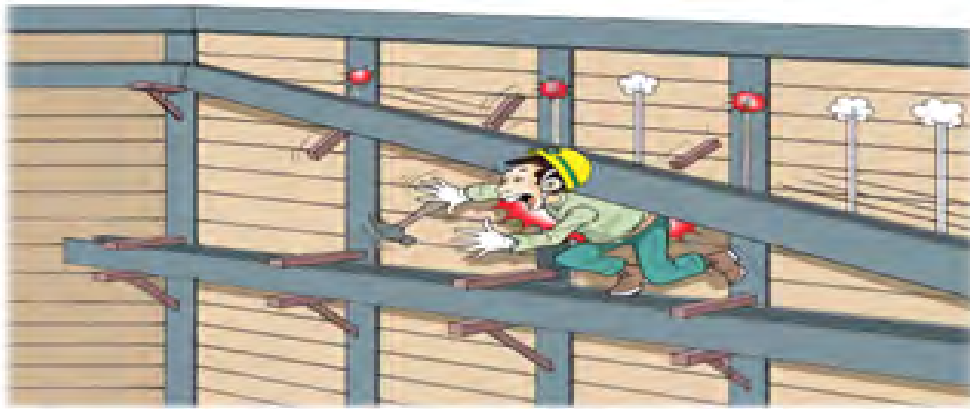
■ 외부비계 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개인공사	발생일시	2014.03.01.(토)08:50분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김천시 모양동	공사규모	지상4층, 1개동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김천시 모양동 소재 개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지상4층 내부에서 자재를 옥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외부비계 위에 자재(각반, 동바리, 비계파이프등)를 적치하고 창문을 밟고 외부비계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비계와 구조물 40cm사이로 떨어져 (10m)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3.3일(월) 17:20분경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개구부 등의 추락방지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비계와 구조물 사이(40cm_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추락방망을 설치하거나 - 안전대, 안전모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대 걸이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띠장 보결이 탈락으로 근로자 타격

공 사 명	00-00간 도시철도	발생일시	2014.01.09.(목)09:55분경
재해형태	물체에 맞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 강북구 00동	공사규모	총연장 : 1,908m 차량기기1개소, 정거장3개소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000(남, 형틀목공, 61세)가 차량기기 4번째 Span 구간의 흠막이지보공인 3단 띠장을 밟고 외벽 거푸집 설치작업중, 2단 띠장(H빔-300×305×15×15, 길이 10m, 무게1.06Ton) 한쪽 끝이 어스앵커 4개소의 대좌 및 띠장을 지지하고 있던 보결이(L형강-90×90×10 용접 시공, 2m간격으로 엄지말뚝마다 설치) 6개소가 탈락되어 약 2.6m아래로 떨어져,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맞아 재해발생 당일 10:40분경 장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흠막이지보공 조립도(설계도)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흠막이지보공 조립도의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 등을 준수하여야 함. <p>○ 붕괴등의 위험방지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흠막이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보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하고 계측 분석결과 토압의 증가등 이상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강 조치 ※ 급격한 온도저하등 가설 강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작업전 점검 및 보수 철저 <p>○ 흠막이지보공 해체 작업계획서 작성등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진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흠막이지보공의 일부를 절단, 해체하여야 할 경우 부재의 적합한 작업 방법 및 순서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고, 절단후 부재의 손상 및 변형 여부등을 면밀히 점검, 보수하여 흠막이지보공 접속부의 탈락을 예방하여야 함.
------	----------------------------------------------------------------------------------------------------------------------------------------------------------------------------------------------------------------------------------------------------------------------------------------------------------------------------------------------------------------------------------------------------------------------------------------------------------------------------------------------------------------------------------------------------------------------------------------------------------------------------------------------------------------------------------------------------------------------------------------------------------------------

■ 굴삭기 작업 중 전도

공 사 명	○○사업시설공사 A지역	발생일시	2014.03.10.(월)11:15분경
재해형태	전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00리	공사규모	지상1층, 1개동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00건설산업(주)가 시공하는 00사업 시설 공사 A지역 현장에서 재해자(남, 56세, 굴삭기기사)가 경사면(15도 이상)에서 굴삭기(0.15m³)를 운전하여 다음 작업구간으로 이동중 굴삭기가 무게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재해자가 인근의 나무와 좌석 뒤의 프레임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삭기(0.15m³)를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설치 작업시 경사면에서 굴삭기가 전도되어 운전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 기울기 최소화, 배수로 요철부 평탄화, 바닥정리등 기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함. - 굴삭기(0.15m³)를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설치 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경사면등 지형·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경사면에서 전도 방지를 위한 세부 운행경로가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콘크리트 타설 중 펌프카 붐대가 인부를 가격(사망)

공 사 명	○○아파트 시설공사	발생일시	2012. 11. 21. (수) 10:30분경
재해형태	부딪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00동	공사규모	아파트 19개동 (지하2층~지상10층)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1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중 펌프카를 지지하던 전면 좌측 아웃트리거 하부의 지반이 침하, 펌프카가 기울어 지면서 붐대가 하강하여 피해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계 건설기계(펌프카)의 아웃트리거를 연약한 지반에 거치할 때는 연약한 지반을 제거하고 잡석으로 치환한 후 아웃트리거 하부에 충분한 면적의 철판 설치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반침하 방지조치를 철저히 할 것. 		

■ 고사목 제거작업 중 사고발생

공 사 명	00리조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2. 10. 31. (수) 10:05분경
재해형태	맞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포천시 00리	공사규모	고사목 제거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사목 제거(벌목) 작업중, 고사목을 쓰러트리는 과정에서 고사목이 주변에 놓인 바위에 부딪히면서 고사목의 뒷 부분이 튀어올라 피해자의 두부를 때려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작업을 할때에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위험 상황 발생시 근로자가 대피하도록 조치 - 벌목작업등 넘어짐, 맞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머리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모 착용 		

■ **옹벽 거푸집 해체작업 중 배면토사 붕괴**

공 사 명	00부지정지공사	발생일시	2012. 11. 05.(월) 12:40분경
재해형태	무너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00동	공사규모	부지조성 : 11,220㎡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현장 북측 옹벽 배면부위(깊이약 2.4m) 거푸집 해체 작업중 옹벽배면 부위의 3㎡ 정도 토사가 무너지면서 피해자가 매몰 사망됨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벽등의 설치를 위해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토질의 종류 및 특성 등에 적합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보통흙 → 1:1) 지반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등의 변화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지하층 천장에 시공된 우레아폼에 화재발생

공 사 명	00건립공사	발생일시	2012.08..13(월)11:10분경
재해형태	화재	재해정도	사망 4명, 부상 9명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00동	공사규모	지하3층, 지상3층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지하층 천장에 시공된 우레아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유독가스 중독등으로 인하여 4명이 사망, 9명 부상 재해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전기 사용시 작업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전기불꽃 발생 또는 과열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등을 사용 금지 -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필요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화재감지기 및 경보기 설치) 		

■ 콘크리트 파쇄작업 중 감전

공 사 명	00철거공사	발생일시	2013.07..12(금)14:00경
재해형태	감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사상구 00동	공사규모	지상1층 3개동 철거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시 사상구 00동 소재 (주)00/00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보통인부, 24세, 남) 파괴헤머(Rotary Hammer)를 사용하여 철골기둥 하부의 콘크리트를 파쇄하던중 파괴헤머에 접촉 감전,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후화된 배선은 배선의 교체, 절연테이핑등 감전 방지조치하고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 -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 300mA이하, 작동시간 : 0.03 sec이내)를 설치하여 사용 		

■ 분전반 내에 전선로 신설작업 중 감전

공 사 명	○○연결도로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9.09.22(화) 14:48분경
재해형태	감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공사규모	터널(L=110m)
재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공인 피재자 등 3명이 수전설비 내부 22,900 / 440V 변압기 후단의 분전반 내에 차단기 2차측 440V 전선로 신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440V로 충전되어 있는 차단기 1차측 동바(Copper Bus-Bar)에 머리부분이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p>- 440V 분전반 내에서 전선로 설치작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전 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로를 정전시키거나, 절연고무 장갑, 절연화, 절연안전모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p>		

제 5 절 환경관리

1. 개 요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자연 및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계획서 검토 : 별지 제24-8호 및 부록 #3-1호 참조

가. 공사감독관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 지질,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아래의 내용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 ·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 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 · 관리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중 환경관리 PROCESS

구 분	PROCESS	입력사항	업무절차	출력사항					
착 공 전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환경영향 검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인허가 사항 파악</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환경관리 계획수립</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관련 문서 - 환경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환경영향을 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파악 및 중대성평가 - 환경관련 법규/요구조건 파악 - 예상 민원 파악하여 민원현황MAP 작성 * 환경영향을 저감키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저감 방안 수립 - 수질오염저감 방안 수립 -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 운영관리 지침서 작성 * 환경인허가 사항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세부이행 계획서 - 환경질 측정계획 - 민원관리 계획 					
					공 사 중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방지시설설치 및 저감방안이행</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환경관리 이행</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이행 계획 - 환경점검 계획 - 민원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공시팀은 세부이행계획에 따른 저감방안을 실행한다. * 환경관리자는 환경관리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 환경관리자는 환경관리상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 일지 - 점검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발견된 부적합사항은 부적합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기록은 유지 관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세부 운영계획 					

3. 현장 환경관리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계획서의 운영담당자(환경담당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 혹은 환경관련 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확인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자연환경 보전

1) 지하수 보호

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라)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폐공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토 양

가) 시공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바. 생활환경 보전

1) 수 질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라)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중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마)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바) 시공자는 건설공사 수행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사) 시공자는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소음·진동
- 가)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나) 시공자는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이동소음의 규제)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 3) 분진방지
-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 (2)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 (3)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 (4)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 (5)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
 - (6)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 (7) 발파시에는 발파공에 발파에 의한 비산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덮고 발파시행
- (8)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4) 대기질

- 가) 시공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시공자는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는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공사현장 폐기물관리

가. 배출자의 의무

시공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법률과 규정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의무

- 가) 적용대상 :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수탁처리능력 확인의 의무

- 가) 폐기물처리업체가 기준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

- 나) 수탁 처리업체로부터 징수한 아래의 서류를 토대로 확인

- (1) 수탁처리능력 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참조)
- (2) 폐기물처리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 (3)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3)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4) 기타 법령에서 정한 배출자의 의무

- 나. 시공자는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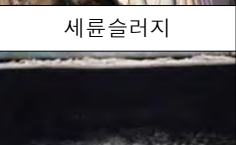


라.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발생 공종	처리방법	관리사항
 폐콘크리트	골조, 철콘, 철거 및 콘크리트 타설 시	파쇄 후 순환골재 재활용	* 콘크리트 타설 시 - 펌프카 내 잔여콘크리트 처리는 마지막 물차 대기 후 회수 - 현장내 일정공간을 마련 후, 구덩이에 청탐지를 보양하여 폐콘으로 처리 * 야적 시 방진덮개 조치 후 보관
 폐아스콘	토목, 철거	파쇄 후 순환골재 재활용	* 야적 시 방진덮개 조치 후 보관 * 폐콘크리트와 분리하여 보관
 폐기와	철거	매립 또는 파쇄 후 순환골재 생산	* 지장물 철거, 조적시를 제외하곤 발생량 거의 없음
 폐목재	골조, 마감	파쇄 후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	* 규정된 틀을 제작하여 반출해야 즉시 반출 가능 * 페인트, 기름 등 묻지 아니한 폐목재는 인근농가의 화목으로 제공 가능(날짜, 수량, 인수자 등이 명기된 확인서 비치)
 폐섬유	판넬, 철거 토목, 철콘 등	소각 또는 매립	* 흡음재, 단열재는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확인 후, 위탁(소각, 매립)처리. * 주로 암면과 유리섬유, 부직포 등임.
 폐벽지	마감, 철거	소각	-
 폐합성수지	전 공종	소각 또는 재활용	* 폐장판, 페스티로폼, 페비닐, 폐전선 등 * 페스티로폼의 처리 - 스티로폼 잔재물 : 재사용 가능할 경우 납품업체 회수, 폐기물처리 시 재활용업체 위탁처리 - 압축스티로폼(아이소핑크) : 재활용이 불가하므로 폐합성수지(소각)로 위탁처리

폐기물	발생 공종	처리방법	관리사항
 폐벽돌, 페블럭	철거, 조적	매립 또는 파쇄 후 순환골재생 산	* 지장물철거 시를 제외하곤 발생량 거 의 없음
 폐금속류	잡철, 철콘 가시설	고철·비철 재활용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시 폐기물 종류에서 제외되며, 인계서를 발행하 지 않으나 건설폐기물관리대장에 위탁 량 기재, 페인트가 잔존하지 않는 통 은 고철로 처리 가능
 건설폐토석	토공, 세륜슬러지	매립 또는 재활용	* 위탁매립 : 유해물질함유기준 성분분 석 후 위탁하여 처리 * 현장내 재활용 : 유해물질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성분분석 후 모두 기준이 내일 경우 현장내성토재 재활용 (함수율 70%이하, 일반토사와 1:1 혼합)
 건설오니	기초공사 (페벤토나이트 등)	매립 또는 재활용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 처리방법은 건설폐토석과 동일
 혼합건설폐기물	판넬, 미장 등	매립 또는 선별후 파쇄, 소각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를 말하되 다음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 ① 불연성폐기물(95% 이상) + 가연성과 기타폐기물(5% 이하)일 것. ② 기타 폐기물(95% 이상) + 가연성폐기 물(5% 이하) 일 것.
 폐보드류	수장, 철거	매립 또는 재활용	* 잘 부서지므로 발생 즉시 별도 보관 - 받침목 위에 석고보드 보호판 보양 후, 그 위에 폐석고보드 적재 (크기 : 1.8×0.9×1.5) * 폐보드류로 위탁처리 (생산업체로 재활용처리)
 입목폐기물	토목	소각 또는 재활용	* 현장 임목 제거 시 줄기부분을 제외한 뿌리와 가지부분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 * 자연건조시켜 무게를 최소화할 것이며, 보관 시 분진망을 덮어 토사의 비산을 예방 *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는 베어서 톱밥, 칩 제 조기활용 1.5cm 이하로 현장내 분쇄

폐기물	발생 공종	처리방법	관리사항
 폐 페인트	도장, 방수	고온소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장업체에서 지정폐기물 신고 후, 주기적으로 위탁처리(보관기일 준수 : 45일) * 페페인트용기내 남은 페인트 잔량이 (건조 완료) 6mm 이하시 고철로 처리
 폐유	토목, 도장, 방수	고온소각 또는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체는 지정폐기물신고 실시 * 기준에 적합한 지정폐기물보관소 설치 * 보관기간 45일 준수 * 적절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내용물이 100% 제거된 경우 고철처리
 폐석면	철거	고형화처리 후 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신고 실시 * 비닐 또는 포대에 담아 밀봉 보관 * 적절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작업 후 가급적 당일 배출 * 지정폐기물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
 세륜슬러지	세륜기	매립 또는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륜슬러지는 반드시 지정된 슬러지건조시설에 보관(마대 보관하는 것이 관리측면에 효율적임) * 세륜기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출입구 및 세륜슬러지 보관상태 수시 확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종류 : 건설폐토석 또는 건설오니)
 갈탄재	골조, 철콘 콘크리트 보양시	관리형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탄난로에는 반드시 수거가 용이하도록 재받이 설치 * 지자체와 협의 후, 처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 미만일 경우 : 종량제 봉투(생활폐기물) - 5톤 이상일 경우 : 그 밖의 건설폐기물
 숏크리트	터널공사	파쇄 후 순환골재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숏크리트는 페콘크리트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암버력과 숏크리트 잔재물의 분리보관
 폐수처리시설오니	폐수처리 시설	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업체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신고 후 처리

바. 폐기물관리 우수사례

	
<p>폐기물분리보관소 설치</p>	<p>폐기물분리보관소 설치</p>
	
<p>유류저장소 누유방지 흡착포 설치</p>	<p>그라우팅작업 시 바닥 천막 보양</p>
	
<p>장비 누유 방지를 위한 하부 천막 보양</p>	<p>발전기 누유 방지 조치</p>
	
<p>세륜슬러지 성분분석</p>	<p>암롤박스 침출수 방지 덮개 설치</p>

	
<p>종량제 봉투집하장</p>	<p>종량제 봉투집하장</p>
	
<p>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함</p>	<p>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함</p>
	
<p>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함</p>	<p>종이류 보관함</p>
	
<p>청소도구 걸이대</p>	<p>폐기물 분류 표지판</p>

사. 주요 질의 응답

1) 대기

제목	건설업 공동도급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주체 및 행정처분 대상 여부
질문	건설 공사에서 공동도급(A, B, C사)하여 대표사A단독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신고 후 시공 및 공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도급사간에 별도시공 및 관리하기로 한 바, 이 경우 B사와 C사는 별도 시공 및 관리하기로 한 담당 공사구간을 착공하기 전에 별도로 행정기관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 대표사의 단독명의 신고만으로 의무이행이 될 수 있다면, C사의 시공구간에서 C사가 비산먼지발생 억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도급 형태로 시행 할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업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혹은 대표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으며, 공동 도급한 사업의 내용과 책임의 소재가 원도급업자별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에 있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법적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를 대표사로 하였다가 공동으로 또는 각 회사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목	건축공사 분할발주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여부
질문	건축물 신축 2,000m ² 규모 공사인데 당초 비산먼지신고를 한 회사는 A건설사로1차분 건축 1,100m ² 발주 후 시공하고 있는 현장으로, 2차분 공사발주 (900m ²)를 B건설사에서 낙찰하여 현재 착공 후 중지 상태에 있는 현장으로서, - A건설사 준공 이후 B건설사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2차 낙찰분(900m ²)은 건축물로서 1,000m ² 미만에 해당되어 신고 제외 대상인지?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7조 [별표 13] 비고에서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총 공사 규모가 연면적 1,000m ² 이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입니다.

제목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의 범위
질문	공사면적 합계가 1,000m ²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는 바, 궁금한 것은 단순성토를 비롯하여 농지정리를 위한 모든 토공사 및 정지공사가 비산먼지발생 제외 대상인지, 제외대상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 만큼은 예외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사업으로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별표에서 말하는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란 토양개량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객토·성토 등을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말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내 공사차량 운행속도 준수 여부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하여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의 통행 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할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위 기준은 현장 내의 비포장 도로에만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현장 내 일지라도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완료한 도로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4] 3. 수송 '사' 항에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포장도로 또는 비포장도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조치기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수 질

제목	오수처리시설 직렬연결의 용량증설 인정 여부
질문	20 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던 중,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50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20톤 오수처리시설 후단에 50톤을 직렬로 연결할 경우 70톤 용량증설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처럼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새로운 오수처리시설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리시설의 용량변경은 유량 조정조, 반응조 등이 70톤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목	50m3 미만 오수처리시설이 3개인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질문	한 업체에 50m3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 3개가 있는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별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의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6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50m3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3개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을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합산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목	시험실 양생수 처리에 관하여..
질문	시험실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콘크리트 양생수를 일정량 배수 또는 오수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 1회 약 90L를 방류 예정이며 PH8.6이내로 관리하며 금붕어를 수조안에서 키우며 폐사율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주1회 방류량이90L 이하, PH8.6이하 이며 금붕어(금붕어 생존 PH 6-8)폐사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 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및 제2호의 79) 이화학 시험시설 규정에 따라 1일 최대폐수발생량이 일정량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0.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하는 경우 0.01㎥)인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의 경우 양생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목	약품처리한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조슬러지 처리 방법 문의
질문	<p>생물학적처리(장기폭기법)를 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서 총인(T-P) 제거를 위하여 약품(가성소다, 황산반토, 응집제(폴리머 등)을 사용한 응집 침전 처리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p> <p>이경우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러지는 농축조로 이송시킨 후 분뇨.정화조 청소업체에 수시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p> <p>아니면 약품이 투입 되었기 때문에 분뇨.정화조 청소업체가 아닌 폐수수탁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지요?</p> <p>만약 슬러지 탈수시설을 갖추어 발생된 슬러지를 탈수한 후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오니로 위탁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p>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발생 슬러지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탈수시설 등을 갖추어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수질 기준
질문	<p>현장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현장 2. 침사지 설치 및 관리중임 3.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중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 SS 4. 예상처리효율 : 70% <p>상기와 같이 신고되어있으며 2012년 상반기 실시한 수질시험결과 SS의 처리효율이 약 50%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입구의 SS농도가 평균 3.5 mg/L 로 해역수질기준 1등급(10이하) 및 하천수질기준 1등급(25이하)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p> <p>이와 같은 경우에도 처리효율 미달에 따른 후속조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p>
답변	<p>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TSS의 연간 제거효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위시설의 연간 TSS 제거효율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러 시설을 조합하여 TSS 연간 제거효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경우 SS농도(3.5mg/L)가 양호한 편으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p>

3) 토양

제목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질문	<p>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토양이 1지역, 2지역, 3지역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을 경우 오염토양의 정확기준을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p>
답변	<p>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적 공부상 지목이 “답” “임야” “공장” 인 경우 각 지목에 맞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p>

제목	정화토양의 매립토 또는 성토재 재사용
질문	3지역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을 정화 완료하고, 정화토양을 매립토나성토재로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정화가 완료된 토양이므로 매립토나성토재로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정화토양을 매립토나성토재로 재사용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 [별표 3] 에 따라 지역별(1, 2,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폐기물

제목	준설토의 폐기물 해당여부
질문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수심을 조절하고 방파제를 해체 및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건설공사 외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탁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폐기물이 아닌 자연상태의 준설토를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제목	숏크리트 분류
질문	당 현장은 터널작업구간으로서 내부에서 숏크리트 공정 후 숏크리트를위탁처리할 예정인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터널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숏크리트 폐기물은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제목	폐기물 종류 및 처리절차
질문	공장 내 도로 표층인 아스콘을 건설폐기물인 페아스콘으로 처리 후 기층 및 보조기층인 슬래그의 폐기물 구분과 폐기물 종류,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강슬래그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됩니다.

제목	해상터파기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질문	해상에 교량건설 중 교각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하며, 나.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됩니다. 다. 다만, 수중 터파기공사 중 배출된 수중토사 중 자연상태의 것은 폐기물(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설오니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제목	방수재의 건설폐기물 해당여부
질문	현장에서 철거를 진행하는 중 지붕 함석 아래 시공되었던 아스팔트슈트 방수재가 발생하는데 기름성분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아스팔트슈트(지붕 방수용도)는 건설폐기물종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참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름성분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 및 사업장일반폐기물(기름성분을 5퍼센트 미만 함유)로 분류하여야 됩니다.

제목	폐기물처리자의 불법행위 시 책임 범위
질문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부적정(불법매립 등) 처리한 경우 배출자 및 운반자도 처벌을 받는지?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 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 수탁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며, 운반자도 적법하게 처리업자에게 운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해당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제목	PCBs 함유 폐기물 처리 관련
질문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용접기(조선소 용접용, 절연유량 65 L)를 폐기 시 분석비 및 처리비용 등을 고려할때PCBs 시험분석을 하지 않고 모두 2 PPM 이상의 관리대상기기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분석성적서 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PCBs함유 폐변압기 등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기기별로 성분분석을 실시하되, 제품 구입시 해당 제품의 PCB함유 폐기물 분석결과서가 있는 경우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PCBs 함유 폐변압기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변압기 등 PCBs 함유 기기를 시험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모두 2PPM 이상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제목	지정폐기물 등 처리 주체
질문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임대업자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경우 월 평균 폐유가 120kg 이 발생될 때 처리 주체는 누가 되는지?
답변	건설공사를 위한 장비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 통)에 대한 처리의무는 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제목	해상터파기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질문	해상에 교량건설 중 교각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가. “건설폐기물”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하며, 나.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됩니다. 다. 다만, 수중 터파기공사 중 배출된 수중토사 중 자연상태의 것은 폐기물(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설오니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제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질문	당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파쇄기 설치의 직접 설치·운영의 의미가 배출자 소속의 근로자가 직접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와의 외주계약에 의하여 관리 운영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제목	이동식 파쇄기 소재지 변경신고
질문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변경신고의 경우 동일면 소재지이나 번지가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승인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주소지 모두 포함)가 변경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목	추가 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 주체
질문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설계 이외의 폐기물은 발생 원인자인 시공회사가 배출자가 되어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회사가 배출자가 된다면 배출신고 주체를 시공사로 하여 관할 행정관공서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설계 이외의 건설폐기물처리 주체가 폐기물 발생원인 주체인 시공회사가 될 수 없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p>가.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추가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p> <p>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발주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발주자로 한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비용계상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p>

제목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분리발주 대상인 국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및 페아스콘에 대하여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하여 당 현장 시공사(원도급사)에서 파쇄(100mm이하)하여 성토재로 활용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p>가.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자는 발주자를 말합니다.</p> <p>나. 분리발주 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배출자 신고는 반드시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p>

제목	폐철강 슬래그 처리
질문	폐슬래그가 사업장폐기물인지 건설폐기물인지 여부?
답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철강슬래그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됩니다.

제목	공사용 가설도로에 재생골재 문의
질문	사유지를 임대 후 가설도로용으로 재생골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공사종료 후 재생골재를 처리할 때 폐기물로 봐야하는지 여부?
답변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종료 후 동 순환골재를 회수하여 다른 장소에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한 골재에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순환골재라면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제목	과거 매립폐기물 처리
질문	단지개발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성분분석결과 중량비 기준으로 가연성 2%, 불연성 1%, 페콘·페블럭 등37%, 토사 6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어느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지? 매립폐기물의 처리방법에는 현장선별이송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현장선별이송처리가 가능한 경우 현장선별 행위 주체는 사업시행자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누구인지? 현장선별이송처리 적용 시 선별장치를 통과한 선별토사(페토사)가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와는 별도로 분리발주공사 대상인지?
답변	<p>가.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p> <p>다만, 건설폐재류·페토사 등이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나.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흙, 모래, 자갈 등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토석(자연상태의 것 제외)에 해당되며, 자연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페콘크리트·페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p> <p>다. 동 매립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량이송처리 또는 현장선별이송처리 여부는 공사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리·선별시설의 운영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p> <p>라.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건설교통부 공고 2005-266호, 2005.8.25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p>

제목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질문	임시 야적장을 지정, 운영하고자 할 때 별도 신고여부?
답변	가. 배출자가 스스로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장소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이어야 합니다.(별도의 신고절차 없음) 나.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건설공사 현장내에서의 폐기물 운반시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나,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목	교량공사시 발생한 미세한 돌가루 처리
질문	도로공사장의 교량공사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미세한 돌가루들이 강으로 배출되어 흐르는 강 밑으로 침전물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침전물을 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교량공사시 파일을 박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돌가루가 강 밑에 침전되었다면 침전물은 건설오물로 분류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제목	지하구조물 처리
질문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지하 방석과 지하 구조물을 매립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가.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폐기물이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정확조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목	콘크리트 가루 처리방법
질문	도로, 교량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현재 교량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연마작업(면갈이)을 하고 있는데 연마기에 붙어있는 집진기를 통해 폐콘크리트 가루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가루(분말형태)의 처리방법 여부?
답변	가.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합니다. 5톤 미만은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그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합니다. 나. 폐콘크리트 가루는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제목	건설폐기물인계서 및 건설폐기물인계서의 차이
질문	건설폐기물인계서는 건설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한지? 건설폐기물인계서와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4·6장짜리 인계서 사용 시 지도상 직선 몇 km밖에서 가져와야 사용가능한지?
답변	가.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페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 4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그 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매)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6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목	벤토나이트함유 토사 처리방법
질문	도심지 토공사의 경우 주변지반 침하를 대비해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 지하연속벽(slurry wall)공법으로 굴착공사를 진행합니다. 토사와 벤토나이트가 혼합되어 나오는데 이 토립자를 일반토사와 함께 매립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발생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액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무기성오니)에 해당되며,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합니다.

제목	상수관로 내 부착된 담치류 및 이토의 폐기물 처리 여부
질문	상기 공사에는 기존 관내에 이물질 제거하는 선행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 관내에 부착된 담치류(조개류)와 관내 누적된 이토(찌꺼기)의 적정처리 여부? 상기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리부문에 있어서 공사와 별도로 분리발주 대상인지 여부?
답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로, 건설공사의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토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오염물질(담치류 및 폐토사)을 제거하는 목적의 상수관 내부갱생공사인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건설폐기물(건설오니)로 분류되며, 동 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하여야 합니다.

제목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 문의
질문	건설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p>가. 건설공사의 준공 후 건설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이상인 경우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시의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기준은 귀사에서 직접 건설공사 후 준공을 마친 각각의 단위(단지나 블록, 단지나 블록에 관계없이 전체아파트) 현장별로 발생량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p> <p>나.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의 경우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는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그 외 민간업자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p> <p>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3일 이내)하기 전(즉,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교부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5) 소음진동

제목	공사장 소음측정 지점
질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아파트 내부에서 측정하여도 되는지?
답변	<p>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0-142호)”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 방법’ 에 따라 측정하여야 합니다.</p> <p>따라서, 소음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위 1.2 - 1.5m 지점 또는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합니다.</p>

제 6 절 하도급관리

1. 개 요

가. 건설공사시 수반되는 하도급에 대하여 적당한 하도급 여건을 보장하고 양질의 건축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도급관리 및 대급지급에 공사감독관은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④ 하도급자는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② 시공자는 하도급자가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하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하도급 제한

가.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이다.

2)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나)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 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도서, 산간벽지

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 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나. 전문공사의 하도급

- 1)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며,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 가) 전문건설업자인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 나)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 다) 공사감독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며, 시공자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도급자 또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3) 일반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
 - 가)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나)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 4) 재하도급의 제한
 - 가) 하도급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나) 재하도급 제한의 예외
 - (1)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 (2)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 (3)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

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나.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하도급이행 실태점검

가. 점검 사항

- 1) 불법 하도급 사항
 - 가)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다)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 라) 의무하도급 시행비율 이행여부
 - 마) 시공능력 공시한도내 하도급 시행
 - 바) 기타 불공정 행위
- 2) 하도급대금 사항
 - 가) 하도급자의 노임체불
 - 나) 어음할인료 지급의 적정성
 - 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서류 및 지급 지연
 - 라)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비율
 - 마) 하도급업체 선금지급의 적정성 등

나. 점검기준 및 방법

- 1) 점검시기
 - 가) 하도급이행 실태점검 : 계약 후 2회 실시
 - 나) 수시점검 : 기성검사 또는 현장점검 시 병행 실시
- 2) 점검방법
 - 가) 하도급이행 실태점검표에 의거 점검
 - 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징구
 - 다) 실정에 맞게 공사감독관에 의해 자체점검
 - 라) 감사부서에서 현장점검 시 통합점검함을 원칙
- 3) 준비서류
 - 가) 하도급이행 실태점검표
 - 나) 하도급계약 관련서류

- 다) 설계변경 관련서류
- 라) 하도급 현장대리인 관련서류
- 마)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
 - (1)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통장 사본
 - (2)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등
 - (3) 어음증서, 어음할인료 지급 입증서류 등
 - (4) 기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입증자료 일체
- 4) 점검결과 보고사항 : 하도급이행 실태점검 종합기록표
- 5) 점검결과 조치
 - 가)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마련
 - 나) 지적현황 관리

5. 하도급대가 지급관리

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 1)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2) 시공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4)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자가 자재의 구입, 현장 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이 경우 시공자는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35조)

- 1)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시공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시공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에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공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시공사 및 하도급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나) 하도급자가 시공자를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 시공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라) 시공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시공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부록 #3-2 설계변경 참조)

1) 시공자는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공자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 보존서류 목록

- 1)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 2)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수령증명서
- 3) 선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5)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6)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제 7 절 설계변경

1. 개 요

가.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 및 현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원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을 전제한 공사 집행은 할 수 없다.

나. 관련법령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설계변경 종류 및 절차

가. 발주청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1) 발주청의 장은 관련법규 변경, 사업변경, 공법 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등을 첨부 설계변경을 공사감독관에게 지시한다.
- 2)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감독관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시공자는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등을 고려 검토 확정하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공사감독관은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1) 시공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 변경도면, 개략적인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관은 이를 접수하여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한다.
- 3) 발주청의 장은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한다.
- 4) 발주청의 장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설계변경 도면 및 내역서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설계변경

- 1) 공사감독관은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 단순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라. 설계도서의 오류 및 내역의 착오 계상에 의한 변경

설계변경 승인 건의시 설계자, 설계감독, 공사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의 확인서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공사감독관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시 계약서류와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

다. 공사감독관이 우선 변경 시공토록 할 경우에는 사후에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라.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마.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부록 #3-2 설계변경 서류 참조)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설계변경 신청 발송공문	작성	검토	검토
2. 설계변경 의뢰서	작성	작성	작성
3. 설계변경 사유서	작성	검토	검토
4. 설계변경 증감요약서	작성	검토	검토
5. 설계도면(변경 전·후)	작성	검토	검토
6. 설계변경 증감내역서	작성	검토	검토
7. 변경수량 산출서	작성	검토	검토
8. 일위대가(변경분)	작성	검토	검토
9. 기타 증빙서류	작성	검토	검토

바. “라”의 지시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독관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다”의 서류와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 도서작성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아.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실정보고하고,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계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공사감독관은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당해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공사감독관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가”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 전이라 하여도 공사 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변경 물량을 확인 후 발주청에 지급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참조)

-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나.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요청을 받을 경우 아래 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 3)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출근거
-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 5) 기타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사완공단계

제 1 절 일반사항

1. 개 요

가. 관련법령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 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업무지침 제9절 시공후 단계업무

나. 공사완공단계 세부사항

1) 기성검사	2) 준공검사	3) 시설물 인수·인계
---------	---------	--------------

다. 기성검사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과 기성내역서를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후 기성부분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면 발주청에서는 검사관 임명 후 검사를 실시하고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라.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면 발주청에서는 검사관 임명 후 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는 공사감독관이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기술의 사용부대 전수 등 준공 후 공사목적물이 사용부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 절 기성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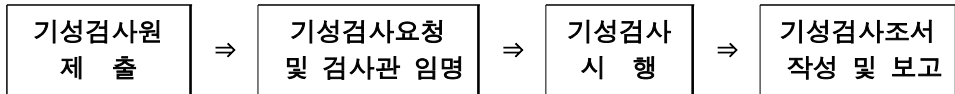
1. 개 요

가. 기성검사는 공사계약에 의거 목적물 완성 전에 그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검사관을 편성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기성검사 절차



2. 기성검사원 제출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독조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독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부록 #4-1 기성/준공검사 신청)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기성검사 신청 발송공문	작성	검토	검토
2. 기성검사원	작성	검토	검토
3. 기성현황	작성	검토	검토

3. 기성검사요청 및 검사관 임명

-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과 기성내역서를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후 기성부분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 나. 발주청은 시공회사의 검사원 접수 후 해당검사관을 임명하고, 검사실시 7일 전까지 시설인수부대장에게 통보하며 검사시행시 입회를 지시한다.
- 다. 입회관은 시설사용부대장교, 또는 동등이상의 직위자 및 감찰/헌병 요원으로, 검사관의 검사업무 과정을 확인하여 검사조서에 기록 서명하며, 검사관의 검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기성검사 시행

- 가. 검사절차
 - 1) 검사관은 공중별 주요검사항목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 2) 기성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기성검사조서에 기록하고 공사감독관은 시공자에게 보완 작업을 지시한다.
 - 3) 검사관은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해당 공사의 감독관이 확인토록 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조치완료 후 결과 보고토록 하되 해당 기성물량에서 제외한다.
- 나. 기성검사 확인사항
 - 1) 기성부분의 내역과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동일여부
 -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 총괄표의 내용
 - 3) 시공법의 적정여부
 - 4) 건설공사 품질시험기구의 비치와 활용도 판단
 - 5) 지급자재의 수불상태
 - 6) 매설된 부분의 시공과정 사진 및 검사기록 서류
 - 7)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의 공사감독관이 비치한 제반 기록에 대한 확인
 - 8)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 9)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 10)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11)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통보대장 확인
 - 12)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성검사 조서의 작성 및 보고

- 가. 검사관은 완료 후 검사조서를 작성한다.(부록 #4-1 기성/준공검사 신청 참조)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기성부분 검사조서	작성	검토	검토
2. 기성부분 감독조서	-	작성	작성
3. 기성부분 검사내역서	작성	검토	검토
4. 0회 기성사진첩	작성	확인	확인
5. 손질 / 지적사항	작성	검토	검토
6. 손질 / 지적사항 완료확인서	작성	확인	확인
7. 손질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진	작성	검토	검토

6. 개산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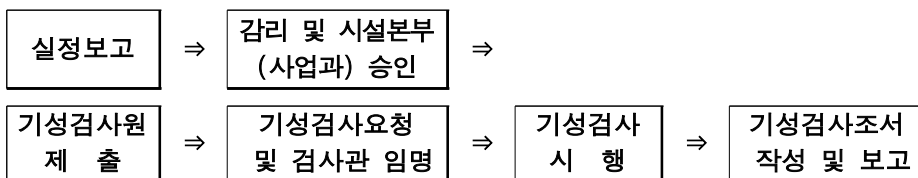
가. 개산급 이란

- ① **국고금관리법 제26조** : 공사 제조 용역계약의 대가,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概算)하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72조** :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 ㉞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즉, 공사의 시공중에 확정기성이 아닌, 개산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 1) 설계변경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시공을 하게 한 경우나,
- 2) 물가변동이 예상되지만 아직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개산급으로 기성을 신청하고, 지급할수 있다

나. 기성검사(개산급) 절차(기성검사원 서류에 개산급으로 신청 명시)



제 3 절 준공검사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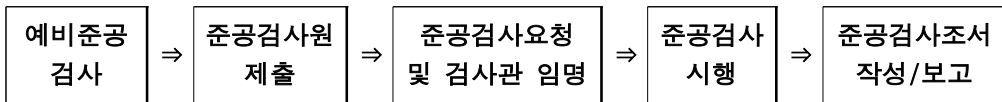
가.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공사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였을 경우 준공 검사관을 편성하여 시공 목적물을 확인하는 것이며 준공대가는 준공부분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4조(검사)
-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준공)
-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가.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기술이 사용 부대 전수 등 준공 후 공사목 물이 사용부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 회사를 지도·감독한다.

다. 준공검사 절차



2. 예비준공검사

가.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 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비준공검사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보완 및 시설물의 시운전 기능을 완료한 후 계약상 준공일에 준공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준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다. 검사시기

- 1) 공사기간 2년 이하 : 준공 15일 전
- 2) 공사기간 2년 초과 : 준공 30일 전

라. 검사관 및 입회관

- 1) 공사감독관을 제외한 시설장교 및 군무원으로 임명(인사명령 조치)하되 준공 검사관 겸임 불가
- 2) 입회관 : 감독관, 검사관, 사용부대 협력관, 헌병 또는 감찰

마.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운전 일정
-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 3) 시운전 절차
-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바.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 1) 기기점검
- 2) 예비운전 및 시운전
- 3) 성능보장운전
- 4) 검수 및 운전인도

아. 공사감독관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 2) 점검항목 점검표
- 3) 운전지침
-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 5) 실가동 Diagram
-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 7) 시험성적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자. 예비준공 검사방법

- 1) 예비준공검사는 공종별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주요검사내용은 전용부위는 물론 공용부위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 건축협의 및 기성검사 및 감사시지시사항 등 계약의 이행 여부확인, 미시공 사항 및 하자 또는 민원발생 우려사항 등에 대해 검사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은 준공판단검사 실시 후 예비준공검사 세부추진계획을 사업담당과로 보고 후 사업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 사전준공검사를 시행한다.
- 3) 검사관은 주요 지적사항을 취합하여 시공자가 보완토록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3. 준공검사원 제출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독조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 #4-1 기성/준공검사 신청 참조)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준공검사 신청 발송공문	작성	검토	검토
2. 준공검사원	작성	검토	검토
3. 예비검사 조치완료결과보고서	작성	확인	확인
4. 기성금액 지불현황	작성	검토	검토

나. 시공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시 공사감독관은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1) 건설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명, 품질, 규격 및 특별히 시험을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 계약내용이 합치되는가 여부
- 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의 적정성
- 3) 준공물량, 부대조변자재의 잉여자재 조치현황
- 4) 준공안전검사 시행여부(예 : 전기사용 전 검사 등)
- 5)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6) 기타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준공검사의 요청 및 검사관 임명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는 시공회사가 제출한 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의 시행

가. 공사감독관은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1) 공사감독관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2)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 3) 준공검사관은 준공 검사 시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을 확인한다.
- 4) 준공검사관은 검사 시 지적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적사항 조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공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 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5)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시 구조, 기능 및 재료의 변경이 단순한 시공상의 물량 증감사항은 정산 처리한다.
- 6) 세부확인 검사사항
 -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 라) 건축협회의 조건사항 이행상태
 -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 서류 처리상태
 - 사) 인·허가 완료상태
 - 아)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 자)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 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나. 준공표지의 설치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 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한다.

6. 준공검사조서의 작성 및 보고(부록 #4-1 기성/준공검사 신청 참조)

가. 준공검사관은 검사완료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서 류 명	시공자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준공검사조서	작성	검토	검토
2. 준공검사 내용조서	작성	검토	검토
3. 원가계산서	작성	검토	검토
4. 감독관 준공감독조서	-	작성	작성
5. 손질 / 지적사항	작성	검토	검토
6. 손질 / 지적사항 완료확인서	작성	확인	확인
7.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확인	확인
8. 감액이유서	작성	검토	검토
9. 준공 사진첩	작성	확인	확인

나.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시 구조, 기능 및 재료의 변경이 단순한 물량 증감사항은 정산 처리 한다.

제 4 절 시설물 인수·인계업무

1. 개 요

가.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기술을 사용부대 전수 등 준공 후 공사목적물이 사용부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 1)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제59조(시설물 인수·인계)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유지·관리)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6. 안전점검·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시설물 인수·인계(부록 #4-2 시설물 인수·인계 참조)

가.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나) 기능점검 절차
 -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 5) 특기사항

나. 공사감독관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의 장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공사감독관은 사용부대와 시공사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 라. 공사감독관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사용부대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 마. 공사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사용부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에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문서 인수·인계(부록 #4-3 현장문서 인수·인계 참조)

공사감독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서류 중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가. 준공사진첩
- 나. 준공도면
- 다.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일 경우)
-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마. 기자재 구매서류
- 바. 시설물 인수·인계서
-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공사감독관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나.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 다. 시설물유지관리지침
- 라. 특기사항

제 5 절 준공재산 자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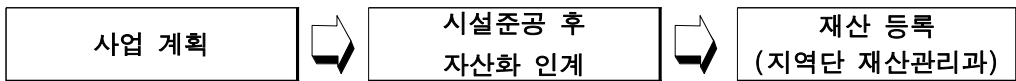
1. 개 요

준공된 설비 및 감리용역, 공사에 대한 자산은 시설정보체계 / PMIS를 통해 준공년도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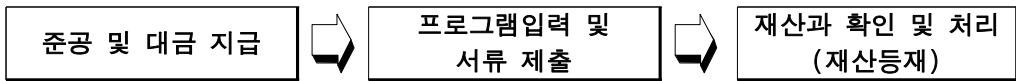
2. 자산화 대상 및 절차

가. 대상사업 : 신축공사, 대규모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자산화 절차



다. 자산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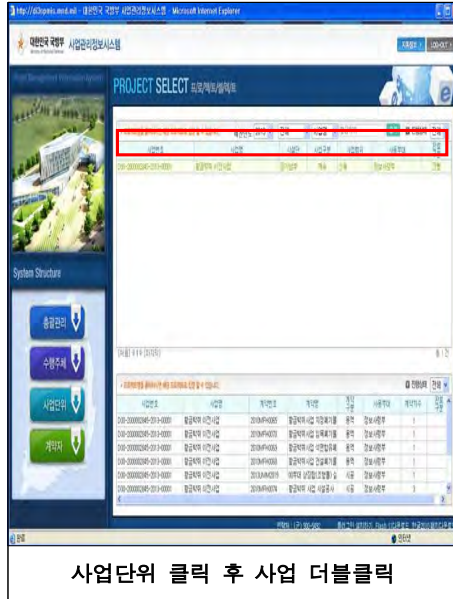
3. 자산화 방법

가. 시설정보체계 이용

- 1) 시설통합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 2) 준비서류(부록 #4-3 현장문서 인수·인계 참조)
 - 가) 자산화 인계서
 - 나) 준공검사 조서 (총차수 또는 각차수 준공검사 조서)
- 3) 부대별 건설중인 자산 확인
- 4) 감독관 정보 입력
- 5) 준공검사 정보 입력
- 6) 공사지출금 정보 확인
 - * 준공검사 조서(총차 또는 각차수)와 시설정보체계 지출 금액 일치여부 확인
- 7) 인계 정보 작성
- 8) 인계인수 전송

나. PMIS 이용

1) 최초 입장방법



※ 사업구분이 완료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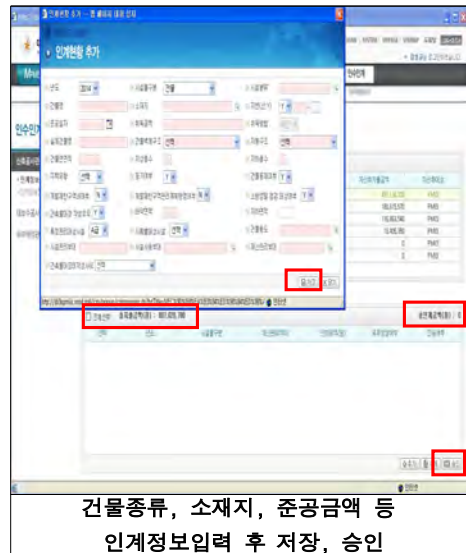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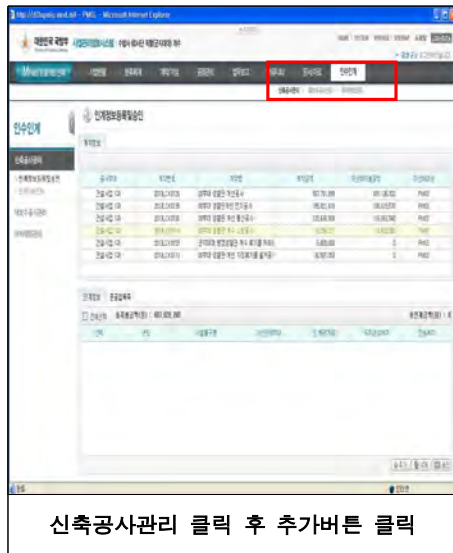
- 사업현황 ⇨ 사업정보관리 ⇨ 사업종료구분을 완료로 변경

2) 신축공사 자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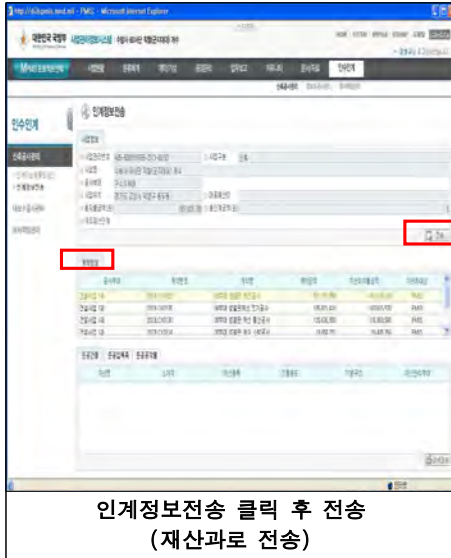
가) 인계인수시 총 인계금액과 총 지출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나) 빨간색 빈칸은 필수사항이며 소재지 검색시 최소단위로 검색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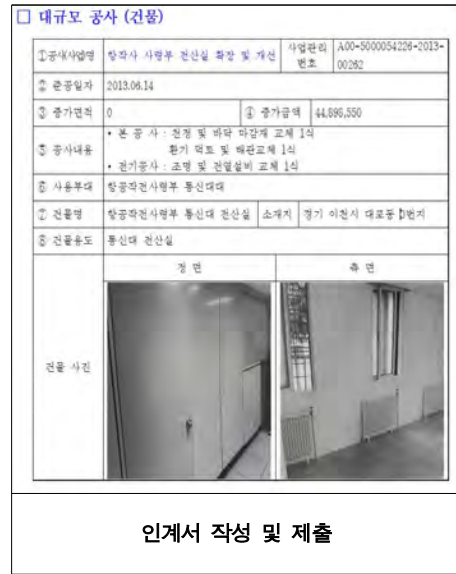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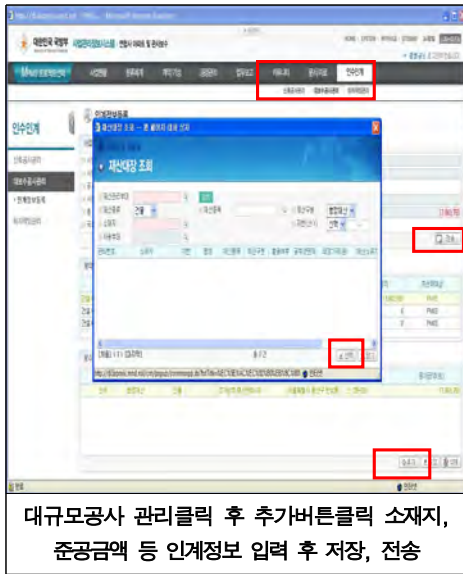
ex)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수정구로 검색



- 다) 인계서 작성 후 준공조서와 함께 담당 재산과로 제출
- (1) 제출 후 이상유무를 재산과에 확인
 - (2) 인계서 금액, 준공금액, 프로그램상 지출금액이 일치 하여야 함



- 3) 대보수 / 용역 자산화
- 가) 빨간색 빈칸은 필수사항이며 소재지 검색시 최소단위로 검색하여야 함
ex)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수정구로 검색
 - 나) 인계서 작성 후 준공조서와 함께 담당 재산과로 제출



- 제출 후 이상유무를 재산과에 확인

4) 강조사항

가) 한 사업에 설계, 공사계약이 함께 있는 경우 업무분장

구 분	설계계약만 포함	공사계약만 포함	설계, 공사계약 통합
프로그램 전송	설계과	건설과	건설과
서류 제출	설계과	건설과	건설과

(1) 설계관련 자산화서류는 설계과에서 건설과로 제출 후 건설과에서 재산과로 통합 제출

(2) 설계계약만 포함된 사업의 사업구분이 신축이면 『체계보완요청』 하여 대규모보수로 변경 후 자산화진행

* 『설계 및 감리용역』은 신축으로 자산화 불가

나) 재산과로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2) 인계서 준공금액, 준공조서금액, 프로그램상 지출금액 일치여부 확인

* 특정 사유로 불일치시에는 재산과에 사유설명

(2) 프로그램전송 및 서류제출 후 자산 등재 유무 추적

『 부 록 』

#1 총론

1 - 1 감독업무 인계·인수서

1 - 2 현장대리인 변경

감독업무 인계·인수서

(공사명 : ○○○ 병영시설공사)

직 책	국방시설본부 ○○○과 건축집행장교 (○○병영시설공사 공사관리관)
근 거	인사명령 제 호
문서번호	○○○과 - 호 (00. 00. 00)
인 계 자	계급: 육)소령 성명: 김 승 리 (서명)
인 수 자	계급: 해)소령 성명: 김 진 격 (서명)
입 회 자	계급: 육)중령 성명: 김 검 토 (서명)
확 인 관	계급: 육)대령 성명: 김 강 산 (서명)

국방시설본부 ○○○과

목 차

1. 현 장 개 요
2. 공 사 추 진 현 황
3. 현 안 업 무
4. 문 서 철 / 목 록
5. 업 무 관 련 자 연 락 처

1. 현장개요

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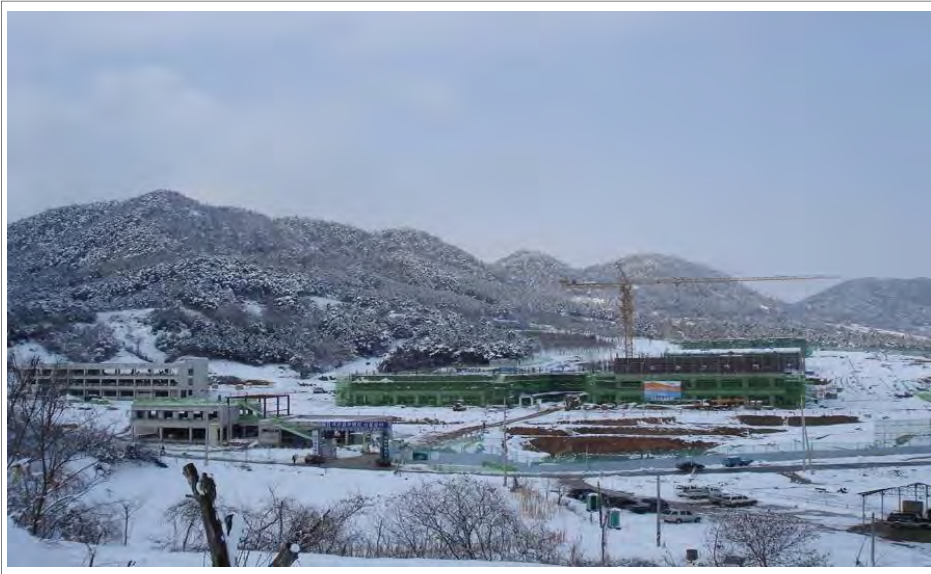
나. 조감도



다. 배치도



라. 현장전경(진도 : 25%)



마. 공사목적

- 1) 21세기 병원의 특성에 맞는 군 병원의 현대화
- 2) 환자중심의 치유환경 조성 및 의료환경 개선
- 3) 새로운 의료장비 수용 가능공간 확보
- 4) 전역군인 의료복지를 위한 시설 확보

바. 공사개요

- 1) 공 사 명 : 034002 시설공사(국군○○병원)
- 2) 공사기간 : '07. 12. 29 ~ '10. 03. 31(27개월)
 - 가) 1차 : '07. 12. 29 ~ '08. 03. 31(준공)
 - 나) 2차 : '08. 04. 01 ~ '09. 03. 31(12개월)
- 3) 공사금액 : 556.688억원
 - 가) 1차 : 19.86억원
 - 나) 2차 : 146.69억원
- 4) 설계회사 : (주)○○건축, (주)00엔지니어링
- 5) 시공회사 : ○○산업(주)
-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주)○○○○건축사사무소

사. 공사범위

- 1) 대지면적 : 181,145㎡(54,796평)
- 2) 건축면적 : 26동/14,622.61㎡(4,423평)
- 3) 연 면 적 : 26동/40,871.93㎡(12,363평)
- 4) 주차대수 : 309대(장애인 주차장 15대)
- 5) 주요건물 세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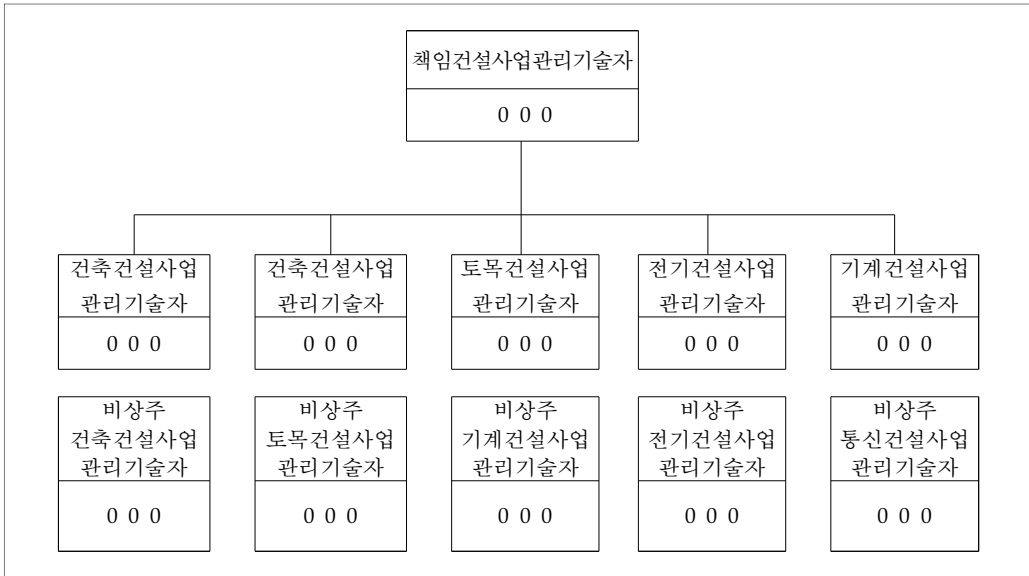
시 설 명	규 모		연 면 적		비 고
병원 본관동	지하 1, 지상 4	3.9m	30,804.61㎡	9,318평	517 병상
간부복지시설	지상 3층	3.6m	2,453.02㎡	742평	48실(기혼 2실)
면회복지시설	지상 2층	3.6m	1,259.41㎡	380평	10실(6평형)
통 합 탁 사	지상 3층	3.3m	2,484.27㎡	751평	16실(실당 9명)
영 현 실	지상 1층	4.2m	574.66㎡	173평	접객실 2실
군가족숙소	지상 4층	2.6m	2,233.60㎡	675평	24세대(24,28평)

아. 주요자재 및 설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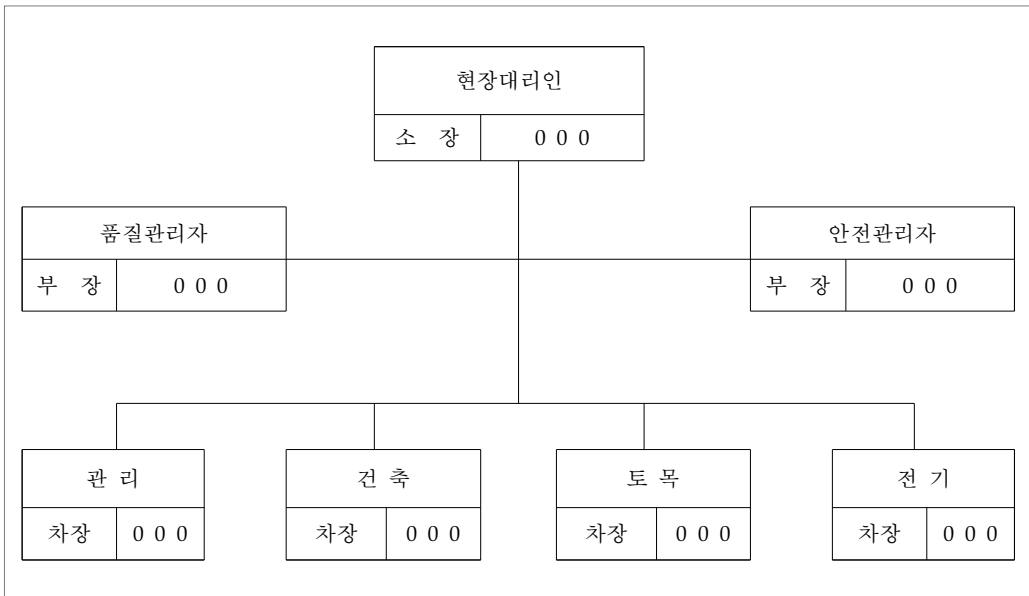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건축	레 미 콘	25-240-15/12/8	m'	27,265/2,340/968
	철근 SD 40	HD 10,13,16,19,22,25	Ton	4,019
	시멘트 벽돌	190×90×57	매	1,949,579
	화 강 석	T=30/24, 몰탈30/전식	m'	3,578
	도막방수/시트방수	T=3	m'	1,798/12,935
	석 고 보 드	9.5×900×2,400	m'	3,401
	암 면 텍 스	15mm, T-Bar	m'	18,648
	SGP 판넬	수술실(벽, 천정)	m'	3,056
토목	절 토/성 토	일반	m'	119,851/174,922
	아스콘 포장	T=625	a	101
	화강석 경계석	180×200×1,000	m	12,564
	흙관접합 및 부설	D 450, 600, 800, 1,000	m	2,771
	블럭 담장	2.4M	m	1,015
	경계웬스	Y형	m	1,209
기계	냉 동 기	100USRT~200USRT	Set	3
	보 일 러	1,000kg/h~3,000kg/h	Set	5
	펌 프	1kW~30kW	Set	33
	공 조 기	2,500CMH~28,000CMH	Set	21
	폐 수	방사선 10톤 위탁처리	Ton	100
전기	변 압 기	3상, 22.9kV/380V 1,500×2, 750×2, 500×1	KVA	5,000
	발 전 기	3상, 380V/220V 650×2	Kw	1,300
	U P S	100×2, 75×1	KVA	275
	전력 케이블	CV/1C×3.5sq~150sq	m	62,210
통신	CCTV&방범설비	Dome Camera, DVR, 카드리더	Set	41
	통합 HIS 시스템	표시, 시계, 너스콜, 교환기	식	1
	강당 무대장치	앰프(1,900W), 전동스크린	식	1
	전관 방송설비	앰프(7,899W)	식	1
소방	옥내 소화전	일반	Set	55
조경	소나무 식재	R20 이상(이식수 포함)	주	120
	잔나무 외 32종	일반	주	19,261
	스프링 클러	펌프 및 배관 포함	식	1

자. 조직도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단



2) 시공사



2. 공사추진현황

가. 공사추진경과

- 1) '07. 01. 13 : 턴키공사 입찰
- 2) '07. 03. 05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건축)
- 3) '07. 11. 02 : 실시설계 심의 (국방부 군사시설국)
- 4) '07. 12. 2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용역 계약 (14.18억원)
- 5) '07. 12. 29 : 시설공사 계약 (556.688억원)
- 6) '08. 01. 06 : 현장 경계측량 (대한지적공사)
- 7) '08. 01. 10 : 착공계획보고 (착공일 : '05. 01. 12)
- 8) '08. 02. 17 : 기공식 (국군의무사령관 주관)
- 9) '08. 03. 31 : 시설공사 1차수 준공 (19.86억원) / 2차수 계약
- 10) '08. 04. 08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용역 1차수 준공 (1.40억원) / 2차수 계약
- 11) '08. 04. 15 : 공사현장 지도방문 수검 (건설사업○과장 외 1명)
- 12) '08. 05. 17 :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개최 (병원동 영구배수공법 변경)
- 13) '08. 06. 10 : 시설공사 2차1회 기성검사 (15.59억원/146.69억원)
- 14) '08. 06. 16 : 공사현장 지도방문 수검 (건설사업○과장 외 4명)
- 15) '08. 06. 27~29 : 공사현장 예방활동 자체감사 수검 (감사실장 외 2명)
- 16) '08. 07. 08 : 군병원 사용자 불편사항 현장조사 (양주병원, 11명)
- 17) '08. 07. 12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차1회 기성검사 (1.41억원/4.86억원)
- 18) '08. 07. 12 : 선금급 신청 (26.22억원)
- 19) '08. 08. 19 : 시설공사 2차2회 기성검사 (24.14억원, 39.73억원/146.69억원)
- 20) '08. 08. 22 : 제1차 ESC신청 (27.10억원)
- 21) '08. 08. 24 : 군병원 사용자 불편사항 검토보고 (1차)
- 22) '08. 09. 23 : 군병원 사용자 불편사항 현장조사 (수도병원, 10명)
- 23) '08. 09. 27 : 군병원 사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심의 (의무사)
- 24) '08. 10. 07 : 건설사업관리 2차2회 기성검사 (1.55억원, 2.97억원/4.86억원)

나. 공사추진현황

1) 진도율 : 계획 25.20%, 실시 25.00%

2) 공사진행사항

구 분	내 용	진 도
계		25%
공통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연고 묘 5기 처리 완료 • 농수용 관정 5개소 폐공처리 완료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완료 • 안전시설 설치 :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난간, 작업통로, 낙하물방지망 등 	100%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사 : 절·성토 90% 완료 • 관로공사 : 우수, 오수, 폐수, 상수 • 포장공사 : 주도로 보조기층, 측구, 경계석 • 블록담장 설치공사 : 영현실~정문구간 • 경계울타리 설치공사 : 부지정리 및 기둥제작 • 산마루측구 및 도수로 : 완료 	50%
건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골조공사 진행중 - 지하층 조적, 방수, 미장공사 진행중 • 군가족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골조공사 진행중 - 피트층 액체방수 완료 • 통합막사/간부복지시설/면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공사 및 피트층 액체방수 완료 - 조적, 미장공사 진행중 • 오·폐수장/영현실/기타부속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공사 진행중 	5%
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동 배관공사 진행중 • 병원동 지하층 장비설치공사 진행중 	3%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동 전선관 배관 및 배선공사 진행중 • 옥외 배관공사(전력, 통신, 소방) 진행중 	3%
조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이식공사 완료 	100%

다. 계약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도 급 회 사	하 도 급 률			대 표	소 장	위 치
			원도급	하도급	비율(%)			
토 목	토 공 사		22.45	28.55	127	0 0 0	0 0 0	서울
	흙막이공사		-	0.38	-	0 0 0	0 0 0	대전
건 축	파일공사		2.74	2.13	77.7	0 0 0	0 0 0	서울
	철콘공사		61.96	60.89	98.3	0 0 0	0 0 0	광주
	습식공사		11.85	13.29	112.1	0 0 0	0 0 0	서울
	방수공사		4.42	3.78	85.6	0 0 0	0 0 0	광주
	금속/철창호		10.24	10.78	105.3	0 0 0	0 0 0	안산
	철골공사		1.66	2.47	149.1	0 0 0	0 0 0	광주
	도장공사		3.01	2.57	85.3	0 0 0	0 0 0	서울
기 계	기계설비		58.33	-	-	0 0 0	0 0 0	서울
	T A B		0.93	-	-	0 0 0	0 0 0	서울
	자동제어		7.31	-	-	0 0 0	0 0 0	서울
	오폐수설비		3.78	-	-	0 0 0	0 0 0	군포
	가스설비		3.95	-	-	0 0 0	0 0 0	광주
	진공청소		2.19	-	-	0 0 0	0 0 0	안양
	수 술 실		8.50	-	-	0 0 0	0 0 0	서울
전 기	전기설비		26.42	-	-	0 0 0	0 0 0	성남
	소방전기		3.03	-	-	0 0 0	0 0 0	서울
	통신공사		28.51	-	-	0 0 0	0 0 0	서울
조 경	조경이식		0.08	-	-	0 0 0	0 0 0	서울
	조경공사		6.14	-	-	0 0 0	0 0 0	서울
폐기물	폐기물처리		-	-	-	0 0 0	0 0 0	전남

라. 폐기물처리 현황

구 분	발생량(톤)	처리량(톤)	운 반 자	치 리 자	비 고
혼합폐기물 (건설폐재류)	180.00	180.00	초당환경(유) (주)초당산업	(주)초당산업	파 쇠
합성폐수지	10.42	10.42	자연환경(유)	(주)명성환경	소 각
폐 목 재	38.49	38.49	초당환경(유)	(주)아주환경	재활용
폐콘크리트	111.06	111.06	(주)초당산업	(주)초당산업	파 쇠
합 계	339.97	339.97			

마. 사용부대 설계변경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순번	구분	사용부대요구사항	변경물량	금액증감
1	병원동	• ELEV 크기증가(1500×2300 ⇨ 1500×2700)	3대	15,000
2	병원동	• 격실변경에 따른 칸막이 및 출입문 조정	-362㎡	-15,886
3	병원동	• 식당바닥 마감재 변경(비닐타일 ⇨ 자기질타일)	553㎡	4,609
4	조 경	• 치유의 연못을 ILP포장으로 변경	1식	-20,787
5	조 경	• 나비의 성 브리지 및 시설물 삭제	1식	-18,791
6	위병소	• CCTV 추가 설치	1식	10,109
7	병원동	• 수술실 CCTV 변경(고정식 ⇨ 이동식)	4개소	24,034
8	병원동	• 정신과 병동 마감 변경(수성페인트 ⇨ 방음쿠션)	120㎡	10,080
9	병원동	• 약제과 및 등록과 창구(여단이) 신설	2개소	1,472
10	조 경	• 병원동 전면도로 포장 변경(ILP ⇨ 아스콘)	6.17a	-1,462
11	토 목	• 나비의 성 주위 블록담장 라인 변경	-12경간	-2,162
12	설 비	• 배관보온재 변경(유리섬유 ⇨ 아티론)	1식	100,000
계				106,216

바.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공기간	공사금액				추진현황	선금급	집행현황(기성/준공검사)			준공일
		계약/배정	설계변경	ESC	증감			검사일	금액	기성율	
본공사	총차	'04.12.29 ~ '07.03.31	55,668,800								'07.03.31
	1차	'04.12.29 ~ '05.03.31	1,986,121			준공완료		'05.03.30	1,986,121	100%	'05.03.31
	2차	'05.04.01 ~ '06.03.31	14,669,460			4회기성	2,622,000 (정산완료)	'05.06.10 '05.08.19 '05.10.27 '05.12.15	1,559,000 2,414,000 2,455,000 2,985,000	10.6% 27.1% 43.8% 64.2%	'06.03.31
	3차		36,170,269			미배정					
책임감리	총차	'04.12.24 ~ '07.04.23	1,418,330	1,416,130	-2,222						'07.04.23
	1차	'04.12.24 ~ '05.04.08	141,966	139,744	-2,222	준공완료		'05.04.08	139,744	100%	'05.04.08
	2차	'04.04.09 ~ '06.01.20	486,676			3회기성		'05.07.12 '05.10.07 '05.12.15	141,813 155,661 103,774	29.1% 61.1% 82.45%	'06.01.20
	3차		789,688	865,181	75,493	미배정					
별도동		3,053,862			미배정						
한전분담금		143,700			미배정						
상수분담금		350,000			미배정						
오수분담금		667,004			미배정						

3. 현안업무

가. 주요 당면업무

- 1) 미발주된 5개동의 사업집행방법 결정
 - 가) 대상 : 교회, 성당, 법당, 차량정비고, 차양대
 - 나) 소요예산 : 30.58억원('06년 1월 배정 예정)
 - 다) 요구내용 : 별도발주, 수위계약, 설계변경 등 사업추진방향 조기 결정 및 시행
 - ※ 현장관리상 본공사와 연계한 사업추진 필요
- 2) 동절기 골조공사시 품질관리 철저
 - 병원동 골조공사시 한중콘크리트 타설 절차에 따른 규정 준수
- 3) 현장 폭설로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2차수 공기연장 검토
 - 공사중단 기간 : '05. 12. 04 ~ '05. 12. 15
- 4) 시설공사 3차수 계약
 - 시설공사 3차수 계약시 '05년 시공사에서 요청한 ESC 금액(27.1억원)을 포함하여 계약여부 검토
-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차수 준공 및 3차수 계약 준비
 - 가) 2차수 준공일자 : '06. 01. 20

나) 예산현황

- (1) 3차수 배정 예정금액 : 865,181천원
- (2) 2차수 준공 후 잔액 789,688천원
- (3) 별도동 계약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정계약 예산 75,493천원

다) 미발주 5개동에 대한 사업집행방법 결정 및 계약에 대비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용역 수정

계약금액(75,493천원)을 제외하고 3차수 계약(789,688천원)

6) 경계울타리 시공

가) Y형 경계울타리 시공시 관리환 추진현황에 따라 공사 진행

- (1) 관리환 완료일자 : '06년 1/4분기

나) 선형 결정시 의무사 및 국군광주병원 협의 필요

7) 사용부대 요구사항 설계변경 조치

가) 시설공사 3차수 계약후 사용부대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조치

나. 실정보고 검토 진행내용(설계오류 및 현장여건상)

- 1) 커튼월 안전성 용역 검토결과에 따른 실정보고
- 2) 조경공사 시공계획 관련
- 3) 영현실 출입구 도로연결신청 관련사항 : 가감속차로 신설, 지장전주 이설 등
- 4) LPG탱크 기화기 열원설치 관련
- 5) 도어 힌지 변경 관련

다. 지역 기반시설 추진현황

1)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차집관로(해보면~종말처리장)

가) 설계완료 : '05. 10월(함평군)

나) 설계자문 진행중 : '06. 1월 완료 예정

- (1) 환경관리공단(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자문 완료 : '05. 10월

- (2) 전남도청 설계자문 진행 중 : '06. 1월 완료 예정

다) 시설공사 발주 : '06. 2월경

2) 하수차집관로(광주병원현장~해보면)

가) 설계(함평군) 및 분담금 납부(의무사) 완료 : '05. 12월

나) 시설공사 발주 완료 : '05. 12월

※ 상수관로와 중복구간(국군광주병원 정문~해보면 보건진료소)은 상수관로 포함

3) 상수관로(밀재배수지~국군광주병원 후문)

가) 설계(함평군) 및 시설공사 발주 완료 : '05. 12월

4) 밀재배수지 및 상수관로(국군광주병원 후문~해보면)

가) '06년 2/4분기 국군광주병원 현장 블록담장 경계부분 부지정지 완료시점 고려 시설공사 발주 예정

5) 외부 우수관로 연결 : 함평군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

라. 행정사항

- 1) 주간업무보고 : 주 1회(인터넷 공사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주 목요일 보고)
- 2) 월간업무보고 : 월 1회(매월 감독관회의시 보고)
- 3) 현장 주간공정회의 : 주 1회(매주 목요일 10시 주간공정회의 실시)

4. 문서철 / 목록

순번	문 서 목 록(감독관)	순번	문 서 목 록(시공사)
1	공사감독일지	1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보증 계획서
2	감독업무 지시서	2	품질시험·검사대장
3	사급자재 검수부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품질관리 시험대장	4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5	천후표	5	현장교육 실적부
6	시공측량대장	6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7	시공회사 시공조직도	7	주요자재수불부
8	시공회사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8	공사측량성과
9	공정보고서	9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 안전 관리비사용실적 관계서류
10	공정별 사진첩	10	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비디오 테이프
11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1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2	현장지도/점검 방문일지	12	
13	검측대장 및 사진첩	13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4	

5. 업무관련자 연락처

구 분	직 책	직급	성 명	연 락 처	
				사 무 실	H·P
의무사령부	사업담당	6급	0 0 0	031-725-*****	017-684-*****
	관재담당	6급	0 0 0	031-725-*****	017-679-*****
국군광주병원	시설과장	대위	0 0 0	061-390-*****	010-4658-*****
지원기무부대	담당기무관	상사	0 0 0		017-677-*****
시공회사	현장소장	부장	0 0 0	061-322-***** ~3	011-381-*****
	부소장	부장	0 0 0	061-322-***** ~3	011-783-*****
	안전담당	부장	0 0 0	061-322-***** ~3	011-224-*****
	건축담당	차장	0 0 0	061-322-***** ~3	011-9592-*****
		과장	0 0 0		011-606-*****
		대리	0 0 0		011-536-*****
		사원	0 0 0		010-4723-*****
	토목담당	과장	0 0 0	061-322-***** ~3	011-9746-*****
	기계담당	부장	0 0 0	061-322-***** ~3	011-9967-*****
		기사	0 0 0		019-9734-*****
	전기담당	차장	0 0 0	061-322-***** ~3	019-258-*****
		과장	0 0 0		016-236-*****
시험담당	대리	0 0 0	061-322-***** ~3	011-9362-*****	
설계담당	과장	0 0 0	061-322-***** ~3	017-850-*****	
관리담당	차장	0 0 0	061-322-***** ~3	011-799-*****	
	사원	0 0 0		011-9619-*****	
공무담당	과장	0 0 0	061-322-***** ~3	017-654-*****	
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이사	0 0 0	061-323-*****	011-9004-*****
	건축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이사	0 0 0	061-323-*****	017-764-*****
	건축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이사	0 0 0	061-323-*****	011-227-*****
	토목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이사	0 0 0	061-323-*****	011-9820-*****
	기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이사	0 0 0	061-323-*****	010-9735-*****
	전기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부장	0 0 0	061-323-*****	010-476-*****
	행정보조	사원	0 0 0	061-323-*****	018-792-*****

부록 1-2 현장대리인 변경

별지 1

○○종합건설주식회사

수 신 : 국방시설본부장

경 유 : 사업관리과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 자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현장대리인 변경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본부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16-본-공-01본공사(16-4010)**의 현장대리인 변경 불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대리인 변경계 2부. 끝.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노 세 문 (인)

대리
협조자

과장

현장소장

시행 혁신 16-9-12호(2016.11.07.) 전화 054)574-**** / FAX (054)451-****

담당 (E-mail :) <http://>

본사 : / 현장 :

현장대리인 변경신청서

1. 공 사 명 : 16-분-공-01분공사(16-4010)
2. 계 약 금 액 : 일금 삼십칠억육천이백구십만원정 (₩3,762,920,000)
(1차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계 약 번 호 : 2016UMM0880-04
4. 계 약 연 월 일 : 2016년 11년 29일
5. 착 공 일 자 : 2016년 12월 10일
6. 준공예정일자 : 2017년 12월 30일

상기 공사에 대한 현장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변경 전	주 소 : 서울 강남구 반포동 ○○타운 12호 성 명 : ○ ○ ○ 생년월일 : 1958년 1월 18일 면허종류 : 건축 특급기술자 발급번호 : 0112***
변경 후	주 소 : 경기 안산시 금당구 포성동 500 ○○아파트 1동 313호 성 명 : ○ ○ ○ 생년월일 : 1961년 10월 12일 면허종류 : 건축 특급기술자 발급번호 : 0112***
사 유	현장대리인 퇴사

- 붙 임 :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재직 증명서 1부
 3. 퇴직자 퇴직사유 근거 1부 끝.

2016년 03월 03일

신청인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포동 142-1
 상 호 : ○○종합건설(주)
 성 명 : 대표이사 ○ ○ ○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회원번호	0	0	0	0	2	2	5	1	№ 20040213 - 001325	
성명	한글 최갑돌 한자 崔甲琿					주민등록번호			611012 - 1665443	
주소	경기 안산시 금당구 포성동 500 ○○아파트 7동 313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부실벌점	없음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건축기사	1989.12.20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1990. 02. 26	○○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졸업)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1994.02.26 ~ 1994.11.19		기사과정			건설기술교육원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2002.01.02 ~ 근무중	○○종합(주)	~		~					
	~		~		~					
	~		~		~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참여기간 (참여일)	사 업 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고
	발 주 자	공 법	전문분야	직 위	
2002. 05. 30 ~ 2003. 01. 06 (232 일)	한국산업은행 강릉지점건축		건축	현장소장	
	한국산업은행		건축시공	차 장	
~					
~					
~					
~					
~					
~					
~					
~					
~					
~					
~					
~					
~					
~					
~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사항임을 확인함.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최 갑 돌		
생년월일	1961년 10월 12일	주 민 등 록 번 호	611012-*****
주 소	경기 안산시 금당구 포상동 500 ○○아파트 7동 313호		
직 위	차 장		
입사일자	2004년 01월 02일		
제 출 처	국방시설본부	용 도	현장대리인 증명
<p>상기자는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년 03월 06 일</p> <p style="text-align: right;">경북 구미시 월평동 183-1번지 ○○종합건설주식회사</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이사 ○ ○ ○ (인)</p>			

퇴직사유 근거

(업체작성 제출)

부 록 #2 공사착수단계

- 2 - 1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 2 - 2 시공자 비치서류
- 2 - 3 착공신고 관련 서류
- 2 - 4 하도급 계약 결과 통보
- 2 - 5 선금 지급 관련 서류

부록 2-1 공사감독관 비치서류
별지 2

공사 감독 일지										보조 감독관	감독관		
											일일 검토후 결재		
공사명 : <u>집행지시 명칭사용</u>													
1. 일일감독 종합사항										기상 : <u>흐리고 비</u>			
										기온 : <u>10 ℃</u>			
일자 : <u>2017 03월 06일 목요일</u>										천후풍와 일치			
공사연일수 : <u>45 / 330</u>													
가. 인 원										주간진도(%)			
구 분	계	건축	토 목	기 계	전 기	정보통신	구 분	계 획	실 시			
금 일	32	19	2	6	5			금 주	0.7	0.5			
누 계	757	501	126	40	90			누 계	53.12	52.29			
나. 장 비													
장비명	계	트럭	덤프	믹사	컴푸 레샤	레미콘	굴삭기	구레 이다	로라	크레인	진동 기	펌프 카
금일	19	5	1	10	2	-	1	-	-	-	-	-	
누계	315	60	8	175	61	2	6	-	-	-	-	-	
다. 공사추진현황													
공 종	금일 작업실시 주요내용						익일작업 및 지시내용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2층 바닥 철근배근 • 창고 벽체 조적 • 1층 복도 초벌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시 정확한 간격유지 • 레미콘 타설시간 준수 • 1일 조적높이 준수 • 초벌 미장후 보완 조치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 전면부 콘크리트 포장 • 급수배관 라인 설치 (심정 ~ 물탱크) • 우수맨홀 6개소 설치 • 울타리 배수로 200m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눈재 간격유지 확인 • 매설심도 확인 • 맨홀 설치간격 유지 • 접합부위 마무리 확인 						
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바닥 배관 슬리브 설치 • 위병소 보일러 설치 • 막사1층 위생기구 설치 • 막사1층 방열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리브 간격 실이 위치 규격 등 타설전 확인 • 위치 및 수평 확인 • 수평/수직유지 및 고정확인 • 수평 및 벽면 이격거리 확인 						
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바닥 전선배관 설치 • 1층 배관/배선공사 • 자동 화재탐지/유도등 공사 • 전기맨홀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서상 위치확인 • 폴박스 설치기준 확인 • 전선관내 전선접속 불가 • 별도의 전용회로 이용 전원 확인 • 내부방수/케이블 받침대 시공 						

2. 감독관 세부감독 실시사항			
공 종	지시 및 계획내용	세부 감독 내용	결과 및 건의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층 바닥 철근배근시 정확한 간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지수의 1.25배, 철근지름의 1.5배 이상 철근의 결속은 #20 철선 두겹으로 이음 개소당 두곳 이상 직교되는 모든 철근의 결속을 원칙 고임대 / 버팀대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격재 정상적으로 설치/양호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포장시 줄눈재 간격유지 및 타설후 먼처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눈재 설치시 수축줄눈은 6m간격, 팽창줄눈은 30m 간격, 재질은 12mm 관재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시공 타설후 다듬질용 각재로 먼처리후 밀대면으로 평탄 작업시행, 콘크리트가 굳기전 광목, 마대 등으로 표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팽창줄눈 간격이 넓어서 재시공 타설후 마감처리 양호 /보양 처리
3. 주자재 반입사항 (세부사항은 자재대장 비치) 가. 시멘트 벽돌 : 1500매 나. 치장벽돌 : 200매 다. 철근(D13) : 10ton 라. 전선관(HI-PVC 28mm) : 250m 마. 등기구IP(IL 1/100W) : 20조		나. 업무보고 및 협조내용 1) 일일작업보고 가) 금일작업 생활관 2층 철근배근, 급수배관 설치 나) 명일작업 생활관 2층 철근배근(계속), 급수배관 설치 2) 협조사항 가) 3월 공사추진협조회의 일자 및 장소 협의	
4. 특이사항 가. 시험의뢰 및 결과 1) 철근(D10) 인장강도, 항복점, 연산을 시험 의뢰 나.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1) 안전화 10켤레 2) 소화기 5개 구매		다. 방문인원 인적사항 및 지시 토의내용 1) 사용부대 대대장 현장방문 가) 시간 : 10시 30분 나) 주요 지시사항 (1) 콘크리트 타설전 스텝 위치 확인 (2) 타설시간 준수/보양에 신경 쓸 것 (3) 현장사무실 내부청소 실시	

1. 공사감독일지 작성 방법

- 가. 공사명 : 상급부대 집행지시 명칭사용
- 나. 결재 : 일일 검토 후 결재
- 다. 기상/기온 : 천후표와 일치
- 라. 인원, 장비 및 주간진도 : 일일, 누계로 집계
- 마. 공사추진사항
 - 1) 금일 작업 : 진행공정에 대해 실시한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 2) 익일 작업 : 다음날 작업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재
- 바. 감독관 세부감독사항
 - 1) 공사추진사항과 연계하여 각 공정별 주요 실시사항 및 지시내용을 기재
 - 2) 세부감독사항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 사. 주자재 반입상황
 - 1) 자재반입 내용을 기록하고 사급자재 검수부에도 기록하여 일치
- 아. 특이사항
 - 1) 시험의뢰 및 결과
 - 가) 품질시험계획에 의거 시험의뢰한 시기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종합기록
 - 나) 기타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사용 실적도 유지하여 계획서와 일치
 - 2) 업무보고 및 협조사항
 - 가) 일일 작업보고 내용 기재
 - 나) 기타 업체 및 기관에 협조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 3) 방문인원 인적사항 및 지시토의내용
 - 가) 방문인원, 시간, 주요내용에 대해 기재 : 현장지도·점검 방문 일지와 일치
 - 나) 주요 현장 협조회의시 참석자, 시간, 주요 토의사항을 기재

감독관 지시서

20 년 월 일 ()

제 00-1 호 (일련번호 기록)
 수 신 : 현장대리인
 제 목 : 철근배근 간격 조정지시
 내 용 :

지 시 사 항		조 치 결 과	
철근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 의거 철근 간격 및 결속상태 불량부위 / 철근정착 이음길이 미준수 부위 재시공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며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공할 것 첨 부 :		레미콘 타설전 철근배근 간격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 동일단면에 집중 되지 않게 시공하겠음	
공 사 감 독 관	계(직)급 : 5 급	성명 : 김 청 립	서명 : 서명, 도장
혁 신 건 설(주)	직책 : 현장소장	성명 : 최 갑 돌	서명 : 서명, 도장







지적사항을 확인시키고 감독관과 현장소장 서명

- 서면 지시서 하달 후 공사감독일지 내용 기재
- 감독관 지시서 발부시 현장소장 확인 서명 후 복사본 발부(원본 : 지시서철 보관)
- 감독관 지시서 조치 결과는 일일결산 및 주간 회의시 접수 / 확인
- 동일 양식 2부 작성후 상하 절취하여 1부 발송, 1부 보관

품질 관리 · 시험대장

일련 번호	연 · 월 · 일	시험 · 검사구분	재료	시험 · 검사항목	시험성과	시험 · 검사 자	공사감독 관 확인
7-1	2012. 3.17	의뢰시험	철근 HD10	인장강도, 항복점 연산율	63 43 25	최갑돌	김청렴
7-2	2012. 3.17	의뢰시험	철근 HD10	"	62 43 24	최갑돌	김청렴
7-3	2012. 3.17	의뢰시험	철근 HD13	"	64 44 23	최갑돌	김청렴
7-4	2012. 3.17	의뢰시험	"	"	62 43 24	최갑돌	김청렴
7-5	2012. 3.17	의뢰시험	철근 HD16	"	62 43 24	최갑돌	김청렴
7-6	2012. 4.17	의뢰시험	콘크리트 벽돌	압축강도	8MPA 이상	최갑돌	김청렴
7-7	2012. 4.17	의뢰시험	콘크리트 벽돌	압축강도	8MPA 이상	최갑돌	김청렴
7-8	2012. 4.17	의뢰시험	단열재	밀도	25이상	최갑돌	김청렴
7-9	2012. 4.17	의뢰시험	단열재	굴곡강도	30이상	최갑돌	김청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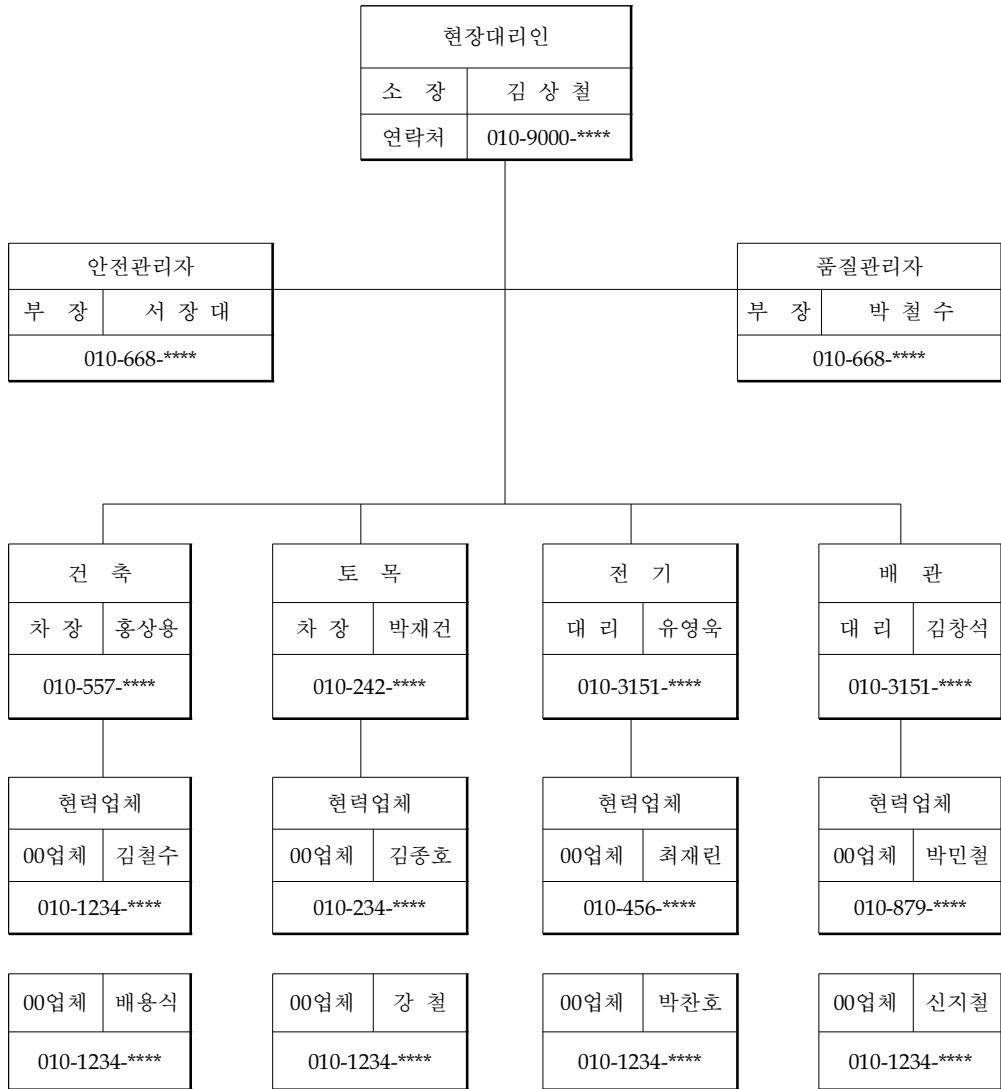
천 후 표

구분	기 상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일년 단위 월별 / 일일 기록 , 현장 사무실 비치(스티커 사용 / 부착)
- 당일 소량의 강우 / 강설시라도 강우 / 강설로 처리
- 공사감독일지와 천후표가 일치하도록 작성

시공회사 시공조직도

□ 00종합건설회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 일반사항				
발주자	국방시설본부	공사 금 액	계	2,336,247,000 원
공사 종류 (해당란에 ○표)	1. 일반건설(갑) 2. 일반건설(을) 3. 중건설 4. 철도 및 궤도신설 5. 특수 및 기타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재료비	
			(3) 직접노무비	
			(4) 기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2,994,651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사금액중 (1)+(2)+(3)]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비 율(%)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6,827,766	32 %		
안전시설비 등	38,913,117	47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6,076,960	7 %		
안전진단비 등	857,117	1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3,977,023	5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4,285,586	6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2,057,082	2 %		
본사 사용비		0 %		
총	계	82,994,651	100 %	

3. 세부사용 계획(뒤쪽)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수 량	금 액	산출내역	사용시기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안 전 시 설 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 전 진 단 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본사 사용비						

(항목별 세부사용 계획 참고자료)

1)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	26,827,766원 (32%)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1) 안전관계자 인건비 ① 전담, 겸직 안전관리자 ②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③ 크레인, 승강기,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④ 덤프트럭, 펌프카 등 건설 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⑤ 건설용 리프트 사용자 ⑥ 비계해체 등 낙하물 예상지역 신호자 ⑦ 안전보조원 인건비					
소 계	원				
(2) 안전담당자 업무수당 ①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 작업 ② 2미터 이상의 지반 굴착작업 ③ 흙막이 동바리 설치 및 보강작업 ④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작업 ⑤ 비계의 설치, 해체 및 변경작업 ⑥ 터널안에서의 굴착, 콘크리트 작업 ⑦ 2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암석 파쇄 작업					
소 계	원				

2) 안전시설비 등	38,913,117원 (47%)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① 표준안전 난간대 ② 추락방지용 방망 ③ 안전대 걸이용 로프 ④ 개구부 덮개 ⑤ 위험부위 보호덮개 ⑥ 현장내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웬스, 울타리 ⑦ 위험지역 접근 금지용 방책 ⑧ 상기사설 설치, 해체 및 보수작업 인건비					
소 계	원				
(2) 낙하, 비래물 보호용 안전시설비 ① 방호선반 ② 낙하물 방지망 ③ 범면 덮개 ④ 낙석방지용 시설 ⑤ 상기 시설의 설치, 해체 및 보수작업 인건비					
소 계	원				
(3) 안전표지비 ① 산업안전표지 ② 교통안전표지 ③ 현 수 막 ④ 타포린(추락주의 외 4종) ⑤ 위험표시 Tape					
소 계	원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⑥ 안 전 탑 ⑦ 무재해기록판 ⑧ 안전수칙판 ⑨ 안전입간판 ⑩ 안전표지표찰 ⑪ 안전완장 ⑫ 안전스티커 ⑬ 안전깃발 ⑭ 신호용렌턴 ⑮ 차량유도등 ⑯ 상기시설 설치, 해체 및 보수작업 인건비					
소 계	원				
(4) 안전장치비 ① 비상정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④ 반발 및 날접촉 예방장치 ⑤ 칼날접촉 예방장치 ⑥ 연삭기의 덮개 ⑦ 전격방지기 ⑧ 누전차단기 ⑨ 접지시설 ⑩ 역화방지기 ⑪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보수 및 교체 ⑫ 안전잡자재 ⑬ 상기기설 설치, 해체 및 보수작업 인건비					
소 계	원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5) 위생 및 안전보조시설비 ① 방진, 방음설비 ② 환기설비 ③ 대피방송, 긴급피난 설비 ④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⑤ 위험물 저장소 설치비 ⑥ 안전보호구 보관시설 ⑦ 철근, 파이프 등 돌출물 캡 ⑧ 소화기 ⑨ 상기시설 설치, 해체 및 보수작업 비용					
소 계	원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6,076,960원 (7%)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1) 안전보호구비 ① 안 전 모 ② 안 전 대 ③ 안 전 화 ④ 안전장갑 ⑤ 보 안 경 ⑥ 보 안 면 ⑦ 용접용 앞치마					
소 계	원				
(2) 위생보호구비 ① 방진마스크 ② 방독마스크 ③ 귀 덮 개 ④ 귀 마 개 ⑤ 방진장갑 ⑥ 송기마스크 ⑦ 면마스크 ⑧ 산소호흡기 ⑨ 공기호흡기 ⑩ 차광보안경 ⑪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진장갑 ⑫ 우의 ⑬ 습시장소의 장화					
소 계	원				
(3) 안전장구비 ① 신호수용 반사조끼 ② 용접용 토시 ③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유니폼) ④ 해상, 수상작업용 구명복 ⑤ 안전관리자용 무전기, 카메라					
소 계	원				

4) 안전진단비 등	857,117원 (1%)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1) 진단 및 측정비 ① 안전보건 진단비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비 ③ 분진, 소음발생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비 ④ 가스탐지기, 산소농도 측정기 등 환경측정 장비비 ⑤ 안전경영 진단비 ⑥ 협렵업체 안전진단비					
소 계	원				
(2) 기계·기구의 검사비 ①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등) 완성검사비 ②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등) 정기검사기 ③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등) 자체검사비 ④ 안전순찰용 차량유지비					
소 계	원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3,977,023 원 (5%)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1) 안전보건 관계자 교육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자체검사원 ④ 관리감독자 ⑤ 근로자 ⑥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⑦ 철골의 설치, 해체작업 ⑧ 흠막이 지보공 조립 해체작업 ⑨ 거푸집의 조립, 해체작업 ⑩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⑪ 고압선 작업 ⑫ 교육교재 및 교육팜플렛 ⑬ 슬라이드, 영화, VTR, 테이프 ⑭ 초빙강사료 ⑮ 세미나, 견학, 시찰비 (국내) ⑯ 세미나, 견학, 시찰비 (해외)					
소 계	원				
(2) 행사비 ① 안전기원제 ② 무재해 추진 발대식 및 경축 ③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 ④ 포상비 ⑤ 필름 및 인화비 ⑥ 각종 서식비					
소 계	원				

6) 근로자 건강진단비	4,285,586원 (6%)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비					
① 일반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					
③ 방역, 소독, 방충비					
소 계	원				
(2) 구급기자재비					
① 붕 대					
② 탈지면					
③ 핀셋트					
④ 반창고					
⑤ 소독약					
⑥ 지혈대					
⑦ 부 목					
⑧ 들 것					
⑨ 구급약품함					
소 계	원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57,082원 (2%)				
세 부 항 목	인 원	개 월	단 가	금 액	비 고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 지도수수료					
합 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총괄

건설업체명	00종합건설주식회사	공 사 명	0000병영시설 개선공사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월평동 183-1번지	대 표 자	노 재 문
공사금액	2,336,247,000원	공사기간	2011.9.18 ~ 2012.10.17
발 주 자	국방시설본부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82,994,651원		
사 용 금 액			
항 목	누계 사용금액		
계	82,994,651원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6,827,766		
2. 안전시설비 등	38,913,117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6,076,960		
4. 안전진단비 등	857,117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3,977,023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4,285,586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57,082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참조서식)

()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 작성일자 : 년 월 일

결	담 당		소 장
재			

업 체 명	(주) 00종합건설	공 사 명	0000병영시설 개선공사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월평동 183-1번지	계상 안전관리비	82,994,651 원
공사금액	2,336,247,000 원	누계 공정률	74%
공사기간	2016.9.18 ~ 2017.10.17	당월 사용금액	6,639,572 원(8%)
발 주 자	국방시설본부	집행누계	53,116,577(64 %)

사 용 내 역

항 목	계상금액	금월집행	집행누계	잔 액	비 고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6,827,766	2,146,221	17,169,770	9,657,996	
2) 안전시설비 등	38,913,117	3,113,049	24,904,395	14,008,722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6,076,960	486,157	3,889,254	2,187,706	
4) 안전진단비 등	857,117	68,569	548,555	308,562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3,977,023	318,162	2,545,295	1,431,728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4,285,586	342,847	2,742,775	1,542,811	
7) 재해예방기술 지도비	2,057,082	164,567	1,316,532	740,550	
합 계	82,994,651	6,639,572	53,116,577	29,878,074	

▶ 항목별 사용 내역서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소 계		
2) 안전시설비 등			
	소 계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소 계		
4) 안전진단비 등			
	소 계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5) 안전교육 및 행사비 등			
	소 계		
6)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소 계		
7) 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소 계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0000 병영생활관 소방공사




받 음 :

○ 8월 월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최 갑 돌 (인)

공정	전월까지 누계 (%)			금 월 (%)			누 계 (%)			비 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가설사무소	1	1		0	0		1	1		
○자재구매	18	18		3	3		21	21		
○기계소방공사										
소화장비공사	0	0		0	0		0	0		
소화펌프실 배관공사	0	0		0	0		0	0		
소화배관공사	2	2		20	20		22	22		
○전기소방공사										
소방공사	25	25		0.5	0.5		25.5	25.5		
바상조명공사	5.5	5.5		0	0		5.5	5.5		
○각종기기부착	0	0		0	0		0	0		
○마무리공사	0	0		0	0		0	0		
계	51.5	51.5		23.5	23.5		75	75		

공정별 사진첩

공 사 명 : 000포병대대 포대보강공사			
	세 부 공 정	포 대 보 강 공 사	
구분	시 공 사 진		
구분	시 공 사 진	사 진 설 명	
전	<p>공사명 : 000포병대대 포대보강공사</p> <p>일 시 : 2016. 09. 18</p> <p>공 정 : 포장보강</p> <p>비 고 : 보강전</p>		- 보강전
중	<p>공사명 : 000포병대대 포대보강공사</p> <p>일 시 : 2016. 10. 18</p> <p>공 정 : 포장보강</p> <p>비 고 : 보강중</p>		- 보강중
후	<p>공사명 : 000포병대대 포대보강공사</p> <p>일 시 : 2016. 11. 18</p> <p>공 정 : 포장보강</p> <p>비 고 : 보강후</p>		- 보강 완료후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 수 급 인 : 00종합건설(주)
- 현장대리인 : 최 갑 돌(자격증 : 건축기사)

공종	하 수 급 인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 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 고
	상호	대표자	업종 및 면허 (등록)번호					
골조 공사	국방 건설	김대표	11111 ~ 1060096	200,000,000	'17.07.02 ~ '18.10.23	'11.06.28	김 도 급	
설비 공사	육군 전기	강대표	11111 ~ 011666	40,000,000	'17.07.02 ~ '18.10.23	'11.06.28	강 기 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에는 기초공사·골조공사·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또는 기능계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 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이름을 기재 								

공사행정

시공참여자 현황

구 분	상호 및 대 표 자	공 종 (세부공종)	계약 금액	공사 기간	계약 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 고
하도급자	00건설/ 김대표	골조공사	200,000,000	'12.07.02 ~ '12.10.23	'16.06.28	김도급	
시 공 참 여 자	00건설					오수만	

하도급자	00전기/ 강대표	설비공사	40,000,000	'12.07.02 ~ '12.10.23	'16.06.28	강 기술	
시 공 참 여 자	00전기					김창식	

하도급자							
시 공 참 여 자							

하도급자							
시 공 참 여 자							

하도급자							
시 공 참 여 자							

하도급자							
시 공 참 여 자							

- 비고란에는 시공참여자의 생년월일 등을 기재

현장지도 · 점검 방문일지

① 발주청 및 공사명	발주청 : 국방시설본부 공사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② 방문일시	2017년 3월 15일 13:30부터 17:00까지
③ 방문근거 및 목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공평가 · 해빙기공사장 안전점검 지시에 의한 현장지원
④ 업무수행 내용	· 시공평가 개요보고, 분야별 평가, 평가결과종합 강평, 복귀 · 공사개요 보고, 부문별 안전점검, 점검결과 기록
⑤ 지시 또는 특기사항	· 시공평가 결과 미비사항 후속조치(1개월 후 결과보고) · 안전위해요소 시정조치(1주일 후 재점검)
⑥ 방문자	소속 : 시설본부 직급 : 중령 성명 : 이정통(서명) 소속 : 시설본부 직급 : 중령 성명 : 김정확(서명) 소속 : 시설본부 직급 : 중령 성명 : 김정진(서명)
⑦ 공사감독관 또는 현장소장 확인	소속 : 시설본부 직급 : 5급 성명 : 김청림(서명)

- ③항에는 관계법령 조문, 지시명령, 행정계획 근거와 목적 등을 기재
- ④항에는 업무수행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기재
- 동일목적의 방문자가 3인 초과시는 별지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을 기재하여 덧붙임하여야 함.
- ①항 및 ⑦항은 공사 감독관 또는 현장소장이, ②~⑥항은 방문자가 기재

검 측 대 장

공사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감독관 : 김 청 림(인)

공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측내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건축	M/F 차양대 1동 - 독립기초 철근거푸집	'11.08.19	독립기초콘크리트 및 철근배근 확인	적합	
	편제차량주차장 - 독립기초 철근거푸집	'11.08.19	독립기초콘크리트 및 철근배근 확인	적합	
	일반창고-철골 양카볼트	'11.09.05	양카볼트 설치	적합	
	편제차량차양대-지중보	'11.09.05	지중보 콘크리트 타설	적합	
토목	BL.4(편제차양대)/우수공	'11.11.03	유개배수로 부설 (500×500, L=24m)	적합	
	BL.2(병영생활관)/포장공	'11.11.23	경계석 설치	적합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참조서식)

검 측 요 청 서

2017. 5. 25.

번호 : 07 - 27호

받음 : 공사감독관

다음과 같이 세부공정에 대하여 검측요청하오니 검사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공종	철근 콘크리트공사
검 측 부 위	지상 2층 X01X10,Y01Y05 벽매김
검측요구일시	2012. 5. 27
검 측 사 항	기준벽 위치 확인 외 1개항목

첨부 : 1. 검측체크리스트

첨 부 2. 검측부위도면

첨부 3. 작업자실명제

00교 병영시설개선공사 현장 대리인 최 갑 돌 (인)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05 - 1호

2017. 6. 2.

수신 : 00교 병영시설개선공사 현장대리인

검측요청서 번호 07 - 27호에 대한 검측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검측결과 : - 기둥 및 옹벽의 철근 피복두께가 기준치 5cm보다 3cm 부족
- BT2골조 마감선 위치가 지하3층 BT2와 10cm 상이
- 공사참여자 명부가 실제 참여한 작업자와 상이
- 지시사항 : 보완시공 후 재검측

붙임 : 감독관의 체크리스트 검측결과

00교 병영시설개선공사 감독관 5급 김 청 림 (인)

-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상단에 기록함.
-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관 각 1부 보관

부록 2-2 시공자 비치서류
별지 15

공 사 작 업 일 지

○공사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일 자 : 2017. 9. 7. 월요일 ○날 씨 : 맑음 기온 : (최저) 19도 (최고) 26도

○작성자 : 현장대리인 김 강 철 (인 또는 서명)

○확인자 : 감 독 자 최 청 럽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 작업량	누계 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 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 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 투입인원	금일 투입인원	누계 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157	8	165	
특별인부	67	5	72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

품질시험 · 검사대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검사구분	재료	시험·검사항목	시험성과	시험·검사자	공사 감독관 확인
7-1	2011. 3.17	의뢰시험	철근 HD10	인장강도, 항복점 연산율	63 43 25	최갑돌	김청림
7-2	2011. 3.17	의뢰시험	철근 HD10	"	62 43 24	최갑돌	김청림
7-3	2011. 3.17	의뢰시험	철근 HD13	"	64 44 23	최갑돌	김청림
7-4	2011. 3.17	의뢰시험	"	"	62 43 24	최갑돌	김청림
7-5	2011. 3.17	의뢰시험	철근 HD16	"	62 43 24	최갑돌	김청림
7-6	2011. 4.17	의뢰시험	콘크리트 벽돌	압축강도	8MPA 이상	최갑돌	김청림
7-7	2011. 4.17	의뢰시험	콘크리트 벽돌	압축강도	8MPA 이상	최갑돌	김청림
7-8	2011. 4.17	의뢰시험	단열재	밀도	25 이상	최갑돌	김청림
7-9	2011. 4.17	의뢰시험	단열재	굴곡강도	30 이상	최갑돌	김청림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공사명 : 00 병영생활관 개선공사 공사기간 : '16. 6. 30. ~ '17. 12. 15. 공정 : 70%

공종	시험 · 검사종류(재료)	시험 · 검사 회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레미콘	슬럼프	12	12	12			현장시험
	공기량	12	12	12			
	염화물함량	12	12	12			
콘크리트	07일 압축강도	12	6	6			외부기관 의 뢰
	28일 압축강도		6	6			
철근	인장강도	5	5	5			
	항복점	5	5	5			
	연신율	5	5	5			
	굽힘성	5	5	5			
스치로폼	연소성	1	1	1			
창호시험	휨강도	1	1	1			
굵은골재	비중 및 흡수율	1	1	1			
잔골재	비중 및 흡수율						

작성일시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종	시험검사 종목	계획 시험 검사 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성토 용흙	함수량	1	1	1						1	1			
	입 도	1	1	1						1	1			
	세립토 비율	1	1	1						1	1			
	밀 도	1	1	1						1	1			
	액성한계	1	1	1						1	1			
	소성한계	1	1	1						1	1			
	노상토 지지력비 (CBR)	1	1	1						1	1			
	다 짐	1	1	1						1	1			
되메 우기 및 구조 물 뒷채 움	다 짐	2												
	함수비	42	6	6						6	6			
	현장밀도	42	6	6						6	6			
	평판재하	58												
	입 도	2												
굳지 아니 한 콘크 리트 (레미 콘포 합)	배합설계	8	8	8						8	8			
	현장배합 수정	42	83	83		13	13			96	96			
	온 도	42	77	77		13	13			90	90			
	슬럼프	42	77	77		13	13			90	90			
	공기량	42	77	77		13	13			90	90			
	염화물 함유량	42	77	77		13	13			90	90			
	씻기시험	42	9	9						9	9			
	압축강도	42	69	69		8	8			77	77			
	표면수량	42	83	83		13	13			96	96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 육 담 당 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 육 내 용	비 고
2016.4.16	이 교 육	동남아 건설(주)	한 장 춘 한 과 동 조 정 철 우 명 재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 현장내 출입 및 작업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 할 것 2. 작업중 위험 발견시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선조치 후 작업을 진행 할 것	정기 교육

※ 작성요령

1. 현장 사무실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비치
2. 원·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 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 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임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교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타설일자	구조물명	타설부위	타설방법	타설시간	타설시 기온	콘크리트 종류	실측 슬럼프치	비고
2012. 3. 8	B1층 바닥, 보	1A ~8F	펌트카 타설	08:00 ~ 22:30	-2 ~6	210-8-25	15.1	
3. 9	B1층 바닥, 보	9A ~12F	펌트카 타설	08:00 ~ 16:30	0 ~8	210-8-25	15.4	
3. 24	1F 바닥, 보	17A ~20F	배관타설	11:30 ~ 19:45	3 ~6	210-8-25	15.3	

※ 작성요령

1. 타설방법은 믹서트럭에서 직접 받아 타설하는 경우에는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하는 경우에는 “펌프”로 기재
2. 콘크리트종류는 “호칭강도 - 슬럼프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의 순으로 기재
(예) 210 - 8 - 25
3.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현장B/P”로 기재
4. 비고란에는 레미콘납품서의 번호를 기재

공정별 사진첩

공 사 명 : 00교 식당 리모델링		
세 부 공 정	00교 식당 리모델링	
구분	시 공 사 진	사 진 설 명
전	<p>공사명 : 00교식당 리모델링</p> <p>일 시 : 2017· 05. 10</p> <p>공 정 : 외벽마감</p> <p>비 고 : 벽체 판넬 설치</p>	 <p>- 벽체 판넬설치 설치 전</p>
후	<p>공사명 : 00교식당 리모델링</p> <p>일 시 : 2017· 05. 16</p> <p>공 정 : 외벽마감</p> <p>비 고 : 벽체 판넬 설치</p>	 <p>- 좌측 칼라강판 설치 완료</p>

검 측 대 장

공사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감독관 : 김 청 렬(인)

공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측내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건축	M/F 차양대 1동 - 독립기초 철근거푸집	'11.08.19	독립기초콘크리트 및 철근배근 확인	적합	
	편제차량주차장 - 독립기초 철근거푸집	'11.08.19	독립기초콘크리트 및 철근배근 확인	적합	
	일반창고-철골 양카볼트	'11.09.05	양카볼트 설치	적합	
	편제차량차양대-지중보	'11.09.05	지중보 콘크리트 타설	적합	
토목	BL.4(편제차양대)/우수공	'11.11.03	유개배수로 부설 (500×500, L=24m)	적합	
	BL.2(병영생활관)/포장공	'11.11.23	경계석 설치	적합	

- 매물부분은 사진 첨부

(참조서식)

검 측 요 청 서

번호 : 07 - 27호

2018. 2. 15.

받음 : 공사감독관

다음과 같이 세부공정에 대하여 검측요청하오니 검사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공종	철근 콘크리트공사
검 측 부 위	지상 2층 X01X10,Y01Y05 떡매김
검측요구일시	2012. 5. 27
검 측 사 항	기준떡 위치 확인 외 1개항목

첨부 : 1. 검측체크리스트

첨부 2. 검측부위도면

첨부 3. 작업자실명제

16-본-공-01본공사(16-4010) 현장 대리인 최 갑 돌 (인)

검 측 결 과 통 보

번호 : 07 - 27호

2018. 3. 2.

수신 : 00교 병영시설개선공사 현장대리인

검측요청서 번호 05 - 27호에 대한 검측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검측결과 : - 기둥 및 옹벽의 철근 피복두께가 기준치 5cm보다 3cm 부족
- BT2골조 마감선 위치가 지하3층 BT2와 10cm 상이
- 공사참여자 명부가 실제 참여한 작업자와 상이
2. 지시사항 : 보완시공 후 재검측

붙임 : 감독관의 체크리스트 검측결과

16-본-공-01본공사(16-4010) 감독관 5급 김 청 럽 (인)

-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상단에 기록함.
-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관 각 1부 보관

부록 2-3 착공신고 관련 서류
별지 24

○○종합건설주식회사

수 신 : 국방시설본부장

경 유 : 사업관리과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본부와 계약체결한 **16-본-공-01본공사(16-4010)**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공사착공 신고서 4부 끝.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노 세 문 (인)

대리 협조자	과장	현장소장
시행	(20 . . .)	전화 / FAX
담당	(E-mail :)	http://
본사 :		/ 현장 :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계 약 금 액 : 일금 삼십칠억육천이백구십만원정(₩3,762,900,000)
(1차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계 약 번 호 : 국시설계약 제2011-공-3-1004호
4. 계약연월일 : 2016년 11월 30일
5. 착공연월일 : 2016년 12월 10일
6. 준공예정일 : 총차준공일 2017년 12월 30일
(1차 준공일 : 2016년 04월 30일)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1.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총차/1차)
 3. 품질관리(시험계획)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5. 환경관리계획서
 6.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7. 착공 전 현장사진
 8.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9.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2017년 12월 10일

계약자 주 소 : 경북 구미시 〇〇동 183-1번지

상 호 : 〇〇종합건설 (주)

대표자 : 노 세 문 (인)

계약자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〇〇동 274-318

상 호 : 〇〇종합건설 (주)

대표자 : 김 민 관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공 사 금 액 : 총차수 ₩3,762,920,000
(1차수 ₩2,336,247,000)
3. 계 약 번 호 : 국시설계약 제2016 - 공 -3- 1004호
4. 계약 년월일 : 2016년 11월 30일
5. 착공 년월일 : 2016년 12월 10일
6. 준공 예정일 : 2017년 12월 30일
7. 현장 대리인 : 성 명 : 최 갑 돌
생년월일 : 611012-1665443
주 소 : 경기안산시 금당구 포상동 500 ○○아파트 7동 313호
기술자격등급 : 건축특급 면허종별 : 건축시공기술사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 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10일

- 붙임 : 1. 재직증명서 1부.
2.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끝.

계약자 주 소 : 경북 구미시 ○○동 183-1번지
상 호 : ○○종합건설 (주)
성 명 : 노 세 문 (인)

건설공사 예정공정표(총차)

공사명	00사 병영생활관 개선공사(161217)												계약일자	16년12월17일	착공일자	'16.12.1		도급회사	00종합건설(주)
	삼십칠억육천이백구십구만원(3,762,990,000)															0	0		
계약번호	0)												계약번호	2016-공-1004	준공일자	'16.12.3		작성일자	현장대리인 정순현(인)
	0)															0	0		
공정	공사금액 (천원)	보합 (%)	2017												11월	12월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설공사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토공사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철근공사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조적,미장																			
창호공사																			
토공사																			
오수공사																			
배관공사																			
위생공사																			
난방공사																			
배관공사																			
기구공사																			
배관공사																			
장비공사																			
합계	23,762,900	100																	
	0																		
공사진도(%)	소계	0.10			0.10	0.15													
	누계	0.10			0.20	0.35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17조에 의거		①신청인	00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순현												②감독관	③ 5급 정청렴(인)	승인		

① 계약회사가 공동도급일 경우 같이기록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일 경우 공사관리관 날인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날인

건설공사 예정공정표(1차)

공사명	00사 병영생활관 개선평가(161217)		계약일자		16년12월17일		착공일자		'16.12.10		도급회사		00종합건설(주)			
	계약번호	삼심철역육척이백구십구만원(3,762,990,000)		계약번호	2016-공-1004		준공일자		'16.12.30		작성일자		현장대리인 정순현(인)			
공정	공사금액 (천원)	보합 (%)	2017												비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공사																
조적,미장																
창호공사																
토공사																
오수공사																
배관공사																
위생공사																
난방공사																
배관공사																
기구공사																
배관공사																
장비공사																
합계	23,762,900	100														
	0															
공사진도(%)		소계	0.10		0.10		0.15									
		누계	0.10		0.20		0.35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17조에 의거			①신청인	00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순현		②감독관		5급 정청범(인)		③		승인				

품질관리계획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공사금액 :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시 공 사 : 00종합건설(주), (주)00건설
4. 착 공 일 : 2016. 12. 05
5. 준공예정일: 2017. 12. 30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품질관리(시험)계획 1부. 끝.

2016년 12월 10일

작성자	품질관리담당	이 품 질 (인)
승 인	현장대리인	최 감 돌 (인)
확 인	감독관 5급	김 청 럼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품질시험계획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공사금액 :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시 공 사 : 00종합건설(주), (주)00건설
4. 착 공 일 : 2016. 12. 05
5. 준공예정일: 2017. 12. 30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품질관리(시험)계획 1부. 끝.

2016년 12월 10일

작성자	품질관리담당	이 품 질 (인)
승 인	현장대리인	최 갑 돌 (인)
확 인	감독관 5급	김 청 럽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안전관리계획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공사금액 :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시 공 사 : 00종합건설(주), (주)00건설
4. 착 공 일 : 2016. 12. 05
5. 준공예정일 : 2017. 12. 30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1. 기술지도계약서 1부.
 2. 안전관리 계획서(별지) 1부. 끝.

2016년 12월 06일

작성자 안전관리담당 이 안 전 (인)
승 인 현장대리인 최 감 돌 (인)
확 인 감독관 5급 김 청 럽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기술지도 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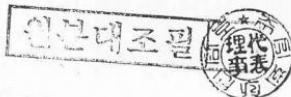
www.Kcap.co.kr

	건설업체명	㈜신삼호		대표자	송광용
기위 술탁	공사명	05-6-2-2 내무생활관 본공사		공사금액	₩5,747,825,070 원
	지사소재지	본사: 천안시 신부동 494-6		☎	041-620-9382
도업	현장소재지	현장: 강원도 철원군 율리리		☎	
	공사기간	05년 9월 27일 ~ 06년 10월 31일	계상된 안전관리비	₩83,933,823 원	
장	발주자	국방시설본부			
	명칭	한국건설재해예방(주)		대표자	안병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28-4 서일빌딩3층			
	담당자	전화번호	(02)584-6688	팩스번호	(02)584-6812
기술지도구분	(건설, 특수 및 기타)공사				
기술지도횟수	총 (14) 회				
수수료	₩2,926,000 원 (부가세별도)		합계 : ₩3,218,600 원		
계약기간	05년 9월 27일 ~ 06년 10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 사항을 준수키로 한다.

2005 년 9 월 27 일

위탁자 사업장명: **주식회사신삼호**
대표자: **송광용**



재해예방전문 명칭: **한국건설재해예방주식회사**
지도기관 대표자: **안병수**



환경관리계획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공사금액 : 일금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시 공 사 : 00종합건설(주), (주)00건설
4. 착 공 일 : 2016. 12. 05
5. 준공예정일 : 2017. 12. 30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환경관리계획 1부. 끝.

2017년 12월 06일

작성자 안전관리담당 이 환 경 (인)
승 인 현장대리인 최 갑 돌 (인)
확 인 감독관 5급 김 청 럼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 인원투입계획

구 분	인원	2017년						2018년										비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토공	294	30	30	30	13	15	5	5	5	5	20	28	20	38	20	15	15	
포장공	60														20	20	20	
목공	285	35	40	45						45	50	50	20					
철근공	140	20	20	20						20	20	20	20					
방수공	60												15	15	15	15		
타일공	30												10	10	10			
배관공	140						8	8	8	8	8	20	20	20	20	10	10	
계	1,009	85	90	95	13	15	13	13	13	78	98	118	105	83	85	60	45	

2. 장비 투입 계획

구 분	인원	2017년						2018년										비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백호	90	3	3	3	1	2	2	2	2	2	3	4	2	2	2	2	1	
도자	30	1	1	1							1	1						
덤프	28	3	3	3							3	3	3	3	3	2	2	
부레카	40	2	2	2						2	2	10	20					
펌프카	14	2	2	2							2	2	2	2				
계	121	11	11	11	1	2	2	2	2	4	11	20	27	7	5	4	1	

착공 전 현장 사진



전 경



측 면

※ 배치도, 전면, 후면 등 공사 전 모습 촬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회원번호	0	0	0	0	2	2	5	1	No. 20040213 - 001325	
성명	한글 최갑돌 한자 崔甲堦					주민등록번호			610912 ~1665443	
주소	경기 안산시 금당구 포성동 500 00아파트 1동 313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부실별점	없음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건축기사	1989.12.20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1990. 02. 26		00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졸업)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1994.02.26 ~ 1994.11.19			기사과정			건설기술교육원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 처 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2002.01.02 ~ 근무중	00종합(주)	~		~					
	~		~		~					
	~		~		~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			
계 약 번 호		2016-UMM0880-04호	
수급인	상 호 및 대 표 자	00건영 (주) 조건양(전화 : 02-6655-****)	
	영 업 소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OO동 394-2	
	하 도 급 사 유	해당공사 시공경험이 우수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 및 작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	
하수급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하나 최하남	
	업 종 및 등 록 번 호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제 성동82-08-03호	
	영 업 소 소 재 지	서울시 성동구 OO동 319-99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17. 01. 18.	
하도급내용	공 종	지붕 판금공사	
	하 도 급 내 용	도급액(하도급 부분) : ₩582,224,584 하도급(예정)금액 : ₩522,050,000 하 도 급 율 : 89.66%	
	하도계약일 (예정·변경)	'17. 01. 16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 '17년 01월 16일 준공(예정) : '17년 07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87년 31 월 30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 급 인 노 세 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p>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 사본 1부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현황

구분	공 종	업체명	도급액	하도급액	비율(%)	비고
1	지붕판금공사	(주)정직	582,224,584	522,050,000	89.66	VAT 제외
2	기계설비공사	플러스(주)	455,124,264	405,590,000	89.12%	VAT 제외
3						
4						
5						
6						
7						
8						
9						
10						
1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 주 자 : 국방시설본부
원도급공사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계약번호 : 2016UMM0880-04호
2. 하도급공사명 : 지붕 판금 공사
3. 공 사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00비행장 내
4. 공 사 기 간 : 착공 2017년 1월 16일
준공 2017년 7월 27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오억칠천사백이십오만원정(₩574,250,000)
 - 공급 가액 : 일금 오억이천이백오만원정(₩522,050,000)
 - 부가가치세 : 일금 오천이백이십만원정(₩52,200,000)
6.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 (1) 계약체결수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 나. 기성부분금
 - (1) 월 (1)회
 -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3) 지급방법 : 발주자의 지급조정에 따름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8. 계약보증금 : 일금 오천칠백사십이만오천오백원정(₩57,425,500)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갑의* 준공일로부터 2년

11. 지체상금률 : 1/1000(1일 지연시)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17년 1월 16일

* 원사업자

주 소 : 경북 구미시 00동 183-1번지

상 호 : 00종합건설(주)

성 명 : 노 세 문 (인)

* 수급사업자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00동 319-99

상 호 : (주) 00건설

성 명 : 최 하 남 (인)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명	00사 병영생활관 개선공사(161217)												00종합건설(주)					
계약번호	삼심칠억육천이백구십구만원(3,762,990,000)												현장대리인 정순현(인)					
공종	공사금액	보합 (%)	2017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토공	202,141,730	5.37				0.3 0%	0.2 0%	0.3 0%	0.3 0%	0.3 0%	0.3 0%	0.3 0%	0.3 0%	0.1 0%	0.1 0%	18.0%		
배수로	495,991,445	13.07					0.3 0%	0.4 0%	0.4 0%	1.1 0%	1.3 0%	1.3 0%	1.5 0%	0.3 0%	0.3 0%	0.4 0%	17	
포장공	368,270,740	9.79													1.4 0%	1.3 0%	1.8 0%	10.0%
구조 물공	1,272,222,908	33.81																30%
부대공	72,584,820	1.93																9
소계	2,407,215,628	63.97																8.0%
공정율	단기																	7
	누계																	6.0%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17조에 의거 신청함.		신정인	00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순현				감독관 확인				5급 정청렬(인)				승인	(인)		

하도대금지급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1000 호

2012)NO. 001234

보 증 금 액	일금 일억이천삼백사십구만오천육백구십원(₩123,495,690)		
계 약 금 액	일금 오억칠천사백이십오만오천원 (₩574,255,000)		
계 약 명	00000 000 시설공사 중 지붕판금공사		
계 약 일	2011년 1월 16일		
계약이행기일	2012년 9월 28일		
보 증 기 간	2011년 1월 16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계 약 자	상 호	(주) 0 0	대 표 자 김 0 0
특 기 사 항	1. 이 보증서 뒷면 약관에는 보증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는 의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뒷면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

2011 년 1 월 16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공제제조합

KOREA CONSTRUCTION FINANCIAL COOPERATION

이사장 김 0 0

대리인 서초지점장 이 0 0



00건설(주)

귀하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우리 조합은 뒷면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1. 현 장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하도급 공사명 : 지붕판금공사
3. 계 약 금 액 : ₩522,050,000(VAT 별도)

당해 공사로 인한 현장노무자 임금체불시 귀사에서 당사가 고용한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도(단, 기성금액범위내에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7년 01월 20일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〇〇동 319-99

상 호 : (주) 〇〇건설

대표이사 : 대표이사 최 하 남 (인)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계 약 보 증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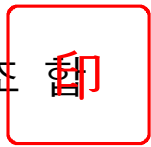
보증서번호 제 20171100 - 21000000 호

2017 001111

보 증 금 액	₩57,425,500 ※		
계 약 금 액	₩574,255,000 ※		
계 약 명	00000 000 시설공사 중 지붕관급공사		
계 약 일	2011년 1월 16일	계약이행기일	2012년 9월 28일
하 자 보 수 책 임 기 간	해당사항 없음		
보 증 기 간	2011년 1월 16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계 약 자	상 호 (주) 0 0	대 표 자	김 0 0
특 기 사 항	보증기간 종료 후의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이행기일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기간 이내에 우리 조합으로부터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뒷면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

2011 년 1 월 16 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 0 0

대리인 동대문지점장 이 0 0

(보증채권자)

00건설(주)

귀하

지점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 (00빌딩 6층)

전화 번호 02-748-****/*

담당자 : 강 0 0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건설업등록증사본

담당부서	토 목 과
책임자	정 0 0
담당자	이 0 0
전화번호	2299-1000

전문건설업등록증

업 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 록 번 호 : 성도82-08-01


상 호 : (주) 00 대 표 자 : 김 0 0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000-00 법인(주민)등록번호 : 011011-1234123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대한민국 등 록 일 자 : 1982.12.1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12년 04월 06일

용 산 구 청 장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기록자(인)
		다음신고일은 2006. 7. 2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토목과 이 담 당(인)
2005.04.06	업종변경	철물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토목과
	대통령령제8008호예외거	82-00-11 ---> 성동82-08-22	이 담 당 (인)
2005.5.4	대표자	김 0 0	2005.5.4 박00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주 의 사 항


- 본 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함.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본 수첩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이미 교부 받은 수첩을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호, 명칭, 영업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
- 본 수첩의 기재 내용을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이 휴대하여서는 아니됨.

전 문 건설업 등록수첩

업 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번호	용산 88-08-00
상 호	(주) 0 0	대 표 자	김 0 0
영업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000-00		
법인(주인) 등록번호	110111 - 0200000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대한민국	등록일자	1982.12.1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2008 년 9 월 6 일

용 산 구 청 장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 기록자(인)
2005. 4. 6. 업종변경 대통령령 제1890호에 의거 전) 업종변경 82-11-00 김 0 0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 신고			
신고수리일	다음신고일	법적근거	기록연월일 기록자(인)
2003. 7. 2	2006. 7. 2 부터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 법제9조4항	2005. 4. 6 이 0 0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 기록자(인)

행 정 처 별 사 항

처분연월일	처분내용	처벌근거	기록연월일 기록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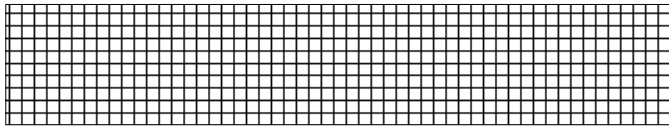
시 공 능 력

연 도	공사의 종류	금액 (백만원)	기록연월일 기록자(인)
2003	금속구조창호	3,123	
2004	"	1,234	
2005	"	4,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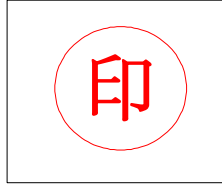
공 사 금 액 의 하 한

연 도	공사의 종류	금액 (백만원)	기록연월일 기록자(인)

등기부 등본 사본

등기번호	0223565	등기부 등본(유효사항)	
등록번호	110111-0200115		
상 호	株式會社 **	. . 변경	. . 등기
본 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	1998 . 06 .02 변경	. .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변경	. . 등기
1주의 금액	금 4,000 원	. . 변경	. . 등기
발주할 주식의 총수	360,000 주	2008 . 04 .02변경	2008 . 06 .02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60,000 주	2009 . 08 .02변경	
보통주식	160,000 주	2009 . 08 .02등기	
		금 800, 000, 000 원	
목 적			
1. 조명기구 제조업			
2. 조명기구 판매업			
3. 전기제품 판매업			
4. 건축자재 도매업 < . . . 변경 1996. 03. 22 등기>			
5. 건축자재용 철재류 가공업			
6. 도장공사업			
7. 철물공사업			
8. 주택건설업			
9. 시설물 유지관리업 <1998.04.28 추가 1998. 04. 29 등기>			
10. 부동산 임대업 <1998.11.05 추가 1998. 11. 06 등기>			
11.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1999.06.14 추가 1999. 06. 16 등기>			
12. 지붕판금 공사업 <1999.06.14 추가 1999. 06. 16 등기>			
13. 위 부대사업 일체 <1999.06.14 추가 1999. 06. 16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00 510103-*****			
1992 년 04월 28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4월 28일 중임	1995 년	05 월	03 일 등기
1998 년 04월 28일 중임	1998 년	04 월	29 일 등기
2001 년 04월 28일 중임	2001 년	05 월	04 일 등기
2004 년 04월 28일 중임	2004 년	05 월	07 일 등기
이사 이00 520103-*****			
1992 년 04월 28일 취임	년	월	일 등기
1995 년 04월 28일 중임	1995 년	05 월	03 일 등기
1998 년 04월 28일 중임	1998 년	04 월	29 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1111-ASTWTE-RSGGE			
- 1/2 -			
000012125500255220022414543235555535BACE8F1115599 10 발행일 : 2009/9/27			
			대법원

인감증명서



상 호 : 株式會社 **

본 점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대표이사 김 0 0

(510***-*****)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발행등기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이 인감은 당원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강 0 0

수수료 1,200원 영수함

02154875695545861148752574224CCCOBAC811900501 / 발급확인번호 JBEM-0EWW3 10

사 용 인 감 계



위 인감은 당 회사 대표이사의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사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한 등록, 입찰 및 기타 일체 관계서류에 사용하고자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김 0 0

_____ 귀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공사금액 : ₩2,336,247,000(1차 ₩1,112,345,000)
3. 계약번호 : 국시설계약 제2012-공-3-1004호
4. 계약연월일 : 2016년 01월 16일
5. 착공연월일 : 2016년 05월 16일
6. 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27일
7. 현장대리인 : 최 갑 돌
생년월일 : 610511 - *****
주소 : 안양 동안구 ○○동 245-12번지
기술자격등급 : 건축특급 면허종별 : 건축시공기술사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 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제출합니다.

붙임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끝.

계약자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동 319-99
 상 호 : (주) ○○건설
 대표이사 : 최 하 남 (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회원번호	0	0	0	0	2	2	5	1	No. 20040213 - 001325
성명	한글 최갑돌 한자 崔甲堦				주민등록번호	610912 ~1665443			
주소	경기 안산시 금당구 포성동 500 00아파트 1동 313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부실별점	없음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건축기사	1989.12.20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1990. 02. 26		00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졸업)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1994.02.26 ~ 1994.11.19		기사과정		건설기술교육원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2002.01.02 ~ 근무중	00중합(주)	~		~				
	~		~		~				
	~		~		~				
	~		~		~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예)

제1조(기본원칙) ①원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을은 공사에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령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을은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
 -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 이내이면 「(하도급 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을 초과하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인 월수」에 기성금지급 주기인 월수의 배수를 곱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③갑이 을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기간중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 또는 갑이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경우 을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귀속한다.

⑤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2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⑥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제8조(감독원) ①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④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현장대리인) ①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제10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③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 ④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 ⑤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⑥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 갑이 이를 부담한다.
 -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 ⑧을은 공사현장 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감독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 ⑨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 시기는 공사에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 ③을은 갑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 ④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건설위탁과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 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 ⑦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 ⑧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감독원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 반환한다.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

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응급조치) ①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갑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 에게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이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18조(손해의 부담) ①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갑의 인수 지연 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②공사목적물 검사기간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을은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갑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때에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부분사용) ①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대금지급) ①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 이하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①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발주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22조(선급금) ①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③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④선급금은 계약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제23조(하자담보) ①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②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이 지급키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 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때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 ③ 을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갑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2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 ⑤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서류제출) 을은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27조(보험가입등)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하 같다)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②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아래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갑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비) ①갑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을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업소유권) ①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이하 "공업소유권"이라 한다)을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락없이 제3자에게 공업소유권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갑 또는 을은 목적물에 대해 공업소유권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 중 책임이 있는 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③갑과 을이 공동연구하여 개발한 공업소유권의 취득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선금신청서

- 공사(용역)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 계약일자 : 2016년 11월 30일
- 계약기간 : 2016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30일
- 계약금액 : 일금 삼십칠억육천이백구십만원정(₩3,762,920,000)
(1차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 선금신청액 : 일금 일십일억오천십삼만사천원정(₩1,150,134,000)
- 신청내역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잔액	신청율 (%)	지급보증 또는 보험종류
2,336,247,000 원	1,150,134,000 원	1,186,113,000 원	49.23	건설공사공제조합

귀 본부와 계약체결한 『00000 병영생활관 본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노무자의 노임 및 소요자재를 원활히 구입하고자 상기금액을 선금으로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주소 : 경북 구미시 00동 183-1번지
 업체명 : 00종합건설 (주)
 대표자 : 노 세 문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선금사용계획서

- 계약건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 계약기간 : 2016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30일
- 선금신청액 : 일금 일십일억오천십삼만사천원정(₩1,150,134,000)
- 신청내역

구분 경비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1,150,134,000	1,150,134,000	
1. 인건비 ◦장비대 ◦노무비	절단기 등	식인	3,680	21,120,000 120,000	52,214,000 441,600,000	
2. 재료비 ◦사급자재 ◦잡자재	PHC파일 시멘트 등	식	1	656,320,000	656,320,000	

상기와 같이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오며 동조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금을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주 소 : 경북 구미시 00동 183-1번지
 업체명 : 00종합건설 (주)
 대표자 : 노 세 문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선금 재료비 세부계획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01 건축공사		식	1			
0101 병영생활관		식	1			
010101 가설공사		식	1	50,000,000	50,000,000	
010102 철근콘크리트 공사		식	1	50,000,000	50,000,000	
010103 조적공사		식	1	50,000,000	50,000,000	
010104 창호공사		식	1	100,000,000	100,000,000	
소 계					250,000,000	

선금 노무비 세부계획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01 건축공사		식	1			
0101 병영생활관		식	1			
010101 가설공사		식	1	50,000,000	50,000,000	
010102 철근콘크리트 공사		식	1	50,000,000	50,000,000	
010103 조적공사		식	1	50,000,000	50,000,000	
010104 창호공사		식	1	100,000,000	100,000,000	
소 계					250,000,000	

공사행정

선금지급각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준공(납기)기일	기신청액	금회신청액	비고
16-본-공-01본공 사(16-4010)	3,762,920,000 원	2017. 12. 30.	-	1,150,134,000 원	

위 계약에 대한 귀 발주처의 선금에 대하여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 계약 특수조건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만약 이를 미준수시 귀 발주처의 어떠한 결정이나 반환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응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 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확약함.
2. 본인의 귀책 사유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할 사유 발생시 발주처의 반환청구에 지체없이 순응하겠음.
3. 준공(납기) 연장의 사유발생시 선금지급보증기간을 반드시 연장하여 제출하겠음.
4. 선금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겠음.
5. 선금 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를 5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겠음.

2017년 12월 12일

주 소 : 경북 구미시 00동 183-1번지
 업체명 : 00종합건설 (주)
 대표자 : 노 세 문 (인)

국방시설본부재무관 귀하

금융기관 거래구조 신고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계약금액 : 일금 삼십칠억육천이백구십만원정(₩3,762,920,000)
(1차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계약년월일 : 2016년 11월 30일
4. 착공연월일 : 2016년 12월 10일
5. 준공년월일 : 2017년 12월 30일
6. 청구금액 : 일금 일십일억오천십삼만사천원정(₩1,150,134,000)

상기 공사의 선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비 고
노 세 문	정직은행	123 - 45 - 678- 9001	

※ 계약체결시 신고한 계좌와 일치

2017년 12월 12일

주 소 : 경북 구미시 00동 183-1번지
업체명 : 00종합건설 (주)
대표자 : 노 세 문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이행 서약서

계약건명	계약금액	준공(납기) 기일	기신청액	금회신청액	비고
16-본공-01 본공사(16-4010)	3,762,920,000 원	2017. 12. 30.	-	1,150,134,000 원	

위 계약에 대한 귀 발주처의 지급대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고, 또한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이행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겠으며, 만약 이를 미이행시 귀 발주처의 행정 조치나 반환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발주처로부터 선급금·기성금·준공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수령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2.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후,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업체, 지급액 등)을 발주처에게 5일 이내 통보
3. 하수급자가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업체, 지급액 등)을 5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 토록 조치
4. 상기사항을 미 준수시 관련법규에 의한 아래의 벌칙(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및 보증서 미교부)이 있음을 숙지하고 벌칙부여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가. 시정명령을 받을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건설법제81조, 제82조),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벌금 부과(하도급법 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 나.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

2017 년 12월 12일

주소 : 경북 구미시 00동 183-1번지

업체명 : 00종합건설 (주)

대표자 : 노 세 문 (인)

국방시설본부재무관 귀하

부 록 #3 공사시행단계

3 - 1 시공계획서

3 - 2 설계변경 관련 서류

3 - 3 준공기한 연기

부록 3-1

시 공 계 획 서

2017. 07. 01

00종합건설주식회사

목 차

1. 공 사 개 요
2. 현 장 조 직 도
3.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동원계획
4. PC-BOX 시 공 순 서 도
5. 세 부 시 공 계 획
6. 안 전, 환 경 및 품 질 관 리 계 획

1. 공사개요

- 가. 공 종 : 우수공사 중 함형암거 설치공사
- 나. 공사기간 : 2016. 01. 22. ~ 2017. 03. 22.
- 다. 공사범위

공 종	세부공종	규 격	단위	설계수량	비 고
함형암거 설치	PC - BOX 설치	3.0 x 2.0	M	768	

라. 제작 및 납품회사 현황

- 1) 제작회사 : (주)00산업
- 2)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00리 4444-4
- 3) PC-BOX 강제거푸집 : 표준형 4조, 굴곡부 1조
- 4) 일생산량 : 5조/일
- 5) 유압실린더에 의한 PS강선 인장계획
 - 가) 개소당 PS강선 인장력 : 5.539TON
 - 나) 유압실린더 단면적(A)= 21.2cm²
 - 다) PS강선 인장계획 5,539 / 21.2 = 261kg/cm²이상으로 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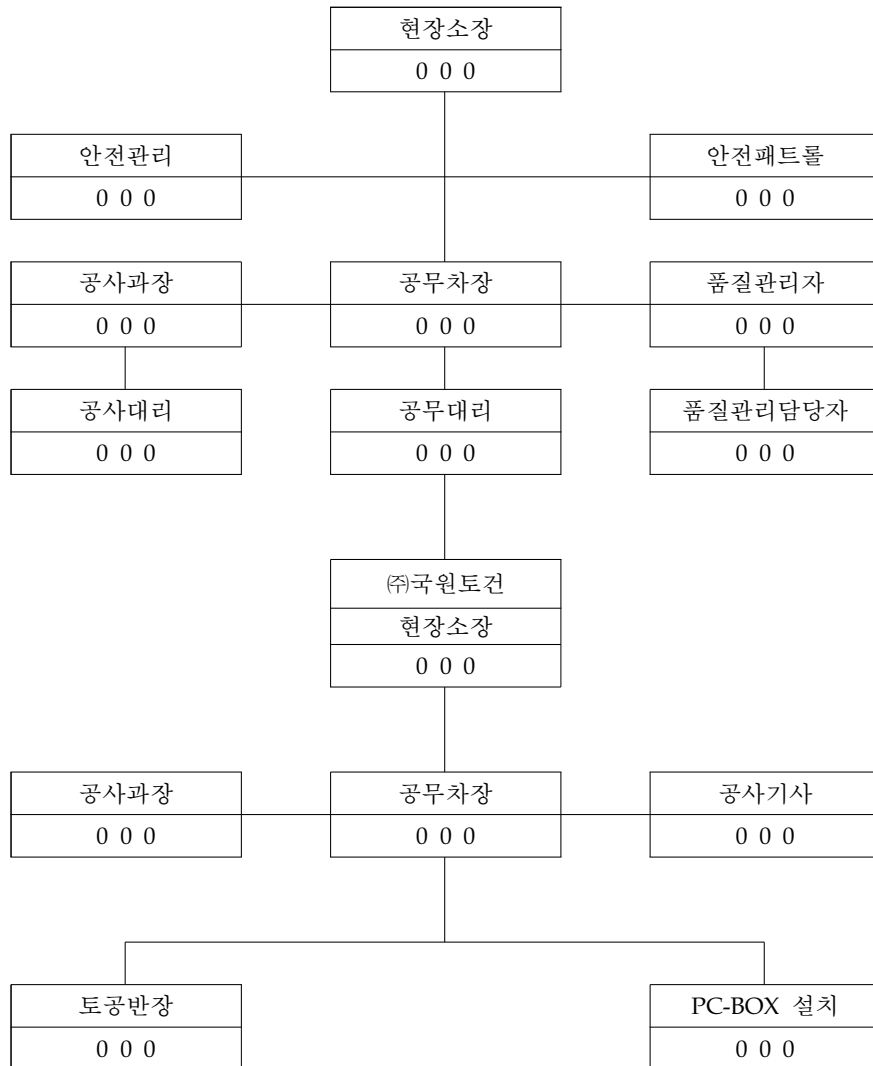
마. 허용지지력

- 1) 설계지반허용지지력(qa) : 9.35t/m²(구조계산서 참조)

바. 시공 전 검토사항

- 1) PC-BOX의 생산기간 및 반입계획(생산일자 표기)
- 2) 지반의 허용지지력
- 3) 평면, 종단선형에 대한 굴곡부 처리계획
- 4) 맨홀, 우수관 접합 및 개구부 보강계획(사다리 위치 및 설치계획)
- 5) 단부처리계획 및 동절기 시공에 의한 보양자재 준비

2. 현장조직도



3.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동원계획

가. 공사예정공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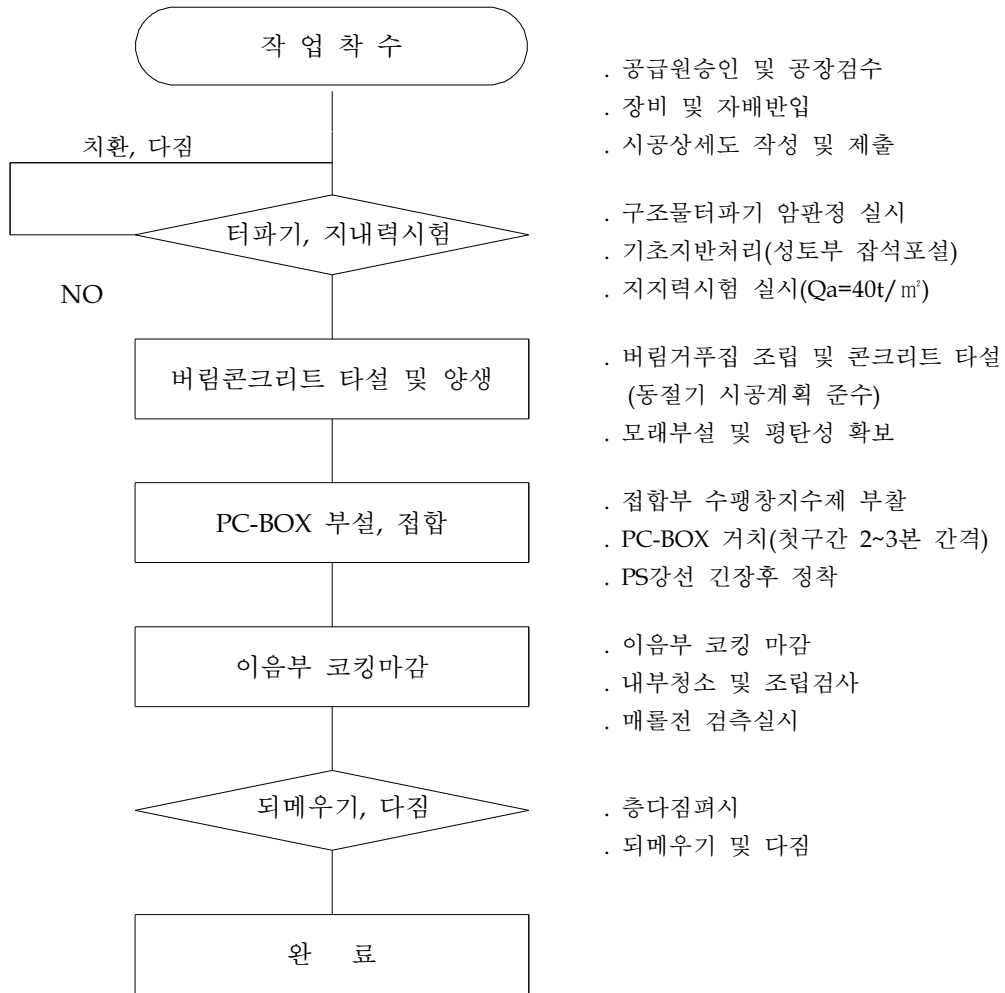
1) 공정명 : 우수공사 (PC-BOX 설치)

세부공종	단위	수 량	2016년 01월						02월						03월		비고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터 파 기	m³	24,768	신				구											500m³/일
잡석포설	m³	565																
버림콘크리트 타설	m³	283	정				정											15m³/40M
PC-BOX 접합, 부설	M	768	연				연											40M/일
되메우기, 다짐	m³	17,042	휴				휴											

나. 장비 및 인원동원계획

세부공종	단위	수 량	2016년 01월						02월						03월		비고	
			5	10	15	20	25	30	5	10	15	20	25	30	5	10		
크레인(50톤)	대	45		5	5	5		5	5	5	5	5	5					1대/일
백호우(1.0m)	대	60		5	5	5		5	5	5	5	5	5	5	5			1대/일
덤 프(15톤)	대	120	신	10	10	10	구	10	10	10	10	10	10	10	10			2대/일
진동로라(10톤)	대	60	정	5	5	5	정	5	5	5	5	5	5	5	5			1대/일
로라(1톤)	대	55	연	5	5	5	연	5	5	5	5	5	5	5	5			1대/일
시공관리자	인	55	휴	5	5	5	휴	5	5	5	5	5	5	5	5			1명/일
작업반장	인	55		5	5	5		5	5	5	5	5	5	5	5			1명/일
보통인부	인	1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명/일

4. PC-BOX 시공순서도



- . 공급원승인 및 공장검수
- . 장비 및 자재반입
- . 시공상세도 작성 및 제출
- . 구조물터파기 안정성 실시
- . 기초지반처리(성토부 압석포설)
- . 지지력시험 실시(Qa=40t/m²)
- . 버림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동질기 시공계획 준수)
- . 모래부설 및 평탄성 확보
- . 접합부 수팽창지수제 부착
- . PC-BOX 거치(첫구간 2~3분 간격)
- . PS강선 긴장후 정착
- . 이음부 코킹 마감
- . 내부청소 및 조립검사
- . 매몰전 검측실시
- . 층다짐퍼시
- . 되메우기 및 다짐

5. 세부시공계획

가. 재료

1) 수팽창 지수재

가) 수팽창 지수재는 암거내부로 침투하는 수분 및 누수방지를 위해 알맞은 팽창력을 가진 신축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요철이 없도록 한다.

2) 중방향의 접합재료

가) PS강선은 KS D 7002(PC강선 및 PC강연선)에 적합한 SWPC7B(7연선, φ=12.7mm) 이상을 사용한다.

나) 2단 양방향 정착콘은 KS D 4302(구상흑연 주철)에 적합한 FCD 이상을 사용하며, 정착력은 17ton 이상으로 한다.

3) 실링재

가) KS F 4910의 제품성능 이상이며 내구성, 내화화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되 일액형 또는 이액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 공

- 1) 시공자는 공사를 예정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원을 갖추고 현장조립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2)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토질, 지역환경 및 도로상황 등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자단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하기 쉬운 지하매설물(우오수관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조사하고 시공상세도에 반영한다.
- 3)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상이하면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4)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승인을 받은 후 평면 및 종단곡선부의 PC 압거를 별도 제작하여 시공한다.

다. 작업준비

- 1) 시공계획에 따라 설치작업 준비를 확인한다.
- 2)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 레벨용 모래를 준비한다.
- 3)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야적장소, 작업위치, 기계 및 공구, 접합재료 등을 선정한다.
- 4) 유입관, 맨홀 기타 이형제품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 자재반입계획을 수립한다.
- 5) 콘크리트공사는 동절기 시공계획서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술자단의 확인 후 실시한다.

라. 공종별 작업방법

1) 터파기 및 기초지반처리

가) 굴착폭은 조립식 PC 압거의 크기, 토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터파기 여유폭은 설계도서에 의거, 0.5M를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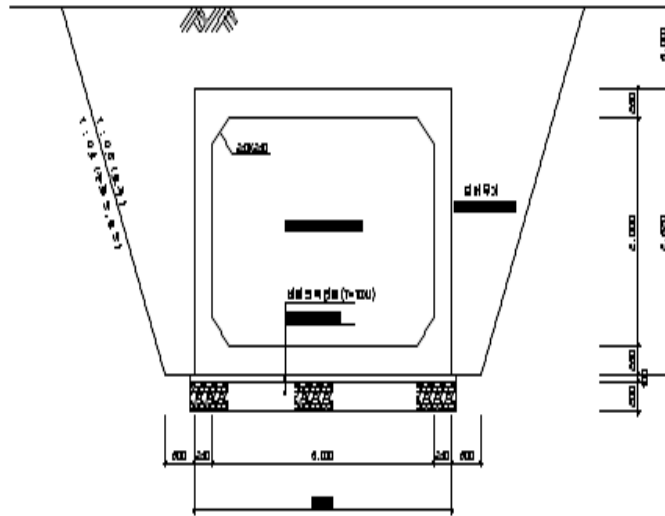
나) 기초 Con'c의 타설 및 제품조립시 항상 dry-work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수계획 및 조치가 필요하다.

다) 기초바닥면은 T=15cm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절토부 및 성토부 토사층에 대해서는 잡석을 포설한다.(T=20cm)

마) 기초 Con'c의 평탄성은 시공난이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최대한 수면구배에 따라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며, 시공오차는 -0.04m~0m 이내로 관리한다.

바) 기초 Con'c가 양생되면 모래로 수평도를 조정후 제품을 거치한다.



2) 제품의 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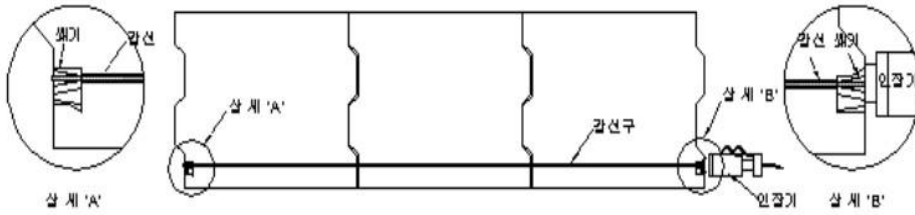
- 가) 사용 증기는 적정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되, 장비의 제원에 따라 제시된 작업반경 및 받대 각도의 한계치를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현장여건상 이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비의 용량을 증가시켜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한다.
- 나) 제품의 임시 야적시 평탄한 장소를 택하여 유해한 응력이나 오물이 묻지 않도록 받침목을 사용한다.
- 다) 제품의 인양시 인양기구(와이어, 후크, 인양용 지그 등)의 용량, 마모, 손상상태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설치시 인양기구에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라) 현장에 운반되어진 제품은 설치장비로 소정의 위치까지 제품을 끌어 올린 후 하강하면서 조정 거치하되 제품은 초지반이 낮은 쪽(하류)에서 높은 쪽(상류)으로 향해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립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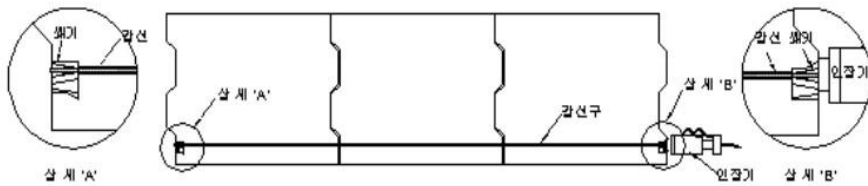
- 가) 제품을 거치하기 전에 솔, 형깎 등을 사용하여 접합면에 묻어있는 먼지,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 나) 접합부는 지수재를 미리 부착하여 조립하며, 제품 상호간의 이격간격을 조정(특히, 완만한 곡선부 시공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양한 경도와 크기를 가지는 지수재를 종류별로 준비한다.
- 다) 제품이 거치되면 PS강선과 유압인장기를 이용하여 제품 상호간을 밀착시킨다.
- 라) PS강선의 종방향 연결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1지간 분(2~5개)의 제품을 거치하고, PS강선을 삽인한 후 웨지콘과 썬기 를 하고 소정의 인장력을 가하여 제품 상호간을 밀착시킨다. 이때, 강선 정착시 Sl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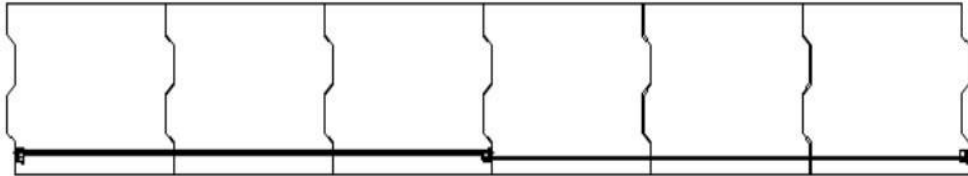
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킹판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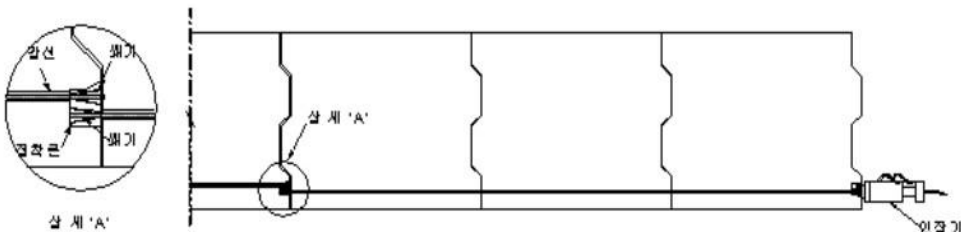
(2) 여분의 강선을 5~10mm 정도 남기고 절단한다.



(3) 1지간 분(2~5개)의 제품을 다시 거치하고 ㉔쪽에서 강선을 삽입하여 웨지콘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PS강선이 웨지콘에 정확히 정착되기 위해서 반드시 강선의 꼬임방향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끝까지 밀어 넣은 후 순간적으로 잡아당겨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꼬임선 각각의 길이가 어긋나 있을 경우에는 손망치 등을 사용하여 강선의 끝면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



(4) 다음에, (1)~(3)의 작업을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5) 제품이 거치되면 제품 상호간을 밀착시키기 위하여 유압잭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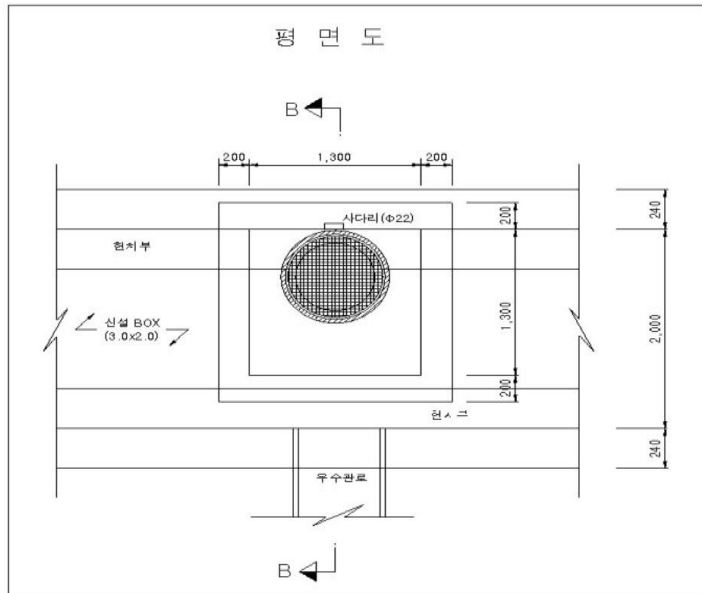
4) BOX 맨홀 및 우수관로 접합 및 개구부 보강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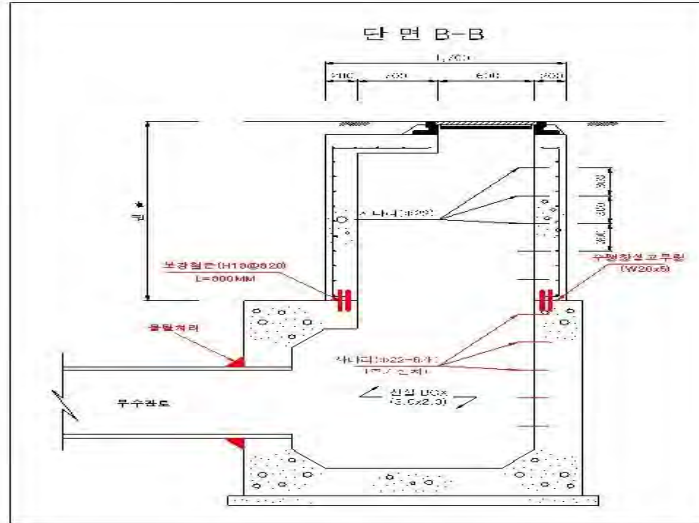
가) 맨홀의 설치위치는 내부면을 사다리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PC-BOX 내부

벽체면과 동선이 되도록 일치시킨다.

- 나) 맨홀접합부는 수평창성 고무링을 설치하여 누수를 방지토록 하고 PC-BOX 개구부상단에 철근(H13)을 제작시 배근하여 맨홀과 암거를 일체화 시킨다.
 - 다) 우수관접합부는 공장에서 BLOCK-OUT시키고 마감은 몰탈 마감으로 하며 우수관의 노출은 암거 벽체면과 일치시킨다.
 - 라) PC-BOX 생산전 맨홀 및 우수관 위치를 파악하여 공장에서 개구부를 보강(보강철근)한 후 현장 반입한다.
 - 마) PC-BOX 내부사다리는 제작과정에서 설치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천공후 설치한다.
 - 바) 상기사항은 접합상세도면 및 보강상세도면 참고("별첨")
- 5) 내부코킹마감 및 청소
- 가) 제품이 조립된 다음 BOX 내부의 이음부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코킹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마감한다.
 - 나)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조립에 대한 검측을 실시한 다음 되메우기를 층다짐(T=20CM) 실시한다.

[BOX 맨홀 및 우수관 접합상세도]





6.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

가. 안전관리계획

1) 추진방법

- 가) 1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점검, 순찰을 강화한다.
- 나) 주간 안전관리자 및 안전패트롤을 운영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다) 근로자 안전교육시 당해 공종의 위험요소를 교육, 전파한다.

2) 동절기공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가) 강풍·폭설 및 결빙에 의한 안전대책

- (1)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또는 변형 : 제설작업으로 하중을 제거한다.
- (2)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을 비치, 사용한다.
- (3) 지하매설물의 동파 : 노출관로 확인 후 보온시설을 설치한다.
- (4) 자재의 낙하·비래 : 각종시설물의 결속 및 보강을 실시한다.

나) 토사붕괴에 의한 안전대책

- (1) 굴착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안전 조치 및 절·성토 공사시 기준구배 이상으로 시공한다.
- (2) 사면의 붕괴 또는 토석낙하에 의하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 지표수 침투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로 노면수 유입을 방지한다.

다) 화재·폭발·질식에 의한 안전대책

- (1) 작업장 주변에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수시 점검한다.
- (2) 인화성 물질 저장소 마련하고 분리 보관한다.
- (3)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기 및 방화사 배치, 운영한다.

(4) 화재예방 교육 실시 및 흡연구역장소를 지정, 운영한다.

(5) 밀폐공간은 환기를 실시하고 감시자를 배치, 운영한다.

3) 작업시 작전 이동식크레인 점검

가) 권과방지 장치, 초과하중 경보장치 등 설치

나) 와이어로프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굽기에 따른 체결방법을 준수한다.

다) 와이어로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지 않도록 한다.

라) 인양용 와이어로프는 연결 사용을 금지하며 후크헤지장치를 설치한다.

마) 적재물에 탑승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다.

바) 작업반경내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신호수를 배치한다.

사) 가대의 침하방지 조치

아) 인양화물이 요동하지 않도록 유도로프 설치

자)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섬유로우프, 샤클, 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 전에 그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차) 와이어로프를 재단하여 양중 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해야 하며 가스용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카) 다음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선 안된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 절단된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타) 후크, 샤클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이동식 크레인의 자체검사

가) 크레인 등에 대하여는 1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 자체검사 실시

나) 권과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다) 와이어로프 및 당기 체인의 손상유무

라) 후크 등 당기기구의 손상유무 등

마) 기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바) 브레이크 및 췌기장치의 이상유무

5) Crane의 전도방지

가) 연약지반에 설치한 경우에는 각 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등을 하여야 한다.

- 나) 크레인 등을 사용 중량물 이양시 장비 도괴방지 조치
 - 다) 정격하중 준수
 - 라)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 췌기사용 각부 고정
 - 마) 크레인, 항발기 등 사용 인양작업시 와이어로프 절단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조치
 - 바) 충분한 능력의 크레인 사용
 - 사) 붐 전도 방지장치 사용
- 6) 운전자 준수사항
- 가) 자기 판단에 의해 조작하지 말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나) 신호자와 운전자간의 거리가 멀어서 수신호 식별이 어려울 경우 깃발에 의한 신호나 무전기를 사용한다.
 - 다) 신호자는 운전자와 작업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붉은색 장갑 등 눈에 잘 띄는 색의 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호자 표시를 몸에 부착하도록 한다.
 - 라) 화물에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아니한다.
 - 마) 작업이 끝나면 동력을 차단시키고 정지조치를 확실히 하여 둔다.
 - 바) 자재운반, 거치시 2줄매기를 실시한다.

나. 환경관리계획

1) 추진방법

- 가) 세륜시설 관리자 운영으로 진출입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한다.
- 나) 동절기 기간에는 세륜시설에 전기히터를 설치하여 동결 및 동파를 방지한다.
- 다) 콘크리트 타설 후 잔여량에 대해서는 공장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사항

- 가) 매립지의 토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기간중 발생될 비산먼지, 소음, 진동, 탁수, 건설 폐기물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나) 작업장내 살수차를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 다) 환경오염 방지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등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품질관리계획

1) 추진방법

- 가) 동절기 공사시 동절기 시공계획에 의거,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부록 3-2 설계변경 관련 서류
별지 27

00종합건설주식회사

수 신 : 국방시설본부장

경 유 : 사업관리과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설계변경 신청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본부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16-본-공-01본공사(16-4010)**에 대하여 불
임과 같이 설계변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설계변경 결의서 4부. 끝.

00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노 세 문 (인)

대리
협조자

과장

현장소장

시행

(20 . . .) 전화

/ FAX

담당

(E-mail :

) http://

본사 :

/ 현장 :

16-대마-포항 00 시설공사 (5013) 2차수 설계변경 검토 보고

<대미사업관리과, '17. 11. 10(금)>

□ 개 요

포항 대용량 송유관 교체 시설공사 중 2차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총차수 및 2차수 등 수정계약 검토 보고임.

□ 공사현황

- 공 사 명 : 16-대미-포항 00 시설공사 (5013)
- 공사기간 : 총차 2016.07.27. ~ 2017.11.21.(16개월)
2차 2018.04.24. ~ 2017.11.21.(7개월)
- 공 정 율 : 총차(계획/실시) 95.3% / 95.8%
2차(계획/실시) 95.0% / 95.6%
- 공사금액 : 총액 38.07억 (2차 36.07억)

□ 추진경과

- 2차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총차수, 2차수 수정계약(증, 2.61억)
- FED 추가공사 요청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110일)

□ 현실태 / 문제점

- 2차수 1회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에 따른 총차수, 2차수 수정계약 필요

□ 대 책

- 총차수, 2차수 계약금액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수정계약 추진
 - 총차수(계약금액) : 38.07억 → 40.68억 (증, 2.61억)
 - 총차수(준공기한) : 2017.11.21. → 2018.03.11. (+110일)
 - 2차수(계약금액) : 36.07억 → 38.68억 (증, 2.61억)
 - 2차수(준공기한) : 2017.11.21. → 2018.03.11. (+110일)

□ 향후추진

- 철저한 공정관리로 최종 준공일 내 사용부대 인계 예정

설계변경 개요서 (변경계약)

1. 공 사 명 : 16-대미-포항 00 시설공사 (5013)
2. 공 사 개 요 : 송유관로 신설(약 3.2Km)
3. 공 사 기 간 : '16. 07. 27 ~ '17. 11. 21 (16개월)
(2차 '17.04.24~'17.11.21)
4. 공 사 금 액 : 3,807,057,720원 (2차 3,607,057,720원)
5. 시 공 회 사 : 00종합개발(주)
6. 현 공 정(계획/실시) : 95.3% / 95.8% (2차 95.0% / 95.6%)
7. 준공기한 연장 : 2017.11.21. → 2018.03.11. (+110일)

8. 내역변경

1) 총 차

(단위 : 천원)

구 분		원	변 경	증 감
시설공사	토 목	922,508	1,005,929	83,420
	기 계	2,884,548	3,062,304	177,755
계		3,807,057	4,068,233	261,175

2) 2차수

(단위 : 천원)

구 분		원	변 경	증 감
시설공사	토 목	856,176	939,597	83,420
	기 계	2,750,881	2,928,636	177,755
계		3,607,057	3,868,233	261,175

9. 세부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원 설 계	변 경 설 계	증 감	비 고
토 목	공통가설공사	32,375	32,375		
	시험비	2,677	2,677		
	토목공사	616,883	681,464	64,580	
	운반비	227	227		
	시공상세도	8,239	8,239		
	외자재 및 간접비	305,626	324,465	18,839	
	소 계	922,508	1,005,929	83,420	
기 계	기계공사	1,338,650	1,439,408	100,757	
	운반비	9,060	9,060		
	하역료	1,513	1,513		
	통관료	1,099	1,099		
	시공상세도	24,425	24,425		
	외자재 및 간접비	1,509,799	1,586,797	76,997	
	소 계	2,884,548	3,062,304	177,755	
총 계	3,807,057	24,637,871	261,175		

※ 총차수 설계변경 261,175천원

10. 변경 사유

1) 총 차

구 분		세부공종	사 유	비 고
토 목	철거공사	OPEN DITCH 철거 및 아스팔트 포장 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 DITCH 철거(W=450mm,H:750mm): 3 M → 0 M (-3) - OPEN DITCH 철거 (W=1000mm,H:1100mm) : 2 M → 0 M(-2) - 아스콘 포장 철거(T=80mm) : 0 M3 → 37.92 M3(+ 37.92 M3) - 아스팔트포장절단 (SAW CUTTING,철거용) : 0 M → 749 M3 (+ 749 M3) 	설계 변경 2차수 1회
	송유관 공사	터파기/되메우기, 소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보통토사, 백호90%+ 인력10%) : 10,773 M3 → 10,296 M3 (-477 M3) - 되메우기(백호0.7,90%+ 인력10%+ 래머80kg) : 0 M3 → 592 M3 (+ 592 M3) - 소운반(임시야적장↔작업장(1.9Km)) : 0 M3 → 8,339 M3 (+ 8,339 M3) - 터파기(보통토사, 백호60%+ 인력40%) : 0 M3 → 1,203 M3 (+ 1,203 M3) 	
	우수공사	우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보통토사, 백호90%+ 인력10%) : 52 M3 → 0 M3 (-52 M3) - 되메우기(백호0.7,90%+ 인력10%+ 래머80kg) 52 M3 → 0 M3 (-52 M3) - OPEN DITCH 설치(W:450mm,H:750mm) 3 M → 0 M (-3 M) - OPEN DITCH 설치(W:1000mm,H:1100mm) 2 M → 0 M (-2 M) -OPEN DITCH W/STEEL GRATINGS 설치 85 M → 0 M (-85 M) 	
	포장공사	아스팔트 포장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준비공 : 2,531 M2 → 3,005 M2 (+ 474 M2) - 아스팔트 포장 : 23.83 a → 28.57 a (+ 4.74 a) - 차선도색 : 0 M2 → 340.5 M2 (+ 340.5 M2) - 아스팔트 덧씌우기(3Cm 절삭후 밀링) 0 M2 → 1,526.6 M2 (+ 1,526.6 M2) 	

구분	세부공종	사유	비고
기계	FUEL PIPING LINE(VALVE BOX #1->VALVE BOX #2)	송유관 설치 공사 - ELBOW 45°(ASTM A234-WPB) : 24 EA → 0 EA (-24 EA) - 접지공사 (27개소) : 0 L/S → 1L/S (+ 1 L/S) - 용접사 기량시험 : 0 인 → 5 인 (+5 인) - r-Ray : 1,696 EA → 1,711 EA (+ 15 EA) - 곡관 3D 밴드 : 0 EA → 50 EA (+50 EA)	
	FUEL PIPING LINE (VALVE BOX #1 -> SERVICE TANK & PUMP HOUSE#4)	송유관 설치 공사 - ELBOW 90°(ASTM A234-WPB) D150 4 EA → 12 EA (+ 8 EA) - ELBOW 45°(ASTM A234-WPB) D150 8 EA → 12 EA (+ 4 EA) - PIPE WELDING : 35 EA → 59 EA (+ 24 EA) - r-Ray : 105 EA → 177 EA (+ 72 EA) - 노무비(플랜트 용접공) : 11.9 인 → 32.06 인 (+ 20.16 인) - 노무비(플랜트 배관공) : 23.8 인 → 38.2 인 (+ 14.4 인) - 노무비(특별인부) : 16.6 인 → 45.4 인 (+ 28.8 인) - 노무비(보통인부) : 0 인 → 18.72 인 (+ 18.72 인)	설계 변경 2차수 1회
	VALVE BOX #1	VALVE BOX #1 - ANSI FLANGE WNFF 150LBS 150A : 0 EA → 6 EA (+6 EA) - FLANGE CONNECTION(WNRF) : 7 SET → 10 SET (3 SET) - PIPE WELDING : 36 EA → 42 EA (+ 6 EA) - r-Ray : 120 EA → 138 EA (+ 18 EA) - 노무비(플랜트 용접공) : 20.7 인 → 25.75 인 (+ 5.04 인) - 노무비(플랜트 배관공) : 10.3 인 → 13.9 인 (+ 3.6 인) - 노무비(특별인부) : 10.3 인 → 17.5 인 (+ 7.2 인) - 노무비(보통인부) : 0 인 → 4.68 인 (+ 4.68 인)	

구 분		세부공종	사 유	비 고
기 계	VALVE BOX #2	VALVE BOX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SI FLANGE WNFF 150LBS 150A : 0 EA → 8 EA (+8 EA) - FLANGE CONNECTION(WNRF) : 3 SET → 7 SET (4 SET) - PIPE WELDING : 10 EA → 18 EA (+8 EA) - r-Ray : 30 EA → 54 EA (+24 EA) - 노무비(플랜트 용접공) : 8.8 인 → 15.52 인 (+6.72 인) - 노무비(플랜트 배관공) : 4.4 인 → 9.2 인 (+4.8 인) - 노무비(특별인부) : 4.4 인 → 14.0 인 (+9.6 인) - 노무비(보통인부) : 0 인 → 6.24 인 (+6.24 인) 	설계 변경 2차수 1회
	HIGH POINT VENT VALVE BOX #1,#3	VALVE BOX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SI FLANGE WNFF 150LBS 150A : 0 EA → 4 EA (+4 EA) - FLANGE CONNECTION(WNRF) : 2 SET → 4 SET (2 SET) - PIPE WELDING : 2 EA → 6 EA (+4 EA) - r-Ray : 12 EA → 24 EA (+12 EA) - 노무비(플랜트 용접공) : 28.6 인 → 31.96 인 (+3.36 인) - 노무비(플랜트 배관공) : 14.3 인 → 16.7 인 (+2.4 인) - 노무비(특별인부) : 14.3 인 → 4.8 인 (+19.1 인) - 노무비(보통인부) : 0 인 → 3.12 인 (+3.12 인) 	

구 분		세부공종	사 유	비 고
기 계	HIGH POINT VENT VALVE BOX #2	VALVE BOX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SI FLANGE WNFF 150LBS 150A : 0 EA → 6 EA (+6 EA) - FLANGE CONNECTION(WNRF) : 6 SET → 9 SET (3 SET) - PIPE WELDING : 15 EA → 21 EA (+6 EA) - r-Ray : 45 EA → 63 EA (+18 EA) - 노무비(플랜트 용접공) : 83 인 → 88.04 인 (+5.04 인) - 노무비(플랜트 배관공) : 41.4 인 → 45 인 (+3.6 인) - 노무비(특별인부) : 41.4 인 → 48.6 인 (+7.2 인) - 노무비(보통인부) : 0 인 → 4.68 인 (+4.68 인) 	설계 변경 2차수 1회
	LOW POINT DRAIN VALVE BOX #1,#2,#3	VALVE BOX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SI FLANGE WNFF 150LBS 150A : 0 EA → 4 EA (+4 EA) - FLANGE CONNECTION(WNRF) : 2 SET → 4 SET (2 SET) - PIPE WELDING : 4 EA → 8 EA (+4 EA) - r-Ray : 12 EA → 24 EA (+12 EA) - 노무비(플랜트 용접공) : 29.5 인 → 32.86 인 (+3.36 인) - 노무비(플랜트 배관공) : 14.7 인 → 17.1 인 (+2.4 인) - 노무비(특별인부) : 14.7 인 → 19.5 인 (+4.8 인) - 노무비(보통인부) : 0 인 → 3.12 인 (+3.12 인) 	
	외자재 공사	외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GHTING SURGE ARRESTOR (L=200mm) : 12 EA → 0 EA (-12 EA) - LIGHTING SURGE ARRESTOR Class I, Div.I : 0 EA → 21 EA (+21 EA) - FLANGE INSULATING GASKET KITS 24 EA → 21 EA (-3 EA)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

국 방 시 설 본 부

문서번호 : 2017 . 11. 10.
 수 신 : 국군재정관리단장 발신:공사감독관 성 명: 6급 이 기 동 (인)
 참 조 : 계약처장
 제 목 : 공사(계약)내용 변경통지서

당 부대 수요공사의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치하고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공 사 명	16-대미-포항00시설공사(5013) (총차)			
계 약 자	서광종합개발(주)			
계 약 연 월 일	2016. 07. 27.	착 공 연 월 일	2016. 07. 27.	
계 약 금 액	₩ 3,807,057,720(총차)			
변 경 내 용				
공기 변경	당 초 준 공 기 한	2017. 11. 21.	준 공 연 기 기 한	2018. 03. 11.
	공 사 종 지 일 자	해당없음	재 착 공 일 자	해당없음
	지체상금부과여부	해당없음		
	변 경 사 유	추가공사(송유관로 차동적 열제거장치 추가)		
계약 금액 변경	당 초 계 약 금 액	₩ 3,807,057,720	붙 임 서 류 1. 수정계약동의서 2. 변경사유서	
	변 경 후 계 약 금 액	₩ 4,068,233,497		
	증 감 액	₩ 261,175,777		
공 사 진 도	2017. 11. 09. 현재 (계획)95.3% / (실적)95.8%			
기 타 변 경 사 항	1. 설계변경(2차수 1회) (총차수, 2차수 증액) 2. 준공기한 연장(총차수, 2차수)			

시설공사변경내역서(총차)

공사명 : 16-대미-포항00시설공사(5013)

금 액 : 당초금액 W3,807,057,720

변경후 금액 W4,068,233,497 증) W261,175,777

작성자 : 00종합개발(주) 대표이사 성명 이 정 직 (인)

심사자 : 국방시설본부 공사감독관 6급 이 기 동 (인)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내 역			변 경 후 내 역			증감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별첨 내역서 참조 </div>									

수정 계약 동의서 (총차)

1. 계약건명 : 16-대미-포항00시설공사(5013) (계약번호 : 제2016UMMA560호)
2. 계약기간 : 2016.07.27 ~ 2017.11.21
3. 계약금액 : 금 삼십팔억칠백오만칠천칠백이십원 정 (₩3,807,057,720)
4. 집행재무관 부대명(발주부대) : 국방시설본부
5. 계약대상자 : 서광종합개발(주)
6. 수정계약 :

가. 관련근거 :

- 1) 심의의결서(2017. 11. 03)
- 2) FED 추가 공사 요청 서신(2017.11.06.)

나. 내 용 : 포항 대용량 송유관 교체 시설공사 설계변경 2차수 1회 계약 반영

다. 사 유 : - 2차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총차 계약금액 조정(증액)

당초 금액 ₩3,807,057,720

변경후 금액 ₩4,068,233,497 증) ₩261,175,777

- 송유관로 차동적 열제거장치 추가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당초 2017. 11. 21.

변경후 2018. 03. 11. 증) +110일

위와 같이 수정계약 사유 및 내용에 동의함

2017년 11월 10일

업 체 명 : 00종합개발(주) 대 표 : 홍 길 동 (인)

공사(계약)내용 변경의뢰서

국 방 시 설 본 부

문서번호 : 2017 . 11. 10.
 수 신 : 국군재정관리단장 발신:공사감독관 성 명: 6급 이 기 동 (인)
 참 조 : 계약처장
 제 목 : 공사(계약)내용 변경통지서

당 부대 수요공사의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치하고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공 사 명	16-대미-포항00시설공사(5013) (2차)			
계 약 자	서광종합개발(주)			
계 약 연 월 일	2017. 04. 24.	착 공 연 월 일	2016. 07. 27.	
계 약 금 액	₩ 3,607,057,720			
변 경 내 용				
공기 변경	당 초 준 공 기 한	2017. 11. 21.	준 공 연 기 기 한	2018. 03. 11.
	공 사 중 지 일 자	해당없음	재 착 공 일 자	해당없음
	지체상금부과여부	해당없음		
	변 경 사 유	추가공사(송유관로 차동적 열제거장치 추가)		
계약 금액 변경	당 초 계 약 금 액	₩ 3,807,057,720	붙 임 서 류 1. 수정계약동의서 2. 변경사유서	
	변 경 후 계 약 금 액	₩ 4,068,233,497		
	증 감 액	₩ 261,175,777		
공 사 진 도	2017. 11. 09. 현재 (계획)95.3% / (실적)95.8%			
기 타 변 경 사 황	1. 설계변경(2차수 1회) (총차수, 2차수 증액) 2. 준공기한 연장(총차수, 2차수)			

시설공사변경내역서(2차)

<p>공사명 : 16-대미-포항00시설공사(5013)</p> <p>금 액 : 당초금액 ₩3,607,057,720</p> <p style="padding-left: 100px;">변경후 금액 ₩3,868,233,497 증) ₩261,175,777</p> <p>작성자 : 서광종합개발(주) 대표이사 성명 홍 길 동 (인)</p> <p>심사자 : 국방시설본부 공사감독관 6급 이 기 동 (인)</p>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내 역			변 경 후 내 역			증감액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단 가	금 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p>별첨 내역서 참조</p> </div>									

수정 계약 동의서 (2 차)

1. 계약건명 : 16-대미-포항00시설공사(5013) (계약번호 : 제2016UMMA560호)

2. 계약기간 : 2017.04.24 ~ 2017.11.21

3. 계약금액 : 금 삼십육억칠백오만칠천칠백이십원 정 (₩3,607,057,720)

4. 집행재무관 부대명(발주부대) : 국방시설본부

5. 계약대상자 : 서광종합개발(주)

6. 수정계약 :

가. 관련근거 :

- 1) 심의의결서(2017. 11. 03)
- 2) FED 추가 공사 요청 서신(2017.11.06.)

나. 내 용 : 포항 대용량 송유관 교체 시설공사 설계변경 2차수 1회 계약 반영

다. 사 유 : - 2차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총차 계약금액 조정(증액)

당초 금액 ₩3,607,057,720

변경후 금액 ₩3,868,233,497 증) ₩261,175,777

- 송유관로 차동적 열제거장치 추가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당초 2017. 11. 21.

변경후 2018. 03. 11. 증) +110일

위와 같이 수정계약 사유 및 내용에 동의함

2017년 11월 10일

업 체 명 : 00종합개발(주) 대 표 : 홍 길 동 (인)

단 가 적 용 동 의 서

1. 계약건명 : 16-대미-포항00시설공사 (계약번호 : 제2016UMMA560호)
2. 계약기간 : 2016.07.27 ~ 2017.11.21(총차)
3. 계약금액 : 금 삼십팔억칠백오만칠천칠백이십원 정 (₩3,807,057,720)
4. 집행재무관 부대명(발주부대) : 국방시설본부
5. 계약대상자 : 서광종합개발(주)
6. 수정계약 단가적용 / 금액확인 동의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③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물량증가 / 신규비목의 단가를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하고, 수정내역서 상의 단가 반영 여부를 상호 확인하여 본 동의를 작성 함.

또한,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이 동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본 동의서에 따르며 이로 인한 수정계약 금액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동의함.

1) 단가 적용 동의 내용

물량증감 품목 (설계변경 전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 (설계변경에 따라 반영된 품목)
협의율 93.5% (물량감 품목은 기계계약단가 적용)	협의율 93.5%

2017 년 11 월 10 일

업 체 명 : 00종합개발(주) 대 표 홍 길 동 (인)

감 독 부 대 :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6 급 이 기 동 (인)

총 차수공사예정공정표(변경전)

공 사 명		16-다목적 OY사업자 (OJL)		개 의 일 자		2019년 11월 27일		착 공 일 자		2019년 11월 27일		도 공 회 사		기 관 총 합 계 발 부																						
공 사 용 역		*4,167,257.72		계 목 번 호		정 2019AMAS000		공 목 일 자		2021년 11월 21일		일 정 자		현장대입한 사 용 영 (단)																						
공 용 명	공사금액	부담(%)		2019년											2021년											진 도										
		지방공사	민적공사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공용기공공사	48,812,044	6.57%	1.2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		
전기공사	38,214,527	2.08%	0.50%																																80%	
통신공사	18,851,748	9.50%	2.41%																																80%	
유수공공사	6,982,563	69.18%	16.78%																																80%	
유수공사	38,728,399	1.76%	0.48%																																70%	
배수공사	94,852,521	35.28%	2.49%																																70%	
배수공사	28,699,228	1.80%	0.44%																																60%	
소계	922,508,928	100.00%	24.21%																																	
FIRE PUMP LINK/VALVE BOX #1-1 (FIRE용 비상차수)	1,199,783,185	38.37%	29.6%																																50%	
FIRE PUMP LINK/VALVE BOX #2-1 (SERVICE TANK & FLAP HOUSE용)	63,531,498	2.0%	1.8%																																50%	
VALVE BOX #1, #2	194,493,517	3.52%	2.74%																																40%	
HIGH POINT MESH VALVE BOX	96,512,852	3.5%	2.54%																																40%	
LOW POINT DRAIN VALVE BOX	64,542,208	2.22%	1.68%																																30%	
CATHODIC PROTECTION	126,987,520	4.3%	3.28%																																30%	
PIS SYSTEM	241,488,778	8.27%	6.84%																																20%	
기존배관 철거기공 작업	30,525,953	0.81%	0.53%																																20%	
유수공공사	1,084,548,623	36.37%	27.94%																																10%	
소계	2,884,848,794	100.00%	75.77%																																0%	
총계	6,007,657,770																																			
진	계속																																			
도	실시																																			
비	계속																																			
비	실시																																			
회계 예산 사업예산 및 예산 조인 제 3조에 의거 승인 신청합니다				신청단 : 서울특별시청 배수사업자 (단)											감리단 협의 (단)											승 인 (단)										

총 차수공사예정공정표(변경후)

공 사 명		16-다목적 OY사업자 (OJL)		개 의 일 자		2019년 11월 27일		착 공 일 자		2019년 11월 27일		도 공 회 사		기 관 총 합 계 발 부																						
공 사 용 역		*4,167,257.72		계 목 번 호		정 2019AMAS000		공 목 일 자		2021년 11월 21일		일 정 자		현장대입한 사 용 영 (단)																						
공 용 명	공사금액	부담(%)		2019년											2021년											진 도										
		지방공사	민적공사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공용기공공사	48,812,044	4.83%	1.21%																																100%	
전기공사	38,976,227	2.59%	0.51%																																	80%
통신공사	18,312,922	5.68%	2.31%																																	80%
유수공공사	6,982,563	69.07%	17.38%																																	80%
유수공사	38,728,399	1.7%	0.48%																																	70%
배수공사	117,251,815	11.44%	3.17%																																	60%
배수공사	14,477,979	1.44%	0.41%																																	60%
소계	1,081,929,497	100.00%	24.73%																																	
FIRE PUMP LINK/VALVE BOX #1 (FIRE용 비상차수)	1,142,799,238	37.2%	28.9%																																	50%
FIRE PUMP LINK/VALVE BOX #2 (SERVICE TANK & FLAP HOUSE용)	60,920,887	3.16%	2.8%																																	50%
VALVE BOX #1, #2	198,218,886	4.0%	3.0%																																	40%
HIGH POINT MESH VALVE BOX	118,194,711	4.0%	2.8%																																	40%
LOW POINT DRAIN VALVE BOX	70,793,200	2.6%	2.0%																																	30%
CATHODIC PROTECTION	133,112,033	4.2%	3.2%																																	30%
PIS SYSTEM	279,650,288	7.8%	6.8%																																	20%
기존배관 철거기공 작업	19,889,185	0.41%	0.44%																																	20%
유수공공사	1,111,993,193	36.1%	27.48%																																	10%
유수공사		0.0%	0.0%																																	0%
소계	1,082,104,000	100.00%	75.27%																																	
총계	4,092,223,497																																			
진	계속																																			
도	실시																																			
비	계속																																			
비	실시																																			
회계 예산 사업예산 및 예산 조인 제 3조에 의거 승인 신청합니다				신청단 : 서울특별시청 배수사업자 (단)											감리단 협의 (단)											승 인 (단)										

CEPOF-PPA

6 November 2017

MEMORANDUM FOR MND-DIA Inspector Mr. Lee Ki Dong

SUBJECT: CY16 ROKFC IN-KIND M16R700 REPLACE BULK FUELTRANSFER PIPE LINE, POHANG AB –
Construction Modification Request

1. Reference to the subject project CY16 ROKFC IN-KIND M16R700 REPLACE BULK FUELTRANSFER PIPE LINE, POHANG, it is requested that a construction contract modification is executed to install fuel line pressure reliefs for the installed lines. Without these reliefs the pipeline will not meet the fuel facility and will not meet the user's requirements.
2. During the design this feature was omitted due to incorrectly interpreting the user's review comment and left out of the design by mistake.
3. Please inform us the potential time and cost impact for this change when you can.
4. The POC for this request is the undersigned at 721-6113, email: suk.y.cho@usace.army.mil.

CHO.SUK.YON
G.1043293326
SUK Y. (STEVE) CHO
Project Manager
Army, Navy and Marine Branch
Programs and Project Management Division

Digitally signed by
CHO.SUK.YONG.1043293326
DN: cn=CHO, o=U.S. Government, ou=OCG,
ou=PKI, ou=USA,
c=CHO.SUK.YONG.1043293326
Date: 2017.11.06 16:59:53 -0900

설 계 변 경 사 유 서

- 공 사 명 : 16-대미-포항00시설공사(5013)
- 공사기간 : 2016. 07. 27. ~ 2017. 11. 21
- 계약금액 : 3,807,057,720원
- 설계변경 사유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귀 책 사 유 단 가 적 용	증감액 (천원)
	총 계			+ 281,800
	소 계			+ 89,878
토목	<p>【토-① VIP도로 송유관 노선변경】</p> <p><세부 수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설계 : 비행장 비포장지역 관로 196m 시공 - 변경설계 : VIP도로 비포장지역 관로 36m 시공, 포장지역 관로 160m 시공, ASCON 포장 2.4a 추가 	<p>○ 현장여건 상이에 의한 물량증가</p> <p>*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RFI-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약조건에 의한 노선 변경 : 기존 담장의 버팀대, 급경사면, 다수의 지면 함몰부, 소나무 군락으로 인해 장비이동 및 작업, 자재반입 불가 • 노선변경으로 우수공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6월 	-4,851
	<p>【토-② 포장도로 구간내 토사 적치장 부재로 인한 소운반 발생】</p> <p><세부 수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설계 : 소운반 0m³ - 변경설계 : 소운반 8,339m³ 운반거리 1.9km(작업장 → 임시 적치장) 	<p>○ 현장여건 상이에 의한 물량증가</p> <p>*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RFI-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도로 구간내 도로주변에 굴착토사의 임시적치장 부재로 인해 지정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하였다가 퇴메우기시 다시 작업장소로 운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6월 	+ 35,855
	<p>【토-③ 전기방식설비 설치에 따른 토공물량 증가】</p> <p><세부 수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설계 : 터파기, 퇴메우기 : 0m³ - 변경설계 : 터파기 725m³, 퇴메우기 592m³ ASCON 포장 2.34a 	<p>○ 내역 누락에 의한 물량증가</p> <p>*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RFI-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서 규정에 따라 송유관에서 최소 2.5m 떨어진 곳에 전기 방식설비 설치 • 내역서에 전기방식설비 토공사 항목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6월 	+ 23,777
	<p>【토-④ 지중장애물에 의한 증기단가 변경】</p> <p><세부 수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설계 : 터파기 물량 1,461m³ 백호90% + 인력10% - 변경설계 : 터파기물량 1,461m³ 백호30% + 인력70% 	<p>○ 현장여건 상이에 의한 물량증가</p> <p>*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RFI-0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시험굴착으로 확인된 지장물, 송유관 시공 중 조우한 지장물들로 인해 지장물 부근 굴착 시 장비효율의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6월 	+ 12,030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귀책사유 단가적용	증감액 (천원)
토목	<p>【토-⑤ 아스팔트 덧씌우기 추가】</p> <p><세부 수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설계 : 아스팔트 덧씌우기 : 0㎡ - 변경설계 : VIP도로 신규 : 305.7㎡ <li style="padding-left: 40px;">VIP도로 추가 : 816.8㎡ <li style="padding-left: 40px;">군수단 3거리 : 404.1㎡ <p>총 아스팔트 덧씌우기 : 1,526.6㎡</p>	<p>○ 사용부대(한측해빙) 요청에 의한 물량증가</p> <p>*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사용부대 메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유관 설치 구간 중 도로지역은 다수의 퀘도장비 및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는 구간이므로 일부 구간 전면 포장 및 한 개 차선 전면포장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9월 	+23,067
	소 계			+191,921
기계	<p>【기-① 용접사 자격검증에 따른 시험비 추가】</p> <p><세부 수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설계 : 시험 0식 - 변경설계 : 시험 1식 (현장 기량시험 1회, 시험실 인장 시험 2회) 	<p>○ 설계도서 불분명에 의한 물량증가</p> <p>*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RFI-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서 규정에 따라 QAB 및 감독 입회하에 현장에서 용접사 기량 검증 • 현장 기량시험 후 시편채취 시험실에서 인장시험 • 내역서에 자격검증 시험항목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6월 	+2,305
	<p>【기-② 3D BEND 미반영에 따른 물량 추가】</p> <p><세부 수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설계 : 3D Bend ; 0개 - 변경설계 : 3D Bend 2°~44° ; 29개, 45°~89° ; 20개, 90° ; 1개 	<p>○ 설계도서 상이에 의한 물량증가</p> <p>*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RFI-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서 규정 및 시공도에 의거 송유관로의 모든 변곡점에는 3D Bend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물량 추가 • 내역서에 3D Bend 항목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6월 	+29,147
	<p>【기-③ 이상전압방지 규격 변경 및 추가】</p> <p><세부 수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설계 INSULATING KITS : 24ea - 변경설계 INSULATING KITS : 27ea FLANGE A105 6" : 40ea PIPE WELDING : 40ea LIGHTING SURGE ARRESTOR (CLASS I) : 27ea LIGHTING SURGE ARRESTOR (L=200MM) : -12ea(감) 접지 : 27ea 	<p>○ 현장여건 상이에 의한 물량증가</p> <p>*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RFI-0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서 규정에 의거 IF 설치 수량이 증가 되고 밸브 박스 내부 방폭 적용으로 인하여 자재 규격이 변경되어 설치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9월 	+125,925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귀책 사유 단 가 적용	증감액 (천원)
기계	<p>【가-④ 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송유관 선형변경 추가】</p> <p><세부 수량> - 원설계 : PIPE WELDING : 0ea - 변경설계 : PIPE WELDING P/H #4 ~ V/B #A-1 : 16ea P/H #1 ~ V/B #A-8 : 8ea r-Ray : 72ea</p>	<p>○ 현장여건 상이에 의한 물량증가 * 기타현장여건반영 (관련근거 : RFI-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 박스의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PUMP HOUSE와 연결배관의 노선이 변경됨. • 도면과 현장의 표고차로 인하여 설치높이가 변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협의율(93.5%) 적용 • 실정보고 시점 : 2017년 09월 	+34,542

※ 계약상대자의 사유가 있을 시 명시 요망(낙찰율 적용 대상)

포항 대용량 송유관 교체 시설공사 설계변경 단가 심의

□ 일시 / 장소 : '17. 10. 23. / 대미사업과 사무실

□ 심의위원 / 참석자 (5명)

직 책	계급 / 성명	심의결과 동의	직 책	계급 / 성명	심의결과 동의
사업관리	4급/안은석	동의	공사감독관	6급/이기동	동의
토목	6급/김대열	동의	현장대리인	나유승	동의
기계	5급/안승민	동의			

□ 관련법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 ①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설계변경 단가심의 (안)

구 분	심의 (안)	비 고
기존비목의 수량 감	계약단가 적용	20조 1항 적용
증가된 물량	설계변경 당시 단가 x 협의율	20조 2항 적용
신규비목	$(87.066\% + 100\%) / 2 = 93.533\% \approx 93.5\%$	
심의결과	93.5%	

- ※ 별 지 : 1. 설계변경 협의율 검토 의견서 1부.
2. 설계변경 단가 협의서 1부. 끝.

작 성 자 : 포항 대용량 송유관 교체 시설공사 공사감독관 6급 이 기 동 (인)



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터파기 시공비 변경 반영 건										주요 사항																									
원 설계 ● 내역서상 중기단가 비율 백호 90% + 인력 10% 적용		변경 설계 ● 지장물 부근 중기단가 비율 백호 30% + 인력 70% 적용								원 인 ◆ 외청예산 상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행서</th> <th>설계도면</th> <th>내역서</th> </tr> </thead> <tbody> <tr> <td>중기단가(백호30%+인력70%)</td> <td>-</td> <td>-</td> <td>변영 (백호90%+인력10%)</td> </tr> </tbody> </table>		구분	시행서	설계도면	내역서	중기단가(백호30%+인력70%)	-	-	변영 (백호90%+인력10%)																
구분	시행서	설계도면	내역서																																
중기단가(백호30%+인력70%)	-	-	변영 (백호90%+인력10%)																																
		※ 지장물 간섭으로 인하여 굴착시 장비 효율이 저하되어 변경 반영함. (중기단가 : 백호90%+인력10% → 백호30%+인력70%로 변경)								회 집 토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회신일</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RFI-018</td> <td>17.06.18</td> <td>국방 시설본부에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고 협상 한 후, 상기 실제 상황에 초래된 최종 설계변경 금액을 제출할 것</td> </tr> </tbody> </table>		구분	회신일	내용	RFI-018	17.06.18	국방 시설본부에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고 협상 한 후, 상기 실제 상황에 초래된 최종 설계변경 금액을 제출할 것																		
구분	회신일	내용																																	
RFI-018	17.06.18	국방 시설본부에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고 협상 한 후, 상기 실제 상황에 초래된 최종 설계변경 금액을 제출할 것																																	
										변경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규격</th> <th>단위</th> <th>당초</th> <th>변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터파기 보조장지역</td> <td></td> <td>M3</td> <td>675</td> <td>675</td> <td>-</td> </tr> <tr> <td>터파기 포상지역</td> <td></td> <td>M3</td> <td>528</td> <td>528</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M3</td> <td>1,203</td> <td>1,203</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터파기 보조장지역		M3	675	675	-	터파기 포상지역		M3	528	528	-	합계		M3	1,203	1,203	-
구분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터파기 보조장지역		M3	675	675	-																														
터파기 포상지역		M3	528	528	-																														
합계		M3	1,203	1,203	-																														
										회 금 액(단위 : 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원 설계</th> <th>변경실계</th> </tr> </thead> <tbody> <tr> <td>4,796</td> <td>27,998</td> </tr> <tr> <td>증 감 : (증)</td> <td>23,202</td> </tr> </tbody> </table>		원 설계	변경실계	4,796	27,998	증 감 : (증)	23,202																		
원 설계	변경실계																																		
4,796	27,998																																		
증 감 : (증)	23,202																																		
Chief Engineer 국방시설본부 National Facilities Agency		공사명 모함 태동영 승우중 교차 시설공사 (2016UMMA560호)		책임관리 중 인		감독관		담당자		담당관		도면명		도면번호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도 급 금 액 : 일금 삼십칠억육천이백구십만원정(₩3,762,920,000)
(1차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계약연월일 : 2016년 11월 30일
4. 착공연월일 : 2016년 12월 10일
5. 준 공 기 한 : 총차 준공일 2017년 12월 30일
(1차 준공일 : 2017년 04월 30일)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연기기한 : 2017년 6월 25일까지(175일간)
- 나. 연기사유 : 건물위치 변경 및 개수공사 착수 지연
- 다.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라. 귀책소재 : 발주청

-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 사유서 4부.
2. 준공기한 연기 동의서 4부.
3. 수정 공정표(변경 전 · 후) 4부.
4. 기타 증빙자료 4부. 끝.

2017년 03월 05일

계약자 주 소 : 경북 구미시 00동 183-1번지
상 호 : 00종합건설(주)
대 표 : 노 세 문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준공기한 연기 이유서

1. 준공연기 사유

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 (1) 신교대 연병장 면적협소에 따른 사용부대의 건물위치 변경(48일) 지연
 - (가) 건물 F.L+4M, 뒤로 16M 이동 배치
 - (나) 토목공사 재설계('10. 8. 19 ~ 10. 7)/ 48일) 및 공사물량 증가

나. 개수공사

- (1) 대체시설 미조치로 통합막사 준공 후 개수공사 착수로 별도 추가소요 공사기간(130일) 부족

- ### 2.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병영생활관 신축공사('17. 12. 30 준공/45일간)와 개수공사('17. 6. 25 준공/ 130일간) 추진에 따른 절대공사 소요일이 부족하여 준공연장 사유를 제출합니다.

2017년 03월 05일

작성자 : 현장대리인 최 갑 돌 (인)

확인관 : 감독관 5급 김 일동 (인)

준공기한 연기 동의서

1. 공사개요

- 가. 본공사 16-본-공-01본공사(16-4010)
- 나. 전기공사 16-전-공-01본공사(16-4010)
- 다. 정보통신공사 16-통-공-01본공사(16-4010)
- 라. 소방공사 16-본-소-01본공사(16-4010)
- 마. 폐기물 처리용역 16-본-공-01본공사(16-4010)

2. 준공기한 : '17. 12. 30을 '18. 6. 25으로

3. 준공연기 사유

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 (1) 신교대 연병장 면적협소에 따른 사용부대의 건물위치 변경(48일) 지연
※ 증빙서류 참조

나. 개수공사

- (1) 대체시설 미조치로 통합막사 준공 후 개수공사 착수로 별도 추가소요
공사기간(130일) 부족
※ 증빙서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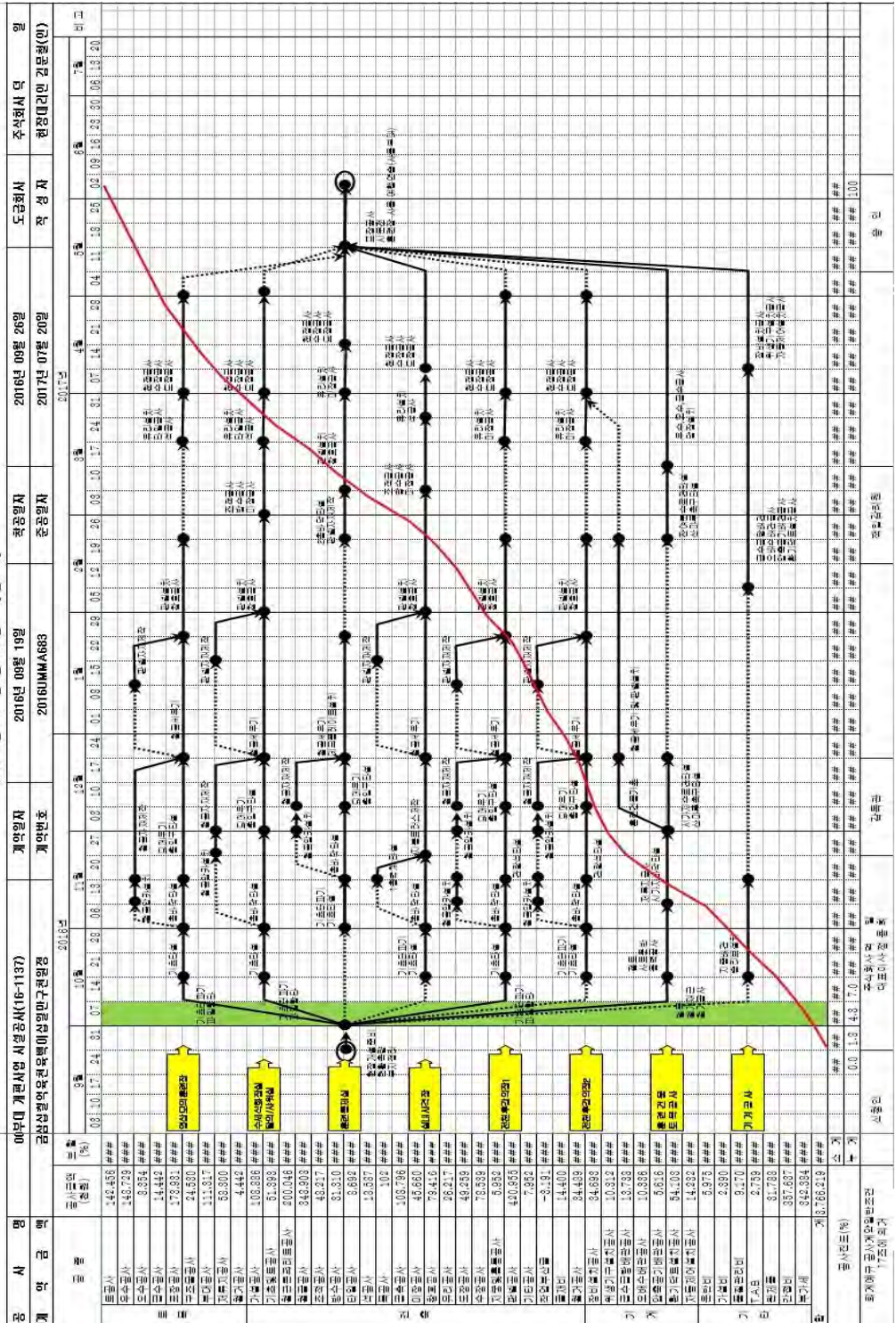
4. 동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병영생활관 신축공사('12. 12. 30준공/45일간)와 개수공사('17. 6. 25 준공/ 130일간) 기간이 절대공사 부족하여 준공연장을 동의합니다.

2017년 03월 05일

사용부대장 학생중앙군사학교장 (인)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총차)



부 록 #4 공사완공단계

4 - 1 기성/준공검사 신청

4 - 2 시설물 인수·인계

4 - 3 현장문서 인수·인계

부록 4-1
별지 29

00종합건설주식회사

수 신 : 국방시설본부장

경 유 : 사업관리과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성/준공검사 신청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본부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16-본-공-01본공사(16-4010)**에 대한 기성검사 신청을 붙임과 같이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성부분 검사원(제2회) 4부. 끝.

00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노 세 문 (인)

대리
협조자

과장

현장소장

시행 혁신 07-9-12호(2004.11.07.) 전화 054)574-0355 / FAX (054)451-3149

담당 (E-mail :) <http://>

본사 : / 현장 :

기성부분 검사원(제2회)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계 약 금 액 : 일금 삼십칠억육천이백구십만원정(₩3,762,900,000)
(1차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계약연월일 : 2016년 11월 30일
4. 착공연월일 : 2016년 12월 10일
5. 준공연월일 : 2017년 12월 30일
6. 검사희망일 : 2017년 3월 15일
7. 현 재 공 정 : 2017년 3월 07일 현재 28.78%
8. 첨 부 서 류 : 기성현황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7일

계약자 주 소 : 경북 구미시 00동 183-1번지
상 호 : 00종합건설(주)
대 표 : 노 세 문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기 성 현 황

공 사 명	16-본-공-01본공사(16-4010)					
계약번호	제2012-공-3-1004호	계약일자	2016. 11. 30.			
계약금액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기지불액	계	선금급	기성액	공사진도(%)		
				계획	실시	
	1,156,502,000		1,156,502,000	전체	60	60
금회기성액	일금 오억칠천팔백팔십구만원정(₩578,890,000)			1차	76	75
잔 액						
지 불 내 역						
구 분	공 사 금 액	기 성 내 용(%)			기성금액(누계)	비 고
		전회	금회	합계		
토목공사	118,902,800	0.00	71.62	71.62	85,155,000	
건축공사	1,552,804,100	52.05	23.07	75.12	1,166,316,000	
기계공사	664,540,100	52.44	20.39	72.83	483,921,000	
합 계	2,336,247,000	49.51	24.78	74.29	1,735,392,000	

기성부분 검사조서(제2회)

1.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 계약금액 :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2,336,247,000)
3. 기성금액 : 일금 오억칠천팔백구십만원정(₩578,900,000)
4. 기 성 률 : 24.78%
5. 첨부서류 : 손질/지적사항, 기성사진첩, 기성내역서

위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관으로 명을 받아 제1차 제2회 기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 지중 또는 구조물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2017년 3월 15일

주 검사관 소속	국방시설본부 설계1과	중령	최정직 (인)
토목 검사관 소속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토목5급	김정통 (인)
기계 검사관 소속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과	기계5급	노정명 (인)
입회관 소속	학군교 시설대장	대위	이정확 (인)

국방시설본부 재무관 귀하

기성부분 감독조서(제2회)

공 사 명 : 16-본-공-01본공사(16-4010)

2016년 11월 30일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16년 11월 29일부터 2007년 03월 15일 현재까지 감독한 결과 공사감독업무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 안전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 공사의 24.78%가 기성되었음을 확인 함.

2017년 03월 19일

감독관

계(직)급 중 령

군(순)번 00 - 000001

성 명 최 정 직 (인)

검 사 관 귀 하

기성부분 감사내역서(제2회)

2016년 3월 15일 현재

감사관 증령 취 정 직 (인)

감독관 : 5급 김 청 림 (인)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노 세 문 (인)

공 사 명	OO교 병영시설개선훈공사(161217시설공사)				계약금액		잔 액	적 요
	₩1,156,502,000원정 (19.69%)	금회기성	금회기성 %	진회까지기성 금액	금회기성 금액	금회기성 %		
전회까지기성				₩578,890,000원정 (24.78%)			₩1,735,392,000원정 (74.29%)	
명 칭	계약금액	진회까지기성 금액	금회기성 %	금회기성 금액	금회기성 %	금회기성 %	잔 액	적 요
토목공사	118,902,800		0	85,155,000	71.62	71.62		
건축공사	1,552,804,100	808,234,534	52.05	358,231,905	23.07	75.12		
기계공사	664,540,100	348,484,828	52.44	231,582,142	20.39	72.83		
합 계	2,336,247,000	1,156,675,889	49.51	578,890,000	24.78	74.29		

기성 내역서

1. 총괄원가계산서

순번	비목	구성비	계약금액	기성내용(%)			기성누계금액	적요
				진회	금회	합계		
1	직간접재료비		46,851,181	0	75.67	75.67	35,418,120	
2	직접노무비		18,170,843	0	65.65	65.65	11,928,736	
3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2)*0%	908,543	0	65.65	65.65	596,436	
4	기계장비		2,259,366	0	77.45	77.45	1,777,871	
5	운반비		13,277,234	0	95.48	95.48	12,677,221	
6	공통가설비		0	0	0	0	0	
7	품질시험비		0	0	0	0	0	
8	산재보험료	노무비(2+3)*0%	629,620	0	65.65	65.65	413,330	
9	고용보험료	노무비(2+3)*0%	129,740	0	65.65	65.65	85,171	
10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2)*0%	94,488	0	65.65	65.65	62,029	
11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2)*0%	179,891	0	65.65	65.65	118,004	
12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2)*0%	268,926	0	65.65	65.65	176,545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1+2)*0%	1,176,066	0	72.87	72.87	856,978	
14	기타장비	재료비+노무비(1+2+3)*0%	1,647,114	0	72.77	72.77	1,198,582	
15	환경보증비	직제+직노+경비(1+2+4)*0%	134,543	0	73.02	73.02	98,246	
16	하도급보증료	직제+직노+경비(1+2+4)*0%	18,836	0	73.02	73.02	13,754	
17	소계		85,736,394	0	76.30	76.30	65,421,116	
18	일반관리비	소계(17)*0%	2,572,092	0	76.30	76.30	1,962,633	
19	이윤	17+18-1*0%	2,072,936	0	77.02	77.02	1,596,518	
20	완제품		17,712,032	0	47.61	47.61	8,433,370	
21	합계	(19+20)의 계	108,093,454	0	71.62	71.62	77,413,637	
22	부가가치세	22의 10%	10,809,346	0	71.62	71.62	7,741,363	
23	총계	(21+22)의 계	118,902,800	0	71.62	71.62	85,155,000	

2. 토목공사

가. 원가계산서


순번	비목	구성비	계약금액	기성내용(%)			기성누계금액	적요
				전회	금회	합계		
1	직간접재료비		46,851,181	0	75.67	75.67	35,418,120	
2	직접노무비		18,170,843	0	65.65	65.65	11,928,736	
3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2)*0%	908,543	0	65.65	65.65	596,436	
4	기계경비		2,259,366	0	77.45	77.45	1,777,871	
5	운반비		13,277,234	0	95.48	95.48	12,677,221	
6	공통가설비		0	0	0	0	0	
7	품질시험비		0	0	0	0	0	
8	산재보험료	노무비(2+3)*0%	629,620	0	65.65	65.65	413,330	
9	고용보험료	노무비(2+3)*0%	129,740	0	65.65	65.65	85,171	
10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2)*0%	94,488	0	65.65	65.65	62,029	
11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2)*0%	179,891	0	65.65	65.65	118,004	
12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2)*0%	268,926	0	65.65	65.65	176,545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1+2)*0%	1,176,066	0	72.87	72.87	856,978	
14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1+2+3)*0%	1,647,114	0	72.77	72.77	1,198,582	
15	환경보존비	직재+직노+경비(1+2+4)*0%	134,543	0	73.02	73.02	98,246	
16	허도급보증료	직재+직노+경비(1+2+4)*0%	18,836	0	73.02	73.02	13,754	
17	소계		85,736,394	0	76.30	76.30	65,421,116	
18	일반관리비	소계(17)*0%	2,572,092	0	76.30	76.30	1,962,633	
19	이윤	17+18-1*0%	2,072,936	0	77.02	77.02	1,596,518	
20	완제품		17,712,032	0	47.61	47.61	8,433,370	
21	합계	(19+20)의 계	108,093,454	0	71.62	71.62	77,413,637	
22	부가가치세	22의 10%	10,809,346	0	71.62	71.62	7,741,363	
23	총계	(21+22)의 계	118,902,800	0	71.62	71.62	85,155,000	

나. 토목공사 총괄표

명 칭	계약금액	기성내용(%)			기성누계금액	비 고
		전 회	금 회	합 계		
1) 신교대 병영시설	62,727,389	0	72.03	73.02	47,124,727	
2) 완제품	17,712,023	0	47.61	47.61	8,433,370	
3) 운반비	13,277,234	0	95.49	95.49	12,677,221	

제1차 2회 기성 사진첩

□ 토 목

공사명	법면공사	촬영 일자	17. 2	공사명	울타리공사	촬영 일자	17. 3
사진 종별	착공전() 시공중() 완료(0)			사진 종별	착공전() 시공중() 완료(0)		
설 명	법면 및 배수로			설 명	조경울타리		
							
공사명		촬영 일자		공사명		촬영 일자	
사진 종별	착공전() 시공중() 완료(0)			사진 종별	착공전() 시공중() 완료(0)		
설 명				설 명			

손질 / 지적사항

□ 토 목

1. 아스팔트내 집수정 상단 스틸그레이팅과 아스팔트 연결면 보호
2. 파고라의자 주변 돌제거 및 바닥면 정리
3. 우수처리시설 INLET/OUTLET 연결 맨홀 지반위 도출면 제거

□ 건 축

1. 창호 거울주위등 기타코킹 손질보완
2. 선흡통 고정보완
3. 창인방 하부 물끊기홈 파기 및 도장손질

□ 기 계

1. 기계실 장비 준공청소
2. PIT층 배관볼트 체결하여 고정
3. 헐거워진 AL밴드 고정

위 공사 검사결과 손질사항을 지적하니 2016. 03. 23. 까지 조치완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통보)바랍니다.

2016. 03. 19.

기성검사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중령 성명 최 정 직 (인)

손질 / 지적사항 완료 확인서

공 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토 목	1. 아스팔트내 집수정 상단 스틸그레이팅과 아스팔트 연결면 보호 2. 파고라의자 주변 돌제거 및 바닥면 정리 3. 오수처리시설 INLET/OUTLET 연결 맨홀 지반위 도출면 제거	1. 보호완료 2. 정리완료 3. 제거완료	사진 #1
건 축	1. 창호 거울주위 등 기타코킹 손질보완 2. 선흡통 고정보완 3. 창인방 하부 물끊기홈 파기 및 도장손질	1. 보완완료 2. 보완완료 3. 설치완료	사진 #2
기 계	1. 기계실 장비 준공청소 2. PIT층 배관볼트 체결하여 고정 3. 헐거워진 AL밴드 고정	1. 청소완료 2. 고정완료 3. 고정완료	사진 #3

2016. 03 . 23.

00종합건설(주) 현장 대리인 최 갑 돌 (인)



검사 / 확인관

감독관 건축5급 김 청 림 (인)

검사관 중령 최 정 직 (인)

손질 /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진

□ 토 목

공사명	포장공사	촬영 일자	12. 20	공사명	포장공사	촬영 일자	12. 20
위치	본관 진입로			위치	본관 진입로		
설 명	콘크리트 포장도로 커팅 보완 전			설명	콘크리트 포장도로 커팅 보완 후		
							
공사명		촬영 일자		공사명		촬영 일자	
위치				위치			
설 명				설명			

※ 사진촬영방법 : 같은장소, 같은방향에서 전·후 사진촬영

기성금액지불현황

공 사 명	16-본-공-01본공사(16-4010)					
계약번호	제2016UMM0880-04호	계약일자	2016. 11. 30.			
계약금액	일금 이십삼억삼천육백이십사만칠천원정 (₩2,336,247,000)					
기지불액	계	선금급	기성액	공사진도(%)		
	₩2,282,087,000		₩2,282,087,000	계획	실시	
금회기성액	일금 오억사천사백팔십육만사천원정 (₩544,864,000)		2차	100	100	
금회지불액	일금 오억사천사백팔십육만사천원정 (₩544,864,000)		잔 액	0		
총 지불액	일금 오억사천사백팔십육만사천원정 (₩544,864,000)					
지 불 내 역						
구 분	공 사 금 액	내 용(%)			기성금액(누계)	비 고
		전회	금회	합계		
토목공사	387,034,000	77.47	22.53	100	387,034,000	
건축공사	1,636,470,000	81.81	17.87	99.68	1,631,187,000	
기계공사	657,759,000	83.34	16.66	100	657,759,000	
전기공사	115,688,000	89.91	10.09	100	115,688,000	
계	2,796,951,000	81.59	18.22	99.81	2,791,668,000	

부록 4-2

시설물 인수·인계

2017. 10. 01

00종합건설주식회사

공사행정 - 373 - 311

목 차

1. 공 사 개 요
2. 운 영 유 지 관 리 지 침 서
3. 시 운 전 결 과 보 고 서
4. 예 비 준 공 검 사 결 과 보 고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00단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2. 공 사 금 액 : ₩12,468,583,340원(VAT 포함)
3. 공 사 기 간 : 2016년 6월 23일 ~ 2017년 10월 16일
4. 현 장 위 치 : 충남 00시
5. 발 주 자 : 국방시설본부
6. 설 계 자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 00
7. 감 리 자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00건축
8. 시 공 자 : (주) 00건설
9. 공 사 개 요
 - 가) 지 역 지 구 : 농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 나) 연 면 적 : 27,656㎡(신축 128동)
 - 다) 규 모 : 신축(병영생활관 1동)
보수(취사식당 1동)
철거(기존 취사식당 외 3동)
 -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마) 공 사 범 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운영유지관리 지침서 (기 계)

2017. 10. 01

00종합건설주식회사

목 차

1. 진 공 온 수 보 일 러 (부 스 터)

2. Z O E L L E R P U M P

3. F A N (미 래 산 기)


1. 진공온수보일러(부스터)

취급설명서

진공식 온수보일러 : 80V-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800, 1000, 1200, 1300, 1600, 1800,
2000, 2300, 2500, 2800, 3000, 3300, 3600



* 본그림은 80V-600G와 80V-800G를 나타냅니다.

주 의 : 취급설명서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 경고사항의 부분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주의 깊게 잘 읽어 보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잘못 조작을 행하면 인신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스타

본사 및 공장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1142 번지

전화 : 043) 536-9107

팩스 : 043) 536-9109

▶ 취급설명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1 2006/08/01

당사 진공식 은수보일러 BOV-시리즈를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취급설명서는 처음 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조작이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 이 취급설명서를 잘 읽어 본 뒤에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 안전에 관한 주의 】

이 취급설명서는 당사 진공식 은수보일러를 처음 사용하게 되는 분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로서 또 진공식 은수보일러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신 분은 당사 BOV-시리즈를 보다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본으로서, 「성능사항, 특징」, 「각부의 명칭과 동작」, 「기기의 메커니즘」, 「각부의 표시」, 「사용방법」, 「보수내용」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방법은 물론, 꼭 이해하여야 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취급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조작과 정기적인 보수가 불가피 합니다.
이 취급 설명서에 나와 있는 중요 경고사항의 부분은 보일러를 운전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고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급설명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 참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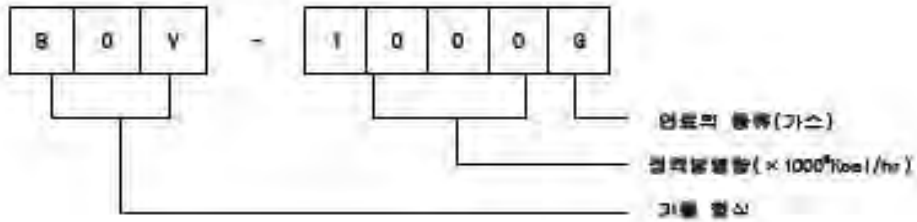
진공식 은수 보일러(BOV-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800, 1000, 1200, 1300, 1600, 1800, 2000, 2300, 2500, 2800, 3000, 3300, 3600)는 용량 및 형식에 관계없이 설치경사 및 계속사용 검사가 필요 없는 보일러입니다.

그러나 보일러 취급은 보일러 업무 담당자 외에는 절대 취급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OV-시리즈는 불표준이 발생 전까지 작동 보류합니다.

더구나 마이클 컨트롤러를 방지하여 보일러의 상태 및 이상 표시를 관측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작동 사용하지는 경우에도 조작이 간단합니다.

이 보일러의 형식을 아래에 나타내고 있으므로 구입하신 보일러가 어느 형식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구입하신 보일러는 BOV-□□□□□□입니다.

제품의 형식을 확인한 뒤에 구입순서를 잘 읽고 엄격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중히 보살피어 주십시오.



주 의 :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본 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주시고, 안전표지, 안전조립, 불연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용실속에 의한 화재나(연기화)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안전사항.....	5
§ 2. 사양 성능표	7
§ 3. 보일러 각부의 명칭 및 성능.....	11
§ 4. 배관 계통	16
§ 5. 열의와 상부 마크	17
§ 6. 구조 및 기능	19
§ 7. 가스공급 계통도.....	29
§ 8. 사용목적에 따른 배관도	32
§ 9. 보일러 최초가동 시 주의사항	33
§ 10. 운전 중 주의사항	34
§ 11. 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35
§ 12. 점검과 보수방법.....	36
§ 13. 경고금지사항	37
§ 14. 수리방법	37
§ 15. 각부의 점검 정비표	39
§ 16. 보수관리계약에 대한 추천	40
§ 17. 애프터서비스에 대하여	40

§ 1. 안전사항(기본적인 주의사항)

1-1. 보일러 실내에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1) 보일러를 취급할 때에는 [보일러 담당자 및 적당자] 이상의 사람으로 취급하여 주시고 관계자 외에는 절대 취급을 금하여 주십시오.
- (2) 보일러 실내에서의 금지, 주의사항, 작업순서 등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8) 보일러 실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1-2. 작업에 적합한 양복과 보호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1) 헐거운 옷, 장식품 등 기계부품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착용하고 보일러의 운전이나 경비를 대해서는 안됩니다.
- (2) 작업에 따라 헬멧, 안전화, 장갑 등을 잊지 말고 착용하여 주십시오.

1-6. 보일러의 개조는 금하여 주십시오.

- (1) 당사가 권장하지 않는 개조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서비스 사무소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 (2) 허가 받지 않은 개조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보일러 상부에 오르내릴 때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1) 보일러 상부는 가능한 한 오르내림을 금하여 주시고 경령 등으로 인하여 보일러에 오르내릴 때에는 사다리를 사용하시고 미끄러짐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1-6. 연료에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1) 연료에 화기를 가까이 하면 인화 및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2) 성냥불 등을 가연물에 가까이 하지 않아 주십시오.
- (3) 가연물은 화기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보관하시고 사용법도 숙지하여 주십시오.
- (2) 만일 가스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이 경우 환기를 완료 할 때까지는 절대로 스위치 등의 조작은 하지 않아 주십시오.

가스가 누설되고 있을 때 전기스위치 등을 조작하면 전기스파크로 인해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8. 소화기와 의료상자를 갖추어 주십시오.

- (1)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여 주시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 (2) 의료상자의 보관 장소를 정하여 정해진 곳에 붙혀 갖추어 주십시오.
- (3) 화재나 사고에 대비하여 연락 및 처리방법을 정하여 비상연락망을 작성해 잘 보이는 곳에 붙여 주십시오.

1-7. 보일러실 바닥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십시오.

- (1) 지하에 속소가 있는 곳에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는 보일러 및 부대기기에서 물이 누설 될 경우라도 지하실에 물이 누설되지 않도록 바닥면을 양생하여 주십시오.

§ 2. 사양 성능표

항목	단위	R2V - 100		R2V - 150		R2V - 200		R2V - 250		R2V - 300		R2V - 350		R2V - 400		
		냉매관제일출량	kcal/h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550,000	600,000	650,000	700,000
	kW	0.12	0.17	0.23	0.29	0.35	0.41	0.47	0.53	0.59	0.65	0.71	0.77	0.83	0.89	
효율	%	81% 이상														
정압변차	m ²	5.0	8.0				11.0				14.0					
배터방식	오일류	ON-OFF										High - Low - Off				
	가스류	ON-OFF < 2위차 >						High - Low - Off < 2위차 >								
전원	V	220V + 1φ + 60Hz										220V/50V + 5φ + 60Hz				
소비전력	kW	0.25		0.40		0.55		0.70		0.85		1.00		1.15		
공대수량	ℓ	185	265		345		425		505		585		665		745	
공부기모터용량	kWh	0.25		0.4		0.55		0.7		0.85		1.0		1.15		
크롬플라스틱용량	kWh	0.25		0.4		0.55		0.7		0.85		1.0		1.15		
비중중량	kg	850	1,150	1,450	1,750	2,050	2,350	2,650	2,950	3,250	3,550	3,850	4,150	4,450	4,750	
냉매	도시가스<DA>	ℓ/m ³ /h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천연가스<DA>	ℓ/m ³ /h	11.1	16.7	22.2	27.8	33.3	38.9	44.4	50.0	55.6	61.1	66.7	72.2	77.8	
	L.P.G.<프로판>	ℓ/m ³ /h	4.5	7.4	9.8	12.6	15.4	18.2	21.0	23.8	26.6	29.4	32.2	35.0	37.8	
	L.P.G.<부탄>	ℓ/m ³ /h	5.5	14.5	19.5	24.5	29.5	34.5	39.5	44.5	49.5	54.5	59.5	64.5	69.5	
	L.P.G.<에탄>	ℓ/m ³ /h	5.5	6.5	7.7	8.7	11.5	13.5	16.5	18.5	21.5	23.5	26.5	28.5	31.5	
냉매	보일리엔팅	kg/h	10.7	15.0	21.6	28.7	35.8	42.9	50.0	57.1	64.2	71.3	78.4	85.5	92.6	
	가스실구	ℓ	20		25		30		35		40		45		50	
	금속실구	A	5	15				25				35				
냉매	길이	φmm	500				550				600					

()안은 oil보일러 사양임.

목 차

가. 듀프렉스 펌프 콘트롤 패널 조작법

1. 작동개요설명
- 1) 정상 운전법
- 2) 수동 운전법
- 3) 이상상태 판독법
- 4) 무동 운전(주의)
- 5) 셧지(OFF)기능
- 6) EOCR(과전류 차단기)의 셋팅법

나. 정기 점검과 점검사항

- 1) 안전주의
- 2) 점검사항
- 3) 과전류 차단기(EOCR)의 정상 작동여부 시험법

2. ZOELLER PUMP

가. 듀프레스 펌프 콘트롤 판넬 조작법

가. 듀프레스 펌프 콘트롤 판넬 조작법

1. 작동개요설명

- ① 고내 순차기능 : 2대의 펌프 1회씩 작동으로 고내작동, 저수위 무로트 OFF(저저수위)시 2대 펌프가 고내함
- ② 다량의 오수 진입시 예는 펌프 2대 작동, 위험수위 도달시 경보발생, 정상수위 회복시 경고음 정지.
- ③ 과전류 차단기능(EOCR): 시운전을 통하여 토출배관 System에 소모되는 펌프의 실제 전류로 설정함으로써 완벽한 모터소손 방지를 실현.
- ④ 만일 악화된 경보발생(장애물로 임계치가 상승될 경우) → 해당펌프(전대)를 자동 전원차단 → 모터보호 → 경보발생 → 다른 전대 펌프 운전시작 → 계속 전대의 펌프로 배출하여 정상수위 유지 → 정상사용가능
- ⑤ 펌프 이상이 있을 때 → 관별 전관의 과열 버전을 누른다. → 이상이 있는 펌프의 누름 스위치를 눌러 수동운전으로 펌프가 강제로 돌게 작위(여러 번 시도) → 정상운전 복귀노력 → 장애물 토출 → 정상 작동됨

< 전원을 투입하시고, 전원등(녹색)이 켜졌는지 확인 합니다

1) 정상 운전법

- ① 적용 : 평소 적용되는 펌프 운전법
- ② 선택스위치 조작
 펌프 A, B 및 모든 누름 스위치는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을경우 평소 작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③ 오수 유입으로 수위와 출가에 따라 고, 저수위 무로트의 작동으로 2대의 펌프가 고대로 작동하여 배수기능을 수행합니다.
- ④ 이때 작동되는 펌프와 녹색 표시등이 점등됨

2) 수동 운전법

- ① 적용 : 시운전시, 콘트롤 판넬 이상점검시, 펌프 모터이상여부 시험시에 적용되는 운전법임
 콘트롤 정지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 중지 조치시에 사용되는 운전법입니다.
- ② 누름스위치 조작 : 해당 펌프의 누름스위치를 누르면 수동으로 펌프가 작동됩니다.
- ③ 누름스위치를 누르면 수위에 관계없이 해당펌프가 무조건 작동됩니다. 따라서 배수기능을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지만 펌프의 공회전으로 모터의 소손이 발생할수 있는 관계로 유심히 관찰하여 펌프를 운전 시켜야 합니다.
- ④ 이때 작동되는 펌프와 녹색 표시등이 점등됨

3) 이상상태 판독법

㉠ 주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경보음 발생시

- ① 다량의 오수유입으로(여름 장마등) 수위증가로 인하여 정상수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오수유입량이 1대의 펌프 용량보다 높다면) 위험수위 경보음과 적색 표시등이 주기적(심각할 약10-60초) 또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작동되는 펌프A또는B 또는 2대 펌프모두의 녹색표시등이 점등 된다면, 이것은1대의 펌프가 변압기 작동 하면서2대의 펌프가 함께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위가 정상수위로 복귀되면 경보음은 자동적으로 정지 됩니다.

이 경우 고내 오수유입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펌프와 콘트롤 시스템은 정상 상태입니다.

Whitman Company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285-19 세가리빌딩10층 / TEL : 02-548-1288 / FAX : 02-548-9999 / whitman@whitman.co.kr

㉔ 그러나 이때 A 또는 B 펌프의 녹색표시등이 점등 되지 않고 대신 황색 이상표시등이 점등된 펌프가 있다면 이 펌프에 이상이 생긴 것 입니다.

<조치사항>

- ㉕ 먼저 콘트롤패스istemas 초기화 시키기 위하여 패널 전면의 리셋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
 - ㉖ 그래도 상기와 같은 이상상태로 작동된다면, 경보음이 발생될 때 마다, 전면의 리셋 버튼을 잠깐씩 누릅니다.
 - ㉗ 5회 정도이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 ㉘ 그래도 상기와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 ㉙ 펌프 1대가 이상상태 입니다. A/S를 요청하십시오.
- 그러나 이때는 현재의 펌프는 정상 작동중임으로 운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5) 계속적으로 경보를 발생

㉚ 확인 - 펌프 A나B의 황색 이상 표시등과 워킹수위의 경보에 적색표시등이 점등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㉛ 이 같은 표시등이 점등 되었다면, 이때는 펌프 A나B중 황색 표시등이 점등된 펌프에 이상이 생긴 것 입니다. (약마 과내전 장애로 펌프 임태라가 막힌 등상일수도 있습니다)

<조치사항>

- ㉜ 먼저 콘트롤패스istemas 초기화 시키기 위하여 패널 전면의 리셋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
- ㉝ 그래도 상기와 같은 이상상태로 작동된다면, 경보음이 발생될 때 마다, 패널 전면의 리셋 버튼을 잠깐씩 누릅니다.
- ㉞ 5회 정도이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 ㉟ 그래도 상기와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 ㊱ 다시한번, 패널 전면의 리셋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는 펌프의 누름스위치에 눌러 수동 운전으로 펌프가 강제로 돌게 합니다(강제 수동운전 방법입니다). 누르고 있을 동안만 펌프가 수동으로 작동됩니다.
- ㊲ 그래도 계속 펌프가 정지(트립) 되고 경보가 울린다면 다시 상기 ㉜항 작업(강제 수동운전 방법) 을 2분 간격으로 5회 정도 시행합니다.
- ㊳ 이 같은 수동운전(강제운전) 스위치 조작으로 펌프가 돌다면(경보음 없이 녹색 표시등이 점등) 정상작동 하는 것 입니다. 이때는 해당 펌프의 선택스위치의 손을 떠면 자동상태가 됩니다.
- ㊴ 그러나 계속 경보음이 발생(황색과 적색 표시등이 점등) 펌프의 이상이므로 A/S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는 현재의 펌프는 정상 작동중임으로 운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4) 무음 운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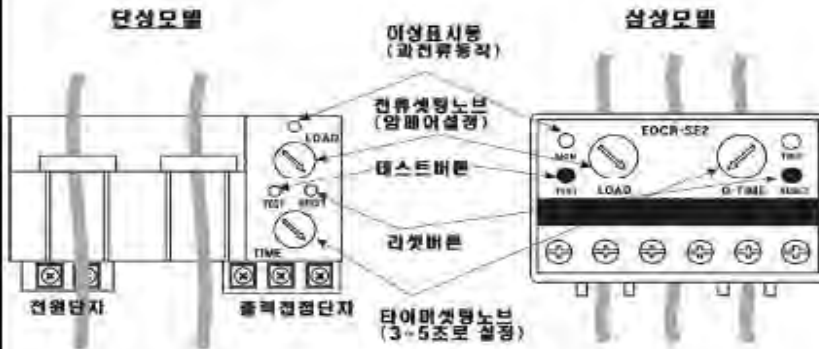
펌프1대 이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경보음이 발생시에는, 관리자는 소음 환경에 따라 경보스위치를 OFF 시켜 경보 기능만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A/S를 요청 하셔야 합니다.

5) 정지(OFF)기능

적용 : 펌프의 고장수리, 교체, 시운전, 콘트롤판넬 수선시에 적용되는 운전법.

6) EOCR(과전류 차단기)의 셋팅법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유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서지 따십시오)



① 실온전 압력여 셋팅법(Ampu Setting)

Ampu설정은 펌프가 작동할 때(실계의 물을 배출할 때) EOCR과 '전류저 셋팅 노브'(손잡이)를 표시된 적대 눈금인 30Amp에서 0Amp쪽으로, 즉 안시계방향으로 서서히 돌려다가 빨간불(이상표시등)이 들어 오는 점에서 정지하여 다시 서서히 시계방향으로 돌려 빨간불(이상표시등)이 꺼지는 점에 셋팅하면 됩니다.

② 초(지연시간)설정 : 타이머 셋팅 노브를 돌려 3~5초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A/S 연락처 : 의만상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5-18

TEL : (02) 588-1466

FAX : (02) 585-8959

Whisan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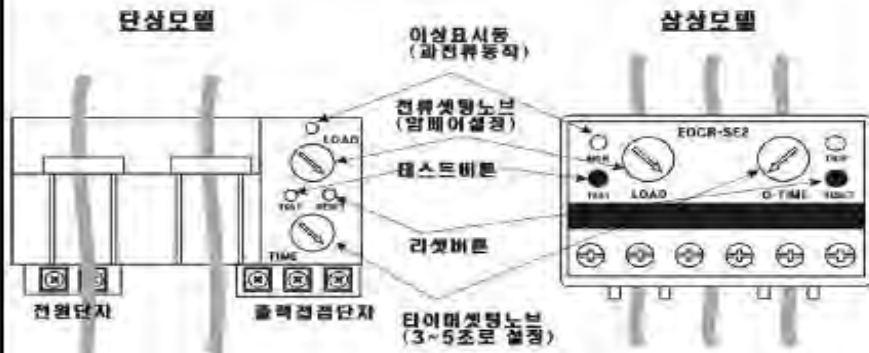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5-18 제991호 의만상사 / TEL : (02-618-1282 / FAX : 02-618-1993 / webmaster@whisan.co.kr

8) 과전류 차단기(EOCR)의 정상 작동여부 시험법

- 1) 판넬내부 해당EOCR의 TEST버튼을 눌러 붉은색 표시등이 켜이들어오면서 경보가 나면 정상입니다.
- 2) 판넬전면 선택스위치는 자동 운전법과 같게 위치한후 판넬 두장을 연후 A와B펌프와 EOCR에 셋팅된 AMP 숫자를 기록합니다. EOCR의 임팩터 설정노드를 0Amp로 돌려놓으십시오. EOCR의 시간설정 노드는 높고시 3~5초로 설정 되어 있으니 손대거나 변경시키지 마십시오. 판넬전면의 선택스위치를 눌러 펌프를 운전시킵니다. 3~5초 내에 경보와 함께 펌프가 멈추면 정상입니다. 시험이 끝난후에는 임팩터 설정노드를 원래 설정 요었던 임팩터로 돌려져 시리선두 펌프전면의 선택스위치를 다시 자동으로 위치시켜주세요.

본의 상기와 같이 운전되자 없을시에는 다음과 같이 EOCR의 각 기능을 점검합니다.

a) EOCR 구성요소의 명칭



b) EOCR의 타이머 기능 체크(펌프장치 상에서 TEST함)

PUMP^A와 PUMP^B에 연결된 2개의 EOCR의 타이머 기능을 검사한다.

- 1) 판넬 전면의 PUMP^A와 PUMP^B의 누름스위치는 볼도와 조자에 없으면 형식 자동입니다.
- 2) EOCR의 TEST 버튼을 눌러 이상 표시등이 켜지면 정상입니다.
- 3) EOCR의 RESET버튼을 눌러 리셋트 시킴. 그리고 아래와 같이 TIME을 셋팅 하고 세 검사 합니다.
 - ㉠ EOCR의 TIME의 타이머 셋팅 노드가 3~5초에 셋팅되어 있는지 확인함. (정상지연조건 3~5초로 재설정고시에 셋팅되어 있음.)
 - ㉡ TEST 버튼 3~5초이상 누르고 있으면 3~5초후 이상 표시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발생.
 - ㉢ 위와 같이 동작되면 정상임.

Whitson Company

서울시 서초구 남원로188-91 세가리빌딩3층 / TEL : 02-638-1280 / FAX : 02-635-1958 / webmaster@whitson.co.kr

㉞ EOCR의 RESET버튼을 눌러 리셋트 시킴.

4) 또다른 EOCR을 상기 1)에서 4)까지의 순서에 따라 시험 한다.

c) EOCR의 과전류 차단기능과 타이머 기능 체크(펌프 운전하면서 TEST함)

PUMP#A와 PUMP#B에 연관은 EOCR 의 전류감지, 타이머 기능을 검사한다.

PUMP#A의 EOCR기능시험

1) PUMP#A에 해당되는 EOCR에 전류저(암페어) 셋팅 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최대 암페어로 SETTING

한다.

2) PUMP#A 의 EOCR에 TIME의 노브를 3~5초로 셋팅

3) 오수를 탱크에 유입시켜 수위증가에 따라 펌프가 자동운전 되고 있는 동안에 아래 검사를 실행한다.

4) PUMP#A와 EOCR에 전류저 셋팅 노브를 반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이상표시등이 켜지는 곳에 유지시킨다.


5) 3~5초후 펌프가 정지하며 경보가 발생. 위와 같이 동작되면 정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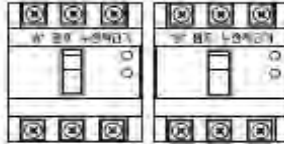
6) PUMP#A와 EOCR에 RESET 버튼을 눌러 리셋트 시킴.

7) 이제다시 전류저(암페어) 셋팅 노브를 실운전 암페어지로 셋팅한다

PUMP#B의 EOCR 기능 시험

1) 상기 PUMP#A에 실행한 순서로 PUMP#B도 EOCR을 검사 시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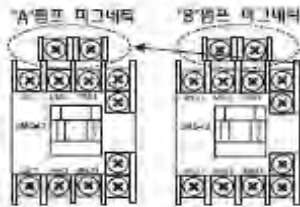
- 
- 5) 플러그 끊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플러그 끊어지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6) 차단기가 내려져 있으면 펌프 전원이 차단됨,
펌프가 누전이 될 경우 차단기가 떨어짐,
펌프 누전으로인해 차단기가 떨어질경우
A/S요청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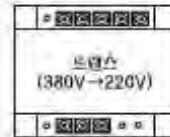
- 7) 단락이 발생을 확인할때, 미물질들이 걸렸을 경우
필요 전원적 이상들이 검증됨. 리셋 스위치 4회정도
조작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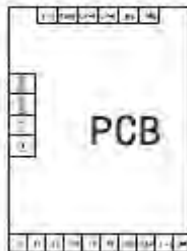
한정 미그네트가 흔들려 작동하지 않을경우
미그네트 흔들림(전선이 빠져가 있었는지)
를 확인해 주십시오

- 8) 판넬 조작스위치 수동(강제작동) 접점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육안이나 소리로 확인요망.

- 9) 트랜스에서 정격전압이 출력되는지,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고수위경보(하이알람) 및
펌프 이상신호
(무전원점진-작동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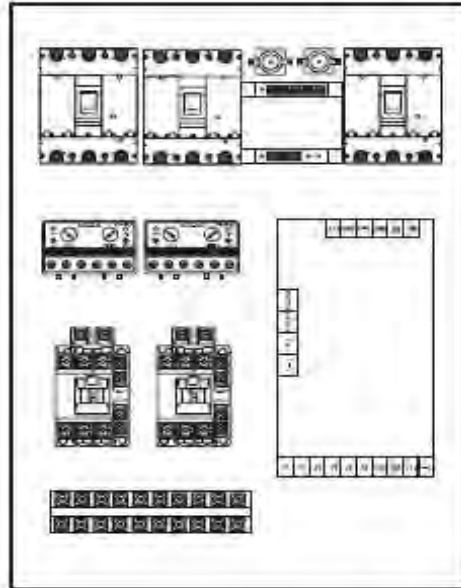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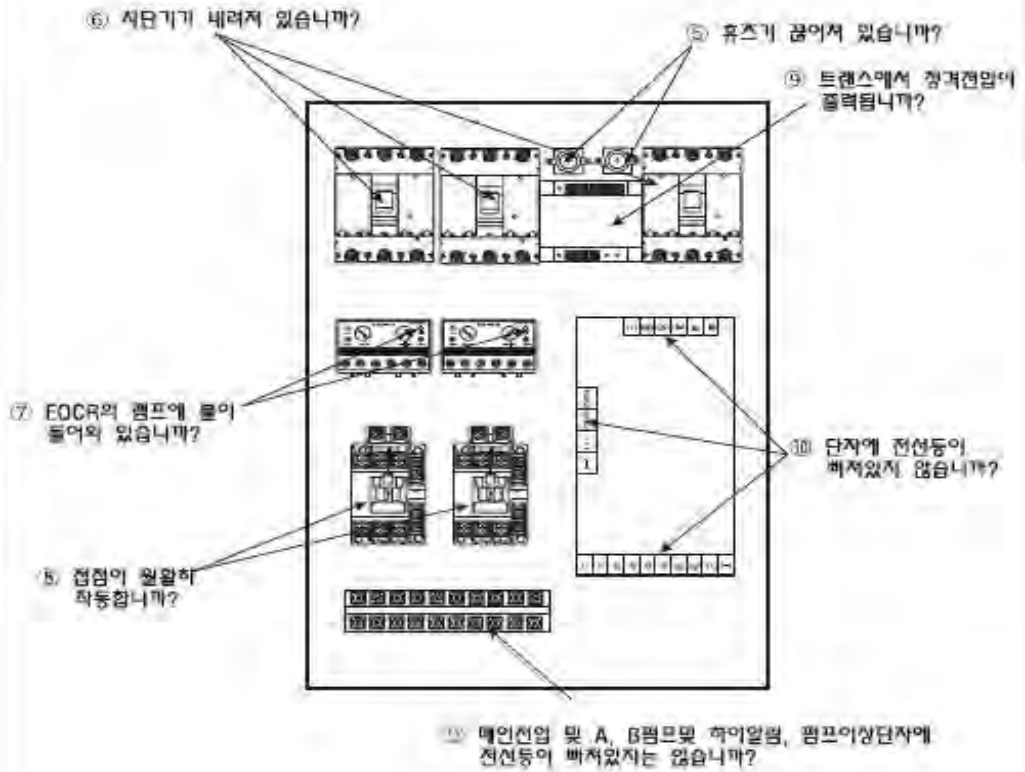
- 10) 전선이 바졌는지 점검상태 확인.

- 11) 보자대



- 12) 메인정격전압이 입력되는지 확인(정상 380V 이나 단상 220V)
단락에서 전원선이 바졌는지, 나사는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FAN(미래산기)

미래산기	송풍기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2007
		PAGE	1 / 10

송풍기 유지관리 지침서

주식회사 미래산기
 MEERAE MACHINERY & MFG. CO., LTD
 (K.S.A 5001 - 2001 / 500 - 2000 인승업회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최우리 21-3 번지
 TEL : 031/835-7221 FAX : 031/835-7220
 E-mail : meerae55@chol.com

CONTENTS

표지

CONTENTS

- I. 송풍기 일반
 1. 취급
 2. 구조 및 부품 명칭
- II. 제작 시험
 1. 설계 및 구조
 2. 검사 및 시험
 3. 포장
- III. 설치 시험
 1. 설치 일반
 2. 기초
 3. 인입
 4. 설치 방법
- IV. 시운전
 1. 점검
 2. 급유
 3. 운전 전 수동 점검
 4. 운전 전 안전 점검
 5. 전기 확인
 6. 시동
 7. 사후 확인
- V. 보수 전리
 1. 정기 점검
 2. 이상 발견 원형 및 조치

1. 송풍기 일반

1. 취급

송풍기가 그 목적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 송풍기의 점검

나. 송풍기에 송풍되는 재료(DUCT) 및 그 송풍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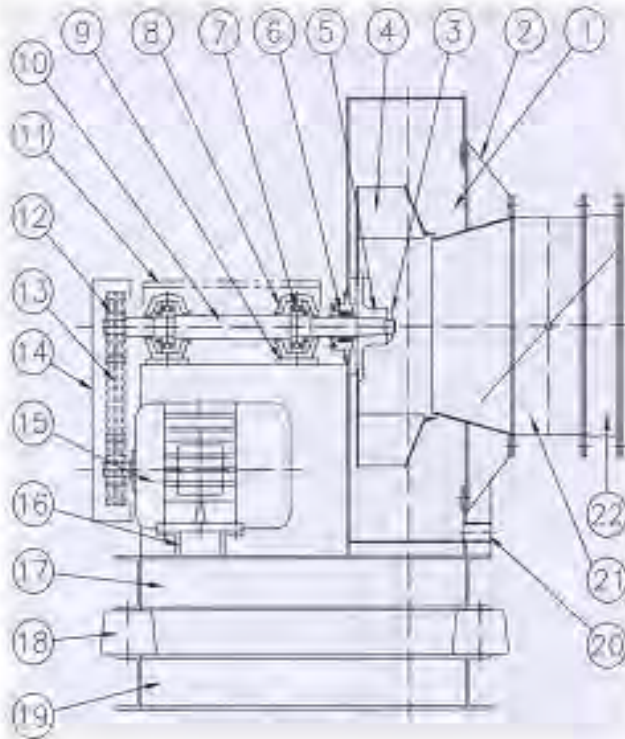
다. 송풍기 설치 방법

라. 송풍기의 보수, 취급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구조 부품 및 명칭

송풍기의 부품 명칭은 다음 그림과 같다.



No.	명칭
1	Casing
2	Inlet Cone
3	Impeller Nut
4	Impeller
5	Base
6	Packing
7	Bearing
8	Bearing Housing
9	Lining
10	Shaft
11	Shaft Cover
12	Pulley
13	Belt
14	Belt Cover
15	Motor
16	Motor Base
17	Fan Belt
18	방전계
19	방전Bed
20	Drum
21	Impeller
22	Control

시운전결과 보고서

2017. 07. 01

혁신종합건설주식회사

목 차

1. 설비 주요장비 인수·인계서
2. 주요장비 시운전 확인서
3. 기계설비 주요장비 현황
4. 예비자재 현황
5. 인허가증 및 검사증 현황

주요장비 시운전 확인서

1. AIR HANDLING UNIT

점검부문	점 검 사 항	시운전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유지관리	비 고
웬	회전방향 확인				
	베어링 모터 주유 확인				
	벨트 장력 확인				
	후렉시블 덕트의 연결상태				
	전원공급 및 연결확인				
	명판 확인				
FILTER	휠터 형식 및 규격 확인				
	오염상태 확인				
코일	규격 및 열수				
	코일 찌그러짐 및 장애물 확인				
	공기 흐름 및 방향확인				
	배관연결상태 및 흐름방향 확인				
	밸브 개폐상태 확인				
기타	자동댐퍼의 설치 확인				
	응축수 드레인 및 트랩설치 확인				
	공조기 내부청소 상태확인				
	장비명판과 도면대조				

시운전 계획서에 의해 시행한 장비에 대해 정상 작동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주)00건설 현장대리인 : 김 태 응 (인)

설비담당 : 이 호 춘 (인)

INTERNATIONAL 설 비 담 당 : 이 재 호 (인)

2. PUMP

점검부문	점 검 사 항	시운전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유지관리	비 고
배관	흐름방향 확인				
	연결상태 확인				
	누설여부 확인				
	후렉시블 콘넥터 상태 확인				
	밸브 개폐상태 확인				
모터	방향 확인				
	전원공급 및 연결상태 확인				
	명판 확인				
기타	외부 청소				
	방진장치 점검				

시운전 계획서에 의해 시행한 장비에 대해 정상 작동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주)00건설 현장대리인 : 김 태 응 (인)

설비담당 : 이 호 준 (인)

INTERNATIONAL 설 비 담 당 : 이 재 호 (인)

7. COOLING TOWER

점검부문	점 검 사 항	시운전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유지관리	비 고
냉각탑	유체 흐름방향 및 연결상태 확인				
	밸브 개폐상태 확인				
	누설 여부 확인				
	하부 수조의 수위 확인				
	분무 노즐 작동상태 확인				
	휀, 펌프 회전방향 확인				
	전원공급 확인				
	명판 확인				

시운전 계획서에 의해 시행한 장비에 대해 정상 작동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주)00건설 현장대리인 : 김 태 웅 (인)
 설비담당 : 이 호 춘 (인)
 INTERNATIONAL 설 비 담 당 : 이 재 호 (인)

기계설비 주요장비 현황

품 명	규 격	수 량	제 작 사	비 고
냉 동 기	150 USRT	1	센 추 리	기계실
냉 각 탑	225 USRT	1	센 추 리	옥탑층
보 일 러	300,000 KCAL/H	2	부스타보일러	기계실
공기조화기-1	134 CMH	1	다원에이씨	공조실
공기조화기-2	290 CMH	1	센 추 리	공조실
공기조화기-3	134 CMH	1	다원에이씨	공조실
펌 프 류	부스타 외	22	그런포스, 효성에바라	
웬 류	제연 포함	11	이화기계	
웬코일유니트-1	CEILING TYPE	32	다원에이씨	
웬코일유니트-2	COMPACT TYPE	19	다원에이씨	
웬코일유니트-3	A.T.M	52	캐 리 어	
웬코일유니트-4	CASSETTE TYPE	4	다원에이씨	
항온항습기-1	5 RT	1	다원에이씨	6층
항온항습기-2	3 RT	1	다원에이씨	지하3층

위 내용을 인수합니다.

2017 년 10 월 14 일

인계자 : (주)00건설 현장대리인 김 태 응 (인)
 인수자 : INTERNATIONAL 설비담당 이 재 호 (인)

예비자재 현황

품 명	단 위	수 량	비 고
1. HVAC			
ATM units	SET	2	삼 일
A filter for each FCU and ATM	EA	107	삼 일
A set of filters for each AHU	SET	3	삼 일
A set of driving belts for each fan	EA	8	삼 일
An automatic valve for each diameter used	EA	2	삼 일
2. PLUMBING			
10 foaming devices for taps	EA	-	삼 일
2 tap mechanisms	EA	-	삼 일
3. FIRE PROTECTION			
10 sprinkler heads of each type	EA	20	삼 일

위 내용을 인수합니다.

2017 년 10 월 14 일

인계자 : (주)00건설 현장대리인 김 태 응 (인)
 인수자 : INTERNATIONAL 설비담당 이 재 호 (인)

인허가증 및 검사증 현황

구 분	검사대상	발행번호	발행기관	발 행 일	비 고
가스 완성검사 필증	도시가스	제2016-014106호	한국가스안전공사	2016.03.31	
고압가스(후레온) 완성검사필증	냉동기	제2016-043311호	한국가스안전공사	2016.08.31	
고압가스제조(후레온) 신고필증	냉동기	제404호	강남구청	2016.04.12	
소방시설완성 검사필증(2부)	소방시설	제273호	강남소방서	2016.09.18	

** 관련자료 및 증빙서 첨부

예비준공검사 결과보고

1. 공 사 명 : 00단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2. 공사기간 : 2016년 6월 23일 ~ 2012년 9월 17일
3. 공사금액 : 12,468,583,340원
4. 공사범위

구 분	범 위	예 산 (억원)	비 고
계		130.1	
본 공사	병영생활관 1동	102.9	
전 기	내, 외선 1식	11.0	
통 신	1식(CC TV 6대 등)	7.1	
소 방	전기/기계/소방 1식	3.8	
폐기물 처리	863,92톤	0.2	
감 리 용 역	67,226(인, 월)	5.1	

5. 예비준공검사일 : 2012년 07월 16일(목)
6. 예비준공검사원

구 분	등 급	성 명
건 축	수 석	김 희 춘
토 목	수 석	이 병 주
기 계	수 석	강 병 식
전 기	수 석	장 보 신
통 신	수 석	김 철 용
소 방	수 석	최 병 철

7. 예비준공검사 입회관 : 중령 박 중 령
소령 최 소 령
5급 사 무 관

8. 예비준공검사 보완/지적사항

구 분	보 완 사 항	기 타 사 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실, 복도폭 설계치수 확인시공 ○ 바닥 테라조 줄눈시공 규격 일정하게 시공 ○ 각실 벽천정공간 마감손질 ○ 각실 천정등기구 BOX 시공시 경량철골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조 파손시 교체 ○ 등기구 보강시 규격 확인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정높이 설계치수 확인시공 ○ 천정경량철골 시공시 마이너스바 시공 확인 ○ 출입문 정침위치확인(간격조정) ○ 발코니 안목치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 ○ 참고자료 확보시공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외부(창호연결 수평면유지) ○ 천정몰딩(벽체연결 평면유지) 도장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 작업시 균열예방 ○ 요철부 없도록 시공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창틀 외부, 내부 코킹할 수 있도록 시공 ○ 각실 천정 폼타이핀/거푸집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킹홈 설치
4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창호 방충망 레일주변 알미늄바 연결 모서리 코킹 ○ 알미늄창호 단열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지하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식창고 외 기타 창대석 수평시공 ○ 기계, 전기실 바닥 TRUNCH시공 자연 배수 용이 ○ 기계, 전기실 바닥 구배조종시공(자연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청소 몰탈 및 잡순물 제거
지붕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루프 드레인시공시 내부청소 및 주위 고정후 마감 ○ 선흡통과 우수배관 연결시 고정시공시 누수확인 ○ 선흡통과 연결고정 견고하게 시공 ○ 외부석재 균열여부 확인재 시공 (모서리, 중간규격) ○ 준공기간 고려하여 별도공정 작성하여 작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관연결 시공전 통수시험확인

구분	보완사항	기타사항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P(65T)-930 m²(설면구간) ○ 고압브릭(6T)-260 m²(보도용) ○ 화강석(T30)-499 m²(보도용) ○ 콘크리트(T20)-330 m²(보도용) ○ 보차도 경계석 및 L형측구-7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께 5+10+3=65cm ※ASP포장에 대한 품질시험이행 (다짐/온도관리/구매처리 등) 콘크리트 포장두께 T20m에 대한 규격 및 강도확인 시공 요망 화강석 재질/25-18-8 ※자재 공급원서류 품질부합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형측구 -규격 0.5*0.5*L40M(B형) : 현장타설 -벤치플름관(3종-400C)-45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충격 수도관 D75m/m-20m 연결공사 (내부는 기계에서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17개소 ○ 관(PVC이중벽관) : D300-312M ○ 연결관 : D150-25M ○ 우수받이 위치 및 개소 확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버트 및 맨홀사다리 작업 ○ 수밀시험 이행/우수관 테이프 시공 ○ 관로의 관접합 및 내부검사 (CC-TV 촬영결과) ※자재 미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4개소 ○ 집수구 18개소 ○ 우수받이 4개소(PE파상형관)/연결관 ○ 우수관 : D300-44M/D150-250 <li style="padding-left: 20px;">D400-27M/L=98M <li style="padding-left: 20px;">D450-13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홀 사다리작업 ○ 수밀시험이행 ○ 관접합 및 내부검사 (CC-TV 촬영검사) ※맨 홀21개/기성제품 사용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평 - 준공서류 : 1)준공도면, 2)수밀시험결과서, 3)관접합 및 내부검사용 CC-TV촬영 4)확정측량 결과서 여부, 5)품질시험 관련 <p>※ 준공기한내 토목공사를 완료 / 특단의 비상대책수립 이행 / 공기 촉박으로 인한 부실공사방지 요망</p>	

구 분		보 완 사 항	기 타 사 항
설 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열기/닥트기구 미설치 ○ 위생기구/자동제어 미설치 ○ 에어컨 실내기/자동제어 미설치 ○ 세탁실 수전 및 위생기구 미설치 ○ 화장실 배기그릴 미설치 ○ 장비 운전 매뉴얼 준비 ○ 종합 시운전 실시/준공도면 준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발소 위생관 보온 ○ 이발소 위생기구 미설치 ○ 1층 목욕탕 배기그릴 미설치 ○ 1층 목욕탕 수전 미설치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발소 위생기구 미설치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난방코일 미설치 ○ 생활관 B구간 : 배관보온 미설치 	
	4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실 덕트기구 및 에어컨배관 미설치 	
	옥탑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배관 미설치 ○ 배기팬 닥트 미설치 	
	지하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장비/주방배기그릴 미설치 ○ 기계실 배기그릴/가스배관 미설치 ○ 기계실 급배기 그릴 미설치 ○ 방풍실에 열선공사 미설치 ○ 온수탱크 : 보온 미설치 ○ 배관공사 및 밸브보온 미설치 ○ 기계실 수압시험/연도 미설치 ○ 배관 인식표 및 장비명단 준비 	

구 분		보 완 사 항	기 타 사 항
전 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층 분전반내부에 회로도를 코칭 부착 요망 ○ 각층 PIT(알람벨브실, EPS) 내부에 점검용 등기구 설치 요망 ○ 연동제어기 하단 수평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8월 중순에 받을 수 있도록 각층 분전반 내부 Cable Termination을 조속히 실시요망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복실 에어컨 실내기 전원 후렉시블 시공 요망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등 편향시공 개선 필요 ○ 복도등 타입 변경필요 (다운라이트 -> 고효율 형광등)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센트 주변 마감 불량 ○ 현재 누전회로가 감지되고 있음 	
	4층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EHP DUCT 접지본딩 38mm² 시공 요망 ○ 옥상 외부출입문 등기구 벽부형 설치시 BOX 취부요망(3개소) ○ 옥상 EHP-콘트롤 판넬 내부 95mm² 시공 요망 	
	지하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변전실 Cable Tray에 Tag 설치 요망 	

구 분		보 완 사 항	기 타 사 항
통 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인트라넷망 네트워크장비 설계반영 조속추진 - 설계변경관련 서류작성 및 네트워크장비 구매관련 소요예산 운용계획수립요구 (현장소장협의) - 블럭다이어그램 포함 ○ 전화 인터페이스 상이해소 검토요망 - 공사수구(RJ-45) - 기중 사용전화(RJ-11)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예산소요 없거나 최소 방안검토 협의(현장소장) ○ 층 IDF실 바닥공사(악세스후로아 추가) 설계변경 요구 ※ 최소한마감 미장이라도 요망됨 (노출 콘크리트 제물치장)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공정(건축, 전기) 진행사항 파악 및 상호협조 마무리작업 조기진행요망 (현장소장 지시) - 마무리작업 물림현상 사전해소 	
	4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수구 덮개 조립시 사전 수구내 청소요망(일부)-현장소장 지시 ○ 무선 통신망 리드라인 최적화 방안 검토 (사용부대 요구사항) - 주파수실태(사용) 협조요구 	
	지하층		

구 분		보 완 사 항	기 타 사 항
소 방	공통		
	1층		
	2층	○ 2, 3층, 생활관의 방화시설 소방법에 적법하게 처리	
	3층		
	4층	○ A구간 다목적홀 스프링클러 헤드수정	
	지하층	○ 지하 저수조 소화용수 확보에 따른 수위관계로 사수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부록 4-3

현장문서 인수·인계

2012. 10. 01

00종합건설주식회사

목 차

1. 준 공 사 집 첩
2. 준 공 도 면
3. 품 질 시 험 · 검 사 성 과 총 괄 표
4. 시 설 물 인 계 · 인 수 서

준 공 사 진 첩
(사진첩 또는 CD)

2017. 00. 00

00종합건설주식회사

준 공 도 면
(도면 또는 CD)

2017. 00. 00

00종합건설주식회사

기자재 구매서류

(업체구매 서류 합철)

2017. 10. 01

00종합건설주식회사

시설물 인계·인수서

공 사 명	00특공대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공사금액	본 공 사 : ₩100,000,000원	계약번호	본 공 사 : 제2016LGS0000호
	전기공사 : ₩100,000,000원		전기공사 : 제2016LGS0000호
	통신공사 : ₩100,000,000원		통신공사 : 제2016LGS0000호
	소방공사 : ₩100,000,000원		소방공사 : 제2016LGS0000호
착 공 일	본 공 사 : 2016년00월00일	준 공 일	본 공 사 : 2017년00월00일
	전기공사 : 2016년00월00일		전기공사 : 2017년00월00일
	통신공사 : 2016년00월00일		통신공사 : 2017년00월00일
	소방공사 : 2016년00월00일		소방공사 : 2017년00월00일
발 주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시공회사	본 공 사 : 제일종합건설(주)
			전기공사 : 제일전기산업(주)
			통신공사 : 제일통신산업(주)
			소방공사 : 제일소방산업(주)
하자기간	본 공 사 : 2017년 00월 00일 ~ 2020년 00월 00일		
	전기공사 : 2017년 00월 00일 ~ 2020년 00월 00일		
	통신공사 : 2017년 00월 00일 ~ 2020년 00월 00일		
	소방공사 : 2017년 00월 00일 ~ 2020년 00월 00일		

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 일체를 정히 인계 인수함.

2017년 00월 00일

인 계 자 : 제일종합건설 현장대리인 김 건 축(인) 제일전기산업 현장대리인 이 전 기(인)
 제일통신산업 현장대리인 최 통 신(인) 제일소방산업 현장대리인 강 소 방(인)

인 수 자 : 00특공대대장 중령 김 중 령(인)

입 회 자 :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건설4과 5급 이 준 공(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관은 입회자가 된다,
 국토부고시제2014-859호 제106조

부 록 #5

준공재산 자산화

준공재산 자산화 인계서

□ 신축공사 (건물)

① 공사(사업명)	사업관리번호		
② 준공일자	③ 준공금액		
④ 사용부대			
⑤ 소재지	* 소재지를 알수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스마트폰 어플 : 스마트국토정보> 1) 어플 다운방법 : 플레이스토어>스마트국토정보 검색>어플다운 2) 어플시행 : 내 위치 부동산 정보(GPS활성화 시켜야함)>우측하단에 '현위치' 클릭 → 내가 서 있는 위치의 지번이 뜬		
⑥ 건물명	⑦ 건물용도		
⑧ 건물구조			
⑨ 연면적 (㎡)	* 설계도서 등이 없다면 건물 외부에서 가로*세로 면적산출	⑩ 층 수	지상(), 지하()
⑪ 건축물대장 작성	유, 무	⑫ 건축물대장 미작성사유	
⑬ 담당자/연락처			
건물 사진	정면		측면

※ 작성요령

- ① 공사명 : 국방시설통합 정보체계 공사정보에 입력된 사업명과 일치되게 작성
- ② 준공일자 : 준공검사조서 실 준공일과 동일하게 작성
- ③ 준공금액 : 준공보고서 예산결산 금액으로 작성
- ④ 사용부대 : 최하 제대 단위까지 표시(예 : ○군단 ○공병여단 ○○○대대 ○중대)
- ⑤ 소재지 : 건물 소재지를 번지까지 작성
- ⑥ 건물명 :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명(예 : 행복마을 아파트)
- ⑦ 용 도 : 국유재산 정리 종목표를 기준으로 작성(예 : 사무실, 아파트, 복지회관 등)
- ⑧ 구 조 : 벽체와 지붕으로 구조 작성(예 : 콘크리트벽체, 콘크리트 스톱 위 기와)
- ⑨ 면적(㎡)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작성(예 : 100.22㎡)
- ⑩ 층 수 : 지상층, 지하층을 구분하여 작성(예 : 지상 1, 지하 0)
- ⑪ 건축물대장 작성 :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건축물 대장 작성 유무에 대하여 반드시 작성
- ⑫ 건축물대장 미작성 사유 : 지적미복구, 토지형질변경절차미필 등

□ 신축공사 (공작물)

① 공사(사업명)			사업관리 번호	
② 준공일자			③ 준공금액	
④ 사용부대				
⑤ 소재지				
⑥ 용도			⑦ 공작물명	
⑧ 설치위치				
⑨ 수량(식)				
⑩ 건물내외 선택	건물 내, 건물 외	⑪ 건물내 설치 시 건물명		
⑫ 담당자 / 연락처				
공작물 사 진	정면		측면	

※ 작성요령(해당공작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진 미제출 가능)

- ① 공사명 : 국방시설통합 정보체계 공사정보에 입력된 사업명과 일치되게 작성
- ② 준공일자 : 준공검사조서 실 준공일과 동일하게 작성
- ③ 준공금액 : 준공보고서 예산결산 금액으로 작성
- ④ 사용부대 : 최하 제대 단위까지 표시(예 : ○군단 ○공병여단 ○○○대대 ○중대)
- ⑤ 소재지 : 물건 소재지를 번지까지 작성
- ⑥ 용도 : 국유재산 정리 종목표를 기준으로 작성(예 : 문, 담장, 교량 등)
- ⑦ 공작물명 : 철제대문, 블록담장 등
- ⑧ 설치위치 : 물건이 위치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예(국기계양대) : 병영생활관 정면 중앙)
- ⑨ 수량(식/m, 톤 등) : 공작물 단위는 식으로 작성하며, 담장, 우수처리시설 등은 별도의 수량을 표시함(예(담장) : 1식(40m))
- ⑩ 건물내외 선택
- ⑪ 건물내 설치시 건물명 : ⑩번항 건물 내 선택시 공작물이 설치된 건물명 작성

□ 대규모 공사 (건물)

① 공사(사업)명			사업관리 번호	
② 준공일자				
③ 증가면적			④ 증가금액	
⑤ 공사내용				
⑥ 사용부대				
⑦ 건물명			소재지	
⑧ 건물용도				
건물 사진	정 면		측 면	

※ 작성요령

- ① 공사명 : 국방시설통합 정보체계 공사정보에 입력된 사업명과 일치되게 작성
- ② 준공일자 : 준공검사조서 실 준공일과 동일하게 작성
- ③ 증가면적 : 기존 건물에 증축면적(m²) 작성
- ④ 증가금액 : 준공금액 작성
- ⑤ 증가사유 내역 : 보수공사 사유 작성(예 : 정비공장 출입문 교체 공사)
- ⑥ 사용부대 : 최하 제대 단위까지 표시(예 : ○군단 ○공병여단 ○○○대대 ○중대)
- ⑦ 소재지 : 기존 건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작성
- ⑧ 건물용도 : 기존 건물용도 작성

□ 대규모 공사 (공작물)

① 사업(공사)명			사업관리 번호	
② 준공일자				
③ 증가수량		④ 증가금액		
⑤ 공사내용				
⑥ 사용부대				
⑦ 소재지				
⑧ 공작물명 (용도)				
건물 사진	정면		측면	

※ 작성요령

- ① 공사명 : 국방시설통합 정보체계 공사정보에 입력된 사업명과 일치되게 작성
- ② 준공일자 : 준공검사조서 실 준공일과 동일하게 작성
- ③ 증가면적 : 기존 공작물에 증가된 수량(식) 작성
- ④ 증가금액 : 준공금액 작성
- ⑤ 증가사유 내역 : 보수공사 사유 작성(예 : 노후관사 전기 보수공사)
- ⑥ 사용부대 : 최하 제대 단위까지 표시(예 : ○군단 ○공병여단 ○○○대대 ○중대)
- ⑦ 소재지 : 기존 공작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작성
- ⑧ 공작물 용도 : 기존 공작물 용도 작성

□ 설계 / 감리 용역

① 공사(사업)명		사업관리 번호	
② 세부공사 현황		③ 준공 예정일	
④ 준공금액			
⑤ 증가사유			
⑥ 사용부대			
⑦ 소재지			
⑧ 용도			

※ 작성요령

- ① 공사명 : 국방시설통합 정보체계 공사정보에 입력된 사업명과 일치되게 작성
- ② 세부공사현황 : 공사명(예:11-18-12 설계용역)에 따른 세부 공사현황 작성
- ③ 준공예정일 : 세부공사현황에 따른 준공예정일 작성
* 공사 준공예정일 확인 불가시 당해연도 사업 / X+1년도 계속사업으로 작성
- ④ 준공금액 작성
- ⑤ 증가사유 내역 : 설계 또는 감리 중 선택 기록
- ⑥ 사용부대 : 최하 제대 단위까지 표시(예 : ○군단 ○공병여단 ○○○대대 ○중대)
- ⑦ 소재지 : 기존 건물/공작물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작성
- ⑧ 용도 : 기존 건물/공작물 용도 작성

준공검사 내용조서 표지(갑지)

준 공 검 사 조 서

공사명	00부대 포상 유개화 시설공사		
계약자	(주) 윤탁종합건설 대표이사 방 태 환		
계약금액	일금 2,743,849,850원정	전회기성	일금 2,397,375,000원정
금회기성	일금 273,570,780원정	누계기성	일금 2,670,954,780원정
계약일자	2016년 06월 10일	착공일자	20106 06월 17일
준공기한	2017년 06월 29일	실 준공일자	2017년 06월 29일
준공검사일자	2017년 06월 30일	참고사항	

위 공사의 준공 검사관으로 임명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설계 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전공사에 대하여 준공되었음을 인정하며 감액사항은 아래와 같음. 다만,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감독조서에 의함.

1. 감액 내용

- 가. 건강(W16,937,163), 노인장기요양(W1,105,555), 연금 보험료(W26,711,210)
정산 : W-44,753,928
- 나. 퇴직 공제부금비 정산 : W-6,817,507
- 다. 환경보전비 정산 : W-859,676
- 라. 기타경비(W19,851), 하도급지급수수료(W740,361), 건설기계보증료(W1,193,424)
정산 : W-1,953,636
- 마. 직접재료비 정산 : W-348,264

2. 감액금액 산출요약

- 가. 건강, 요양, 연금보험료 미사용
1) 건강: W-16,937,163 요양보험: W-1,105,555 연금보험료: W-26,711,210
- 나. 퇴직공제부금비 미사용 : W-6,817,507
- 다. 환경 보전비 미사용 : W-859,676
- 라. 기타경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보증료 미사용
기계경비: W-19,851 / 하도급지급수수료: W-740,361 / 건설기계보증료: W-1,193,424
- 마. 우수공사 중 스틸그레이팅 규격조정(75*71) -> (50*51) 감액 W-348,264

2017년 06월 30일

주 검사관 소속	국방시설본부	5급	김 성 호 (인)
토목 검사관 소속	국방시설본부	해)준위	정 성 태 (인)
입 회 관 소속	육군 제5669부대	대위	박 상 진 (인)

육군 제6950부대 재무관 귀하

집필진 및 참고문헌

연구담당관				감수관		
분야	계급	성명	전화	직책	계급	성명
총괄지도	준공승인 과장	원용안	900-4260	국방시설 본부장	소장	한철기
대관협의	4급	김상규	900-4261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	준장	정해성
공사행정	5급	김성호	900-4268	국방시설본부 기획지원부장	2급	이기민
토목분야	4급	정순용	900-4271	국방시설본부 설계1과	4급	박환신
건축분야	5급	서용수	900-4272	국방시설본부 설계2과	4급	황점식
기계분야	5급	정현	900-4269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4급	김재민
전기분야	중령	이길재	900-4266	국방시설본부 설계2과	5급	고영길
교정 및 편집	중령	전호천	900-4271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5급	양희동
	중령	이승률	900-4266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과	5급	박재민
	준위	정성태	900-4274	국방시설본부 건설계획과	5급	김경찬
				국방시설본부 설계2과	5급	문순식
				국방시설본부 설계2과	6급	이길춘

- 참고문헌
- 건축기술지침(대한건축학회)
 - 공사감독핸드북(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설비관계법규(한솔아카데미)
 - 건축시공기술사해설집(윤영철)

공사감독 실무편람_제1권

발행일 2018년 1월 29일
발행처 국방시설본부
디자인 국군인쇄창 원고편집과
인쇄 국군인쇄창 M17121074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험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신규유형

인도 1차대형
공사기밀 유출 양산스파이
보안사고(기밀) 공판명 제보

상급내역

원형명 간첩 : 최고 20억원
원래 공판 선고 : 최고 1억원
공 판 명 제보 : 최고 3만원

신고방법

전화 910-1337 국군인쇄창 1337
문자 신고 www.dsc.mil.kr
방안정보센터 신고 1337에 '13' 기입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터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fp 전화번호 일반 042) 553-4504~8 군 910-4504~8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국 방 시 설 본 부
Defense Installations Agency